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큰활자판

2009-2011

규례서



미국장로교
헌법
제 II부

큰활자판

OGA-09-045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미국장로교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제 II 부 규례서

PART II
BOOK OF ORDER
2009-2011

공식 한국 번역판

(교회 또는 일반 법정의 소송이 있을 경우 영문판을 공식판으로 함.)

총회사무처 발행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판권 ©2009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처 소유

표지 디자인 판권 ©2009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처 소유

본 출판물은 어느 부분도 발행인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나 어떤 방법으로, 전자를 사용해서나 기계적으로나 사진 복사나 녹음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잡지나 신문 평론에 사용되는 간략한 인용은 제외하고) 복사하거나 재생계통에 저장하거나 송신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의 당회, 노회와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본 출판물의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쇄

본 책자는 다음 처소에서 \$10.00(권당)에 구입할 수 있음
Presbyterian Distribution Service (PD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1-800-524-2612 (PDS)

PDS 주문번호 #OGA-09-045

서문

미국장로교 헌법은 정치형태 G-1.05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앙고백서(제1부)와 규례서(제2부)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신앙고백-미국장로교를 포함하고 있다.

규례서는 정치형태,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포함한다.

이 규례서에서

- (1) “이어야 한다”와 “되어야 한다”는 명령받은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 (2) “마땅히 ... 이어야 한다”는 강하게 제안받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 (3) “적절하다”는 적절하게 맡겨지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 (4) “할 수 있다”는 요구가 아닌 허용되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 (5) 자문서(ADVISORY HANDBOOK)는 총회 산하의 기관들이 목회감독과 관련된 절차에서 대회와 노회를 인도하기 위해 만든 지침서이다. 그러한 안내서에 제안된 절차들은 권장되는 것들이나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다.

214차 총회(2002)의 결정으로 규례서의 정치형태의 몇몇 선택된 장(章)에 성서적 언급 색인 부록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 색인은 이번 판의 규례서에 추가되었으며, 책 뒤 알파벳순의 색인이 나오기 전에 있습니다.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형태와 예배모범과 권징조례의 개정안들은 제217차 총회(2006)가 각 노회에 대해 제안했고, 다수의 노회가 승인한 것이다. 이 개정안들은 2007년 7월 3일자 발효한다.

규례서	회의록, 2008	규례서	회의록, 2008
G-5.0200	48,241	G-13.0202a	23,617
G-6.0202b	48,239	G-13.0202b	23,617
G-6.0401	48,239	G-14.0431	36,1279
G-9.0701b	23,617	G-14.0720	23,617
G-9.0702	23,617	G-14.0722	23,617
G-9.0901	23,617	G-14.0730	49,265
G-9.0902c	23,617	G-14.0742a,b,c	23,617
G-11.0102	19,1262	G-14.0743	23,617

<i>규례서</i>	<i>회의록, 2008</i>	<i>규례서</i>	<i>회의록, 2008</i>
G-11.0407	48, 51, 277	D-2.0101a	23, 617
G-12.0102k	19, 1262	D-2.0103	48, 49, 262
G-13.0103h	23, 617	D-2.0202	23, 617
G-13.0107	49, 266	D-6.0202b	23, 617
G-13.0108	49, 266	D-6.0302	23, 617
G-13.0200	23, 617	D-6.0302a	23, 617
G-13.0201c	23, 617	D-10.0202h	48, 49, 262
G-13.0201d	23, 617		
표준 에큐메니컬 성명서			<i>회의록, 2008</i>
미국한인장로교 와 미국장로교 간에 맺은 계약관계			14, 15, 513

2009년 6월

Gradye Parsons
미국장로교(PCUSA) 총회서기

규례서 참조 번호제에 관한 설명

규례서의 세 부분은 대문자들을 사용해서 약자화했다.

G - 정치형태

W - 예배모범

D - 권징조례

본문에 있는 각 참조 조항은 해당되는 약자로 시작한다. 약자 다음의 소수점 왼쪽 나타난 숫자는 해당 장수를 지적한다. 소수점 오른쪽에 네 개의 숫자가 있다.

각 페이지는 해당 조문을 가리키는 적절한 약자에 이어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치형태의 제6장 첫 페이지는 이런 숫자표시가 있다:

G-6.0000-0106

이것은 정치형태의 제6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그 페이지는 6개의 소제목들인 6.0101, 6.0102, 6.0103, 6.0104, 6.0105, 6.0106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항 1이라는 뜻이다.

규례서의 장과 조항이 이처럼 표기되었으므로 현재의 숫자 표시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수정 조항을 거기에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를 피함으로, 이 기호법은 매년 영어, 한글, 스페인어와 점자판에 동일하게 남게 되어 회의록, 보고서와 통신에 있어서 규례서를 인용하는 일을 가능케 만든다.

[이 항목은 ...에 의해 삭제되었다.]란 문장을 몇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규례서의 인용에 혼란을 주게 될 번호를 다시 매기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다.

목 차

정치형태

제1장 기본원리	G-1.0000
1. 교회의 머리	G-1.0100
2. 교회의 큰 목적	G-1.0200
3.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	G-1.0300
4.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	G-1.0400
5. 헌법 정의	G-1.0500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G-2.0000
제3장 교회와 선교	G-3.0000
제4장 교회와 일치	G-4.0000
1. 교회 - 보편교회와 개체교회	G-4.0100
2. 교회의 일치	G-4.0200
3. 장로교 정치원리	G-4.0300
4. 다양성과 포괄성	G-4.0400
제5장 교회와 교인	G-5.0000
1. 교인의 뜻	G-5.0100
2. 교인의 범주	G-5.0200
3. 비회원의 특권	G-5.0300
4. 교인 되기 위한 준비	G-5.0400
5. 회원권의 재검토	G-5.0500

제6장 교회와 제직원	G-6.0000
1. 목회의 직책	G-6.0100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6.0200
3. 장 로	G-6.0300
4. 집 사	G-6.0400
5. 관계의 해소	G-6.0500
6. 안수직 수행의 해제	G-6.0600
7. 교직권의 파기	G-6.0700
제7장 개체교회	G-7.0000
1. 조직, 선교 및 정치	G-7.0100
2. 개체교회의 조직	G-7.0200
3. 공동의회	G-7.0300
4. 법인체와 재단이사	G-7.0400
제8장 교회와 그 재산	G-8.0000
1. 재산에 관한 결정	G-8.0100
2. 신탁된 모든 재산	G-8.0200
3.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 사용	G-8.0300
4. 해체 또는 소멸된 교회의 재산	G-8.0400
5. 교회재산의 매매, 저당, 또는 임대	G-8.0500
6. 분열시의 교회재산	G-8.0600
7. 예 외	G-8.0700
제9장 처리회	G-9.0000
1. 총 칙	G-9.0100
2. 직 원	G-9.0200
3. 회 의	G-9.0300
4. 행정의 원리	G-9.0400
5.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9.0500
6. 중재 조항	G-9.0600
7. 행정 직원	G-9.0700
8. 공천위원회	G-9.0800
9. 구조의 요약	G-9.0900

제 10장 당 회	G-10.0000
1. 총 칙	G-10.0100
2. 회 의	G-10.0200
3. 당회록과 기록	G-10.0300
4. 교회재정	G-10.0400
 제11장 노 회	 G-11.0000
1. 총 칙	G-11.0100
2. 회 의	G-11.0200
3. 다른 규정들	G-11.0300
4. 목사 회원	G-11.0400
5. 목회위원회	G-11.0500
 제12장 대 회	 G-12.0000
1. 총 칙	G-12.0100
2. 회 의	G-12.0200
3. 기타 규정들	G-12.0300
 제13장 총 회	 G-13.0000
1. 총 회	G-13.0100
2. 총회선교협의회	G-13.0200
 제14장 안수, 인정, 파송	 G-14.0000
1. 교회내의 지도력	G-14.0100
2. 장로와 집사 직책을 취한 준비	G-14.0200
3. 교회 제직으로서 안수	G-14.0300
4. 말씀과 성례전 목사 직책을 위한 준비	G-14.0400
5. 목회관계	G-14.0500
6. 위임 목회관계 해소	G-14.0600
7. 유자격 목회에 부름받은 자들	G-14.0700

제15장 관련성	G-15.0000
1. 에큐메니칼 관여	G-15.0100
2. 다른 교파와의 관계	G-15.0200
3. 교회 연합	G-15.0300
제16장 연합교회	G-16.0000
1. 개혁과 교회의 개체교회	G-16.0100
2. 연합 계획안	G-16.0200
3. 타교단의 개체교회	G-16.0300
4. 연합 계획안	G-16.0400
5. 예 외	G-16.0500
제17장 연합 치리회	G-17.0000
1. 위임 수권	G-17.0100
2. 연합 계획안	G-17.0200
3. 예 외	G-17.0300
제18장 개정	G-18.0000
1. 개 혁	G-18.0100
2. 고백문서	G-18.0200
3. <i>규례서</i>	G-18.0300
4. 특별 규정의 개정	G-18.0400

예배모범

제1장 크리스천 예배의 활력	W-1.0000
1. 크리스천 예배: 서론	W-1.0100
2. 예배의 언어	W-1.0200
3. 시간, 장소, 물질	W-1.0300
4. 예배의 책임과 책임 소재	W-1.0400

제2장 크리스천 예배의 구성 요소	W-2.0000
1. 기 도	W-2.0100
2. 성경봉독과 선포	W-2.0200
3. 세 례	W-2.0300
4. 주의 성찬	W-2.0400
5. 자신을 드림	W-2.0500
6. 상호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W-2.0600
제3장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	W-3.0000
1. 순서의 원칙과 자료.....	W-3.0100
2. 날과 절기	W-3.0200
3. 주일예배	W-3.0300
4. 매일 기도회	W-3.0400
5.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W-3.0500
6. 특별한 모임	W-3.0600
제4장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배순서	W-4.0000
1. 특별한 행사와 인정.....	W-4.0100
2. 환영과 영접예배	W-4.0200
3. 제자직의 특별 파송행위.....	W-4.0300
4. 안수, 취임, 파송	W-4.0400
5. 목회에 있어서 변화.....	W-4.0500
6. 책벌과 회복	W-4.0600
7. 신앙공동체에의 봉사 인정.....	W-4.0700
8. 용납과 화해의 예배.....	W-4.0800
9. 결 혼	W-4.0900
10. 장례식	W-4.10000
제5장 예배와 개인의 제자직	W-5.0000
1. 개인예배, 제자직, 신앙공동체.....	W-5.0100
2. 매일 개인예배 훈련.....	W-5.0200
3. 개인예배 때의 성경.....	W-5.0300
4. 개인예배 때의 기도.....	W-5.0400
5.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위한 기타 훈련.....	W-5.0500

6. 크리스천의 직업	W-5.0600
7. 가정과 가족예배	W-5.0700
제6장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예배와 목회	W-6.0000
1. 교회 내의 상호 목회	W-6.0100
2. 기독교 양육	W-6.0200
3. 목회적 돌봄	W-6.0300
제7장 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예배와 목회	W-7.0000
1. 예배와 선교	W-7.0100
2. 복음 선포와 전도	W-7.0200
3. 동정심	W-7.0300
4. 화해: 정의와 평화	W-7.0400
5. 창조계와 생명의 돌봄	W-7.0500
6.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W-7.0600
7. 찬양으로서의 예배	W-7.0700

권징조례

제1장 교회권징의 원리	D-1.0000
(전문)	
교회 권징	D-1.0101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D-1.0102
조정과 중재	D-1.0103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000
1. 사법절차	D-2.0100
교회권징	D-2.0101
a. 변칙과 비행의 방지와 시정	D-2.0101a
b. 범법의 시정	D-2.0101b
교회 치리회들	D-2.0102
해결의 대안형식	D-2.0103

2. 사건의 형태.....	D-2.0200
교정이나 징계.....	D-2.0201
교정사건.....	D-2.0202
a. 변칙.....	D-2.0202a
b. 비행.....	D-2.0202b
징계사건.....	D-2.0203
a. 교회 체직원.....	D-2.0203a
b. 범법.....	D-2.0203b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D-3.0000
관할권.....	D-3.0101
a. 당회.....	D-3.0101a
b. 노회.....	D-3.0101b
c. 노회, 대회, 총회.....	D-3.0101c
d. 교회해산.....	D-3.0101d
더 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D-3.0102
하급 치리회가 결의 못함.....	D-3.0103
이명한 목사의 관할권.....	D-3.0104
각 치리회 집행 및 인정.....	D-3.0105
관할권의 종결시.....	D-3.0106
제4장 조회	D-4.0000
1. 조회.....	D-4.0100
정의.....	D-4.0101
해당 주제.....	D-4.0102
하급 치리회의 의무.....	D-4.0103
2. 조회의 결의.....	D-4.0200
상급 치리회의 의무.....	D-4.0201
접수.....	D-4.0202
거절.....	D-4.0203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	D-5.0100
선출.....	D-5.0101

임기	D-5.0102
연조	D-5.0103
공석	D-5.0104
자격	D-5.0105
위원회 비용	D-5.0106
2. 회의	D-5.0200
임원	D-5.0201
권한의 근거	D-5.0202
회의	D-5.0203
정족수	D-5.0204
참여치 못할 자	D-5.0205
정족수 부족	D-5.0206
a. 정족수 확보 불능	D-5.0206a
b. 전임 위원의 명단	D-5.0206b
c. 참석자 비용	D-5.0206c
제6장 교정사건	D-6.00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0
착수방법	D-6.0101
고소의 정의	D-6.0102
집행유예	D-6.0103
a. 제기할 수 있는 사람	D-6.0103a
b. 사본 제공	D-6.0103b
c. 유효기간	D-6.0103c
d.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D-6.0103d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0
당사자들	D-6.0201
소 제기자	D-6.0202
a.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치리회 상대	D-6.0202a
b. 당회, 총회 중앙협의회나 그 기관 상대	D-6.0202b
3. 사전 심리 절차	D-6.0300
고소 진술	D-6.0301
변호인단	D-6.0302

a. 규칙에 따라 마련.....	D-6.0302a
b. 봉사 못함.....	D-6.0302b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심리 이전 절차.....	D-6.0304
서류검사.....	D-6.0305
예비 질문 결정.....	D-6.0306
응답자의 의무.....	D-6.0307
등록 절차.....	D-6.0308
심리 요약서.....	D-6.0309
사전 심리회의.....	D-6.031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000
1. 재판의 집행.....	D-7.0100
재판 - 교정적.....	D-7.0101
정식으로 집행.....	D-7.0102
2. 소환과 증언.....	D-7.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7.0201
a. 소환받는 회원.....	D-7.0201a
b. 요청받는 타인들.....	D-7.0201b
c. 타치리회의 증인.....	D-7.0201c
d. 비용.....	D-7.0201d
소환장 전달.....	D-7.0202
이차 소환.....	D-7.0203
증인의 증언 거부.....	D-7.0204
선서 증언.....	D-7.0205
3. 재판 절차.....	D-7.0300
변호인.....	D-7.0301
자료의 회람.....	D-7.0302
재판 집행 통괄.....	D-7.0303
a. 절차에 관한 질문.....	D-7.0303a
b. 결석.....	D-7.0303b
정족수 미달.....	D-7.0304

4. 재 판	D-7.0400
교정사건의 절차	D-7.0401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7.0401a
b. 전권위원의 자격	D-7.0401b
(1) 부적격성	D-7.0401b(1)
(2) 항 의	D-7.0401b(2)
c. 절차상 반론	D-7.0401c
d. 고소 개정	D-7.0401d
e. 개정 진술	D-7.0401e
f. 증거의 규칙	D-7.0401f
g. 증 거	D-7.0401g
h. 최종 진술	D-7.0401h
결 정	D-7.0402
a. 심 의	D-7.0402a
b. 결 정	D-7.0402b
c. 서면 결정서	D-7.0402c
d. 즉시 접수	D-7.0402d
e. 공 개	D-7.0402e
5. 상소의 규정	D-7.0500
상소 시일	D-7.0501
상 소	D-7.0502
6. 절차의 기록	D-7.0600
절차의 기록	D-7.0601
a. 구두 기록	D-7.0601a
b. 증거물	D-7.0601b
c. 회의록	D-7.0601c
d. 기 록	D-7.0601d
e. 보 존	D-7.0601e
f. 등 분	D-7.0601f
기록에 추가	D-7.0602
7. 서기의 임무	D-7.0700
결정의 보고	D-7.0701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000
1. 상소의 착수	D-8.0100
정의	D-8.0101
상소의 착수	D-8.0102
상소의 효력	D-8.0103
상소의 철회	D-8.0104
상소의 근거	D-8.0105
2. 상소 과정의 접수	D-8.0200
서면 상소장 접수기간	D-8.0201
서면 상소장 내용	D-8.0202
상소장을 직원들에게 전달	D-8.0203
3. 청문 이전 절차	D-8.0300
서류 검사	D-8.0301
예비질문 결정	D-8.0302
상소 기록	D-8.0303
a. 기록의 목록	D-8.0303a
b. 추가 기록	D-8.0303b
c. 상소 기록의 접수	D-8.0303c
d. 기록의 교정	D-8.0303d
e. 접수 일자의 통보	D-8.0303e
f. 사본 제공 비용	D-8.0303f
g. 연장	D-8.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D-8.0304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8.0304a
b. 연장	D-8.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8.0305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8.0305a
b. 연장	D-8.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5c
기록 및 적요서 전달	D-8.0306
사전 청문회	D-8.0307
4. 상소의 청문	D-8.0400
청문 통보	D-8.0401

출두 실패	D-8.0402
청문	D-8.0403
a. 새 증거	D-8.0403a
b. 청문	D-8.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D-8.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8.0404b
c. 서면 결정서	D-8.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8.0404d
e. 즉시 접수	D-8.0404e
f. 공개	D-8.0404f
제9장 결백 입증의 요청	D-9.0000
결백 입증의 요청	D-9.0101
a. 처리회에 의한 검토	D-9.0101a
b. 조사위원회	D-9.0101b
사건의 결론	D-9.0102
제10장 징계사건	D-10.00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0
예비절차의 착수	D-10.0101
범법의 진술	D-10.0102
a. 고소	D-10.0102a
b. 처리회	D-10.0102b
c. 자책	D-10.0102c
조사위원회에 회부	D-10.0103
타처리회의 고소	D-10.0104
이명 불가	D-10.0105
직위해제	D-10.0106
2. 조사	D-10.0200
조사 위원회	D-10.0201
a. 회원권	D-10.0201a
b. 규칙대로 임명	D-10.0201b
c. 비용	D-10.0201c
조사위원회 책임	D-10.0202

인권	D-10.0203
a. 피소인의 권리	D-10.0203a
b. 가해 용의자의 권리	D-10.0203b
c. 용의자 권리	D-10.0203c
절차 검토 청원 전권위원회	D-10.0204
3. 결정의 전달	D-10.0300
결정의 전달	D-10.0301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D-10.0302
검토청원	D-10.0303
기록의 처리	D-10.0304
4. 고소	D-10.0400
시간제한	D-10.0401
사건의 기소	D-10.0402
a. 당사자들	D-10.0402a
b. 두 당사자들만	D-10.0402b
고소의 형식	D-10.0403
a. 여러 가지를 함께	D-10.0403a
b. 고소의 명세서	D-10.0403b
c. 함께 심리	D-10.0403c
고소의 접수	D-10.0404
a. 당 회	D-10.0404a
b. 노 회	D-10.0404b
사전 심리회의	D-10.0405
a. 시간과 장소	D-10.0405a
b. 참석자들	D-10.0405b
c. 아무 일도 못함	D-10.0405c
증인 공개	D-10.0406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000
1. 재판의 진행	D-11.0100
재판 — 징계적	D-11.0101
정식으로 징계	D-11.0102
2. 소환과 증언	D-11.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11.0201

a. 소환받는 회원	D-11.0201a
b. 요청받는 사람들	D-11.0201b
c. 타치리회의 증인	D-11.0201c
d. 비 용	D-11.0201d
소환장 전달	D-11.0202
a. 이차 소환	D-11.0202a
b.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D-11.0202b
증인의 증언 거부.....	D-11.0203
선서 증언	D-11.0204
3. 재판 절차.....	D-11.0300
변호인	D-11.0301
변호인을 얻지 못함.....	D-11.0302
자료의 회람	D-11.0303
재판집행 통괄.....	D-11.0304
a. 절차에 대한 질문	D-11.0304a
b. 결 석	D-11.0304b
정족수 미달	D-11.0305
비공개 회의 절차.....	D-11.0306
4. 재 판.....	D-11.0400
무죄의 추정	D-11.0401
징계사건의 절차.....	D-11.0402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11.0402a
b. 전권위원의 자격	D-11.0402b
(1) 부적격성	D-11.0402b(1)
(2) 항 의	D-11.0402b(2)
c. 예비적 반론	D-11.0402c
d. 변 론	D-11.0402d
e. 개정진술	D-11.0402e
f. 증거의 규칙.....	D-11.0402f
g. 기 소	D-11.0402g
h. 반 론	D-11.0402h
i. 반 박	D-11.0402i
j. 최종 진술	D-11.0402j

결 정	D-11.0403
a.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D-11.0403a
b.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D-11.0403b
c. 서면 결정서	D-11.0403c
d. 공개회의에서 공포	D-11.0403d
e. 책벌의 정도	D-11.0403e
f. 즉시 접수	D-11.0403f
g. 당사자들의 통보	D-11.0403g
h. 공개	D-11.0403h
5. 상소의 규정	D-11.0500
상소의 시일	D-11.0501
상 소	D-11.0502
6. 절차의 기록	D-11.0600
절차의 기록	D-11.0601
a. 구두기록	D-11.0601a
b. 증거물	D-11.0601b
c. 회의록	D-11.0601c
d. 기 록	D-11.0601d
e. 기록의 보존	D-11.0601e
f. 등 본	D-11.0601f
기록에 추가	D-11.0602
7. 서기의 임무	D-11.0700
결정 보고	D-11.0701
8. 집 행	D-11.0800
치리회에 의한 집행	D-11.0801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회복	D-12.0000
1. 책 벌	D-12.0100
교회 책벌의 등급	D-12.0101
기도가 따른 견책	D-12.0102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D-12.0103
a. 기도	D-12.0103a
b.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	D-12.0103b
c. 평가의 복권 상담의 진술	D-12.0103c
d. 다른 사람을 성회롱한 범법행위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행위	D-12.0103d

일시 정지	D-12.0104
a. 기도	D-12.0104a
b. 감독 복권 상담	D-12.0104b
c.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행위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 행위	D-12.0104c
d. 직책수행의 자제	D-12.0104d
e.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D-12.0104e
f. 목사의 일시 정지의 영향	D-12.0104f
g. 일시 정지의 통지	D-12.0104g
h. 일시 정지 책벌의 종료	D-12.0104h
i. 조기 복권	D-12.0104i
직책이나 회원권 박탈	D-12.0105
2. 회복	D-12.0200
치리회의 결정	D-12.0201
박탈후 직책 회복 양식	D-12.0202
a. 양식	D-12.0202a
b. 명부에 회복	D-12.0202b
박탈후 회원권 회복 양식	D-12.0203
a. 양식	D-12.0203a
b. 명부에 회복	D-12.0203b
c. 직책에 회복	D-12.0203c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000
1. 상소의 착수	D-13.0100
정의	D-13.0101
상소의 착수	D-13.0102
항소판결의 상소	D-13.0103
상소의 효력	D-13.0104
상소의 철회	D-13.0105
상소의 근거	D-13.0106
2. 상소 과정의 접수	D-13.0200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D-13.0201
서면 상소장의 내용	D-13.0202
직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D-13.0203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0
서류 검사	D-13.0301
예비 질문 결정	D-13.0302
상소 기록	D-13.0303
a. 기록의 목록	D-13.0303a
b. 추가 기록	D-13.0303b
c. 상소기록의 접수	D-13.0303c
d. 기록의 교정	D-13.0303d
e. 접수일자 통자	D-13.0303e
f. 사본제공 비용	D-13.0303f
g. 연장	D-13.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4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4a
b. 연장	D-13.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5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5a
b. 연장	D-13.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5c
기록과 적요서 전달	D-13.0306
사전 청문회	D-13.0307
4. 상소의 청문	D-13.0400
청문통보	D-13.0401
출두실패	D-13.0402
청문	D-13.0403
a. 새 증거	D-13.0403a
b. 청문	D-13.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3.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D-13.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13.0404b
c. 서면 결정서	D-13.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13.0404d
e. 즉시 접수	D-13.0404e
f. 공개	D-13.0404f
징계사건의 상소반복 효력	D-13.0405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000
1. 증거.....	D-14.0100
증거의 정의.....	D-14.0101
2. 증인.....	D-14.0200
항의.....	D-14.0201
남편이나 아내.....	D-14.0202
상담자.....	D-14.0203
당사자들의 변호인.....	D-14.0204
증인의 신임도.....	D-14.0205
3. 증언.....	D-14.0300
분리심문.....	D-14.0301
증인의 심문.....	D-14.0302
a. 선서.....	D-14.0302a
b. 확인.....	D-14.0302b
증언의 기록.....	D-14.0303
선서증언의 용인.....	D-14.0304
a. 타치리회서 온 사람.....	D-14.0304a
b. 증언시행.....	D-14.0304b
c. 증거제공.....	D-14.0304c
d. 용인성의 질문.....	D-14.0304d
증인으로서 회원.....	D-14.0305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0
기록의 용인성.....	D-14.0401
증언의 용인성.....	D-14.0402
5. 새 증거.....	D-14.0500
새 재판의 청원.....	D-14.0501
상소의 고려.....	D-14.0502

부록: 사법절차 양식

한국어 어휘

색인

합의조항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G-1.0000

정치형태¹
제1장기본원리

G-1.0100

G-1.010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1. 교회의 머리

a.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모든 정사와 모든 권력, 그리고 현세대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서 모든 이름 위에 그를 세우셨다.a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셨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b

그리스도가 교회에 신앙과 생명을 주심

b.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적 사명, 교직자와 조례를 주신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성경에 설정되어 있는 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신앙과 생명을 주심

c.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적 사명, 교직자와 조례를 주신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성경에 설정되어 있는 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위이심

d. 예수는 주(主)시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의 권위에 예속되었고, 생동적이고 기쁨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G-1.0200

교회의 큰 목적

2.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친교;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 보존; 사회 정의의 촉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²

G-1.0300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

3.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³

다음의 정치형태, 예배와 권징을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장로교(PCUSA)는 이 나라 공동 유산의 일부이고, 또 장로교 개념과 교회정치 제도의 기초가 되어 온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¹본서 전체를 통해서 다음 약자들이 쓰여진다: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²여기에서 말한 교회의 큰 목적들은 북미 연합장로교회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인데, 이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다. 이 진술도 그 때에 통합하면서 미연합장로교 헌법의 일부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진술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여러 차례 그 교회의 헌법 개정을 했던 것인데, 1910년에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³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지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G-1.0301
판단의 권리

(1) (a) “ 홀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⁴이 신앙이나 예배⁵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율로부터 자유하다.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 권리가 보편적 권리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된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 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G-1.0302
집단적인 판단

(2) 상기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각 교회나 연합체나 개교회 협의회는 그 교회의 가입 규정과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의 이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 가입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G-1.0303
제직원

(3)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직원에게 또한 전체 교회에 의무로서 주어진 것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규율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G-1.0304
진리와 선행

(4) 진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있으며; “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지라.” 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결국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고 부당한 의견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등 애쓸 필요가 없다.

G-1.0305
의견의 차이

(5)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 하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성품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 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G-1.0306
교인에 의한 선거

(6) 교회 제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만 아니라 그 직분 수여와 제도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규정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체에 있어서 그 권위 행사를 위한 제직원 선정권은 그 집단에게 있다.

⁴여기 인용한 ‘ 인간들’ 과 ‘ 인간의’ 란 말은 18세기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⁵이 인용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인데, 신앙고백서 6.109에 있다.

G-1.0307
교회의 권한

(7) 교회의 권한은 전체 교회가 하든지, 혹은 선택하여 세운 대표에 의해 하든지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c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어떤 치리회라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회회의와 협의회가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G-1.0308
교회의 권징

(8)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원칙들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 영광과 행복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순수히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d이 있으며, 공민적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타당성, 편견 없는 대중의 승인,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원과 축복 속에서 발생한다.

G-1.0400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

4.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

장로교회의 정치 및 권징의 급진적^{6,e}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몇 개의 다른 회중이 집단적으로 모여 교회라고 단호히 불리우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 그 교회의 상회나 상회 대표가 하회를 치리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논쟁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 교회의 대표가 각 부분과 연합된 전체 분야를 다스리며 결정해야 한다; 곧, 다수가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상소 문제가 생기면 하회에서 상회로 상정되어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위해서는 사도들의 모범과 초대교회의 관례가 권위로 인정된다.

G-1.0500
헌법 정의

5. 헌법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G-1.0501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다:

- 니케아 신조
- 사도신경
- 스콧 신앙고백서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제2스위스 신앙고백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대요리문답
- 소요리문답
- 바르멘 신학선언
- 1967년도 신앙고백
- 간추린 신앙고백 . 미국장로교

⁶이 조항의 본문을 1797년 미국장로교총회가 채택했던 것이다. 이 인용구 중 ‘ 급진적’ 이란 말은 ‘ 근본적이고 기초적’ 이란 뜻이고, ‘ 상소’ 란 말은 사법 절차상의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G-1.0502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정치형태
예배모범
권징조례

G-2.0000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G-2.0100

신앙고백적 진술의 목적

a.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이들 고백적 진술에서 교회는 그 교인과 세계를 향하여

그가 누구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하도록 결심하는지를 선언한다.

공동체로서 교회

b. 이 진술들은 확신과 행함으로 알려진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다; 그것들은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또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G-2.0200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적 진술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a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받은 자를 교회는 충고하거나, 심지어 권징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의 신앙고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치, 예배, 권징에 관계되는 헌법 개정보다 더 엄격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는 그 정치형태뿐 아니라 그 교리의 표준을 개혁하는 데도 개방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¹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임을 확인한다.

G-2.0300

보편교회의 신앙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보편교회의 신앙을 증거한다. 그 신앙고백들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b, 즉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전세계 교회적인 신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정의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G-2.0400

개신교 개혁의 신앙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장들을 확인한다. 이들 주장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표어 — 은총만으로,^c 믿음만으로,^d 성경만으로^e — 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생활로 계속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¹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의 대안해석은 “개혁되었으며,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이다.

G-2.0500
개혁 전통의 신앙

a.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 사상은 주권적 정의와 사랑m 을 펴시는 자유 가운데서 세계를 창조,i 보존,j 통치,l 구원k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심,f 거룩하심g 그리고 섭리h를 긍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긍정하는 이 같은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혁 전통의 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구원o받고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n;
-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잘 다져진 관심을 나타낸 계약의 삶을 사는 일;
- (3)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 (4) 인간성은 이상승배p와 폭정q을 할 경향성이 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며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특이한 입장 반영

b. 이와 같이 장로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안에서 특이한 입장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경험한 결과로서 나타난 고백들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신앙결단 및 신앙공동체의 생활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는 데 요긴한 것이다.

G-3.0000

제3장 교회와 선교

G-3.0100
형성

교회의 선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신앙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G-3.0101
하나님의 활동

a.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관리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은 남녀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으며, 창조주께 감사하면서 순종의 응답을 하도록 하셨다. 비록 인간이 그를 지으신 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갖는 공동체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가족을 은총으로 선택하사 약속의 순례자, 곧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약

b.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약의 책임을 지우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면서도 그들의 불성실 때문에 백성을 심판하셨다.

G-3.0102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타인을 위한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나타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에 계속 현존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었다.

G-3.0103
성령

성령의 현존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활동이 계속된다. 성령은 개인과 집단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직면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르신다.

G-3.0200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잠정적인 시범장이다.

a.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실재의 세계를 위한, 그리고 세계 안에 있는 한 징표로 부름받았다.

b.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새로운 실재는 새 인간성이요, 새로운 창조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 (1) 죄는 용서받았고.
- (2) 화해는 이루어졌으며.
- (3) 적대에 찬 장벽은 허물어졌다.

c. 교회는 공동체적 생활에서 또, 각 신자의 개인생활에서 공히 그리스도^a의 몸이고, 교회는 이 진리를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G-3.0300
교회의 소명

a. 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말씀과 성례전에서 선포된다

- (1) 새 시대가 밝아 왔다.
- (2) 생명을 창조하시고, 열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단절을 화해케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주장을 제시

b.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어 새 생명을 받도록 촉구하는 데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전도자

c.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1) 세상에 나아가서 만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2) 교회는 또한 교인들 서로간에 사랑을 본보이고 공통적 삶의 자질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실재를 나타내며; 예배와 친교, 교육을 함께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기도생활과 남을 섬기는 생활을 실천한다;

(3)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다:

(a) 병을 고치고, 화해를 이룩하며, 상처를 싸매주고,

(b)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외로운 자, 그리고 힘없는 자를 돌보며,

(c) 죄와 공포와 억압과 굶주림과 불의에서 백성을 자유케 하는 투쟁에 참여하며,

(d)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e)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서 그의 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

G-3.0400

위기와 신뢰에로 부름받음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같은 선교를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홀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수여자이심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재를 이 세상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초월하여 이런 행동을 수행한다.

G-3.0401

개방성으로 부름받음

교회는 부름받았다:

a. 교회와 세상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복종하여 또한 예배와 활동에서 더욱 기쁨에 찬 축하를 드리는 일에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b. 교회는 그 회원 됨에 있어서 다양한 신앙공동체임을 인정하고, 모든 연령의 남녀와 인종과 계층이 실제로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새 인간성의 보이는 상징으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c. 교회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런 형태의 신실성과 유용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제도적 형태의 가능성과 위협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

d.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G-4.0000

제4장 교회와 일치

G-4.0100

1. 교회-보편교회와 개체교회

G-4.0101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의 통치하에서^a 교제를 나누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G-4.0102
보편교회와 개체교회

이들 모든 사람이 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길 수 없으므로 각기 개체교회^b로 나누어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란 보편교회의 한 지역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G-4.0103
개체교회

한 개체교회는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성경^c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며 특별한 교회의 정치형태^d에 순응하는 어느 특정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G-4.0104
개체 장로교회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 개체교회 제직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다. 개 교회의 정치와 지도권은 당회의 책임 하에 있다. 개체 교회는 모든 백성을 섬기는 지역의 선교 단위로서 전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G-4.0200

2. 교회의 일치

G-4.0201
선교적 일치

교회의 일치는 주께서 주신 한 은총의 선물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믿음의 영역을 넓히기 원하는 믿는 자들의 교제이며, 그러나 결코 기독교 공동체 유익을 즐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G-4.0202
동일성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 (엡 4:5-6)을 모시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G-4.0203
가시적 동일성

각각의 개성과 재능과 이해의 다양성을 다 하나로 단합시켜서 가시적 동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치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일치가 성취된 한 방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각기 다른 교파로 갈라진 것이 이 일치성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러한 나누임은 교회와 세상에 그 일치를 모호하게 한다. 미국 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의 그 역사적 연속성을 긍정하면서 그 모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 하나인 세계 교회의 모든 지교회들과의 교제와 유대를 추구하고 도모하려고 한다 (G-15.0000)e.

G-4.0300

3. 장로교 정치원리

G-4.0301
장로교 정치

미국장로교는 보편교회 원칙의 맥락에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특별한 언명을 재확인한다:

- a.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단적으로 다한 교회를 이룬다;
- b. 이 교회는 장로들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는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에 의해 치리된다;
- c. 이 장로들은 각급 치리회(법정 또는 재판소로 통칭되어움)에서 회무를 처리한다;
- d.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의 의사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찾으며 대변하기를 추구한다;
- e. 모든 결정은 치리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표결에 부치며, 다수결로 결정한다;
- f.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를 시찰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문의나 불평이나 상소가 들어왔을 때 논쟁적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 g. 장로는 오로지 치리회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받는다;
- h. 교회의 관할권은 치리회에 모인 장로들이 다 함께 행사하며 공유하는 권한이다;
- i. 치리회는 교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

G-4.0302
장로교 일치

장로교 치리 질서의 성격은 권한과 책임을 서로 지는 체제이다. 한 교회든 여러 교회든 간에 다스릴 권위를 가진 치리회의 체제는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구조 안에서 상호협조 관례를 유지한다.

G-4.0303
역사적 인식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현재 교회의 배후에 있는 전통 유산을 충실히 지키는 동시에 연속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활동을 향한 개방성과 충성심을 동등하게 요구한다.

G-4.0304
에큐메니칼 인식

이 정치형태는 성경f 에 비추어서 이 교회에 질서를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속하는 데 기본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G-4.0400

4. 다양성과 포괄성

G-4.0401
형태의 다양성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교회와 세상에 있어서 이 다양성에 부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예배에 함께 모이고 공동체적 삶에 질서를 제공할 때 여러 문화와 필요에 적합한 형식, 실천,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과 봉사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G-4.0402
타인에 대한 개방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일치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리고 예술과 과학 분야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에 대해 열린 교회가 되게 하며 열린 교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

G-4.0403
전체 참여

미국장로교는 소속 개체교회가 가진 풍부한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건전한 교회 생활에 이르도록 보다 큰 포괄성을 확실하게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종족 그룹,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다양한 지역, 개혁교회 전통에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혼 상태(기혼자, 독신자, 미망인과 상처한 자, 이혼자)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표자로서 충분히 참가하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G-9.0104a).

G-5.0000

제5장 교회와 교인

G-5.0100

1. 교인의 뜻

G-5.0101
믿음으로 교인됨

a.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생활^a에 있어서 그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질 때 교회의 활동교인이 된다. 세례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공적인 신앙고백이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는 가시적 표징이다.

활동교인이 됨

b. 사람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교회의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곧 신앙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재확인으로, 또는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져옴으로써 된다.

전에 세례받은자

c. 유아로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또 교회생활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당회는 그들이 활동교인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도록 초청하고 격려하며 돕는다. 그런 공적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나이는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활동교인으로 지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심스럽게 심사한 후 당회의 세심한 판단에 달렸다.

전에 세례받지 않은 자

d.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자로서 교회생활에 연합하고 싶을 때에는 당회가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명증서

e.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개체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은 최근까지 교인으로 있었던 그 교회로부터 온 이명증서를 받아서 당회가 접수함으로써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신앙의 재확인

f. 때로는 전에 신앙고백도 하고 또 어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나 교인 확인증을 얻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회가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의 신앙고백과 교회생활의 책임 수락을 공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G-5.0102
사역하는 교인

충성된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역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 a. 복음을 선포하고,
- b. 개체교회의 예배와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 c. 기도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연구하고,
- d. 돈, 시간, 재능을 드림으로써 교회사역을 받들고,
- e. 교회의 치리 책임에 참여하고,
- f.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자질을 보이고,
- g. 타인을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고,
- h. 개인, 가정, 직업, 정치적, 문화적, 또는 사회생활의 관계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고,

i. 세상에서 평화, 정의, 자유, 그리고 인간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G-5.0103
포용성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교인이 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 인종과 종족의 기원, 세속적 조건, 또는 신앙고백과 관계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도 교인됨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교인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넓히는 은혜의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G-9.0104).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고 복음에 비방거리가 된다.

G-5.0200

2. 교인 서약

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거쳐 당회에 의해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다음(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서이건 아니면 이명증명서에 의해서이건), 공식 예배 석상에서 영접되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W-4.2003a, b, c).

G-5.0300

3. 교인의 범주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의 교인은 세례교인, 활동교인, 비활동교인, 그리고 관련교인으로 구성된다.

G-5.0301
세례교인

개체교회의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유아세례 교인 - 역자주)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공적 신앙고백을 안한 사람이다. 그런 세례교인은 목사의 돌봄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다.

G-5.0302
활동교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이 교회의 치리^b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적극 활동하는 교인을 말한다. 활동교인에게는 교회의 모든 특권과 권리가 부여되는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자녀들을 세례받게 하며, 공동의회에 참가하고, 투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체교회의 요구에 맞으며 또 미국장로교의 규례와 신앙고백에 부합한 활동교인의 또 다른 조건은 교회의 주의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당회에 의해 채택된다.

G-5.0303
비활동교인

개체교회의 비활동교인은 교회활동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다. 비활동교인도 활동교인의 모든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지만, 공동의회 때 발언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G-5.0304
관련교인

개체교회의 관련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 또는 다른 교단이나 크리스천 교파의 활동교인으로, 활동교인의 소속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해당 치리회로부터 교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고 그 교회 당회가 관련교인으로 받은 자이다. 관련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 교인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다.

G-5.0400

4. 비회원의 특권

G-5.0401
비회원의 특권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음의 특권을 부여받는다:

- a. 모든 사람이 이 교회의 예배와 생활에 참여하도록 환영받는다.
- b.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목사의 돌봄과 교회의 교육을 받는다.
- c. 타교파의 신앙고백을 한 교인도 성만찬 참여 및 자녀의 세례받을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G-5.0500

5. 교인 되기 위한 준비

G-5.0501
당회의 의무

당회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G-5.0502
어린이의 신앙고백

a. 준비란 교회가 교인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일부이므로, 교인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공적 신앙고백을 하도록 특별배려를 해야 한다. 교육은 신앙고백의 뜻, 교인의 책임, 또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직제에 관해 실시한다.

성인의 신앙고백

b. 신앙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교육을 시킨다. 당회는 이런 교육을 신앙고백 이전에 또는 이후에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G-5.0503
재확인, 이명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또는 교인증서를 가지고 이명해 와서 개체교회에 가입하려는 교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G-5.0600

6. 회원권의 재검토

G-5.0601
교인에 의해

교회에서 교인의 특권과 책임을 수락함은 개 교인으로 하여금 교인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다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말한다. 당회의 격려를 통해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또 얼마나 보람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G-5.0602
당회에 의해

당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인 명부를 검토하고, 교인의 책임을 등한시 한 사람들을 권면해 주어야 한다.

G-6.0000

제6장 교회와 제직원

G-6.0100

1. 목회의 직책

G-6.0101
그리스도의 목회

교회 내의 모든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이다. 교회의 교인과 제직원은 다 모든 사람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하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목회의 근본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신”(마 20:28) 분이 보이신 모범이 모든 직책의 표준이다.

G-6.0102
목회의 직책

교회에서 교인이 맡은 하나의 책임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수받은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런 직책이 존재한다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의 전체 목회에 참여하는 헌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안수 직분은 오로지 기능상으로만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

G-6.0103
직책명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신약에 언급된 교회 직책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책을 포함한다.

G-6.0104
다양한 형태

목회는 하나이지만, 목회의 특수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특별한 임무와 재능을 강조하고 목회 직책의 직제가 이런 다양성을 반영시킨다. 목회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으뜸가는 강조점을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에 두는 형태,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강조하는 형태, 주로 교육, 행정, 입법, 또는 사법적인 형태, 그리고 주로 예언적인 형태가 있다.

G-6.0105
목회에 부름 받음

남녀는 다같이 교회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선물에 의해 남녀가 특별한 목회 형태를 수행하도록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는 다른 부름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과 필요에 민감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름받은 목회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목회에 부름을 받았을 경우, 그들과 교회는 그들과 교회의 선교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G-6.0106
은사와 요구

a. 교회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곧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하나님은 각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타고났든 후천적이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것 외에도 특별한 목회에 임직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헌신적 제자직, 그리고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치리회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 또는 안수나 취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G-6.0107
교인에 의한 선출

장로교의 정치는 대의정치이며,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해당기관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교회나 교회의 치리회에서 영구직을 맡을 수 없다.

G-6.0108
양심의 자유-
개인적, 집단적

a. 장로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정치형태에 명시된 개혁신교회의 신앙과 정책의 근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어느 한계 안에서

b.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어떤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남녀간에 그들의 양심은 이 장로교단의 직책을 추구하거나 직책을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는 한, 교회의 제 표준에 해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혁신교회 신앙과 정책의 근본으로부터 떠났는지의 여부는 먼저 관계되는 개인의 결단에 의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의 책임은 그이나 그녀가 섬기는 교회의 치리회가 져야 한다(G-1.0301:G-1.0302).¹¹

목회 후보생

c. 미국장로교의 목회 후보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진술서까지 포함해서 교단의 헌법 문서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G-14.0405).

G-6.0200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6.0201
목사와 노회

주께서는 어떤 교인들을 말씀선포 및 성례전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소명과 훈련을 통하여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으므로 교회는 노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과 직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부른다. 이러한 목사는 개체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지정해 주는 노회의 회원이며, 사역 수행에 있어서 그들은 노회에 책임을 진다. 목사는 노회가 불러 지정하는 개체교회의 임무 외에도 교회의 보다 큰 목회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의결에 따라노회의 회원이 되며, 헌법 조항 G-11.0000에 의하여 그 회원권을 유지한다.

G-6.0202
목사, 부목사

a. 이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성경 안에서 그 또는 그녀의 다양한 임무를 나타내는 다양한 명칭을 얻게 된다. 그 또는 그녀가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관할한다면 감독이라 할 것이다. 그 또는 그녀가 영적 양식으로 그들을 먹인다면 목자라 할 것이다. 교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려면 사역자라 할 것이다. 역할이 중대하고 신중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며 자기 집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일을 잘 하는 자는 장로라 할 것이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탄원하는 자는 목사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리스도에

¹¹미국장로교 역사의 아주 초기, 아직 총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의 합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때 모든 회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든지, 또는 소극적으로 그 결정을 수긍하든지 할 것이며; 만일 그의 양심이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게 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다음 분열을 시도하지 말고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에서 물러가든지 할 것이다. 이것이 오로지 언제나 장로교의 정치나 교리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교단의 결정권을 이해하는 데서 배려된 것이다” <Hist. Dig.(P) p.1310>(합동계획, 1758, II 부).

의해 제정된 성찬을 분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찬의 청지기라 할 것이다. 남녀 모두 이 사역에 부름 받을 수 있다.

b.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영구 목회 직은 목사와 부목사(associate pastor)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개체교회나 개체교회들의 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그이나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전달하는 삶의 자질과 관계에 책임을 맡는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세례와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지교회와 더불어 또 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진다. 목사는 장로들과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 예배와 봉사를 격려하고; 그들이 교회 내의 직무와 세상에서의 선교적 소명을 다하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있는 자· 죽어 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면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고 ; 교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이 수행되도록 회중을 선도하는 등, 치리하는 책임에 참여하고, 인류의 전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과 봉사의 사역에 참여한다. 목사는 집사들과 **연민** 증거 봉사의 사역을 함께 한다. 이러한 목회적 임무 외에도 그이나 그녀는 당회 상급의 치리회 및 에큐메니칼 관계에서 교단의 사역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동사목사

c. 개체교회는 노회의 승락하에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을 행사할 동사목사(co-pastor)로 시무할 목사를 선출할 수 있다.

G-6.0203
교사, 기관목사,
기타 사역자

목사가 교육자, 기관목사, 목회상담자, 학원목사, 선교사, 선교동역자, 전도사, 교회행정가, 사회사업가, 자문위원 또는 교회의 사역에 합당한 특수한 임무에 종사할 때 그들은 복음사역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삶의 자질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베풀어야 하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인간 공동체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도록 교회를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목회 성취를 위해 힘써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책임을 완수하는 일 이외에도 그들은 교회, 노회, 에큐메니칼 관계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상급 치리회와 이들 상급 치리회의 이사회나 대행기관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G-6.0204
정보의 비밀유지

a. 목회적 돌봄을 베풀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진리와 비밀유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드러난 모든 정보 및 그러한 돌봄에 관계된 모든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비밀 정보를 밝히는 것에 동의하는 표현을 했을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를 밝힐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녀 또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의 긴박한 위험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믿고 있을 때 그 비밀 정보를 밝힐 수 있다.

신고 의무자

b.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또는 성희롱 또는 학대 정보에 관련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1) 그러한 정보를 G-6.0204a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또는 (2)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손상이나 손상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G-6.0300

3. 장로

G-6.0301
성서적 관례

구약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치리와 사역에 참여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G-6.0302
치리의 책임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한다.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함께 지도력, 치리권, 권징을 행사하며, 장로는 개체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을 짐과 아울러 에큐메니칼 관계를 포함한 전체 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도 진다.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충실히 섬겨야 한다(G-10.0102). 상급 치리회의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에,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G-6.0303
은사와 요구

장로는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것이어야 한다(G-6.0106).

G-6.0304
특별한 책임

a.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 장로들의 임무이다. 목사와 함께 장로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 내에서의 사명과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고 갱신시키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장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조직체에 대해 목사와 당회에 알려야 한다. 그들은 예배를 도와야 한다(W-1.4003, W-2.3011-3012, W-3.1003, W-3.3616, W-4.4003 참조).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사역이 없는 곳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와 적절한 허락을 받아서 특정 장로가 G-11.0103z에 준하여 성찬예식을 집행할 권리를 노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법에 의해 집행해야 할 이런 의무들이 직책에 부름받은 장로에게 특별히 주어졌으며, 장로는 공적인 책임으로 이 일들을 수행한다.

신고 의무자

b.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또는 성희롱 또는 학대 정보에 관련하여, 장로가 (1) 그러한 정보를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또는 (2)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교회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손상이나 손상위험을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G-6.0400

4. 집사

G-6.0401
목회와 집사의 은사

성경에 명시된 집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연민·증거·봉사**의 직책이다. 영성적 자질, 정직성의 평판, 모범적 생활, 형제자매의 사랑, **진실한 연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책에 피택되어야 한다.

G-6.0402
책 임

a. 집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먼저 궁핍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그런 임무 이외에도 시시로 당회가 위임한 다른 임무 즉, 중보기도를 통해 예배에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바치고, 주의 만찬을 돕는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W-3.3616 참조).

신고 의무

b.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또는 성희롱 또는 학대 정보에 관련하여, 집사가 (1) 그러한 정보를 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또는 (2)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교회봉사 과정에서 알게 된 손상이나 손상위험을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G-6.0403
조 직
집사회로

개체교회의 집사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a. 그들은 집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데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와 보조목사는 자문위원이 되어야 한다(G-6.0202c).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집사회의 의사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임명

b. 그들은 그들 직분의 책임과 일치하는 특별한 과제를 당회에 의거 개인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당회는 보통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연례 평가를 해야 하며, 그때 그들의 위임사항이 갱신, 변경 또는 종결될 수 있다.

G-6.0404
당회의 감독
하에 있음

전체 교회가 당회의 관할하에 있듯이 집사회도 당회의 권위와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집사회의 모든 기록은 적어도 1년에 한번, 또 어느 때 당회의 요구에 따라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집사회의 어떤 의결도 개정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고, 또는 집사회에 그 같은 의결을 재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6.0405
회 의

집사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회장의 소집으로 또는 당회의 소집 지시에 의하여 모여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 집사회는 스스로 회의 정족수를 정한다. 당회와 집사회가 공동으로 모이는 연석회의는 당회장의 사회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모여야 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다만 당회와 집사회는 그들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G-6.0406
관련된 봉사

집사들은 치리회에 의해서 위원회와 이사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봉사할 수 있다. 당회는 동정의 사역을 하는 집사들을 돕도록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를 선정하고 임명할 수 있다.

G-6.0407
집사회를 두지
않는 결정

지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집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이나 집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사직의 기능은 항상 장로들과 당회에 의해 언제나 유지되며 그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G-6.0500

5. 관계의 해소

장로나 집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사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개체 교회의 활동교인 되는 일을 그만둘 때, 장로나 집사는 그 당회원이나 집사회원 되는 일을 그만 둔다. 장로나 집사가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장애의 이유로 1년간 맡은 소임을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회에 의해 해소되며 그 이유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G-6.0600

6. 안수직 수행의 해제

a. 만일 D-10.0101과 D-10.0201에 따라 그에게 아무런 심문이 착수되지 않았고 아무런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기타 모든 점으로는 무흠한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치리회에 안수직 수행의 해제를 청원한다면, 그 치리회는 해제를 승낙하면서 해당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그 직분자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불이행을 내포하지 않는다.

b.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안수직 수행으로부터 해제는 그 직책의 모든 기능으로부터 정직을 요구한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칭호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제된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신분은 어느 교회의 교인과 꼭 같아야 한다.

c. 만일 본 항에 의해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안수직에 복직을 원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해제를 허락했던 치리회에 청원하거나, 만일 교회가 해소된을 경우 그 노회에 청원해야 한다.그 치리회가 이를 허락하면 그 사람은 다시 안수를 받지 않고 안수직에 복직되어야 한다.

G-6.0700

7. 교직권의 파기

G-6.0701
교직권 파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직분자가 교직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나 당회서기에 서면으로 이 교회의 교직권을 파기할 때, 그 파기는 서면 접수와 함께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교직권의 파기는 그 직분자를 회원권과 안수직에서 제명하고 안수받은 직책 수행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G-6.0702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할 때

교회 직분자가 자문과 통고 후에도 관할 치리회가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 그 치리회는 그 직분자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6.0703
파기의 효력

파기는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 의해서 그 다음 치리회의 모임 때에 보고해야 하고, 거기서 파기를 기록하고 직분자의 이름을 해당 등록명부에서 제거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바 행정적 성격을 가진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G-7.0000

제7장 개체교회

G-7.0100

1. 조직, 선교 및 정치

G-7.0101
전체 교회의 부분으로서
노회에 의해 조직됨
의해

교회는 세계 교회이면서 동시에 개체교회이다. 교회의 이 두 가지 특징은 개체교회에서 발견된다. 미국장로교 내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고, 이 헌법 규정하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G-7.0102
목회사역

개체교회는 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책임을 수행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예배, 말씀선포, 성례전*의 참여, 복음전도, 양육, 상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치유와 봉사의 사역을 수행한다. 사람들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근본적인 사역, 그리고 기도와 직원과 개정을 통한 지교회에 주어진 협조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의미 깊은 목회사역도 불가능하다. 개 교회는 노회 및 전체 교회의 필수적인 선교의 도구로서 봉사한다.

G-7.0103
정 치

개체교회의 교인은 그들이 선출한 교회 직분자의 지도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당회는 목사나 동사목사, 부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개체교회의 치리회다. 미국장로교의 법과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차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어 자녀들과 함께 갖는 남녀 교인의 교제를 전체로 한다. 교회의 조직체는 친교에 기반을 두고 신뢰와 사랑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G-7.0200

2. 개체교회의 조직

G-7.0201
계약 성립

개체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노회는 직접 또는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신앙고백이나 신앙 재확인이나 교적 이명이든 간에, 새 교회를 조직하는데 뜻을 같이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교인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같이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_____ 교회라는 명칭으로 지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의 신앙 원리와 선교와 규례에 따라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 그리고 상호간에 굳은 유대를 갖고서, 다같이 하나가 되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같이 사역하기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서명)

G-7.0202
노회관계

a. 그들은 노회의 조직교회로서 선언되며 노회의 협조하에 그들의 준비, 고시, 안수, 그리고 취임을 위한 규약을 만들어서 집사 선출의 절차를 밟는다.

b. 노회는 개체교회의 목회지도력을 확보하는 일, 개체교회의 봉사와 증언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타교회와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 헌법에 일치하는 개체교회의 규칙 제정을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삶 가운데서 지교회의 선교를 강화시킬 여러 형태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지교회와 긴밀히 계속 일해야 한다.

G-7.0300

3. 공동의회

G-7.0301
회 중

지교회는 개체교회의 모든 활동교인들로 구성된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다.

G-7.0302
연례회의

a. 지교회는 연례 공동의회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의를 소집한다. 연례 공동의회는 제직원을 선거하는 일, 당회의 새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받는 일, 집사회와 교회의 여타 기관의 보고서를 받는 일, 그리고 기타 적절한 사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연례 공동의회는 당회의 사전 검토 보고에 따라서 담임목사나 목사들의 사례가 적절한가를 검토해야 한다(G-10.0102n). 회의 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

특별 공동의회

b. 특별 공동의회는 연례 공동의회에 부합되는 목적의 부분이나 전체 또는 교인들이 적절히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할 수 있다(G-7.0304). 처리할 안건은 그 회의 소집에 특별히 명시된 사안들에 국한해야 한다.

의사 권한

c. 모든 공동 의회들은 가장 최근판 *Robert's Rules of Order* 또는 회중에 의해 채택된 유사한 의사 권한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지만, 본 헌법이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의 사례에서는 제외한다.

G-7.0303
공동의회
소집방법

a.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 (1)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언제나 당회에 의해
- (2)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언제나 노회에 의해
- (3) 개체교회의 활동교인 4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당회에 의해.

공 고

b. 회의 소집 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 회의는 두 번째 주일 공고 후 소집할 수 있다.

G-7.0304
안 건

a.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장로, 집사 및 재단이사 회원 선출에 관계된 사안;
- (2) 담임목사나 목사들을 청빙하는 사안;
- (3) 목회자와 관계된 사안, 즉 청빙 조건을 변경하는 일이나 목회 관계 해소의 요청이나 동의나 거절하는 사안;
- (4) 교회 부동산의 구입, 저당이나 매각에 관련되는 사안(G-8.0500);
- (5) 회중에 허락할 수 있는 권한에 관련된 사안, 즉 모든 행정 책임을 당회에 위임하기를 바랄 때, 또는 교회의 제한된 규모로 인하여 한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면제해 달라고 노회에 요청하는 사안

제 한

b. 공동의회 안건은 상기한 사안 (1)에서 (5)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시민법이 허락한다면 교직과 법인체의 안건을 같은 공동의회에 함께 다룰 수 있다.

G-7.0305
정족수

개체교회가 노회에 청원해서 더 적은 정족수의 규정에 노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체교회 공동의회 정족수는 교인수의 1/10 이하여서는 안 된다. 지교회는 자체의 투표에 의해 정족수를 높일 수도 있다. 세 명 이하가 모이는 회의는 공동의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G-7.0306
의 장

모든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교회에 동사목사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회의를 교대로 사회해야 한다.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모든 공동의회 사회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나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이나 그녀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 노회 내의 다른 목회자를 사회하도록 청한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를 그녀 또는 그가 파송된 교회의 당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선도자 및 감독자로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임명된 사람은 의장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감독해야 한다. 부가하여, 강단이 공식인 지교회의 당회장은 노회 목회위원회 위원인, 또는 위원을 지내온 장로나 노회서기나 노회총무나 노회부총무에게

사회하도록 청할 수 있다; 그런 장로는 그 장로가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사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경우, 담임목사나 당회장과 당회가 동의할 때에,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사회할 수 있다.

G-7.0307
서 기

당회서기가 공동의회 서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회중이 폐회 전에 공동의회록을 승인하지 않으면 당회는 정해진 차기 당회 회의에서 공동의회록을 읽고 정정하고 승인해야 하며 그것들을 영구기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차기 공동의회에 당회서기는 그 회의록을 마련해야 하고 당회의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회중은 그것을 읽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로 추가나 정정을 할 수 있다. 당회서기가 못하게 될 경우, 공동의회가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공동의회 회의록은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을 한 후에 당회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G-7.0308
동수일 경우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그이나 그녀는 공동의회에 투표할 수 없다. 동수가 되었을 때 사회목사는 그 문제를 두 번째 투표에 부쳐야 한다. 또다시 동수가 되면 그 제의는 부결된다.

G-7.0400

4. 법인체와 재단이사

G-7.0401
법인체와
재단이사

민사법이 허락한다면 언제나 각 개체교회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만이 법인체의 회원이 되고, 이사로서 선출될 자격을 얻는다. 법인체가 이사 선정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교회의 사무장로들은,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장로직에 있기 때문에 법인체의 이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체 방법에 따라 법인체에 의해 선출된 공천위원회를 두며, 재단이사의 임기를 장로의 임기와 같도록 정해야 한다. 법인체로 조직 안 된 개체교회는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 중에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런 이사회에 권한과 의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 및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G-10.0102, G-6.0402).

G-7.0402
권 한

이렇게 형성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교회를 위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접수, 보존, 저장, 관리 및 이전할 수 있고 ; 그런 재산을 접수하고 명의 변경을 하며 ; 그런 재산 명의를 보존하고 방어하며 ;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하는데 모든 일은 다 당회의 권위에 속하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하에 예속된다. 더 나아가 부동산의 구입, 매각, 저장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단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만 처리해야 한다(G-8.0500).

G-7.0403
법인체의 개별회의

민사법이 법인체 업무를 공동의회와 별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면, G-7.0300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예외는 다음과 같다 :

- a. 그런 회의는 그들 재량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소집되든지, 당회나 노회가 지시했을 때 소집되어야 한다.
- b. 민사법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이사회가 개체교회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 중에서 그런 모임의 사회자와 서기를 임명해야 한다.
- c. 각기 그런 회의의 회의록은 사회자와 서기가 서명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G-7.0404
대리인의 투표

위임 받은 사람의 대리인 투표는 개체 재단이사회 문제에 한해서, 특히 민사법이 대리인 투표를 허용하는 곳에서만 대리인 투표를 하도록 허락된다.

G-8.0000

제8장 교회와 그 재산

G-8.0100

1. 재산에 관한 결정

G-8.0101
재산에 관한
결정

G-1.0400^a의 규정과 교회 내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고, 수정되는 방식을 명시한 본 헌법의 다른 규정들이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G-8.0200

2. 신탁된 모든 재산

G-8.0201
재산을 신탁으로 보관함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를 위해서, 또는 그들에 의해서 소유된 재산은 그 법적 명의를 법인체, 이사회, 또는 비법인체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더욱 포괄적인 치리회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든, 또는 수입이 있게 보유되든 간에 모든 재산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서 신탁 보관된다.

G-8.0202
법인체와
재단이사

민사법이 허용되면 각 노회, 대회, 총회는 법인체를 형성 유지해야 한다. 치리회가 이사회 조직에 관한 별도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한, 치리회의 중앙협의회는 법인체의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G-8.0300

3.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 사용

G-8.0301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 사
용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거나 신탁된 재산이 본헌법에 따라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로서 헌법대로 그 재산을 그 교회에 의해 사용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회가 규정한 대로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이양, 매각되어야 한다.

G-8.0400

4. 해체 또는 소멸된 교회의 재산

G-8.0401
해체 혹은
소멸된
교회재산

개체교회가 공식으로 노회에 의해서 해체되거나 또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없거나, 교회 사역의 포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소멸케 되면, 그런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대로 그와 같은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소유, 사용, 적용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G-8.0500

5. 교회재산의 매매, 저당, 또는 임대

G-8.0501
교회재산의
매매, 저당

개체교회는 개체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여하한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지 못한다.

G-8.0502
교회재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개체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며, 교회의 어떤 다른 부동산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다.

G-8.0600

G-8.0601
분열시의 교회재산

6. 분열시의 교회재산

개체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노회의 역할인 헌법상의 조처에 의해서만 단절될 수 있다(G-11.0103i). 개체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또 노회가 화해시키거나 미국장로교 안에 분리된 교회로 분할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한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교회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G-8.0700

G-8.0701
예외

7. 예외

본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모든 개체교회에 적용된다. 단, 예외는 이렇다. 즉, 미국남장로교와 미국연합장로교가 재연합하여 미국장로교를 형성하기 이전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의 유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던 어느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의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런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투표하고 그런 투표 내용을 소속 노회에 통보하면, 본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 받게 된다. 그렇게 면제받도록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의 설립 바로 전에 종속된 헌법의 규정하에서 그 재산의 명의를 소유하며 법인체의 특권과 재산 소유권을 행사한다. 본항은 개정될 수 없다.

G-9.0000

제9장 치리회

G-9.0100

1. 총칙

G-9.0101
정의

미국장로교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장로들(presbyters)로 구성된 대표제 치리회에 의해 치리받아야 한다. 이들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불리운다:

당회
노회
대회
총회

G-9.0102
국가의 정부와 구별

a. 교회의 치리회는 국가의 정부와는 구별되고, 또 민사 처벌^a을 부과할 민사 사법권이나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 치리회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리와 봉사, 질서와 권징에 관련하여 그의 뜻을 선포하고 복종하기 위한 교회적 관할권만을 갖는다.

교회 관할권

b. 이 치리회들은 신앙 상징의 기틀을 잡아 주며, 잘못된 교리와 부도덕한 삶에 거슬러 진리를 증언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질문에 해답해 주고, 양심 문제를 상담해 주며, *규례서*의 조항에 따라서 그들 앞에 제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결정해 준다. 이 치리회들은 예배 모범의 원리에 따라서 성찬예식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W-2.4012, W-3.6204). 이 치리회들은 교회의 예배, 선교, 정치와 권징을 위한 계획과 규정을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와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치리회들은 그들 관할권하에 있는 치리회의 지도력과 생활 지도와 정치의 책임이 있다.

G-9.0103
치리회의 일치

교회의 모든 치리회는 교회의 본질상 다 하나가 되어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같이 나눈다. 치리회는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으나 어느 한 치리회의 행동은 그 해당 치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체 교회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노회에게 유보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은 권한과 각 차상급 치리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 각 치리회의 조처를 포함하여,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G-9.0104
참여와 대표성

a. 교회의 치리회는 G-4.0403 에 규정된 포괄성과 참여에 관한 교회의 결단을 시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치리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이 되도록 일해야 하며, G-4.0403 에 열거된 범주에 근거해 차별 경향을 시정할 목적으로 소수계 보호법 고용절차를 추구해야 한다.

시행

b. 이런 결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책이나 과업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이 목회의 은사와 요구 조건 (G-6.0106), 그리고 그들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G-6.0107).

G-9.0105
대표위원회

a. 당회위 상급 치리회는 대표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며, 그 위원은 남녀 동수로 선정해야 한다. 위원의 다수는 치리회 내에 있는 민중그룹(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계 장로교인들)에서 선출해야 하고, 전체 회원은 각기 다음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 (1) 다수의 남성위원
- (2) 다수의 여성위원
- (3) 민중그룹 남성위원
- (4) 민중그룹 여성위원
- (5) 남녀 청년위원
- (6) 신체장애자

회원에 관한 조언

b. 그 주요 기능은 치리회로 하여금 그들 회원권과 그들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다른 부서의 회원권에 관련하여 교회의 의사 결정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와 포괄성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조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옹호와 자원

c. 대표위원회는 민중그룹 회원, 여성, 각계 연령층, 신체장애자의 대표성을 옹호하는 일과, 또 이 분야에 있어서 해당 치리회에 대해 지속적인 자원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그 자신의 치리회가 이런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어떤 시정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제안과 함께 그 치리회와 차상급 치리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그 자신의 치리회의 공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민중그룹 회원과 협의

d. 민중그룹 회원을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다른 부서에 공천 또는 임명하기 전에, 대표위원회는 그 민중그룹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해당 민중그룹 회원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한다. 민중그룹 회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각 치리회의 대표위원회는 가능성있는 민중 회원을 찾아 대표를 획득하기 위해 민중그룹 회원들과 당회, 공천 위원회와 전국 민중그룹 회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여성을 상기 기관에 공천 혹은 지명하기 전에, 대표위원회는 여성 그룹이 지명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해당 여성층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인사 고용

e. 대표위원회는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에 따르고(G-4.0403), 평등 고용 기회를 위한 교단적 계획에 일치하여(G-13.0201b) 인사 고용을 하도록 치리회를 자문해야 한다.

f. 대표위원회는 어느 치리회에서나, 어떤 다른 위원회와 통합되거나 어떤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

G-9.0106
예외

a. 위원의 다수가 민중그룹에서 선출되도록 요구한 G-9.0105a 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참여나 대표성에 부합한 인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만 치리회나 선출기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실은 치리회나 선출기관이나 임명기관의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당회위 각 치리회가 대표위원회를 선출한다는 요구 사항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b. G-9.0106a 하의 예외는 회의에서 행한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1년까지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의 허락은 치리회의 서기와 대표위원회를 통해 차상급 치리회가 서기가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 그 대표위원회는 예외의 기간 동안 하급 치리회와 그 대표위원회를 감독해야 한다.

G-9.0200

2. 제직원

G-9.0201
제직원

각 치리회의 제직원은 치리 회장과 서기여야 한다. 치리회는 필요시 추가로 제직원을 둘 수도 있다.

G-9.0202
치리회장과 회의

a. 치리회장은 질서 유지 및 치리회의 효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권위를 갖는다. 치리회장은 치리회 자체의 조처에 따라 치리회를 소집하고 폐회해야 한다. 치리회장은 긴급시 서면 통보에 의해 그 치리회가 전에 지정했던 것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치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교회와 치리회의 회장

b. 개체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 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동사목사가 있는 교회는 동사목사가 출석할 경우 교대로 당회를 사회한다. 노회장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회가 정한 임기대로 선출된다. 대회장은 대회에서 정한 임기대로 선출하되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내에 선출되어야 한다. 총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선거시에 노회장, 대회장 및 총회장은 그가 사회하도록 선출된 치리회의 계속적인 회원이거나 총대이어야 한다.

G-9.0203
서기와 회의

a. 서기는 치리회의 회무 진행을 기록하고, 회원과 출석 명부를 보관하고, 그 기록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며, 교회의 다른 치리회가 요구할 때 거기에서 발췌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서기가 입증한 발췌 기록은 교회의 어느 치리회에서나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지교회와 치리회들의 서기 및 정서기

b. 당회서기는 당회가 정한 임기 동안 일하도록 당회에서 선출된 장로이어야 한다. 노회, 대회 및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stated clerk)라고 부르며, 정해진 임기 동안 시무하도록 그 치리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그 치리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

G-9.0300

3. 회의

G-9.0301
개회

a. 당회보다 높은 상급 치리회 회장은 임기 동안 모든 정기회의들을 개회해야 하고, 또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회해야 한다. 당회의 상급 치리회는 규칙에 따라 본 회장 부재시 누가 사회를 볼 것 인지를 정할 수 있다.

기도로 개회와 폐회함

b. 모든 치리회의 회의는 기도 ^b 로써 개회하고 폐회해야 한다. 1 년에 여러 번 모이는 노회와 대회는 1 년에 한 번은 설교와 성찬예식을 포함한 정기회의로 지정해야 한다. 1 년에 한 번이나 2 년에 한 번 모이는 대회의 정기회의와 말씀선포와 성찬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G-9.0302
의사 진행

치리회, 전권위원회,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본 헌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국통상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의 최신판에 준해 진행되어야 한다.

G-9.0303
반대

반대란 치리회의 행동과 결정에 불찬성을 표현하는 선언을 뜻한다. 반대는 반대하는 행동과 결정이 취해지는 치리회의 특정 회기 때에 행해져야 한다. 반대하는 회원의 이름이나 이름들은 꼭 기록해 두어야 한다.

G-9.0304
항의

항의란 치리회의 한 회원이나 여러 회원이 변칙이나 비행이라고 믿는 사실에 불찬성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서면 진술을 뜻한다.

- 통보
 - a. 항의서면 통지서는 그것이 발생한 치리회의 특정 회기 때 제출해야 한다. 그 항의는 당회 서기나 상회 서기에게 폐회 전에 접수시켜야 한다.
- 회의록
 - b. 만일 항의가 품위 있고 정중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치리회는 그 사람의 양심의 권리를 인정하여 회의록에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 기록한 것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응답
 - c. 항의를 받은 치리회는 그 회의록에 기록해 둘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 항의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 G-9.0305
반대자나 항의자
 - 투표할 수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그 결정에 반대 투표한 사람만이 반대나 항의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G-9.0306
사법 결정
 -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그 결정을 보고 받은 치리회의 회원은 누구나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 G-9.0307
효력
 - 반대나 항의는 사법 처리 과정을 주도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G-9.0308
비용
 - 장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치리회의 회의 참석차 사용한 비용은 대체로 그들을 선출하거나 그들이 참석한 치리회가 지불하되 그 치리회의 구역 내에서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지불한다. 총회에 참석하도록 노회가 선출한 총대들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상회비는 각 치리회에 의해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G-9.0400

4. 행정의 원리

- G-9.0401
행정의 정의
 - 행정이란 치리회가 그것에 따라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도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신 연락하며,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 G-9.0402
행정 구조
 - a. 선교는 구조와 행정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모든 구조는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교회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선교 행정은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지교회에 가장 가까운 치리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c. 모든 구조는 변화의 가능성과 에큐메니칼 협력의 새로운 형태에 개방되어야 한다.
- G-9.0403
치리회에 대한 책임
 - 치리회는 그 임무 중 어떤 특별한 일들을 협의회, 이사회, 대행기관, 전권위원회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치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거 위에서 한다.
- G-9.0404
장로교 정책의 성격
 - 장로교 정책의 상호 의존적 성격에 의미를 주기 위하여:
 - a. 각 치리회는 차상급 치리회의 계획과 행정에 대표를 통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b. 각 치리회는 선교 우선 순위, 프로그램, 예산 책정, 행정 직원의 직책 제정,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그리고 공정한 고용의 실행에 관하여 해당 대표를 통해 상하 치리회와 협의해야 한다.
 - c. 각 치리회는 G-9.0104 에 기재되어 있는 포괄성과 소수계 보호법의 원칙에 맞도록 그 직원을 모집, 훈련, 채용해야 한다.

d. 당회 상급의 각 치리회는 행정 직원을 포함한 운영비를 위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 구역 내 지교회의 상회비로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자체의 상회비의 증액과 해당 대회와 총회의 상회비의 증액과 적시 송달을 책임져야 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 지교회의 당회에 상회비의 할당을 지시할 수 있다.

G-9.0405
운영 지침서

안수, 인정, 파송, 목회사역의 감독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총회는, 적절한 총회기관들을 통해 대회와 노회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지역적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될 수 있는 제안된 모델 절차를 포함한 자문서 (Advisory Handbook). 이 자문서는 적절한 총회의 기관들에 의해 개발되고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하며, 규례서와 합치되고 사용의 실천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총회사무국 및 중간급의 치리회 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G-9.0406
기록의 소유권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회의록과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록은 전기 치리회 또는 그들의 법적 후계자의 영속적인 소유물이다. 교회나 노회 또는 대회가 해소될 때, 그들의 기록은 그들 기관이 해소되기 직전의 관할 상급 치리회에 의해서 보존된다. 현존하거나 해소된 당회의 회의록과 공식 기록, 현존하거나 해소된 노회와 대회의 회의록과 모든 공식 기록은, 더 이상 빈번히 참고해 볼 필요가 없는 경우 역사부, 또는 미국장로교 신학교의 온도 및 습도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보존한다. 치리회의 기록들의 항구 보존을 위해 그 치리회에 추천하는 일은 각 치리회의 서기의 책임이다. 모든 치리회들은 공식 기록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G-9.0407
일반행정 검토

a. 개체교회와 위원회, 기관, 그 교회의 단체는 모든 절차와 결의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당회는 이를 검토하고 이것들을 요약하여 당회록에 그 개요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연례 보고

b. 노회와 대회의 회장, 서기, 중앙협의회, 전권위원회,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그리고 단체는 모든 절차와 결의를 매년 해당 치리회에 보고하고, 그 치리회는 그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기록의 검토

c. 총회의 회장, 서기, 중앙위원회, 전권위원회,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그리고 단체는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모든 절차와 결의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치리회는 보고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d. 당회위 상급 모든 치리회는 차하급 치리회의 절차의 기록들을 검토해야 한다.

(1)노회는 당회 기록을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당회가 검토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정 시일에 제출하도록 노회가 명령해야 한다.

(2)대회는 노회 기록을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노회가 검토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정 시일에 제출하도록 대회가 명령해야 한다.

(3)총회는 대회 기록을 적어도 2년에 한번씩 검토해야 한다. 만일 대회가 검토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정 시일에 제출하도록 총회가 명령해야 한다.

G-9.0408
특별 행정 검토

만일 상급 치리회가 어느 때든지 하급 치리회에 의한 변칙이나 비행 사항을 발견하면, 그 치리회에게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G-12.0102n, G-12.0304, G-13.0103k 와 n).

G-9.0409
검토 방법

a. 하급 치리회의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급 치리회는 그 절차의 기록에서나 또는 관심을 끄는 다른 정보에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1) 그 절차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 (2) 그 절차가 규칙에 맞고 헌법^e에 따랐는지;
- (3) 그 절차가 신중하고 공평을 기했는지;
- (4) 그 절차가 전체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충실했는지;
- (5) 상급 치리회의 합법적 지시가 준수되었는지.

투표 못할 자

b. 하급 치리회의 절차가 상급 치리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을 때, 하급 치리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상급 치리회의 회원은 토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

G-9.0410
상급 치리회의 결정

상급 치리회가 그 자체의 절차와 심의 중인 절차에 있어서 시인, 부인, 또는 교정을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일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에게 변칙을 재고하여 정정하거나 비행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9.0411
사법절차의 검토와 교정

행정적 검토에 부가하여 하급 치리회와 총회 중앙협의회나 대행 기관의 검토와 교정은 D-6.0000 의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치리회에 의한 사법절차를 거쳐 얻어낼 수 있다.

G-9.0500

5.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9.0501
위원회

a. 위원회는 적절한 결정을 연구하고 추천하거나 치리회에 의해 이미 취해진 방향이나 결의를 수행하도록 임명된다. 그것은 그 위원회를 조직한 치리회에 완전한 보고를 하고, 그 위원회의 건의 사항은 치리회에 결정을 요구한다.

회원권

b. 당회위 상급 치리회의 위원회는 적어도 절반수의 평신도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G-9.0502
전권위원회

전권위원회는 치리회에 의해서 위촉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짓도록 권한을 위임 받는다. 임명치리회는 전권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회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이 기록이 치리회의 회의록에 기록되며 치리회의 자체 결정으로 간주되도록 해당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9.0503
행정 및 사법 전권위원회

a.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의해서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행정 전권위원회나 사법 전권위원회가 될 수 있으나, 당회의 경우에는 행정 전권위원회들만 임명된다. 행정적 전권위원회에게 맡겨진 일반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하고 영구한 목회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임시키는 일;

(2) 교회를 조직한다. 이러한 전권위원회가 노회에 의해 새로운 당회(G-11.0103h)를 구성하도록 임명될 경우 노회는 그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당회의 편익과 목회를 위하여 당회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인가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당회의 위원회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과 책임들(G-10.0102)을 위임하도록 인가할 수 있다;

(a) 개혁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민자들 개척교회들에 대해, 만일 노회가 (1)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그러한 교회기반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그리고 (2) 이민자 개척교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장로와 당회와 동등한 자격일 경우에는 노회나 행정전권위원회가 그들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장로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노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노회에서 개발한 서면기준에 따라 지시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G-6.0100 과 G-6.0300 에 따른 안수직 성격의 기술에 근거해야 한다.

(b) 이민자들 개척교회에 대해, 노회가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그러한 교회기반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연례적으로 열리는 노회 회의에서 교회의 임명된 지도자(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허락할 수 있다.

(3) 교회를 통합한다;

(4) 무질서^d한 일이 생겼을 때 개척교회, 치리회, 또는 기타 교회 기관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일들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일. 단 예외는 임명치리회에 의해 그런 권한이 명백히 거기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전권위원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 노회 감독하에 목사후보생을 받는 일(G-14.0301);

(6) 당회가 임명한 행정 전권위원회의 경우,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취임시키며, 개 교회 내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거기에 있는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일.

(7) ‘다른 사람을 성희롱’ 했다는 범법혐의를 가진 사람의 사망이나, 그 사람에 의한 관할권 포기의 결과로서 사법절차의 관할권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목회자 조회를 하려면. (D-10.0401b) 그 조회는:

(a) 교회 사법절차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b) 증인들을 접수하고 증거를 숙고할 권한을 갖도록 인가 받아야 한다;

(c) 범법혐의에 관련된 사실 판명에 도달해야 하며, 임명받은 치리회에 완전한 보고를 하되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안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사법 전권위원회

b. 사법 전권위원회의 기능은 권징조례에 따라 치리회를 위해 절차의 사례를 고려하고 결정짓는 일이다 (D-5.0000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관한 조항 참조).

추가 의무

c.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의 보고로 다루어져야 한다.

G-9.0504
회원권

a. 당회의 행정 전권위원회는 적어도 두 사람의 장로와 당회장 또는 당회가 있는 개체교회에서 영구 목회 관계에 위임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 된다.

동수의 장로와 목사

b. 노회, 대회, 총회의 행정과 사법 전권위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수가 가능한 한 거의 동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권위원회가 홀수로 구성되었을 때 그 추가위원은 장로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든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원의 최소한도의 수와 위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총회

(1) 총회위원은 적어도 각 대회에서 한 사람씩 대표해야 하며, 15명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대회

(2) 대회위원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 소속 각 노회로부터 1명 이상의 대표가 나와서는 안되고 11명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노회

(3) 노회위원은 노회소속 개체교회에서 한 사람 이상의 장로가 나와서는 안되고, 7명 미만이어서도 안된다. G-9.0503a(1)에 설정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회는 어느 한 교회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을 넘지 않는 5명의 위원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정족수

c. 행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임명 치리회가 보다 높은 숫자로 정족수를 확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D-5.0204).

G-9.0505
결정

a.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전권 위원회의 임무 완성과 공고하는 때로부터 임명 치리회의 결의로 간주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서면으로 치리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서기는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치리회는 치리회의 조치를 수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행정 전권위원회의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청문과 적절한 절차

b. (1) 행정 전권위원회가 어떤 교회, 치리회 또는 교회 조직체 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도록 임명 받을 때, 전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통지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G-9.0503a(4), a(6), G-9.0505b-d 참조). 공평한 통지란 위원회가 확인한 문제에 대하여 간결하고 평이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관한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어야 함을 말한다. 청문은 문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행정 전권위원회가 목회관계 해소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권위원회는 발언을 하겠다는 목회자 및 위원의 입장을 청문하여야 하는 상임 위원회의 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회의에서 위원들의 피력하는 관심사를 듣고 회의주에 답변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G-14.0601, G-14.0602, G-14.0603, G-11.0103o 참조).

추가 절차 과정

c. 행정 전권위원회는 그 절대재량으로 특수한 절차를 취택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사람들의 동의 또는 위원회 자체의 동의에 따라 사법적 과정을 밟게 되는 것처럼 추가 수속 절차를 밟게 할 수도 있다.

d. 개인에 대한 진술이나 주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인 경우, 권징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G-9.0600

6. 중재 조항

G-9.0601
중재나 조정

치리회는 사법 절차 이전이나 진행 중에 사용될 수 있는 교정 사건을 위한 중재나 조정의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안에서는 권징조례의 조항들이 준수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G-9.0602
참여

중재나 조정 절차에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주: G-9.0600-.0601 의 원문은 제 203 차 총회(1991 년)의 결의로 삭제되었고, G-9.0602 의 원문은 제 201 차 총회(1989 년)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G-9.0700

7. 행정 직원

G-9.0701
총무

a. 각 노회마다 대회 중앙협의회나 중앙협의회가 없을 때에는 대회가 지정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한 사람의 총무를 선출하며, 만일에 프로그램과 자원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타 노회들과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각 대회는 총회 선교협의회와 협의하여 총무를 선출할 수 있다. 청빙 절차, 사역의 연례 검토 방법, 고용인의 재선출이나 해직의 문제를 포함한 부가적인 책임은 상기 G-9.0405 에 요구된 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총무의 선출

b. 각 노회마다 대회 중앙협의회나 중앙협의회가 없을 때에는 대회가 지정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한 사람의 총무를 선출하며, 만일에 프로그램과 자원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노회와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각 대회는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총무를 선출할 수 있다.

G-9.0702
기타 행정 직원

노회의 기타 행정직은 대회 중앙협의회나 중앙협의회가 없을 때에는 대회가 지정한 다른 부서와 협의 하에 노회가 허가할 수 있다. 대회의 기타 행정직은 총회 선교협의회와 협의 하에 대회가 허가할 수 있다.

G-9.0703
총회 대행기구 직원

총회 대행기구는 한 사람의 총무나 총무들을 선출해야 하지만 총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G-9.0704
참여와 대표

당회위 상급 치리회의 모든 총무와 행정직은 G-9.0104 에 있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과 G-9.0405 에서 명시한 지침서에 따라 이 직위를 위한 대표조사위원회가 분명히 조직된다는 요구 조건에 따라 채용되어야 한다.

G-9.0705
대회와 노회
직원의 해직

노회, 대회 및 관련된 치리회의 총무나 다른 행정 직원의 관계는 행정 직원의 요청이나 중앙협의회나 특별위원회나 그를 선출한 치리회의 전권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그를 선출한 치리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중앙협의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가 해직 권고안을 준비했을 때 해직을 제안하는 사유를 명시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권고안이 중앙협의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보고되기 이전에 사임할 기회를 주거나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회는 해당

직원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두해서(D-7.0301, D-11.0301) 그 위원회나 전권위원회가 발견한 해직 사유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 관계 해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문회는 권징조례 14 장(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정에 따라 절차 사안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청문회에 관한 기록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치리회의 최종 결정 후에 따르게 될 사법적 고소의 경우에 권징조례 D-6.0304 아래서 철하게 될 기록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G-9.0706
임시직 행정 직원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총무나 행정직원직이 공식일 때, 또는 재직 중인 자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대행 기관은 임시총무나 행정 직원의 직무를 확보할 수 있다. 임시 행정직은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대행 기관의 대행 또는 임시총무나 행정 직원을 포함한다. 임시직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임시직을 위한 원천적인 선출의 절차가 G-9.0704 조항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 노회나 대회 또는 총회의 대행기관의 3분의 2의 득표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차기 영구 총무나 행정직원으로서 동일한 직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될 수 없다.

G-9.0707
명예 관계

노회나 대회의 어느 총무나 부총무가 은퇴시, 그리고 그 치리회가 애정과 감사의 정의로 명예 관계에서 교체를 계속하기를 원하면, 그 치리회의 정규 회의에서 사례비가 있거나 없거나, 권한이나 의무 없이, 그이나 그녀를 명예총무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총무 관계의 공식 해소 이후나 그 후 언제든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G-9.0800

8. 공천위원회

G-9.0801
공천위원회

a. 각 노회와 대회는 노회나 노회들의 회원 교회 대표 중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1/3, 여성평신도 1/3, 남성평신도 1/3 의 위원으로 공천위원을 넓게 선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는 3 개조로 구성해야 하며, 각 조는 3 년의 임기로 봉사하되 규칙적인 순번제를 만들기 위한 첫 1 년조와 2 년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책임

b. 공천위원회는 노회나 대회의 선출을 요구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공천위원회는 제외),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기관들의 모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남성평신도와 여성평신도(각각 1/3)의 동수로 공천해야 할 일이다. 단, 노회 기능이 거기에 위임될 목회위원회에 여장로와 남장로를 공천해야 할 경우는 예외다(G-11.0501, G-12.0102d, G-13.0111, G-13.0202).

관련 규정

c. 공천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소속 치리회의 대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만일 그 치리회의 대표위원회가 G-9.0106 의 조항하에서 예외를 부여받았다면, 차상급 치리회의 대표위원회가 그 협의에 참여토록 초청받아야 한다.

d. 특정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을 공천할 때, 공천위원회는 G-6.0106, G-9.0104, G-11.0103d, G-11.0302, G-12.0102d, G-13.0108, G-13.0202 의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G-9.0900

9. 구조의 요약

G-9.0901
중앙협의회, 전권 위원회, 위원회

이 헌법 내에서 당회 상급의 치리회는 특별 임무 수행을 협의회, 전권위원회, 위원회에 위임할 것이다. 그러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선교사역의 조직과 직책의 확립 그리고 교단 프로그램의 행정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위탁에 가능한 한 공식적인 표제를 붙이지 않는 것은, 치리회가 자율적으로 자체 기구를 조직하고 기관 명칭을 붙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로서, 대표 위원회들, 총회 선교협의회, 노회의 목회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표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러한 치리 기구들이 합동 선교에서 공동 사역하는 절차를 규칙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구에게 위탁할 때 기능이나 공식 표제가 지정되는 것은 그 치리회를 그러한 조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단의 상호 사역을 신속화도록 기술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G-9.0902
구조의 목록

노회

본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노회에

선교와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중앙협의회 (G-11.0103v)

대표위원회 (G-9.0105, G-11.0302)

목회위원회 (G-11.0500, G-14.0502)

목회후보위원회 (G-14.0300)

공천위원회 (G-9.0800, G-11.0103w)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대회

b. 대회에

선교와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중앙협의회(G-12.0102r). (이 요구 조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대회 그 자체가 조정 기능을 보유하도록 결정했을 때에 한한다.)

대표위원회 (G-9.0105, G-12.0301)

공천위원회 (G-9.0800, G-12.0102s)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총회

c. 총회 내

총회선교협의회(G-13.0200)

대표위원회(G-9.0105, G-13.0108)

공천위원회(G-13.0111)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은급 책임 이사회 (G-14.0534, G-16.0201t, G-17.0201j)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G-10.0000

제10장 당회

G-10.0100

1. 총칙

G-10.0101
당회원

개체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부목사 및 시무 중인^a 장로들로 구성된다. 목사, 동사목사 및 부목사를 포함한 당회원 전체가 투표권이 있다.

G-10.0102
책 임

당회는 개체교회^b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당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a.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 배우고 실천하도록 전도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인들이 G-3.0300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조리 있게 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훈련받아 일하도록 한다;
- b. 신앙고백^c,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재확인, 또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만족할 만한 이명증서를 통해 교인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교인 자격은 인종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 또는 신앙고백에 관계되지 않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나 거절될 수 없다;
- c. 교인으로 하여금 G-3.0000에 따라서 세상에서 전체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 d. 예배모범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설교, 성례전의 나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제공하며 G-11.0103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훈련받고 권위를 위임받은 장로로 하여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없는 곳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성찬예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회에 허락을 요청하는 일;
- e. 개인적, 그리고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친교와 상호 지원을 통한 나눔과 세상에서의 복음 증거와 복음을 통하여 교인들의 성장과 사역의 훈련을 마련하는 일;
- f. 교회학교 및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 육성하는 일;
- g.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처해 있어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일;
- h. 돈과 시간과 재능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특권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며,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도록 권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또 모든 헌금이 헌금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인다는 확신을 주는 일;
- i. 교회의 연차 예산을 세우고, 교회의 선교비에 할당되는 금액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도록 지도하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당회의 결정을 교인들이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 j.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계속 교인들로 발견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변화, 갱신, 그리고 개혁을 계획하도록 지도하는 일;
- k. 당회원의 교육과 상호 성장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일;

- l.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와 집사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고시하며, 안수하고, 임직하여 공동의 목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환영하며, 그들로 하여금 맡은 바 책임완수에 충성하도록 권고하는 일;
- m. 협조, 보고, 평가와 통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집사회와 재단이사회, 그리고 또 다른 조직과 소위원회에 일을 맡기며 감독하는 일;
- n. 안수받지 않은 교회직원 채용을 포함하여 평등고용 기회, 공정고용 실행과 인사 정책, 매년 모든 고용인들을 포함한 교회 전직원에 대한 보수의 타당성 검토 등 교회 프로그램의 관리를 마련하는 일;
- o. 교회 건물과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일을 포함해서 교회 소유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일과 당회원, 직원, 재단이사회와 집사들을 포함하여 시설, 프로그램과 제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 보증보험을 획득하는 일;
- p. 교회의 상회와의 규칙적이고도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1) 노회^d에 총대를 선정해서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당회가 적어도 1년, 되도록이면 2년 혹은 3년 동안 노회에 보낼 총대들을 선출하도록 노회는 격려한다;
 - (2) 대회나 총회를 위해 선출될 수 있는 장로를 노회에 공천하는 일;
 - (3) 상기한 두 가지 책임을 실천함에 있어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대표성을 확인하는 일;
 - (4) 미국장로 헌법과 일치하는 상급 치리회의 지시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일;
 - (5)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하는 일;
 - (6) 노회에 또는 노회를 통해서 대회나 총회에 전체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제안하는 일;
 - (7) 노회의 요구에 따라 통계 및 기타 정보를 노회서기에게 매년 보내는 일.
- q. 그 지역에서 교회생활과 선교에 필요한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 r. 사법적인 문제를 권징조례^e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
- s. 헌법조항 G-10.0302에 따라서 교인들의 정확한 명부를 보존하고 이명증서를 타교회로 보내는 일과 부모를 위해 발급하는 이명증서를 그들 자녀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그들이 세례받았는지를 밝히는 일과 장로나 집사를 위해 발급하는 경우 안수 기록을 포함하는 일.
 - a. 교회의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어야 하고, 당회는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담임목사가 없이는 회의를 가질 수 없다. 교회에 동사목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했다면 교대로 당회를 사회할 수 있다. 담임목사 이외에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사회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목사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같은 노회 내의 타교회 목사가 당회를 사회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를 그녀 또는 그가 파송된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선도자 및 감독자로서 평신도 파송 목회자로 임명된 사람은 의장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감독해야 한

G-10.0103
당회장

다. 그 위에 강단이 공식인 지교회의 당회장은 노회 목회위원회 위원인 장로나 노회서기나 노회총무나 노회부총무에게 사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장로는 그 장로가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공동회의를 사회할 수 없다. 담임목사가 병중이거나 결석하게 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편법을 채택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당회는 회를 열고 당회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회하게 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b.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당회장은 노회가 그 목적을 위해 임명한 목사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당회가 사회해 주도록 초청한 같은 노회의 목사이어야 한다. 그렇게 참석해 줄 목사가 없을 경우, 그 당회는 당회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회하게 할 수 있다.

사법 사건

c. 모든 사법적 사건의 경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목사이어야 한다.

G-10.0200

2. 회의

G-10.0201 회의

당회는 적어도 정기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 당회장^f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임시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 당회는 노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이외의 경우, 임시당회에는 합리적인 소집 이유를 통고해야 한다. 당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느낀다면 교인들이 당회에 참여하여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언제나 상황이 당회 단독회의를 하는 일이 지혜롭다고 판단될 때는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G-10.0202 정족수

당회의 정족수는 담임목사나 다른 사회자와 장로의 1/3이어야 하되, 두 사람 이하에서는 안 된다. 단, 교인을 받아들이거나 떠나게 할 경우에는 당회장과 당회원 2명으로 정족수를 삼을 수 있다. 당회는 스스로 정족수를 더 많은 수로 정할 수도 있다.

G-10.0300

3. 당회록과 기록

G-10.0301 당회록

각 당회는 당회 진행 과정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전반적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G-11.0103x, G-9.0407-.0411). 당회록은 당회 구성이 민중그룹 회원들, 남녀, 연령별, 신체장애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교인들의 구성 요소에 상응하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당회록과 당회의 다른 공식 기록은 공동의회 회의록, 집사회, 개체교회 재단이사회를 포함하는데 이 기록은 당회의 소유이며, 당회의 서기는 이 모든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것들은 요청시 노회에 제시해야 하며 교단의 역사 자료 보관부에 보존해 둘 수도 있다.

G-10.0302 교인명부와 기록부

각 당회는 G-5.0200에 규정된 대로 교인명부를 보관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a. 교인명부, 교인의 이름은 언제나 당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 정당하고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만 당회의 명령에 의해 교인명부에 기록하거나 이적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세례교인

(1)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개체교회에서 세례받은 그들의

	이름과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은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활동교인	(2)(a) 활동교인 명부: 활동교인 명부에는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그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 명부에 있는 교인수는 매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교인	(b) 그 지역에서 임시로 옮겨 간 활동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나 총회와 통신관계를 갖는 다른 교단의 관련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당회는 이 사람이 성실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G-15.0201). 그 증명서는 거기에 기재된 개체교회에 보내야 하고, 그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받도록 위탁하된 단 2년 간만 유효하다. 증명서 발부한 후 당회는 그가 다른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교인의 이름을 활동 교인 명부에 간직해야 한다.
활동교인의 이사	(c) 교인이 이사 가서 소속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때,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는 것은 그 본인의 의무이다. 소속 교회의 당회는 이 같은 의무를 그 본인에게 곧 알려 주고 이주해 간 지역의 교회에도 알리면서 그 교인을 받아서 목회적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위에 노회 사무실에게나 노회의 서기에게 또는 양쪽 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활동교인	(3)(a) 비활동교인 명부: 비활동교인 명부는 당회의 판단에 의해서,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교인 명부에서 옮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그 교인이 적어도 1년 동안 의도적으로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불참하고, 또한 당회가 그 교인의 불참의 이유를 알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교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노력 없이는 아무도 활동교인 명부에서 비활동교인 명부로 그 이름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옮겨진 교인에게는 이 결정을 알려야 한다.
비거주교인	(b) 비거주 교인은 위에서 요구한 통지를 보내고 나서 1년 후에 비활동교인 명부에 옮길 수 있다. 그때 당회는 그 교인에게 거주지의 교회에 이명증서를 해 가도록 최종 주소를 통해 권유해야 한다.
관련교인 접수	(4)관련교인 명부: 관련교인 명부는 당회가 관련교인으로서 받아들였고,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활동적인 교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교인의 회원권은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교인명부에서 삭제 이명증서	b. 당회는 다음 상황에서 교인명부에서 이름들을 삭제할 수 있다: (1)요청받았을 때, 당회는 그 사람의 교인 신분을 서술한 이명증서를 지교회로 발급해야 한다. 이명증서를 받은 교회는 그 교인을 교인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와 교인으로 받아들일 경우의조건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명증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그 교인의 이름은 그 교인이 이명해 간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명증서를 발부한 교회의 적절한 명부에 보관해야 한다. 그 사람이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즉시, 접수한 교회는 이명증서를 발부한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그 당회는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교회의 해소시	(2)어떤 교회가 해소되면, 관할 노회가 그 교회의 기록을 소유하고, 그 교인들을 관할하고 다른 교회로 이명해 가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말소 요청 (3)어느 교인이 활동교인이든 비활동교인이든 간에, 교적을 말소해 주기를 요청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열심히 권유해서 교인으로 남아 있도록 설득한 후에 활동 또는 비활동교인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타교회 소속 (4)어느 교인이 정식 이명증서 없이 다른 교회에 소속하거나 본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경우, 당회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 비활동 비거주 교인 (5)비거주 교인이 위에서 당회의 통보를 받고 그의 이름이 비활동교인 명단에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당회는 그 이상 통보할 필요 없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 이사 후 소재 불명 (6)인이 이사 갔고, 당회가 그 교인의 거처를 알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당회는 1년의 부재 후에 그것이 기재된 모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 비활동 명부에 2년간 (7)거주 교인이 활동교인 명부에서 비활동교인 명부로 옮겨졌을 경우, 목회적 관심을 그 교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회의 의무이다. 2년 동안의 목회적 관심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교인으로 회복시키는데 실패했다면 당회는 더 이상 통보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 교인 사망 (8)어느 교인이 사망했을 때, 당회는 사망 날짜를 기록하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 결혼, 세례, 제직원 기록부
 - c. 기록부: 당회는 다음의 완전한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 (1)결혼, 본 교회 교인의 모든 결혼, 교회의 목회자가 집례한 모든 결혼, 그리고 교회 건물에서 거행된 모든 결혼;
 - (2)세례
 - (a) 유아세례: 이름, 부모의 이름, 세례받은 자의 생년월일, 어린이를 세례받도록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
 - (b) 성인세례: 이름, 부모의 이름, 세례받은 자의 생년월일을 포함.
 - (3)장로, 각자가 안수받은 교회의 이름, 안수받은 날짜, 시무기간, 이동 기록;
 - (4)집사, 각자가 안수받은 교회의 이름, 안수받은 날짜, 시무기간, 이동 기록;
 - (5)시무 중인 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임시목사, 노회 임명목사, 협동목사의 시무년월일.

G-10.0400

4. 교회재정

G-10.0401
재정

교회 소재지의 주법이 허용한다면, 회계는 매년 당회가 선출해야 하고, 그이나 그녀의 봉사는 당회에 의해 감독받거나 집사회나 이사회에 대한 특별한 임무에 의해 감독받는다. 교회의 각종 자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당회에 보고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더 자주 보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재정절차의 최소한도의 표준이 지켜져야 한다:

- a. 모든 현금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임명된 두 사람 또는 신용 보장된 사람에 의해 계수되고 기록된다;

- b. 모든 재정 처리를 반영하는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합당한 시기에 권한을 맡은 교회 제직에 의해 감사받을 준비를 한다;
- c. 재정 활동의 정기적 보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주하면 더 좋지만, 재정 감독의 권한이 주어진 이사회(들)에게 한다;
- d. 모든 교회재정 장부와 기록은 1년에 한번은 공인계리사나 공인계리회사, 또는 계리절차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충분한 재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감사원들은 회계(혹은 회계들)와 친숙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미이며, 전문적 회계업무에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G-11.0000

제 11 장 노회

G-11.0100

1. 총칙

G-11.0101
회원권

노회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회^a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회의 공동조직의 표현이다. 노회가 모일 때 각 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적 규정에 따른 당회의 장로^b총대를 대표로 보내야 한다.

a. 500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이 대표를 보내야 한다:

501-1000—2 장로

1001-1500—3 장로

1501-2000—4 장로

2001-3000—5 장로

교인수 3001 명부터는 매 1000 명 추가 활동교인이나 그것의 과반 끝자리수에 따라 한 명의 장로를 추가해야 한다.

b. 노회에서 투표권이 부여된 목사들의 수가 투표권이 부여된 장로들의 수보다 더 많을 때는, G-9.0104 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선거, 임명, 또는 장로들의 추가 선발을 제공함으로써 매년 이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다수의 명예 은퇴 목회자들에 기인한 불균형의 문제에 당면한 장로들은 장로법에 의거하여 균형을 맞추는 표준으로써 명예은퇴 목회자들을 적극 관여 시킬 수 있다.

c. 노회장으로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하든 그 임기 동안에 노회의 회원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임원이나(노회장 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노회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 하든 그 임기 동안에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노회 총무, 노회 부총무 또는 다른 정직원으로서 노회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 하든 그 직무를 시무하는 동안 노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G-11.0102
최저 회원수

각 노회의 목사의 최저 회원수는 10 명이어야 하고, 교회의 최저수도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구성된 당회가 있는(G-7.0202a) 10 개 교회이어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서는 대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는 최저수보다 더 적은 수로서 노회를 조직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노회에 최소한 5 명의 목사가 있어야 한다.

G-11.0103
책임

노회는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G-3.0000 에 따라 그 지역 내의 교회 선교활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b. 노회가 책임을 지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언을 하기 위해 회원 교회들을 지도하고 기동력을 동원함으로써 회원교회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

c. 대회나 총회의 보다 더 큰 전략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를 통한 선교 활동을 주도하는 일;

d. G-9.0104 에 따라 대회나 총회 총대 선출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정한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회의 직원 채용과 그 위원회,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정책 결정과 정책 추천기관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참여와 포괄성과 소수계 보호법의 원칙을 수행하는 일. 노회의 대표위원회는 직접 노회에 보고해야 하고, 공천위원회가 그 공천을 재고하도록 제안하는 일을 포함하여 불균형 대표성의 상황을 교정할 제안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e. 교회의 다양한 구성 계층이 당회에 대표되어 있지 않은 개체교회를 자문하는 일;

f. 노회 회원교회의 지도자 개발, 교회 제직 훈련, 예배, 양육, 증거, 봉사, 청지기 직분,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공정한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 회원교회에게 격려와 지도와 재원을 제공하는 일;

g. 정기적으로 당회와 목사를 방문하여(G-11.0502c) 회원교회와 노회원들에게 목회적 돌봄^e을 마련하는 일;

h. 새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또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통합하는 일. 한 노회의 두 교회나 그 이상의 교회가 통합할 경우 이전 교회의 목사 또는 목사들은 통합 교회들이 합의하고, 통합 계획 가운데 그 관계가 명시되며, 노회가 함께 동의하면 통합된 교회의 목사나 목사들로서 계속하거나 목사나 목사들이 될 수 있다;

i.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나누거나 해산하거나 해소시키는 일;

j. 신설 교회의 위치와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위치를 통제하는 일;

k. 평신도 목회자를 선정하고 훈련시키고 고시하며 파송하고 그들에게 주의 성만찬을 집행하는 권한(G-14.0562a)을 주는 일까지 포함하여 목사가 없는 교회들을 특별히 감독하는 일;

l.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지망생으로 등록하여 언약 관계에 이르는 것, 하고 지망생을 후보생으로 받는 일, 그리고 후보생들이 안수 시험^d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일;

m. 노회 목회 후보 고시협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안수받을 후보생을 위한 고시 채점하는 장로와 목사를 선정하는 일;

n. 목사^e를 안수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시키고, 임직시키고, 제명하고, 치리하며, 새로 입회한 목사들로 노회의 생활과 사역에 융합케 하는 계획을 세우며, 목회자 청빙 (G-14.0534) 과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청빙의 모든 필요를 위한 최저 보수 및 혜택 요건을 정하고 노회의 교회들에 의해 고용된 유자격 협동 기독교 교육자들 (G-14.0730b) 의 보수 및 혜택의 지침을 정하고,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과 유자격 협동 기독교 교육자들의 인정식을 행하고(G-14.0731), 노회가 승인한 청빙의 모든 조건들과 청빙의 변경 사항을 노회록에 정리하고 승인하고 기록하는 일;

o. 목회의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고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의 선교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p. 목사를 교사로, 복음 전도사로, 행정가로, 교목으로, 또는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목회에 사역하도록 지정하는 일. 그런 목사들도 치리회가 인정할 때와 장소에서 또는 치리회가 상세히 정한 다른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다. 이에 적용되는 W-2.3000, W-2.4000, 또 W-3.3600 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q. 교회에서 전문직 봉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노회의 지도하에 받으며 적절한 때 그들을 파송하는 일(G-14.0140);

r.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

- s. 당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했을 경우에 원관할권을 맡는 일. 충분한 조사와 청문할 수 있는 전적인 기회를 문제의 당회에 준 후에 관할권의 노회는 지교회의 당회가 그 교회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다고 판정할 때는 언제나 노회는 당회의 전권을 가진 행정 전권위원회(G-9.0503)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전권위원회는 노회가 별도로 지시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게 될 기존 당회의 원관할권을 맡아야 한다;
- t. 교회의 상급 치리회와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1) 대회와 총회에 보낼 총대를 선출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 (2) 상급 치리회의 명령들이 지켜지고 실천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 (3) 전체 교회^f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대회와 총회에 제안하는 일;
- u. 해당 구역 내의 교회생활과 선교를 확대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성을 확립하고 유지해 가는 일;
- v. 노회의 구조와 그 선교 사이에 기능적 관계를 정기 평가하도록 노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노회 사역에 필요한 기관들을 세우고 감독하는 일. 노회는 그 자체의 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노회의 특별 책임 분야에 있어서 노회의 회의들 어간에 결의할 책임을 노회 중앙협의회에 부여하고, G-11.0502h 에 명시된 권한을 노회 목회위원회에 부여하고, 또 목회후보생을 이적시키고 지망생을 등록할 권한과 안수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된 후보생들을 증명하는 권한을 목회후보생위원회에 부여하되, 그런 모든 결정을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해야만 한다는 규정하에서 실시한다(G-9.0403, G-14.0450);
- w. 목사와 평신도 남녀 동수(각기 1/3)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일;
- x.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당회록과 기록을 검사하는 일;
- y. G-8.0000 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개체 교회의 요구를 고려하고 처리하는 일;
- z. 주의 성만찬 집행을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할 때, 성만찬 집행과 그 교리에 관한 노회의 적절한 지시와 함께 특별한 환경에서 성만찬을 집행하거나 사회하도록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특정 장로에게 권한을 허락하는 일;
- aa. 널리 퍼져 발생하는 긴급한 인종차별의 문제, 인종적 폭력과 인종적 부정을 대처하며 동시에 교회와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적 압제를 조장하는 어떤 이념에도 대처하는 일.

G-11.0200

2. 회의

G-11.0201
회의

노회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노회장은 두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두 장로가 일치해서 요청할 때나 동의할 때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노회장이 소집을 할 수 없을 경우, 똑같은 조건하에 노회서기가 회의 소집을 해야 한다. 만약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다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을 경우, 어느 3 인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에 속한 3 인의 장로가 임시노회를 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노회 소집 통고는 늦어도 소집일 10 일 이전에 각 목사와 각 교회 당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G-11.0202
정족수

노회의 정족수는 목사 3 인과 적어도 3 교회를 대표한 장로 3 인은 참석해야 한다. 노회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정족수⁸를 규정할 수도 있다.

G-11.0203
객원회원

본 교단 또는 다른 그리스도 교회의 치리회의 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장로)이 노회의 어느 회의에 참석했을 때 객원회원으로 초청될 수 있다. 단,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노회는 그 지역 안에서 사역하는 다른 노회원을 그 사역 기간에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는 객원회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G-11.0300

3. 다른 규정들

G-11.0301
참여

노회 중앙협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노회는 G-9.0104 이하에 표현된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G-11.0302
대표위원회

노회의 대표위원회는 노회의 공천위원회가 대표를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부문에 공천이 필요하다면 조언을 해주어야 하고, 또 G-4.0403 에 열거된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표했는지 그 과정을 노회에 정기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G-11.0303
직원

노회는 총무와 필요한 다른 직원의 행정 봉사를 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 협력하는 뜻에서 노회는 노회 중앙협의회(또는 다른 적절한 위원회, 또는 대표자)를 통해 대회(또는 대회 중앙협의회, 다른 위원회, 또는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G-12.0302). 행정 직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사 채용에 관한 한, 노회는 G-9.0404 에 설정된 협의의 실천과 소수계 보호법과 평등 고용기회를 위한 전체 교회 계획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G-13.0201b).

G-11.0304
예산

노회는 그 지역 내의 교회 선교 지원을 위한 노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노회가 이들 예산을 올리고 확대시킬 때에는 전체 교회의 우선순위 원칙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노회는 대회의 추천을 받은 다음, 그리고 대회 및 총회가 대표하는 전체 교회의 종합적 전략에 따라 노회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반 선교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

G-11.0305
기록

a. 노회는 그 행정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1 년에 한 번은 그 기록을 대회에 제출해서 일반적 평가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에서 그 해 동안에 일어난 상황과 진전, 그리고 모든 중요한 변화, 곧 안수; 기독교 교육자의 자격 인정; 회원의 접수, 이적, 목사의 사망; 또 교회의 조직, 통합, 분리 또는 해소 등을 포함한 사항들을 대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회 소유

b. 노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들은 노회의 소유이고, 서기는 그 문서들의 보관 책임을 가진다.

G-11.0306
연례보고

노회는 매년 총회서기에게 노회 목사들의 명단,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와 유자격 협동 기독교 교육자들의 명단, 교회 명단, 통계 및 총회가 요구한 다른 정보를 보내야 한다.

G-11.0307
감사

노회는 재정에 관계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1 년에 한 번씩 공인계리사, 공인계리회사, 또는 계리 절차에 밝은 교회교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충분한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감사원들은 회계(또는 회계들)와 친숙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의미이며 전문적 회계업무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G-11.0308
보험

노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 및 임명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 보증보험을 획득해야 한다.

G-11.0400

4. 목사 회원

G-11.0401
목사의 회원권

a. 모든 목사는 보통 그가 사역하는 지역의 노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의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는 그이나 그녀가 거주하게 될 지역의 노회에 가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노회나 그이나 그녀가 회원이던 노회에서 회원권을 보유할 수 있다. 노회는 목사에게 그 구역 밖이나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가 다른 노회의 구역 안에서, 그리고 다른노회의 책임 지역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해당 노회의 동의 없이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허락과 동의는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노회의 서기는 자기 소속 노회 밖에서의 사역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목사에게 먼저 다른 노회 구역 내에서 사역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하라고 알려 주어야 한다. 매년 1 월 중에는 목사의 회원권이 있는 노회의 서기가 그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타노회에 목사의 주소를 알려 주는 연락을 취해야 한다. 노회의 승인하에서 미국 밖에 교단에서 일하는 목사는 본 교단 노회의 회원권에 영향받지 않고 그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교단의 목사 회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G-11.0411).

사역 허락 권한

b. 노회 구역 안이나 밖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은, 노회의 차기 정기회의에 모든 그와 같은 결정이 보고된다는 단서와 함께, 노회에 의해 그 중앙협의회나 목회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다.

G-11.0402
회원권을 원하는 목사

노회는 그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노회 회원권을 원하는 목사나 후보자를 G-14.0481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의 기독교 신앙, 신학에 관한 견해, 성례전, 본 교단의 정치 등에 관하여 시취(試取)해야 한다. 노회의 회원권을 원하는 모든 목사는 노회 안에서 목회 관계에의 청빙을 받아야 하고, 또는 G-11.0410 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 치리회나 기관으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하고, 또는 받아들이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G-11.0411 에 규정된 사역을 시작해야 하며, 또는 헌법조항 G-11.0412 에 규정된 대로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

G-11.0403
계속회원의 목회 기준

노회는 계속회원이 되어야 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노회는 그 경내에서 목회 사역의 확인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에 따라 지시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G-6.0100 과 G-6.0200 에 따른 안수직 성격의 기술과 다음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 a. 계속회원인 목사의 목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본 교단의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와 분명히 부합해야 한다.
- b. 그 목회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 c. 그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충실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대개신학석사 학위나 그에 대등한 학위, 그리고 G-14.0482 에 설정되어 있는 안수 조건을 필할 것을 요구한다.
- d. 그 목회는 그 성격과 행위에 있어서 노회와 조직체, 기관, 그리고 단체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 e. 그 목회는 노회의 심의와 사역, 그리고 개체교회의 예배와 봉사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G-11.0404
타교파의 목사:
개혁 교회

타 교단의 목사들은 다음처럼 노회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a. 노회의 회원자격을 신청할 때, 타 교단의 목사들은 노회 또는 노회의 적절한 위원회에서 수락할 수 있는 명망 있다는 증거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한 본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성품과 학문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1) 공인 단과 또는 종합대학으로부터의 학사 학위 및 노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신학 학위를 제출해야 한다;

(2) 안수받을 후보생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에 관한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을 해야하고;

(3)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미국장로교회의 신학과 정치에 관해 용인할 만한 지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b. 노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앞서 말한 요건들 가운데 어느것도 면제 해서는 안된다. 이 특별한 경우에 있어 노회는 G-14.070-0473에서 요구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타 개혁 교회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안수 받은 목사들의 경우, 목사후보생들에게 요구되는 시험 중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한 면제는 노회의 2/3 투표가 있어야 한다.

c. 상기 조항에 따른데 대한 적절한 위원회로부터의 보고서, 그러한 목사들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 신학, 및 본 교단의 치리제도에 관해 노회가 심사하고,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노회의 재량에 따라 심사한다. 그리고 이 목사들은 안수와 취임식에 포함된 (1)에서 (9)까지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한다.

d. 목사는 본 교단에서 적절한 사역에 청빙을 받아야 한다.

입회 등록

e. 타 교단의 목사가 본교단 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회원 등록 이전에 그가 전에 속했던 어떤 타교단의 목사 명단으로부터 제명되었다는 만족할 만한 증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f. 새로운 이민자들의 개척교회 및 회중 모임을 담당할 목사들의 경우, 노회와 후원자들이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노회는 비록 목사가 회원등록 시기에 (G-14.0450b-d)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회의 일원으로 총회와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교단에서 명망을 얻고있는 새로운 이민 목사를 입회시키고 목사의 안수 (G-15.0202)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준비가 부족한 목사의 경우, 노회는 성경, 개혁 신학, 성례전, 노회 정책, 설교, 예배 인도, 목회적 돌봄 및 가르침과 관련한 목사의 능숙도 및 이해력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 노회가 상기 분야에 대한 목사의 이해력과 준비에 만족할 경우, 참석 인원 3/4의 찬성 투표로써, 이 목사를 노회의 목사로서 회원등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노회는 이 목사가 이 노회의 지역 내에서 목사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노회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이 목사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용시 G-11.0403c, G-11.0404, G-14.0450a-d, 및 G-14.0470-0473에서 규정한 절차 및 요건들의 예외가 될 수 있다.

G-11.0405
통신 연락 관계

a. 본 총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교류관계를 그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조직 목사가 아닌 임시로 비취임 목회 관계(G-14.0550)를 맺어 장로교의 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 개교회의 목사나 미국장로교와 적어도 한 부서가 연관을 갖고 있는 교단의 부서들로

구성된 큰 교구의 목사, 또는 본 교단도 참여하는 한 개 이상의 교단의 행정 직무에 공동으로 청빙받은 목사, 또는 해외에서 본 총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교단의 목사로서 이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는 봉사기간 동안 노회 회원으로 등록되며, 회원의 권리와 특권을 잠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완전한 교류

b. 미국장로교가 온전한 교류를 맺고 있는(G-15.0201) 타교단의 목사는 목회자로서 청빙받거나 조사되거나 승인될 수 있으며, 이 교단의 목사로서 취임하거나 이러한 교단에 다른 목회 차원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이 봉사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목사는 그 교단들중 어느 하나의 혜택플랜(연금)에 참여해야 한다. 목사가 이미 하나의 플랜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그 플랜에서 회원권을 보유하게 된다. 목사가 어느 플랜의 회원이 아닌 경우 교회 플랜들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이 그 목사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당회 또는 기타 고용 기관은 그 목사가 속해 있는 플랜이 필요로 하는 수수료, 세금 또는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타 교단의 목사

c. 타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가 그들이 속한 교단에서 무흠하게 봉직했다는 신임장을 노회에 제출할 경우, 그리고 노회가 잠정 목회 관계를 허락할 경우,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러한 목사를 잠정 목회 관계로 채용할 수 있다.

G-11.0406
계속회원
활동회원

미국장로교 소속 노회의 계속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활동회원, 보통회원, 비활동회원을 포함한다.

a. 활동회원은 G-11.0401에 의해서 노회에 받아들여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다. 그리고 현재 예외 없이 G-11.0403의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활동회원은 개체교회 안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G-11.0409),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며(G-11.0410),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인정된 목회 봉사를 하고(G-11.0411), 또는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는(G-11.0412) 회원이다. 활동회원은 노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는다.

보통회원

b. 보통회원은 전에 이 노회 또는 다른 노회의 활동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며, 지금은 의도적으로 목회 활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G-11.0403의 기준에 부합되는 목회에 더 이상 관여하고 있지 않은 목사다. 그러나 그녀는 노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의 책임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완수하는 데 그이나 그녀의 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로 인해 이 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보통회원은 가능한 한 G-11.0403의 기준에 많이 적응하려고 해야 하며, 어느 교회의 협동목사가 되도록 권유 받아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는다. 각 보통회원의 신분은 목사의 청원에 의해서 노회가 허락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검토해야 한다.

비활동회원

c. 비활동회원은 전에 이 노회 또는 다른 노회에서 활동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지만, 지금은 G-11.0403의 모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직업에 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목사이다. 노회는 그 목사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목사에게 직접 통고하거나 최종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통고한 다음 노회 자체가 주도하여 그 목사의 회원 범주를 비활동회원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비활동회원은 노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거나 위원회에 봉사할 자격을 갖지 않는다. 단, 그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논을 할 때는 발언할 수 있다. 각 비활동회원의 신분은 매년 검토하되 3년까지 해야 한다. 만약 3년 끝에 가서 그 목사가 활동회원이나

보통회원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면,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노회의 명단에서 제명하고 그에게 어느 지교회에 교인증서를 줄 수도 있다(G-6.0600).

G-11.0407
회원 명부

지정서기는 다섯 가지 명부를 보관해야 하는데,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활동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보통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비활동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 관할의 교육목회직 임기 중에**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은 노회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와 유자격 협동 기독교 교육자들의 이름 전부를 기재한 것 하나; 그리고 다른 명부에서 삭제된 자들의 이름을 기재한 다섯 번째 명부를 보관한다. 매년 12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본장의 관계 법규와 관련해서 노회는 각 계속회원의 회원권의 범주를 결정하고, 결정되는 대로 해당 명부에 기재해 둔다.

G-11.0408
인정된 목회

a. 노회의 활동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2)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3)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도 인정된 목회 봉사를 하거나 (4) 명예롭게 은퇴한 회원이다.

b. 본 교단의 다른 봉사(G-11.0410)에나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봉사하도록 인준받은 목회의 청빙은(G-11.0411) 대개 봉사 목적과 사역 관계 진술서, 재정 조건, 그리고 목사, 노회 대표, 또 가능하면 고용 기관의 대표의 서명들을 포함한 서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노회는 W-4.4006 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취임예식이나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인정 예식을 집행하는 일이 적절하다.

G-11.0409
본 교단의 개체교회에서
봉사

본 교단의 개체교회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회원은 G-6.0202 과 G-14.0550 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보조목사, 노회지정목사, 임시지정목사, 임시목사나 임시부목사로서 개체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G-11.0410
본 교단의 다른
분야 봉사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회원은 본 교단의 노회, 대회, 총회나 이런 치리회의 하나와 관계된 기관의 직원으로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교단이 후원하는 기관, 그 중 하나는 본 교단이어야 하는데, 가령 연합교회, 특수목회, 행정 직책, 또는 초교파기관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목사로서; 해외 교회와 관계된 선교동역자로서 봉사해야 한다. 그러한 봉사에 종사하기 전에 그 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노회에 요청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청빙 조건이 달라졌다거나 그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G-11.0411
교회 관할권
밖에서 봉사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회원은 어떤 조직체나 기관이나 본 교단이 공식적으로 참여치 않는 기구에서 노회의 선교와 관계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교단에서 임시로 목사나 어떤 다른 자격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가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소속 노회에서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런 봉사를 하는 기간에 그 교단에서의 목사 회원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봉사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노회의 목회위원회는 제시된 목회 기능을 철저히 검토하고 노회에 그 추천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예외없이 G-11.0403 에 열거한 모든 기준과 그 봉사가 부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만약 노회가 그 청원을 허락한다면 그 허락은 매년 평가하고 갱신해야 한다.

G-11.0412
명예 은퇴 목사

a. 노회는 만약 그 목사가 품행 좋은 정교회원이면 활동회원을 명예 은퇴목사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사가 명예 은퇴목사로 지정될 때에 품행 좋은 정교회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도 있다. 명예 은퇴목사의 신분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나이 때문에 허락할 수도 있다. 새 목사를 선출하는 절차는 G-14.0530-0534 에 정해져 있다. 또한 노회는 명예 은퇴목사의 신분을 G-11.0410 이나 G-11.0411 에 기대된 대로 기관에 의해서 은퇴한 목사에게나 또는 활동회원으로와 (또는) 보통회원으로 계속 20년 목회 활동에 종사한 목사에게 허락할 수도 있다.

명예 은퇴목사의 노회
회원권

b. 명예 은퇴 목사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노회에 그들의 회원권을 이명하도록 격려하며 그 노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한다. 노회는 명예 은퇴목사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창조적이며 의미있는 방면에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봉사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지교회나 노회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노회는 양육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G-11.0413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은 노회의 보살핌과, 감독과, 노회의 자제하에 있다. 그들은 양쪽 노회의 허락하에 다른 노회로 현재 그들의 회원권의 범주대로 이명해 갈 수 있다. 그 목사의 모든 기록은 그를 받는 노회에 다 전달해 주어야 한다. 목회위원회는 각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을 매년 자문해야 하고, 그 회원이 현재의 범주에서 계속 회원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다른 범주로 옮겨야 하겠는지 또는 인수받은 직책의 수행에서 해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노회에 제안해야 한다. 그런 결정은 노회나 그 목사의 요청에 의해 주도할 수 있다.

G-11.0414

[이 조항은 217 차 총회(2006년) 결정에 의해 삭제되었으며, G-6.0600 에서 참조할 수 있음.]

G-11.0415
비활동 명부에 옮겨진
목사

a. 만일 어느 노회 목사가 회원권이 있는 노회 회의에 1년간 참석도 않고, 거처와 하는 일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않으면 그 노회는 그 목사를 찾아 상담하려고 노력한 후에, 아무런 편견 없이 그 목사의 이름을 비활동회원 명부로 옮겨야 한다.

타노회 구역 내

b.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자기가 속한 노회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실제 일해야 할 지역의 노회로부터 사역할 수 있는 허가를 못 받았으면 2년 후에는 비활동회원 명부로 옮겨져야 한다.

G-11.0416
타교단에 가입한
목사

본 교단 목사가 G-11.0411 에 규정된 조항은 제외하고, 타교단에서 어떤 성격의 회원권을 계속하거나 받아들인다면, 그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목사의 이름을 명부에서 제명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다른 행정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G-11.0500

5. 목회위원회

G-11.0501
성격과 회원권

a. 각 노회는 목회위원회를 선정해서 목회자와 상담자로서 노회의 목사들과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 에게 도움을 주며, 교회와 목사와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과 목사와 노회 사이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고, 가능하고 편리한 때 노회를 대신하여 어려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원권과 정족수

b. 이 위원회는 최소한 6 명의 위원으로 장로와 목사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정족수는 노회가 설정할 것이며, 적어도 위원의 다수로 해야 한다. 한 임기는 3년이 넘을 수 없고, 한 위원이 임기의 전부이건 일부이건 6년 이상 연임할 수도 없다. 6년간 임직한 위원은 최소 향후 1년간은 재선될 수 없다.

G-11.0502
책임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회에 봉사해야 한다:

- a. 이 위원회는 노회소속 목사를 각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회의 각 목사가 어떤 형태의 사역에 종사하는지 매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회나 본 교단의 상급 치리회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는 일을 하는 모든 목사에게 연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b. 이 위원회는 목사들의 청빙에 관하여 노회에 제안해야 한다. 목회적 관계에 있는 목사나 후보자의 모든 청빙은 목회위원회의 소관이며, 그 청빙이 순리로 되었는지 또는 그 청빙이 그 목사나 후보자에게 바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고하고 추천하는 일을 이 위원회가 노회에 해야 한다. 목회에 관계된 일로 목사나 후보자가 노회의 승인을 바라는 모든 요구는, 어느 개체교회와의 목회적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 위원회를 거쳐서 목사나 후보자가 요청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노회의 결정을 바라는 제안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c. 이 위원회는 매 3 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노회에 소속한 당회를 방문하여 개체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관하여 논의하고, 또 각 당회와 교회가 노회와 교단의 생활과 사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W-1.4002).
- d. 이 위원회는 영구적 목회 관계를 요청하는 여러 교회를 자문하고, 목사나 부목사를 공천하도록 선정된 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그의 이름이 교회에게 공천하기 위해 고려 중인 어떤 후보자나 목사의 공적과 채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위원회에 조언해 주고, 청빙위원회에 목사의 이름들을 시사하는 특권을 가져야 한다. 목사 청빙 결의를 하기 전에 개체교회가 그 위원회의 조언을 받고 고려하기 전까지는 영구적 목회 관계의 청빙을 노회가 고려해서는 안 된다(G-14.0530, G-14.0532). 영구적 목회 관계에 대한 청빙은 노회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발송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의 지원 보조를 받는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청빙서가 목사에게 발송된다는 사실을 노회에 제안하기 전에 이 위원회는 그 교회와 보조금을 마련하는 노회의 기관과 협의의 해해야 한다. 노회의 해당기관은 노회가 목사를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목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교회의 청빙서에 첨부해야 한다.
- e. 이 위원회는 G-14.0520-0523 에 규정된 노회 임명목사 청빙의 권고를 위해 교회와 협의해야 한다.
- f. 이 위원회는 교회에 목사가 없을 경우 노회 지정목사,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 그리고 임시지정목사에 관하여 당회와 상의해야 하며 목사들, 평신도 파송 목회자와 빈 강단을 돕도록 노회가 훈련시키고 파송한 자격 있는 평신도들의 명단을 마련해야 한다. 당회가 G-14.0553 에 따라서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를 초청할 경우 목회위원회를 통한 노회의 찬동이 요구된다.
- g. 이 위원회는 인종, 종족, 성, 나이, 결혼 상태나 신체장애에 상관하지 않고 목사와 후보자를 위한 평등고용 기회의 이행을 마련해야 한다. 청빙이 있을 경우마다 이 위원회는 청빙하는 그룹이 취한 이해단계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h. 노회는 이 위원회에게 권한을 주어서 교회가 청빙을 정당하게 했는지를 찾고 목사청빙을 승인하고 제안하며, G-11.0402 의 요구대로 타노회에서 이명해 오는 목사의 시취를 승인하고, 목사와 교회가 동의하는 경우 그 목회 관계를 해소시키고, 노회의 구역 내외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하고, 목사를 타노회로 이적시키는데 이 모든 결정은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G-9.0403).

- i. 이 위원회는 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하되, 특히 목사들과 교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차이점을 중재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결국 어려움을 그 개체교회의 당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시정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 개체교회의 복지는 더욱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분명히 드러난다.
- j. 이 위원회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알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지혜 있는 판단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1) 이 위원회는 수집한 정보를 관련된 당회에 알리는 데 주도 역할을 하며, 보고된 어려움을 시정하는 데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당회에 협의한다.
 - (2) 이 위원회는 당회가 스스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이 위원회는 만일 문제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만일 노회가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어려움을 시정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경우 이 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나타나 있는 절차를 따라 절차상의 안전을 기하도록 언제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G-11.0503
개방적 의사소통

이 위원회는 목사, 평신도 파송 목회자인 장로들, 당회원인 장로들, 노회 소속 당회, 그리고 노회 구역 안에 있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언제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G-11.0504
대회와 총회의 기관

- a. 노회 목회위원회는 목사와 목회 관계의 사안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위해 대회와 총회에 문의할 수 있다. 대회는 노회위원회들의 활동을 협동적으로 조정하는 필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총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노회와 대회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하는 필수 기구를 세워야 한다.
- b. 총회의 적절한 기관이 총회사무국과 중간급 치리회 기구와 협의하여 개발한 목회위원회를 위한 자문서 (Advisory Handbook)는 대회와 노회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지역적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도록 제안된 절차 모델을 통해 안수, 인정, 파송, 목회사역의 감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G-12.0000

제12장 대회^a

G-12.0100

1. 총칙

G-12.0101
회원권

대회는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3개 이상의 노회로서 구성된 교회의 생활과 선교의 기구이다.

a. 대회가 모일 때 그것은 노회가 선출한 총대로서 구성된다. 대회는 여러 노회 대다수의 합의하에 선거 기틀과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의 비율을 결정하고 동시에 G-9.0104와 G-9.0105에 나타난 참여와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 방법도 결정한다. 노회에서 나온 총대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간에 동수로 나누어져야 한다.

b. 대회가 모일 때, 동 기구의 투표 회원에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의 균형이 유지되는 한, 노회에 의해 선출된 총대들에 추가하여, 대회 임원들과 그리고 그 대회의 치리 문서에 의해 결정된 여타 개인들이 각기 직책의 임기중에 등록할 수 있다.

G-12.0102
책임

대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선교에 책임을 지는 중간 치리 기구이다. 그러므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대회 산하의 노회들과 협력하여 G-3.0000에 따라서 그 지역 내의 교회의 선교를 위한 폭 넓은 전략을 개발하는 일;

b. 총회의 보다 큰 전략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를 통한 선교활동을 주도하는 일;

c. 노회들과 협력하여 노회를 격려하고 지도하며 그 사역을 감독하면서 선교의 완수를 위한 공동 계획과 목표를 개발하는 일;

d. G-9.0104와 일치하여 인사 채용과 그 위원회,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정책 추천기관의 회원권을 설정함에 있어 결정권 행사에 참여하는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이행하는 일;

e. 산하 노회의 선교사업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평가 지침과 기준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f. 각 노회의 일반 선교 예산, 행정 직원직 설정,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공정 고용 실행등에 관하여 회원 노회들과 협의하는 일;

g. 노회의 목회위원회의 사역을 조정하고 목사의 청빙, 안수, 배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 노회를 지원하는 일;

h. 각 노회간에 또 노회와 총회간의 통신 연락 소통 업무를 용이케 하는 일;

i. 그 지역 내에 있는 타교파의 기관과 합동 선교 활동을 촉진하는 일;

j. 노회와 당회와 교회들, 그리고 대회 지역 내에 있는 교인들이 넓은 지역을 근거로 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k. 새 노회를 조직하고, 이전에 존재하던 노회들/또는 일부 노회들을 분할하거나 통합하거나 기타 결합하며, 파악된 민중 또는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G-12.0102a; G-11.0103a), 기존 노회들의 동의를 얻어 비지역(nongeographic) 노회를 조직하는 일;

일, 총회의 승인에 종속하는 일. 그러한 노회의 신설은 G-7.0201, G-11.0102 요구사항에 일치 되어야 하며, 조직된 지역의 대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비지역(nongeographic) 노회가 없는 대회의 지교회에서 그러한 선교적 필요가 발생할 때, 그 대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교회가 다른 대회에 있는 비지역(nongeographic) 노회로 합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합류할 대회와 지역 노회 및 비지역 노회가 이를 동의해야 한다; 그러한 노회는 언어 기반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각 비지역 노회의 조직에 일몰조항(종료일)이 첨가되어야 한다.

- l. 권징조례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
- m. 그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교리적 과오나 비도덕적인 문제에 경고하거나 반증을 하는 일;
- n. 노회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교단 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여하는 일;
- o. 다음을 포함하여 총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는 일
 - (1) 총회의 명령과 지시를 지키고 실천하는지를 감독하고,
 - (2) 전체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총회에 제시한다;
- p.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확장 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 q. 대회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직 봉사 체계를 갖추는 일;
- r. 대회가 그 구조와 선교 사역간에 기능적 관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그 사역에 필요한 각 기관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하는 일;
- s. 목사와 남성 평신도, 여성 평신도(각 1/3비율)가 동수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조직하는 일(G-9.0801, G-11.0501, G-12.0102d, G-13.0111, G-13.0202);
- t. 널리 퍼져 발생하는 긴급한 인종 차별의 문제, 인종적 폭력과 인종적 부정을 대처하며 동시에 교회와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적 압제를 조장하는 어떤 이념도 대처한다.

G-12.0200

G-12.0201 회의

2. 회의

대회는 적어도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대회장은 요청이 있을 때 혹은 적어도 3개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각 3인이 동의가 있을 때, 단 이들은 이전 정기 대회 모임의 총대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 스스로의 최고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대회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 대회서기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집해야 한다. 만약 대회장과 대회서기 두 사람이 다 소집할 수 없을 때, 직전 대회장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지정된 사업 안전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회에 임시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 임시회의 총대는 전번 정기총회에 대회 총대나 그 대리 총대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회는 총대가 별세했거나 노회 회원권을 변경한 사람을 대처시키기 위해 총대나 대리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임시회의 통지서는 전번 대회 정기회의 총대에게와 각 노회서기에게 늦어도 15일 전에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 G-12.0202 정족수

대회의 정족수는 대회가 결정한다. 그 정족수는 적어도 3개 노회들을 대표하거나 그 노회들의 1/3을 대표하는, 동수의 장로들과 목사들을 포함해야 한다.
- G-12.0203 객원회원

본 교단의 다른 치리회나 다른 교파 교회의 품행이 좋은 회원이 대회의 어느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대회는 그를 객원회원으로 초청할 수 있으나, 단 발언은 허용하나 투표권은 없다.
- G-12.0204 참여

각 노회는 대회에 선출된 총대를 통해 대회의 책임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각 노회는 최소한 1명의 장로와 목사를 대회 총대로 봉사하도록 선출해야 한다. 대회 중앙협의회가 만일 있다면 대회가 선출해야 하되, 선출된 총대나 총대로 선출되지 않은 대회의 노회 목사나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 중앙협의회 대표들을 노회 내에서 운번제로 참여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G-9.0104와G-4.0403 조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G-9.0104 조항에 표현된 참여와 대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노회가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대회 위원회의 균형을 보장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G-12.0300 3. 기타 규정들

- G-12.0301 대표위원회

각 대회는 G-9.0105의 요구대로 대표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대표 증가가 필요한 특별 범주에 공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회 공천위원회를 자문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적어도 매 2년마다 G-4.0403에 열거된 위원 범주의 공정한 대표성의 발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G-12.0302 직원

대회는 대회 총무의 행정 직무를 허락하고 또 다른 직원 부서를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다. 대회 총무 선출은 대회 중앙협의회나 총무 선출을 목적으로 선정된 특별대표 공천위원회가 대회에 공천한다. 행정 직원을 포함한 인사 채용에 있어서 대회는 G-9.0404에 규정된 공정한 대표와 협의의 원칙과 평등 고용 기회와 소수계 보호법(G-13.0201b)을 위한 교단적 계획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회는 노회의 요구에 따라서 노회를 위한 대회 행정 직원의 봉사를 허락할 수 있다(G-11.0303).
- G-12.0303 일반 선교 예산

대회는 그 지역 내의 교회의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대회가 예산을 올리고 확장 시킬 경우에는 전체 교단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한다. 대회는 총회로부터 일반 선교 예산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그리고 전체 교단의 종합적인 전략에 비추어서 대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계획하고 책정해야 한다.
- G-12.0304 기록

대회는 그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들을 가져야 하고, 차기 총회에 제출하여 일반적 평가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회는 그 산하 노회수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대체로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 변화들을 보고해야 한다.
- G-12.0305 감사

대회는 재정에 관계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1년에 한 번은 공인계리사 또는 공공계리 회사에 의해 충분한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의미지 전문적 회계업무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 G-12.0306 보험

대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 및 임명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보증보험을 획득해야 한다.

G-13.0000

제13장 총회

G-13.0100

1. 총회

G-13.0101
정의

총회^a는 본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며 미국장로교의 대회, 노회, 당회, 지교회의 통일된 대표기관이다.

G-13.0102
회원권

a. 총회가 연례적 회의를 가질 때 그 회의는 각 노회로부터 같은 수의 장로와 목사대표로서 구성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인수가 1만 명이 넘지 못하는 각 노회는 장로, 목사 각 1명씩을 선출하고; 교인수가 1만 명이 넘는 노회는 추가되는 1만 명당 또는 끝수가 5천 명 이상 추가되는 경우 장로와 목사 각 1명씩을 총대로 선출하며; 이렇게 선출된 대표를 총회 총대라고 부른다.

b. 총회가 2년마다 회의를 가질 때 그 회의는 각 노회로부터 같은 수의 장로와 목사대표로서 구성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인수가 8천 명이 넘지 못하는 각 노회는 장로, 목사 각 1명씩을 선출한다. 교인수가 8천 명이 넘는 노회는 추가되는 8천 명당 장로와 목사 각 1명씩을 총대로 선출하며:

교인수가 8,001 명에서 16,000 명까지의 노회는 2 명의 장로와 2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교인수가 16,001 명에서 24,000 명까지의 노회는 3 명의 장로와 3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교인수가 24,001 명에서 32,000 명까지의 노회는 4 명의 장로와 4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교인수가 32,001 명에서 40,000 명까지의 노회는 5 명의 장로와 5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교인수가 40,001 명에서 48,000 명까지의 노회는 6 명의 장로와 6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교인수가 48,001 명에서 56,000 명까지의 노회는 7 명의 장로와 7 명의 목사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표를 총회 총대라고 부른다.

[주: 본 개정안은 217 차 총회(2006)가 폐회하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c.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될 때까지 총회회원으로 등록되며, 그 후에는 총회의 객원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G-13.0103
책임

총회는 교단의 모든 교회와 모든 치리회들 가운데서 연합,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유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G-3.0000 에 기술된 대로,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교회의 선교 완수에 교회 사역의 최우선권을 설정하는 일;

b. 교회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교회를 지도할 선교와 종합적 전략을 위한 전체 목표를 개발하는 일;

- c.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전체적 균형과 다양성에 알맞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공급하는 일;
- d. 복음 증거, 봉사, 성장, 개발의 전국적이고 세계적 사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
- e. 총회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행정직 봉사제도를 마련하는 일;
- f. 전국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일;
- g. 총회의 사무실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
- h. 총회선교협의회를 포함하여, 기관과 기관 사역에 필수적인 소위원회의 확립 및 감독을 하고, 총회 조직과 선교 간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제공하는 일;
- i.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체 교회에 제공하면서 총회의 전반적인 예산안을 채택하는 일;
- j. 교단 내에 통신전달을 제공하는 일;
- k. 각 대회 of 사역을 감독하고, 그들의 교단 선교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
- l.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교단 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여하는 일;
- m. 새 대회를 조직하고 분리하며 또는 여러 대회들이나 이미 기존한 대회의 일부를 통합하고 합동하는 일;
- n. 대회에 의한 여러 노회나 노회의 일부의 조직, 분리, 연합이나 통합을 승인하는 일;
- o. 권징조례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
- p. 교회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교리적 과오나 비도덕적인 문제에 경고하거나 반증하는 일;
- q. 총회에 제출한 논쟁적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제출된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시를 하는 일;
- r. G-13.0112 에 따르거나 교정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석이 내려졌을 때 교단의 치리회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례서*의 권위적 해석을 마련하는 일; *규례서* 규정의 가장 최근 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s.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확장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 t. 타교단과 유대관계를 갖는 일;
- u. 타교단의 생활이 본 교단의 신앙과 직제에 일치하는 교단을 노회들의 2/3 의 동의 얻어서 본 교단 관할권하에 받아들이는 일;
- v. 대회의 구성 요소가 되기에 합당하고 대회 지역 내에 존재하는 타교단을 받아들이는 일에 유사한 권한을 대회에 위임하는 일;
- w. 본 헌법에 설정된 절차와 일치되는 경우 타교단들과 연합하는 일(G-15.0300);
- x. 총회서기와 협의하에 총회 사무처의 사업을 검토하는 일.

- G-13.0104
회의
- 총회는 적어도 매 2 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총회장은 적어도 5 개 대회 관할권하에 있는 적어도 15 개 노회를 대표하는 이전 총회의 정기 회의에 총대였던 최소한 장로 총대 1/4 과 목사 총대 1/4 의 요청이나 동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 총회서기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총회장과 총회서기가 다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을 때 직전 총회장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의 총대는 전번 정기총회 총대나 그 대리 총대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회는 총대가 별세했거나 노회 회원권을 변경한 사람 대신 총대나 그 대리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임시회의 통지서는 전번 총회 정기회의의 총대 및 각 노회의 서기에게 늦어도 60 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 G-13.0105
정족수
- 총회의 정족수는 적어도 전체 대회의 1/4의 노회를 대표하는 50명의 장로와 50명의 목사, 도합 100명의 총대가 되어야 한다.
- G-13.0106
객원회원
- 총회는 자신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받을 객원회원을 결정할 수 있다.
- G-13.0107
- [이 조항은 218차 총회(2008년) 결정에 의해 삭제됨.]
- G-13.0108
대표위원회
- 총회는 G-9.0105 의 의무화 규정대로 상임대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대표의 증가 필요성을 가진 특정 분야의 공천의 필요성에 대해 총회 공천위원회에 조언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G-4.0403 에 열거된 인물 범주의 공정 대표 진행과정에 관해 총회의 각 모임(특별회의나 폐회된 모임이 아닌)에 보고해야 한다.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는 교단의 대회 수를 반영해야 하며, 각 위원은 서로 다른 대회에서 나오고, 위원 비율은 목사(남녀) 1/3, 남성 평신도 1/3, 여성 평신도 1/3 의 비율이어야 한다.
- G-13.0109
직원
- 총회 기관들의 총무나 행정 직원직은 G-9.0404, G-9.0703와 G-9.0704 규정을 따라서 또 평등고용 기회(G-13.0201b)를 위한 교단적 계획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고 채워져야 한다. 각 행정 직원의 정기적 평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G-13.0110
기록
- 총회는 그 절차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G-13.0111
총회 공천위원회
- a. 총회가 때때로 지명해야 하는 그런 이사회, 기관과 위원회 위원의 신중한 공천을 확인하기 위해, 총회 공천위원회는 총회에 그런 기관을 위한 공천 대상자를 제안해야 한다. 동수의 목사(남녀)와 남성 평신도와 여성 평신도의 추천을 고려해야만 한다. 공천위원회는 각 대회의 수와 같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위원은 서로 다른 대회에서 나오고 위원 비율은 목사(남녀) 1/3, 남성 평신도 1/3, 여성 평신도 1/3의 비율이어야 한다 (G-9.0801, G-11.0501, G-12.0102d, G-13.0202) 위원은 6년 임기로 임명하되, 위원의 1/3 은 각 정기총회의 마감시 시무기간이 끝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직전 총회의 총회장은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다음 총회의 폐회시 발생할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총회장은 그 해에 사망, 사임 또는 활동 불능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임명은 그 정규 공천 과정을 통해 대회와 협의해야 하며 총회의 포괄 정책의 공약을 반영해야 한다. 그 같은 임명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정되나 동일인을 전체 임기에 임명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천위원회에서 6년의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은 아무도

공천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하기까지는 공천위원회가 그의 임기 중 총회에 공천했던 기관에 재임명이나 임명이나 공천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임원선출

b. 공천위원회는 그 자체의 임원을 총회의 정기회의 이전의 마지막 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 공천위원회의 존재란 공천위원회가 제출한 공천 후보자 외에 어느 총대나 적합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데 있다.

G-13.0112
헌법자문위원회

a. 총회는 가능한 한 목사와 장로가 동수인 9 명의 위원으로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총회서기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어야 한다. 9 명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은 총회의 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원, 대회나 노회의 서기나 전 서기, 또는 교단의 헌법과 정치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질 있는 사람들여야 한다. 투표권있는 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서 공천되고,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 년조에 6 년 임기로 봉사하여야 한다. 헌법자문위원회에서 전체 6 년 기간을 임직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4 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재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적어도 연차회의 가짐

b. 헌법자문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총회가 개최되기 60 일 이전에 그 보고서와 제안을 하기 위해 총회의 각 당회가 열리기 전에 모여야 한다.

총회 120일 전 질문

c. 교단의 각 치리회나 개인으로부터 제기되는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다음 총회가 개최되기 늦어도 120 일 이전에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연락해야 한다.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 중

d. 총회서기는 그 모든 해석상의 문제를 헌법자문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단,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는 제외한다. 자문위원회는 그 결정 내용을 제안과 함께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 제안은 헌법 개정의 제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총회는 그 제안에 대하여 투표해야 하며, 그것을 개정이나 부결할 수 있다.

총회에서

e. 헌법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적어도 3인의 위원이 총회 회의석에 참석해야 한다. 헌법 문제에 관계가 있는 새 안건으로 소개된 모든 항목은, 헌법 문제를 내포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총회장의 판결을 요청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다 서면으로 이들 위원들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그들은 전체 위원회로서 행동하고 그들에게 회부된 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총회장을 토해 총회에 직접 제안해야 한다.

G-13.0200

2. 총회선교협의회의

G-13.0201
책임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 총회 중앙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a. 전체 교회의 영적인 복지를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일;
- b. 각 민중그룹 회원, 여성, 각 연령층, 결혼 상태에 상관없는 사람들(기혼자, 독신자, 미망인과 상처한 자, 이혼자), 또 신체장애자의 평등고용 기회와 소수계 보호법을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
- c. 총회선교협의회의 선교방향·대목표·소기목적·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총회의 재가를 받기 위해 제안하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당회·노회·대회가 진행 중인 선교업무를 고려하며, 총회선교협의회의 선교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부속 예산안을 총회 재가를 받기 위해 제안하는 일;

- d. 총회 또는 본 헌법에 의해 총회**선교**협의회에 지정된 특정 사안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되 총회 제정의 이전 정책과 항상 일치되게 하고, 이의 모든 것을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일;
- e. 총회에 의해 위임받은 대로 부과적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는 일.

G-13.0202
총회**선교**협의회
운영지침서

a. 총회**선교**협의회 회원자격, 제직의 임기, 제직자들은 총회**선교**협의회 운영지침에 마련된 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협의회는 각 대회 회원들을 포함해야 한다.**

총회 공천위원회

b. 총회 공천위원회는 공천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인지 파악하기 위해 총회**선교**협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G-4.0403 에 일치되게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제공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총회**선교**협의회 회원에 최소한 20% 민중 구성의 목표를 유지한다. 공천위원회는 G-9.0104, G-9.0105, G-13.0111 조항을 따를 것이며, 총회장과 전 총회장들을 제외한 회원의 1/3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남녀)가 되고, 회원의 1/3 이 남성 평신도가 되는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대략 동일한 크기의 3 년조로 위원들을 공천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임기 중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총회 정책에 의거하여 채워야 한다.

G-13.0203
운영지침서

중앙협의회는 행정 직원과 규모에 대한 규정, 그리고 다양성과 포괄성에 따른 협의회 회원의 특정한 대표성 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할 운영지침서를 대회와 상의하여 개발해야 한다(G-9.0104). 그 지침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14.0000

교 14 회 지도자

G-14.0100

종의 스타일

교회 목회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교회 지도력의 목적과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목회 태도를 본받아서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G-14.0120

안수 받은 목회

안수는 교회가 사람들을 노회원(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로 선별하고 기도와 안수가 따르는 행위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에 대한 안수는 노회가 행한다. 장로와 집사 직책에 대한 안수는 당회가 행하는데 새 교회를 조직하는 경우는 예외로서, 이 때는 노회가 제직원을 심사하고 안수하며 직책을 맡도록 취임한다 (G-7.0202)

G-14.0130

인정받은 목회

교회의 특정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의 자격에 대해 미국장로교회와 제휴된 공인 기구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와 노회는 각 해당 사역에 대한 그러한 자격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See G-14.0700.)

G-14.0140

파송받은 목회

크리스천 공동체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정한 제자직을 수행하도록 부르시어 각기 부여 받은 은사로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하도록 하신다. 이 같은 특정한 행위는 예배에서 공식 인정과 파송에 의해 격려되고 확인될 수 있다. (W-4.3000)

G-14.0200

장로와 집사의 직책에 대한 준비

G-14.0210

장로나 집사의 직책

장로나 집사의 직책은 항구적이며 본 정치형태나 권징조례의 조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함부로 그 직책을 치우거나 박탈할 수 없다. 장로나 집사는 당회나 집사회 시무에서 교체되었거나, 또는 그 개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해서 그 직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장로는 당회가 임명하면 그가 속한 개체교회 출신의 장로로서 노회 회원자격을 받으며, 당회의 시무장로이든 아니든 간에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대회나 총회의 회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G-14.0220

선거 조항

G-14.0221

공평한 대표제

모든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교인인 모든 연령층과 모든 민중층과 신체장애자를 공평하게 대표하는 원칙에 따라 그 활동교인들 중에서 남녀를 (개체 교회의) 장로와 집사 직책에 선출한다.

G-14.0222
임기

당회에 선출된 장로나 제직위원회에 선출된 집사는 그 임기가 3년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연속적인 임기 연한은 전체 임기이든 부분 임기이든 간에 6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장로나 집사가 계속 6년을 봉사한 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 같은 직에 재선출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개체 교회는 1 회의 임기를 완전히 마친 후 무자격 기간을 설정해 둘 수 있다. 장로나 집사를 2 개나 3 개 연조로 나누어 선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매년 한 조가 만기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장로나 집사의 임기는 그들의 후임자가 인수받고 취임되었을 때 끝나야 한다.

G-14.0223
공천위원회

지명권은 교회의 활동교인들을 대표하는 공천위원회가 갖는다. 동 위원회는 공평한 대표제 원칙에 따라 그 교회 교인인 모든 연령층, 모든 인종층과 신체장애자 중에서 남성과 여성 둘 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공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적어도 2 인은 당회가 지명한 장로들이어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은 현재 당회의 시무 장로이고 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위원회의 한 사람은, 교회에 집사들이 있다면, 집사회에 의해 지명을 받아야 한다. 동 위원회의 그 밖의 위원은 다수를 이루기에 충분한 수로서(목사는 제외) 교인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교회가 지명한 교회 내의 기구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되, 시무 당회원과 시무집사는 제외된다. 목사는 이 위원회의 투표권이 없는 직책상 회원이어야 한다.

G-14.0224
매년 선출

공천위원회 위원은 매년 선출하되, 아무도 계속 3년 이상 시무할 수 없다.

G-14.0225
공천 절차

모든 공천 절차는 G-4.0403 과 G-9.0104 에 명시된 대로 참여와 대표의 원칙에 종속된다.

G-14.0226
특정 교회에 대한 면제사항

개체교회가 특정 규칙에 대해 면제 받기를 요청할 경우 노회가 승인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이 면제를 검토하고 재가하거나 취소한다:

a. G-14.0221 조항에 따를 수 없는 특정 교회는 비합치성의 이유를 진술하고, 합치성을 위한 계획안을 개요하여 면제 요청을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G-14.0221 조항의 면제 요청은 노회에서 3/4 표결에 의해 한 번에 3년이상 허락해서는 안되나, 3/4 표결로 갱신이 가능하고, 또 다수결로 언제나 취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b. 70 명 미만의 교회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작은 교회 공천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도록 노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당회가 당회장으로 임명한 당회원 1명과 최소한 두 사람의 교인 대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직 당회원은 제외된다. 목사는 투표권이 없는 직책상 회원이어야 한다. 공평한 대표제 및 임기에 관한 타 조항들은 계속해서 적용된다.

c. 만일 어느 교회에서 교인수의 제한 때문에 윤번제 임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6년후 재선에 관한 제한조건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노회는 그러한 예외적용을 다수결에 의해 한 번에 3년간 허락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다수결에 의해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G-14.0230

공동의회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당회가 그 목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7.0302).

G-14.0231
공동의회 목적

당회장은 반드시 회의 목적을 설명한다.

G-14.0232
회의장 공천

언제나 충분한 기회를 교인에게 주어서 공동회의에 참석한 활동교인에 의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장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후보로 지명될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명 수락의사와 피택될 경우 봉사할 의사를 선언하게 한다. 그가 회의장에 참석했을 경우 봉사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G-14.0233
투표

후보 지명자의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의 수와 동수인 경우, 구두선거나 거수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후보 지명자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의 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 교회는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출석 투표자와 투표의 과반수로 선출되어야 한다.

G-14.0240

직책 후보자 준비와 시험

장로나 집사 직책에 당선되었으면 당회는 그 당선자들에게 그 직책을 기꺼이 감당하겠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회는 제직에 당선된 사람들이 공부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말미를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개인적 신앙; 교회 헌법에 내포되어 있는 교리, 정치, 권징의 지식; 그리고 그들의 직책의 의무에 관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당회는 안수식 및 취임식 날짜를 잡는다(G-14.0300 참조). 선출된 제직원 중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이 시험에 불합격이면, 당회는 그 사실을 그 교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위원회는 그 공석(들)을 채우기 위한 후보자(들)을 공동의회에 추천해야 한다.

G-14.0300

교회 제직으로 안수

안수, 취임, 파송의 질문과 예식에 관한 규례는 W-4.4000 에서 참조한다.

G-14.0400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의 준비

G-14.0401
지망과 후보에 대한 노회의
책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들이 목회후보생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들의 과제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G-9.0902) 이 목적을 위해서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이들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G-14.0402
자문서 (Advisory Handbook)

지망과 후보 단계의 절차와 요구사항들은 자문서 (Advisory Handbook)를 통해 마련되어야 하며 동 자문서는 필요에 따라 총회 산하의 해당 기구가 총회사무국과 협의하에 개발하고 갱신하며, 노회는 이를 채택하거나 수정을 가하여 자체적인 의무절차를 세울 수 있다. (G-9.0405)

G-14.0403
시간 요구사항

지망자가 지망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후원하는 교회에서 적어도 6개월간 회원으로 있어야 한다. 지망과 후보 과정의 기간은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년은 후보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G-14.0404
지망과정

지망과정의 목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지망생의 적합성에 관한 결정이 그 교회와 지망생 서로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야 할 것이란 방향에서 그 부름을 함께 추구해보도록 교회에게와 말씀과 성례전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G-14.0405
후보과정

후보과정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교회 봉사를 하도록 그 사람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데 있다. 이는 지원 관계의 맥락에서 교육 접촉을 이용하여 지도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G-14.0410

노회 및 당회의 의무

노회는 목회후보생위원회를 통해 당회에 지망과 후보 과정에 있어서 당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시해야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을 승인해준 당회에 특정한 지시를 주어야 한다.

G-14.0411 감독

지망이나 후보 과정의 기간에 그 개인은 계속 그가 속한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그 당회의 관심과 훈육을 계속 따른다. 목회 준비 관련 사항에 있어서 그 개인은 목회후보생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감독하에 있다.

G-14.0412
노회의 책임

노회는 지망생과 후보생의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을 실행한다. 즉 이해와 동정적 관심으로 지원해야 하고; 학습 과정,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정통, 실천 교육 그리고 교육 계획(학교의 선택, 실습교육, 지망생 및 후보생의 재정적 요구 포함)과 관련하여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 노회는 또한 교회의 신앙과 정책 안에서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지도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G-6.0108).

G-14.0413
당회의 책임

당회는 지망과 후보 과정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계속적인 돌봄이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장로 한 사람을 지망생이나 후보생과 노회의 해당 위원회와의 연락자로 임명해야 한다. 당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G-14.0420

계약 관계의 봉사

목회후보생위원회는 노회, 지망생과 후보생, 그리고 당회 간의 계약을 감독해야 한다. 지망생과 후보생이 특정 형태의 교회 봉사를 감독하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목회후보생위원회를 위한 자문서(Advisory Handbook)에는 지망생과 후보생의 목회 사역 및 목회수업 준비에 대한 감독·평가·보고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전에 장로로서 안수를 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장을 맡거나 성례전을 집행하거나 또는 결혼식을 집행할 수 없다. 이전에 장로로 안수를 받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성만찬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G-6.0304, G-7.0306, G-10.0103, G-11.0103z, G-14.0562 참조.)

G-14.0421
연례 보고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학업 보고서와 교회 봉사에 관한 연례 서면 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신학교나 신학교육기관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목사 준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노회는 지망생과 후보생의 평가와 양육을 위한 연례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이러한 연례협의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G-14.0430

고시

G-14.0431
5 개 목사고시 과목

지망생과 후보생은 신학교 입학 첫 해에 성경내용시험을 치루도록 권장 받는다. 나머지 4 개 분야의 고시는 보통 만 2 년의 신학교 교육이나 이에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후에만 치를 수 있고, 목사후보생이나 지망생의 노회 목회준비위원회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각 고시영역에서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과 적절한 감독하에 목회 실습경험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고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a. 성경내용.
- b. **오픈북(Open Book)** 형식의 성경 주석.
- c. 신학적 능력.
- d. 예배와 성례전.
- e. 교회 정치.

G-14.0432
시험 채점방법

이상의 5 개 전문 분야에 요구되는 고시는 G-11.0103m 에 있는 노회의 목회후보고시위원회의 감독 하에 노회의 대표자들에 의해 채점되어야 한다. 고시, 고시과목, 고시일정, 고시관리 절차에 관한 기술내용은 노회의 목회후보고시위원회가 계획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14.0440

봉사를 위한 절충

만 2 년의 신학교육이나 이에 동등한 자격을 마쳤으며, 또한 모든 목사고시를 만족스럽게 마친 후보생, 또는 G-14.0472 조항에 의거하여 노회로부터 목회시작 준비인준을 받은 후보생은 목회후보생위원회(CPM)와 적절한 목회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그의 또는 그녀 자신의 목회사역 절충에 들어갈 수 있다. 후보생이 만 2 년의 신학교육을 마치지 못했거나 모든 목사고시를 만족스럽게 마치지 못한 경우, 후보생의 노회는 그가 준비인준을 받기 전에 부름을 받고 절충에 들어갈 수 있도록 3/4 표결에 의해 허락할 수 있다.

G-14.0450

목회시작 준비에 대한 최종 평가

신학교육의 최종 학년에, 또는 후보생이 본 조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리고 후보생이 청빙을 받기 전에, 후보생의 노회 목회후보위원회는 후보생의 목회 시작 준비성에 대해 최종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개요가 반드시 노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청빙 노회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노회로 보내야 한다. 후보생이 청빙을 기다리면서 안수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목회후보생위원회가 그 자격을 인정할 때 동 위원회가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지망과 후보에 대한 결론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다음의 자격증명 요구조건을 하나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 a.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명;
- b. 지역적으로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이나 대학교의 졸업장과 만족할 만한 성적증명서의 제출;
- c. 신학교협의회 인가를 받았으며 노회가 인정할 수 있는 신학교육기관에서 받은 성적증명서, 그 성적증명서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적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과목 이수 및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석을 포함한 신학 학위를 마칠 계획서의 제출;
- d. 노회 목회후보고시위원회가 담당하는 5 개 분야에 걸친 시험 답안지와 함께 만족할 만한 성적의 제시.

G-14.0460

계약 관계 이전 또는 해제

G-14.0461
관계의 이전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계약관계를 타노회로 이전시킬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노회와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목회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 타노회 관할권하에 있는 개체교회로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이전해 갈 수 없다. 노회가 이전을 승인할 때, 타노회 이전의 승인증서, 그 개인의 기록들, 이전 요청의 이유를 보내야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 절차대로 따르지 못해서 실패하면 지망생이나 후보생으로서 자격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노회도 그런 후보생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없다. 단, 지망단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G-14.0462
타 개척과 교단

어떤 후보생이 타 개척과 교단의 관할권 아래서 일하도록 청빙 받았다면 그이나 그녀는 이명증서에 의해 후보생에서 물러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후보생은 이명증서에 의해 다른 개척과 교단으로부터 이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G-14.0463
계약관계에서 제거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와 목회후보생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계약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다. 노회는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명부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제거할 수 있고 이 결정과 그 이유를 당회와 그 개인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그 교육기관에 보고한다. 양자의 경우, 최종 결정 이전에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그 위원회에 와서 청문할 기회를 주도록 합리적 시도를 해야 한다.

G-14.0470

특례 상황

최종평가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들은 다음의 특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필히 충족되어야 한다:

G-14.0471

교육적 요구사항

만일 그 지망생이나 그 후보생이 교육적 요구사항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노회가 판정한다면, 노회원의 3/4 의 투표에 의해서만 예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예외에 대한 충분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노회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또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노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 예외조항에 명시된 교육과정의 성공적 이수는 목회를 시작할 준비에 관한 최종평가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G-14.0472

시험 요구사항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목사고시를 2 차례 시도하여 실패하지 않은 한, G-14.0431 에 규정된 시험 요구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 단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그들의 수험능력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장애가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노회가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문서로 증명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노회가, 그 사람이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 안수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면, 노회는 출석 노회원의 3/4 의 투표에 의해서만 예외적용을 인정해야 하며, 어려움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음을 만족시킬 교체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개인이 교체방법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노회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인준해 줄 수 있다. 노회록에는 예외 사유와 능력이 있음을 결정한 교체방법의 완전한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G-14.0473

시간 요구사항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시간의 요구사항에 왜 응할 수 없었는지,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정하지 않는 한, 지망과정의 시간 요구사항은 철회되지 않는다. 노회는 노회의 출석회원 3/4 의 투표에 의해서만 이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노회록에는 그런 예외의 충분한 이유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 설명이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하게 될 노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 요구가 1 년 이내이어서는 안된다.

G-14.0474

이전된 경우

전술한 예외는 타노회로 이전할 경우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노회가 타노회에서 이전하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이전 노회가 그들에 대해 승인한 요구사항의 면제 결정까지도 수용하는 것이 된다.

G-14.0480

목회직 안수는 전체 교회의 행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의 안수는 전체교회의 행위로서 노회가 수행하며, 그를 말씀과 성례전의 사람으로 선별하는 행위이다.

G-14.0481

시험과 안수 장소

보통 목회 후보생을 청빙하는 노회가 그 후보생을 심사해야 하며, 그 고시와 G-14.0450 조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후보생이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조건으로, 후보생의 목회준비를 책임진 노회가 그 후보생을 안수해야 한다.

G-14.0482
안수 시험

그 후보생은 노회 앞에 출두하여 간단한 개인적 신앙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직에 대한 결단의 선언을 해야 한다. 노회는 해당 위원회로부터 그 후보생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과, 청빙의 승인을 기다리면서 안수 준비를 확인 받았다고 하는 보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요청 및 허락된 면제의 개요를 포함해야 한다. 노회는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 후보생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 성경, 성례전과 교회 정치의 견해에 관하여 더욱 시험할 수 있다. 만일 그 노회가 후보생의 자격에 충분히 만족하면 청빙을 승인하고 그녀나 그의 안수와 취임 예식을 진행하도록 투표해야 한다.

G-14.0483
청빙 노회

청빙 노회는 후보생이 안수와 취임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후보생의 목회준비를 책임진 노회에게 확인해 주어야 한다. 보통 목회후보준비의 책임을 맡은 노회가 후보생의 목회안수를 해야 한다.(G-14.0300 참조.) 안수식이 끝난 후, 안수하는 노회 서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노회록에 기록하는 것, 후보생이 이전에 소속되었던 지교회에 통보하여 후보생이 이제 안수 목사가 된 사실과 노회명부의 이전 사실이 당회록에 기록되게 하는 것, 그리고 청빙 노회가 그 목사를 회원으로 등록하고 임직할 수 있도록 이명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G-14.0484
안수 장소에 대한 합의

노회들과 후보생이 합의할 경우, 청빙한 지역의 노회에서 안수를 거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노회는 청빙 교인들 앞에서 예배시간에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거행할 수 있다.

G-14.0485
안수 기록

노회는 그 공식 기록의 일부로서 안수와 취임을 기록하고, 새 목사가 안수 서약에서 약속하고 수락한 의무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 노회 서기의 의무는 새로 안수 받은 목사를 노회원으로 등록하고 이 사실을 총회사무국에 보고하는 것이다.

G-14.0490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

안수, 취임, 파송의 질문과 예식에 관한 규례는 W-4.4000에서 참조한다.

G-14.0500

목회 관계G-14.0510
제 159 문 취임 또는 임시
관계

모든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목회적 봉사를 받아야 한다. 목사와 개체교회 사이에 목회적 관계는 **취임**(영구 또는 임명) 관계이거나 **임시 관계**이다(G-14.0550 참조).

G-14.0510

취임 목회 관계G-14.0511
영구적 목회 관계

담임목사나 부목사(전임이나 시간제)의 영구적 목회 관계는 노회나 노회의 목회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설정되며, 이로써 교회가 투표로 선출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청빙을 승인한다.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는 노회에 의해 취임되고 당회원이 된다. 노회의 승인을 받은 청빙은 노회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교회의 요청에 따라, 혹은 노회가 목사와 교인들과 협의한 후 말씀의 교회 사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해소를 요구한다고 판정할 때라도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14.0512
동사목사

교회가 당회의 동의와 노회의 승인 하에 1 인 이상의 목사를 청빙하여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자격으로 교회 내의 임무를 분담하도록 모실 수 있다. 목사의 칭호는 동사 담임목사, 동사 부목사, 또는 다른 적절한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동사목사들이 있을 경우, 노회와 목사들과 당회는 각 목사가 당회를 사회하는 시간분담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 개체교회가 동사목사로 섬기는 2 명의 목사를 모시고 있다가 그 중 한 목사의 관계가 해소가 되는 때, 다른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남는다.

G-14.0513
계승과 특례적 상황

부목사의 한 교회에 대한 공식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목사는 함께 일해 온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의 차기 부임목사가 되거나 그 교회에서 동사목사로 청빙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단, 최소한 3 년간 실시되어 온 동사목사 모델을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런 모델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경우는 제외된다. 부목사는 당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에 의해 그이나 그녀의 사역을 지시 받아야 한다.

G-14.0520

임명 목회 관계

G-14.0521
임명목사 청빙

전임제이든지 시간제이든지, 임명목회 관계는 노회에 의해 설정된 2 년이상 4 년미만의 임기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로서의 청빙이다.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임명 관계에서 고려될 것을 양방이 합의해야 한다. 교회의 목사청빙위원회는 노회의 목회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목사들 가운데서만 추천하여 교인들이 숙고하고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 목사들은 노회에 의해 취임되고 당회원이 된다.

G-14.0522
청빙관계의 갱신 또는 종료

노회의 승인을 받은 청빙은 임기의 마지막 6 개월 기간 중 어느 때든지 갱신할 수 있으며, 노회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교회의 요청에 따라, 혹은 노회가 목사와 교인들과 협의한 후 말씀의 교회 사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나 해소를 요구한다고 판정할 때라도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1 인 이상의 목사를 임명목사 자격으로 노회가 지명하고 교회가 청빙하여 교회내의 임무를 당회가 동의하고 노회가 승인한 대로 분담 사역하도록 모실 수 있다. 1 인 이상의 담임목사가 있을 경우, 그 목사들과 당회는 각 목사가 당회를 사회하는 시간분담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G-14.0523
임명목사에서 담임목사로

만일 목회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공개 청빙 절차가 있었고 임명목사 관계가 최소한 2년이 지난 후, 그리고 목회위원회, 그 임명목사, 그리고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단일 목적을 위해 목사청빙위원회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당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회는 목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하여 목사청빙을 전면 추진케 하거나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을 속행할 수 있다. 공동의회 결정은 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공동의회 결정이 긍정적이면, 노회는 새로운 목회 관계를 승인하는 투표 후에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취임시켜야 한다.

G-14.0530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의 선출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부목사직이 공석일 때, 또는 목회 관계 해소의 효력 기일이 지났을 때, 교회는 목회위원회의 지도와 허락을

받아서 (G-11.0502d),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

G-14.0531
목사청빙위원회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교회에 목사를 선출하도록 한 목사를 추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G-7.0303b 조항에 따라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소집 시간과 장소와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G-14.0532
목회위원회와 협의

목사청빙위원회는 G-11.0502d 조항에 따라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청빙위원회가 교회에 보고할 준비가 되었으면 당회에 알리고, 당회는 G-7.0303b 조항에 의거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가 찬성일 경우,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G-14.0533
청빙서 서명

청빙서에 서명하고 노회 앞에서 청빙을 추진할 사람들을 공동의회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공동의회의 당회장은 노회에 이 청빙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선출된 자들이고, 그 청빙서 모든 면에서 헌법이 의무화한 대로 작성되었다고 증명해야 한다.

G-14.0534
청빙 조건

노회는 청빙이 연방 및 주 세법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목사 수당의 전액이 청빙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목회 사역 기간에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그 군의무와 군동원령 가능성에 대한 합의가 청빙조건에 추가되어야 한다. 만약 그 청빙이 전임이 아닐 경우, 정확한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청빙 조건은 항상 그 청빙서가 작성될 때 효력을 발생한 노회의 최저임금 요구조건에 맞거나 초과하는 보수를 마련해야 한다. 청빙조건은 또한 목사의 보수의 적절성을 검토할 교회의 의무를 포함하고, 그리고 목사의 보수가 노회가 수시로 수정하는 요구조건에 준하여 금액이 조정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그 청빙서는 연금과 의료보험혜택, 또는 총회가 승인한 어떤 승계자 플랜을 포함하는 등, 미국장로교의 혜택플랜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G-14.0540

목사의 취임

안수, 취임, 파송의 질문과 예식에 관한 규례는 W-4.4000 에서 참조한다.

G-14.0550

잠정 목회 관계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모든 잠정관계는 전임제이든지 시간제 근무이든지 간에, 당회에 의해서, 또는 목회위원회를 통한 노회의 승인으로 노회 전권위원회에 의해 설정된다. 이 잠정관계의 목사는 그 목사가 청빙을 받은 목회업무에 적절하게 노회 지정목사, 잠정설교자, 조직목사, 임시목사, 또는 기타의 칭호로 불린다. 잠정 목회관계에서 봉사하는 목사는 임기가 12 개월이 넘지 않은 특정기간 동안 청빙되며, 청빙 기간은 목회위원회의 승인으로 갱신될 수 있다. 목사, 당회서기나 노회전권위원회, 그리고 목회위원회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서나 계약서나 청빙 계약조건은 목회적 기능, 보수, 그리고 목회에 요구되는 특별 기술과 훈련을 명시한다. 잠정 목사는 취임되지 않으며 그리고 당회원이 아니다. 노회는 당회에서 잠정목사를 당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G-14.0551
곧바로 담임목사로 계승할 수
없음

조직목사가 아닌, 잠정적 목회 관계에서 시무했던 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영구직이나 임명목회 관계에서 봉사할 수 없다. 노회는 노회원 2/3 표결에 의해 잠정설교자가 차기 담임목사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G-14.0552
조직목사

조직목사는 새로운 장로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봉사하도록 노회에 의해 임명된 목사이거나 평신도 파송 목회자이다. 조직목사로서의 관계는 새 교회가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 종결된다. 그때 새 교회는 목회위원회와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목사청빙위원회의 선출과 목사 청빙을 행하지 않고 그 조직목사를 그 교회의 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또는 그 교회가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하고 정치 형태에 마련된 대로 전적으로 목사 청빙을 행할 수 있다.

G-14.0553
임시 목회관계

노회와 당회가 임시목사, 임시 동사목사 또는 임시 부목사가 필요하며 편리하다고 결정할 때, 당회는 목회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이임발표로 이임날짜가 확실해지면 곧 임시 목사를 구할 수 있다. “임시 담임목사, 임시 동사목사, 또는 임시 부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영구직이나 임명목회로 청빙받을 수 없다.

G-14.0560

평신도 파송 목회자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인을 돌보고 그들의 양육과 봉사를 마련해 주도록 노회에 의해 일정지역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미국장로교의 장로이다. 이 파송은 노회가 지정한 한 교회나 그 이상의 교회, 개척교회나 노회의 다른 인준받은 목회에서만 유효하다. 그런 장로는 노회에 의해 선출되고 노회가 허락한 훈련을 받는다. 그 장로는 성경, 개혁신학과 성례전, 장로교 정치, 설교, 예배인도, 목회적 돌봄과 가르치는 일에 교육받아야 한다. 그 장로는 노회의 해당위원회에 의해 개인의 신앙, 파송받고자 한 동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교육분야에 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파송을 받았다가 후에 지교회에서 사역을 중단한 장로는 계속 사역 후보 명단에 등록될 수 있으나 노회에 의해 지교회에 의해 임명을 받을 때까지 평신도 파송 목회자의 기능을 다시 수행할 권한이 없다.

G-14.0561
유효기간

그 파송은 노회가 결정한 3 년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노회의 재량으로 어느 때나 임기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노회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지적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평신도 파송 목회자의 사역 평가는 매년 해야 한다. 노회는 이러한 본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그의 사역이 지교회나 노회의 요구를 채우기에 적절치 않다고 평가받은 평신도 목회자의 파송을 취소해야 한다.

G-14.0562
기능수행 권한

노회가 당회나 여타 책임진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에 지교회에서의 선교전략에 그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노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추가 지시사항을 마련한 다음에, 노회는 아래의 a.- e.에 기술된 다음 기능의 어느 것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권한을 줄 수 있다.

- a. 성찬식을 집례한다.
- b. 세례식을 집례한다.

c. 노회의 감독하에 그리고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의 초청이 있을 때, 또는 노회에 의해 당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지교회의 당회를 사회한다.

d. 당회나 책임진 다른 위원회에 의해 초청받았을 때, 그리고 그 주(州)가 허락했을 때 결혼식을 집행한다.

e.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그런 투표권은 동물의 목적으로 장로총대로서 계수될 경우다.)

G-14.0563
목회적 돌봄과 비밀유지

평신도 파송목회자로 봉사하는 이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동일한 기존의 신뢰와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된다 (G-6.0204).

G-14.0564
감독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봉사하는 교회의 당회장을 통해서나 목회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감독하에서 사역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한 사람을 지도자와 감독자로서 선임해야 한다.

G-14.0565
질문을 했을 때

노회가 신청자의 자격에 만족할 때 그 신청자에게 질문 i 를 사용하여 G-14.0300 의 헌법상의 질문을 물어야 한다: 당신은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고, 또한 선교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충성된 파송 평신도 목회자가 되시겠습니까?

G-14.0570

협동목사 관계

협동목사는 타지역 교구의 어느 인준받은 목회에 봉사하거나 일반회원이거나 은퇴한 목사이지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 개체교회나 여러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목사이다. 이미 노회의 계속회원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협동목사로 봉사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협동목사, 당회와 노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목사는 '필요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직원의 수석인 담임목사에게 책임을 수행한다.

G-14.0571
곧바로 담임목사로 계승할 수 없음

협동목사는 협동목사의 관계가 끝난 지 적어도 6 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협동목사로 시무한 교회의 차기 담임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G-14.0572
노회의 감독

노회는 협동목회관계 목회위원회가 그 회원 목사들에 대해 그리고 노회지도 하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연례검토를 수행하는 등, 감독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G-14.0573
관계의 종료

당회, 협동목사, 그리고 노회 사이의 계약은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이 해소될 때 종료된다. 노회는 협동목사와의 관계를 목회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해소할 수 있다.

G-14.0600

담임 목회 관계의 해소

G-14.0610
노회에 의한 해소

담임목사, 부목사, 그리고 교회 사이의 목회 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관계 해소를 위한 절차 개시를 목사가 한 것이든 또는 교회나 노회가 한 것이든 간에, 항상 공동의회에서 동

사안을 숙고하고 G-7.0304a(3)조항 대로 해소를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G-14.0611
목사에 의한 요청

목사가 노회에 목회 관계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목사는 또한 그이나 그녀의 의도를 당회에 진술해야 한다. 당회는 그 요청에 대한 결의와 노회에 제안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노회는 교회와 목사가 동의하는 경우, 그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목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일 교인들이 관계해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회는 교인들이 선출한 전권위원들을 통해서 노회가 그 관계를 해소시켜서는 안될 이유를 교회로부터 청문한다. 만일 교회 대표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관계 유지를 위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목사의 요청이 허락되며 그 목회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G-14.0612
교회에 의한 요청

만약 어느 교회가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교회는 정당하게 소집된 공동의회 후 그 목사와의 관계 해소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사회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G-7.0306 에 의거하여)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사회해야 한다. 교회와 목사가 동의하는 경우 노회가 목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그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목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가 그 관계를 해소시켜서는 안될 이유를 목사로부터 들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계 유지를 위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14.0613
노회의 결의

노회가 노회 목회위원회나 행정전권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목사와 당회와 교인들과 협의한 후(G-7.0304a(3)), 말씀의 교회 사명이 불가피하게 목회관계 해소를 요구한다고 판정할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G-14.0620

명예(원로)목사

어느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은퇴하고 교회가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영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정기 공동의회에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그러나 목회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이 그이나 그녀를 명예(원로)목사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지혜로운 것인지의 여부를 노회 목회위원회와 자문을 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노회의 승인에 달렸고 담임목사나 부목사 관계의 정식 해소 시에, 또는 그 후 어느 때든지 효력이 발생한다.

G-14.0630

초청에 의해서만 집례

전임의 담임목사들, 부목사들, 보조목사들, 그리고 그 개체 교회와 본 장에서 정의된 목회관계가 없는 목사들은 오직 당회장의 초청에 의해서 또는 당회장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회 서기의 초청에 의해서만 개체교회 교인을 위한 예식이나 교회 시설 안에서 행하는 예식에서 집례를 할 수 있다.

G-14.0700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G-14.0710

기독교 교육자

기독교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진지한 목적이 있고 정직한 성품을 지니며 봉사를 즐기는 사람이다. 개체교회를 섬기는 기독교 교육자들은 당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담임목사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은 사역하는 교인의 영적성장을 준비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수업 교재와 자원을 추천하는 일, 평신도사역자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일, 교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과 기타 업무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일을 분담한다.

G-14.0711

훈련

기독교 교육자들은 성서해석, 개혁신학, 인간개발, 종교 교육의 이론과 실천, 미국장로교의 정치, 프로그램, 선교에 있어서 기술과 훈련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기대받는다. 그들은 본 항에 정의된 자격 인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당회와 노회의 격려를 받아야 한다.

G-14.0720

기독교 교육자 자격인정서

미국장로교회의 교육목회에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총회가 기독교 교육자 연수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관한 책자를 제공해야 하며, 그 인정절차는 총회선교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자인정위원회가 관리하고 인정서를 수여한다. 동 자문서에는 또한 대회와 노회에서 지역적 상황에 맞는 용도로 채택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과 책임성에 관한 바람직한 모범이 제시되어야 한다.

G-14.0721

자격 인정 절차

그 자문서(Advisory Handbook)는 교육자의 학문적 준비와 시무 경험을 평가하고 다음의 지식과 기술 분야에서 능력을 시험하는 자격 인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성경해석

개혁신학

인간개발

종교교육 이론과 실천

미국장로교 정치

미국장로교의 프로그램과 선교

예배와 성례전

G-14.0722

교육자인정위원회

교육자인정위원회는 인정 표준을 수립하고, 노회와 협의하여 교육자 인정 자문관을 임명하며, 인정시험을 평가하고, 인정서를 수여하며, 총회선교협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G-14.0730

노회와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노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인정절차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들이 자격인정서를 받기 위해 애쓰도록 격려하고, 교육자 인정자문관을 통해 지도를 제공하고, 자격인정서를 추구하는 교육자들에게 평생교육 기금과 시간을 마련해주도록 당회에 촉구한다; 그리고

b.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지를 제공한다: W-4.4003 (G-11.0103n)에 명시된 헌법상의 질문들을 포함하는 인정예식; 보수와 혜택의 기본 조건 설정(G-11.0103n); 목회위원회와 의사 소통 (G-11.0503).

노회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에게 모든 회의석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만을, 그리고 안수받은 장로인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에게는 G-11.0101b 조항에 의거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노회 관할의 교육목회직 임기 중에** 허가할 수 있다. (G-11.0407)

G-14.0731
인정예식

노회가 교회의 유자격교육자 직책의 신청자 자격에 만족할 때, 인정예식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서 질문 i 를 사용하여 헌법상의 질문(G-14.0300)을 물어야 한다: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며 충성된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가 될 것이며, 또한 선교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G-14.0732
Duty to Report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와 준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가 교회 봉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학대 •태만과/또는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에 관한 정보를 (1)비밀보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방법으로 얻었을 때; 또는 (2) 앞으로도 신체적 손상이나 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그 또는 그녀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 당국과 민사 사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G-14.0740

여타 유자격 고용직원

여타 유자격 고용직원들이 개체교회와 치리회와 교회 관계기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개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힘쓴다.

G-14.0741
조직 협회

그 목적 때문에 전문인 그룹은 공동체와 지원과 전문직 개발을 위해 조직되었다. 몇몇 이 협회들은 총회기관들과 공식 연락관계에 있다. 이 그룹들에는 행정인사협회, 장로교 음악인협회, 장로교 사무행정가협회, 그리고 여타 협회들이 포함된다.

G-14.0742
자격인정서

인정서는 개개 협회가 감독하고 수여하며, 인정에 관한 요구조건들에 대해 총회**선교**협의회 산하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한다.

a. 행정인사협회(APA)의 회원은 사무직원, 행정부 부책임자, 장부계원, 교회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보조직원을 포함한다.

b. 장로교 음악인협회(PAM)의 회원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목사, 그리고 예배 경험에 있어서 음악의 자질과 성실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c. 장로교 교회행정가협회(PCBAA)의 회원은 지교회와 교회 관련기관에 행정가로서 주로 봉사하는 목사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G-14.0743
신분의 통보

이 협회를 통해 인정서를 취득한 자의 이름은 총회**선교**협의회 산하의 적절한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고, 거기서 총회사무처와 이들이 사역하는 노회 지정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G-14.0744
노회에 의한 인정

a. 노회는 그들의 자격인정서 교부시 노회에서 그들을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W-4.4003의 헌법상의 질문을 묻고, 이들 고용인들은 노회 회의에 초청하여 그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자격증을 가진 평신도 고용인들의 기술과 헌신을 공식석상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

b. 노회가 교회의 유자격 목회직 지원자의 자격조건에 만족할 때, 인정예식의 자리를 마련하며, 여기서 질문 i 를 사용하여 헌법상의 질문(G-14.0300)을 물어야 한다 :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며 충성된 유자격 _____가/이 될 것이며, 또한 선교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G-15.0000

제15장 관련성

G-15.0100

1. 에큐메니칼 관여

G-15.0101
개방성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성을 더욱 가시화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교단 및 세속 그룹들과의 대화, 협력과 행동을 같이할 기회를 개방할 것이다.

G-15.0102
타교단들

미국장로교는 다른 장로교파 및 개혁신교 교단, 또한 다른 기독교 교파, 연맹, 협의회, 협회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며, 그들과 더불어 선교에 참여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G-15.0103
전체 수준

본 교단의 모든 치리회는 각기 차상급 치리회와 협의하에 타기독교 교단과 더불어 공동 선교^a를 위한 효과적인 에큐메니칼 기관들을 창시하고 강화하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G-15.0104
비기독교 종교 단체

미국장로교는 기독교 외 다른 종교 단체와의 대화와 이해의 새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나누게 되고, 대립 없는 수단과 목적이 존재하는 곳에 공동 행동이 취해지도록 한다.

G-15.0105
세속 그룹

미국장로교는 세계 교회 선교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약속하는 운동, 조직, 사업기관, 교육, 문화 및 공공단체와도 대화와 공동 행동의 접근을 주도하고 반응할 것이다.

G-15.0200

2. 다른 교파와의 관계

G-15.0201
연락관계에
있는 교파들

a. 미국장로교총회는 총회가 승인한 에큐메니칼 합의서에 의해 인정받은 교회들과 완전교제를 갖는다.

b. 총회는 여러 교파의 최고 치리회와 통신관계에 있다

(1) 미국 밖에 있는 역사적 관계가 있는 여러 교파들,

(2) 우리 교단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연합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 그리고과도 연락하고 있으며

(3) [총회가 승인한 에큐메니칼 합의서에 의해 인정받은 교회들.

G-15.0202
안수 인정

기독교의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노회의 관할권하에서 일하도록 적절한 청빙을 받을 때, 그 노회는 의 헌법적 조건(G-11.0404-0405)이 충족된 후, 그 목사의 이전 안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목회 직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본 교단에서 타교단으로 목사를 이적시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G-15.0203
교회의 접수 및 해소

a. 타교단의 개체교회가 본 교단의 노회에서 회원으로 받아 주기를 요청했을 때 그 노회는 그 교회가 그 관할권의 치리기관에 의해서 정식으로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교파간에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그 교단의 최고 행정기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책임과 권리에 일치시켜 그 교회를 받아들여야 한다(G-11.0103h).

교회의 해소

b. 본 교단의 개체교회가 타교파로 옮기고자 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G-11.0103i).

G-15.0204
연방, 또는 연합교회

a. 노회는 어느 개체교회가 타교파나 다른 교파들의 한 교회나 여러 교회와 연방 또는 연합교회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고, 또는

연방 교회

타교파나 교파들의 대등한 치리회와 제휴하여 연방 또는 연합교회를 조직할 수도 있다. 연합교회의 형성에 관하여서는 G-16.0000 을 참조하라.

b. 연방교회는 노회와 다른 치리회나 치리회들과의 합의 계획하에 그 교회생활과 사역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 계획은 G-16.0000 의 실제적 명세 규약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 또는 다른 조직 문서) 정책에 따라야 한다. 헌법이 다를 때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의 규정이 허락하는 모든 경우에 한 교단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언제나 의무 규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각 교단의 치리 해당기관에 상소하여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상의 수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G-15.0300

3. 교회 연합

G-15.0301
조직적 연합

어느 다른 교파와 본 교단 교회의 완전한 조직적 연합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 a. 총회의 연합안의 승인과 노회들에게 제안;
- b. 노회의 3 분지 2 의 서면 찬성으로 승인;
- c. 다음 총회에 의해서나 제안된 연합교회의 제안 안에 명시된 다른 총회에 의한 승인과 완결.

G-15.0302
에큐메니칼선언

a.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장로교는 본 교단의 정기적으로 선택한 교회 대표가 도와서 만든 에큐메니칼 의견 일치의 안내 선언문을 때때로 받아도 된다. 그런 에큐메니칼 선언문을 받는 목적은 본 교단의 개체교회와 각 치리회 교회의 일치를 모색하고, 가능한 미래적 형태를 발견하려는 공동 행동을 타교단과 취하도록 교회들을 지도하려는 데 있다.

총회에 의해 채택

b. 이 같은 에큐메니칼 선언문은 그런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각 노회에 선언문의 특수 목적과 승인의 효과와 함께 보내서 긍정이나 부정의 표결을 얻어야 한다. 다음 총회가 에큐메니칼 선언문을 각 노회의 다수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진술서가 에큐메니칼 활동 참여에 지침서 역할을 한다.

접수된 에큐
메니칼 선언

c. 총회가 시인하고 다수 노회가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에큐메니칼 선언문은 “ 접수된 에큐메니칼 선언 지침서 ” 로서 출판하여야 한다. 그런 선언문은 제 18 장 “ 개정 ” 에 맞추어 채택되지 않는 한, G-1.0500 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접수된 에큐메니칼 선언문의 지침하에서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칼 활동은 오로지 헌법의 규정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d. 치리회들은 미국장로교가 완전 교제를 갖고 있는 교파들과는 상호 확인과 권고아래 있으므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참여하도록 격려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G-16.0000

제16장 연합교회

G-16.0100

1. 개혁과 교회의 개체교회

G-16.0101
타개혁과 교회와 연합

본 교단의 개체교회는 타개혁과 교단의 한 개체교회나 여러 교회와 합하여 연합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G-16.0200

2. 연합 계획안

G-16.0201
연합 계획안 총칙

이 규정들은 그런 교회들과의 연합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a. 각 교회가 각 교단 헌법이 요구한 통지와 정족수로 소집된 정기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2/3 가 그 연합 계획을 승인하고 또 각 교단의 노회(또는 비등한치리회)가 특별한 연합과 이 연합 계획안을 승인했을 때 _____장로교회와 ____교회에의 해_____년 _____월 _____일부로 다음의 연합 계획안이 채택되었다.

명칭

b. 이 연합의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며, 세계에서 교회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마련해 주고, 이 연합교회에 의해 우리는 연합하는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을 함께 나누며, 연합교회를 위해 목사나 목사들의 사역을 마련해 준다.

종속

c. 본 연합교회 명칭은 _____교회라 칭한다.

기록 검토

d. 본 연합교회는 아래 항목 r, s, u, v 에 설정한 대로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해야 한다.

교인

e. 당회(또는 비등한 치리회)는 매년 또는 요구하면 언제나 그 기록을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인 보고

f. 연합교회의 교인은 연합 당시 교회 교인들과 연합교회의 당회가 받아들인 교인으로 한다.□

제직

g. 연합교회의 당회는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전체 교인 수를 똑같이 보고해야 하고, 그 교인 수를 총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의 회의록에 연합교회의 보고임을 밝히고 실제 전체 교인수도 지적해서 기록해야 한다. 교회학교 학생 숫자, 세례받은 자들 등의 유사한 보고, 그리고 재정 지출서도 당회가 만들어서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직 선거

h. 주로 연합교회의 제직, 곧 장로와 집사는 무엇보다도 연합하는 교회의 활동 제직들이어야 하고, 위의 항목 d와 아래 항목 r, s, u, v 에 지적된 대로, 각 교단의 헌법 아래서 안수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연합교회의 목사들

i. 교회 연합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이어 모이는 첫 연례회의에서 상기항목 h에서 지적된 제직들을 대체하기 위한 새 연조별 제직은 아래 항목 v의 결과로서 유효한 헌법 절차에 따라 연합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j. 연합하는 교회 목사들의 목회관계는 이 계획을 승인한 노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교회의 뜻에 따르고 치리회의 승인하에 연합교회의 목사(담임목사나 부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 정회원 k. 연합교회의 목사나 목사들은 직속 관할권의 각 치리회의 정회원과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아래 항목 s에 마련된 치리를 받아야 한다.
- 법인체 l. 연합교회는 해당 주 법하에서 법인체를 조직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항목 b, c, d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재산 m.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위의 항목 l항에 의해 형성된 법인체에 이양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교회의 법인체의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 또는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의 관리에 책임이 있다.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교회의 책임 부담이어야 한다. 교회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
- 재단이사 n. 법인체의(또는 비법인체의)이사는 아래 항목 v에 해석된 항목 d에 밝힌 헌법 규정에 따라 민법과 조화를 이루어 선출되어야 한다.
- 자선헌금 o. 어떤 목적이나 목적들을 지정해서 개인 선물을 바치는 기증자의 기본권은 인정하면서, 연합 당회는 일반 선교헌금이나 자선 프로그램 헌금을 바치도록 공동의회에 매년 제안해야 하며, 이것들은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비율은 상급 치리회의 요청에 따라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정해야 한다.
- 상회비 p.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교회의 전체 활동 교인 수에 근거해서 관할권의 치리회에 지불하되 그 관련 교단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
- 당회 q. 연합교회의 모든 교인은 당회의 치리 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된 대로, 다른 편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한 교단헌법의 의무규정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 상소 또는 고소 r. 당회의 조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나 고소는 교인의 선택에 따라 다만 상급 치리회(노회 또는 비등한 치리회)에만 할 수 있고, 부가적 상소와 고소는 본래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회 안에서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당회와 교인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 사법 사건 s. 목사나 목사들은 노회나 그와 비등한 치리회의 권징에 속해야 한다. 어느 치리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타치리회로부터 위원을 초청하여 전권위원, 기소자나 고소 내용을 만들고 추진할 기소위원회에 참여케 해야 한다. 상소의 경우, 그 사건은 상소를 시작한 그 교회의 최상급 치리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 사항은 관할권의 치리회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 연금 t. 목사나 목사들은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가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교단의 연금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면, 회원권은 그 계획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둘 중 어느 한 연금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적 고소

u. 당회의 행정관리 조처에 반대한 고소는 고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 한 쪽 상급 치리회에 고소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단은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헌법이 상치

v. 교단간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이 허락하면 한쪽 교단의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상기 q 항에 주어진 규정을 제외하고), 연합교회의 당회는 그 상급치리회에 건의해서 최고 치리회로 하여금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 상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해산

w. 연합교회는 1 년 이하, 그리고 2 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두 공동의회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관련 치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그 상급 치리회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x. G-11.01031 에 따라서, 연합 회중과 타 교인이 참여한 상급치리회와의 협의 후에, 노회는 이 회중의 노회 내에서의 회원권을 해소할 수 도 있다. 이 회중의 모든 재산, 즉 동산 및 부동산은 실제로 존재할 수 도 있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한에 따라 교회가 보유하거나 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약에 의해 교회와 노회사이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

G-16.0300

G-16.0301
타교단 교회와의 연합

3. 다교단의 개체교회

노회의 승인과 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 교단의 개체교회들은 개혁과 교회이외의 타교단의 하나, 또는 더 많은 개체 교회들과 연합교회를 만들 수 도 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세례와 성찬^a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일 때다.

G-16.0400

G-16.0401
연합 계획안 총칙

4. 연합 계획안

다음의 연합 계획안이 연합교회를 형성시키려고 할 때 채택되어야 한다:

교회의 치리

a. 연합교회는 아래 항목 l, m, o, p 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치리

b. 연합교회는 그 교인 중에서 교인에 의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이 치리회는 당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치리회의 회원이 장로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연합 계획안이 장로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치리회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원

c. 연합교회의 치리회의 회원은 상급 치리회의 회원과 직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 보고

d.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전체 교인 수를 똑같이 보고해야 하고, 각 교단의 회록에 연합교회의 보고임을 밝히고, 또 실제 전체 교인수도 지적해서 기록해야 한다. 교회학교 학생수, 세례 받은 자들 등의 유사한 보고서, 그리고 재정 지출서도 치리회가 만들어서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목사들	e. 연합교회의 목사나 목사들은 직속 관할권의 각 치리회의 정원회 및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아래 조항 m에 마련된 처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체	f. 연합교회는 해당 주법이 허용하면 법인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조항 a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재산	g.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상기 조항 f에 의해 형성된 법인체에 이양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교회의 법인체가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이나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을 관장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교회의 책임 부담어어야 한다. 교회 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
이사	h. 법인체(또는 비법인체)의 이사는 아래 조항 p에 해석된 상기 조항 a에 밝힌 헌법규정에 따라 민법과 조화를 이루어 선출되어야 한다.
자선헌금	i. 어떤 목적이나 목적들을 지정해서 개인 선물을 바치는 기증자의 기본권은 인정하면서,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일반 선교헌금이나 자선헌금을 바치도록 공동회의에 매년 제안해야 하며, 이것들은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비율은 상급 치리회의 요청에 따라 치리회가 결정하는 대로 정해야 한다.
상회비	j.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교회의 전체 활동 교인 수에 근거해서 각 관할권의 치리회에 내되, 그 관련 교단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
처리	k. 연합교회의 모든 교인은 피차 합의된 법규에 따라 치리회의 처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곳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 대로, 한쪽 법규들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한 교단 헌법의 의무규저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치리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소 또는 고소	l. 치리회의 조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나 고소는 교인의 선택에 따라 다만 하나의 상급 치리회에만 할 수 있고, 부과적인 상소와 고소는 본래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회 안에서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그 치리회와 교인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사법 소송	m. 목사나 목사들은 관할권의 치리회의 권정에 속해야 한다. 어느 치리회가 어떤 소송 행동을 취할 때는 타치리회로부터 위원을 초청하여 전권위원, 기소자나 고소 내용을 만들고 추진할 기소위원회에 참여케 해야 한다. 그 사건은 상소를 시작한 그 교회의 최상급 치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 사항은 관할권의 치리회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연금	n. 목사나 목사들은 여러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가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교단의 연금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면, 그 계획의 회원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연금 계획에 가담 되어 있지 않았으면, 둘 중 어느 한 연금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적 고소

o. 치리회의 행정적 관리 조치에 반대한 고소는 고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일단 한쪽 교단에 고소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단은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상치

p. 교단간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이 허락하면, 한쪽 교단의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때(상기 k 조항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상급 치리회에 건의해서 최고 치리회로 하여금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해산

q. 연합교회는 1 년 이하, 그리고 2 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두 공동의회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관련 치리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그 상급 치리회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r. G-11.013i 에 따라서, 연합회중과 타 교단이 참여한 상급치리회와의 협의 후에, 노회는 이 회중의 노회 내에서의 회원권을 해소할 수 도 있다. 이 회중의 모든 재산, 즉 동산 및 부동산은 실제로 존재할 수 도 있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한에 따라 교회가 보유하거나 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약에 의해 교회와 노회사이에서 나누어 질 수 있다.

G-16.0500

5. 예외

G-16.0501
헌법 변경 불가

본 장에 의해 조직된 연합교회, 그 교인들, 그 직원들이나 목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항목 1, 2, 3 과 4 에 있는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본 교단의 헌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17.0000

제17장 연합 치리회

G-17.0100

1. 위임 수권

G-17.0101
위임 수권

본 교단의 노회는 각각 소속한 대회나 비등한 치리회^a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개혁파 교단에 속한 하나나 그 이상의 치리회와 연합노회를 형성할 수 있다.

G-17.0200

2. 연합 계획안

G-17.0201
연합 계획안

다음의 연합계획안은 간여한 각 노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총칙

a. 본 계획안은 _____ 노회와 _____ 노회 해 정기노회 참석 회원 2/3 투표로써 각 노회가 그 계획안을 승인했 사안이 의사록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연합과 이 계획안이 관할권의 (또는 비등한 치리회)의 승인을 얻었 (일자)로 채택되었다.

목적

b. 연합의 목적은 연합된 증거와 선교의 촉진, 일원화한 양육 프로그램의 행정, 지속과 연합노회 경내에 있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연합하는 치리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보유하고 기능을 마련 하며, 각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의 의무를 수행할 연합노 회 경내에 있는 교회들을 관할 하는 데 있다.

헌법상의 요구

c. 연합노회는 아래에 규정된 대로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해야 한 다:

회록

(1) 노회는 그 기록을 매년 또는 요구하면 언제나 관할권의 대 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교비

(2) 노회는 각 교단에 동등하며 완전한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개체교회에 매년 요구하여 자선 헌금과 일반 선교비를 조정해 야 하고, 결국 노회는 각 교단의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지지해야 한다.

상회비

(3)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노회의 활동교인의 능력에 근거해 서 각기 관할권의 치리회에 지불하되 관련 교단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관할권의 치리회의 승인으로 대안의 근거를 채택할 수 있다.

상설 법규

(4) 연합노회는 피차 합의된 법규에 따라 대회와 총회(또는 비 등한 치리회)의 치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 경 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 대로, 다른 편이 허용하는 경 우에는 각 교단법의 의무규정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 는 경우에는 그 노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소 또는 고소

(5) 노회의 조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와 고소는 다만 한 교단 의 대회에만 해야 한다. 그 교단은 노회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고 같은 사건에 있어 부과적 상소나 고소는 본래 결의한 치리회 안 에서 해야 하고, 이루어진 결정은 그런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 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적 고소

(6) 노회의 행정조치에 반대하는 고소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p>일단 한 교단에 고소했으면 다른 교단의 치리회가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p>
헌법의 상치	<p>(7) 각 교단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타교단이 허락하면 한 교단의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4)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연합노회는 그 교단의 최상급 치리회에 현의해서 권위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서 상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p>
면제	<p>(8) 미국장로교의 G-8.0500의 규정은 연합노회의 형성 이후에 조직된 연합교회에만, 그리고 전에 비슷하게 명시된 헌법 규정하에 있었던 연합 치리회에 속한 연합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p>
연합노회의 회원	<p>d. 연합노회의 회원은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목사들과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교회들(장로나 그 평신도 대표자), 그리고 연합 발효일자 이후에 연합노회에 접수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교단의 헌법이 장로나 평신도 대표자에 관해 서로 다른 경우, 최다수 대표성을 선호하는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p>
회원권	<p>e. 연합노회의 교회들은 각 교단에 속한 연합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 개체교회는 전체 회원의 균등한 분할에 근거하여, 이런 일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명시와 함께 각기 총회와 관할 대회에 보고해야 한다.</p>
목사	<p>f. 연합노회의 목사는 각 교단의 정회원, 그리고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목사들은 본 계획안에 마련된 대로 교단의 관할권과 치리에 속해야만 한다. 목사와 장로나 평신도 대표는 각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대로 어느 총회의 총대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 총회의 총대는 노회의 전체 활동회원의 공평한 분할에 근거해서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p>
일반 선교비와 자선헌금	<p>g. 연합노회는 그 개체교회에 일반 선교비와 자선 헌금 프로그램을 제안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들은 총회와 대회의 요청, 그리고 노회의 필요에 대한 타당하고 공정한 응답이라고 판단된다. 각 당회는 교인들에게 일반 선교비와 자선 헌금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법인체	<p>h. 연합노회는 해당 주 법하에서 법인체를 조직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항목 b와 c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이 조항하에서 형성된 법인체나 법인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노회의 법인체의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이나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의 관리 책임이 있다.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노회의 책임 부담이어야 한다. 교회 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p>
상설 규정	<p>i. 연합노회는 각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회의 모든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회의 운영을 정의할 수 있는 상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G-17.0201c(4)).</p>
연금 계획	<p>j. 목사의 소명 수행을 위하여 노회나 노회 소속의 어느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하는 목사나 노회의 직원인 목사는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연금 계획에 가담</p>

하고 있다면 회원권은 그 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계획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을 선택하여 회원이 되어야 한다.

해산

k. 연합노회는 1년 이하, 그리고 2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노회의 두 정기회의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관련 대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될 수 있다.

(1) 연합노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노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만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재산의 본래 소유에 근거해서 교단이나 관할 치리회 사이에 분할을 해야 한다. 만약 본래의 소유가 미결일 경우에는, 재산은 적절히 교단이나 관할 치리회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 해체된 연합노회 안에 개체교회는 그들이 G-16.0201w의 규정에 따라 신분 변경을 위한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연합교회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G-17.0300

3. 예외

G-17.0301
헌법 변경 불가

본장에 의해 조직된 연합노회, 그 교회들이나 목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연합 계획의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본 교단의 헌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18.0000

제18장 개정

G-18.0100

1. 개혁

G-18.0101
개정에 의한 개혁

미국장로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에 의해서 항상 개혁했고 항상 개혁 중인 교회의 그 역사적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신앙 가운데서 개정 절차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의 말씀을 통해 더 밝은 빛을 주시니 성실성의 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G-18.0200

2. 고백문서

G-18.0201
고백문서 개정

a. 본 교단의 고백문서들^a 은 오로지 다음의 방편으로써만 개정될 수 있다:

- (1) 총회에 의한 개정안 승인과 각 노회에 그것의 제안;
- (2) 각 노회의 2/3 의 투표로 서면 승인;
- (3) 차기 총회에 의한 승인과 제정.

특별위원회

b. 고백문서의 그런 개정이 각 노회에 송부되기 전에, 총회는 그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한 대회에서 2명 이하, 총 위원수 15명 이상의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나 개정안을 발의한 치리회(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와 협의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그 제안을 보고해야 한다.

G-18.0300

3. 규례서

G-18.0301
규례서 개정

규례서 개정은 다음의 방편으로써만 개정할 수 있다:

- a. 모든 규례서의 개정안은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일 이전에 총회서기에게 서면으로 통신 연락하여야 한다.
- b. 총회서기는 그러한 모든 개정안을 헌법자문위원회(G-13.0112)에 회부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규정과의 적합성을 위해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헌법적 변경을 제안한 개정안과 그 위원회에 이첩된 그 제안을 받을 것이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보고와 어떤 제안을 고려하기 전에는 어떠한 개정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c.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노회에 투표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제안된 개정안을 회부받은 노회는, 총회가 폐회한 다음 그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기한 내에 가부에 관한 투표를 총회서기에 보내야 한다.
- d. 총회 서기가 각 노회에 회부한 규례서 개정안이 다수 노회에 의해서 긍정적 투표를 얻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가 폐회한 다음 그로부터 1년 후 효력을 발생한다.

G-18.0302
개정 불가 조항

정치형태의 다음 조항은 개정될 수 없다:

G-8.0701

G-18.0400

4. 특별 규정의 개정

G-18.0401
특별 규정의 개정

고백문서들의 개정과 완전한 유기적 연합을 이룬 특별 규정들은(G-15.0300) 그것들이 규정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예배모범

The Directory for Worship

W-1.0000

제1장 크리스천 예배의 활력

W-1.1000

1. 크리스천 예배: 서론

W-1.1001

크리스천 예배

크리스천 예배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세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한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행위에 응답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믿는 자들은 예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게 준비된다.

W-1.1002

하나님의 주도권

a.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며, 언행으로 자기 계시를 하신 하나님 행위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자신들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응답하도록 그들을 감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심

b. 하나님 백성이 최초로 기억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면에 관하여 전한다. 하나님을 창조와 언약에서, 회개의 촉구와 용서를 주시는 일에서 주도권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예레미아서 1:10).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심

c.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 구속, 용서의 행위로서 완전히 인간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진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를 속죄하시고 인간의 삶을 회복하셨다. 창조하신 세계에 그렇게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창조주를 알고 찬양하는 방편으로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인간 생활을 완성케 하셨다.

W-1.1003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 응답

a.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생활은 혼돈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었고,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이루었다.

b. 나자렛의 예수는 하나님께 인간적 응답을 완벽하게 바치시었다. 구속하시는 생명이 구속받은 생명의 형태로 목적으로 나타나신다. 예수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 예배의 본질을 표시한다.

W-1.1001: 사 6; 계 4:11; 스코트고백 3.01; 제2스위스고백 5.023, 5.135; 웨스트민스터고백 6.112, 6.113; 대요리문답 7.214, 7.215; 소요리문답 7.046, 7.047, 7.050, 7.051; 1967년도 고백 9.35-9.37

W-1.1002: 롬 10:13; 고전 11:26, 12:3; 스코트고백 3.02, 3.04-3.06, 3.12; 1967년도 고백 9.07-9.09, 9.18, 9.20

W-1.1003: 렘 33:1-9; 요 1:1-14; 빌 2:9-11; 히 1:2; 계 19:11-16; 스코트고백 3.06, 3.09-3.11; 제2스위스고백 5.062, 5.064, 5.146; 웨스트민스터고백 6.043-6.047; 1967년도 고백 9.07-9.11, 9.19

일상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c.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생활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증거에서 선포된 그 분은

- (1) 창조 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 (2) 계약의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고,
- (3)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은
 - (a)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 (b) 십자가에 못 박시고,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며,
 - (c) 승리하사 심판과 통치하시려 다시 오신다.

W-1.1004

말씀과 성례전의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행동화된 말씀과 인침된 성례전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 성경과 말씀선포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권능을 부여하고 인간 삶을 지속시키심으로써 임재하신다. 크리스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 (1) 선포된 말씀을 들으며,
- (2) 성례전으로 행동화된 말씀을 받으며,
- (3)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며, 그리고
- (4) 세상 안에서 말씀을 따르도록 보냄 받았다.

W-1.1005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 크리스천 응답

a. 태초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기고 사람들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다. 예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위임하셨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령은 계약의 새 공동체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목회 사역을 위해 준비케 하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천의 개인 응답은 공동체 안에 있다.

예배와 봉사 안에서 응답

b. 하나님 백성은 찬양의 말과 행동으로써, 기도와 선포와 기념과 봉헌의 행위 안에서 감사를 드림으로써 응답한다. 그리스도

W-1.1004: 요 1:14-18; 롬 10:8; 고후 4:4b-6; 빌 2:5-11; 골 1:15; 바르멘선언 8.11, 8.14, 8.17; 1967년도 고백 9.07, 9.20, 9.27, 9.30, 9.35-9.37

W-1.1005: 마 28:20; 요 14:18-; 롬 12:6,8; 고전 12; 엡 4:12-; 뱀전 4:10; 하이델베르크문답 4.055; 1967년도 고백 9.17-9.19, 9.20, 9.22, 9.31-9.33

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 그리스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 (1)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 (2) 사적인 제자직으로,
- (3) 상호 목회 안에서, 그리고
- (4) 세상에서 공동 목회를 통해서.

W-1.2000

2. 예배의 언어

W-1.2001

하나님께 응답의 언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은 예배의 언어를 통하여 그 절대적 주도권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임재를 기원하며,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침묵과 명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 숙이고, 손을 들어 찬양의 말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춘다. 마음과 영혼으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의 언어와 연극과 장려한 행렬에 백성들이 참여한다.

W-1.2002

상징적 언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 체험을 서로 소통할 때는 반드시 상징적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초월해 계시고, 피조물의 어느 것으로도 격하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간적 상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하는데 적절치 않으며, 하나님의 실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활동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응답하는데 적절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인간들과 화해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 a. 창조된 질서를 통해,
- b. 계약 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그리고
- c. 성육신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말로, 행동으로 표현된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충실할 때, 이것들은 크리스천 예배에 적절하고 참된 상징들이다.

W-1.2000: 제2스위스고백 5.217; 1967년도 고백9.50

W-1.2002: 사 40:18-25,55:8,9; 요 1:1-18; 롬 11:33-36; 골 1:15-20; 히 1:1-3

W-1.2003
구약의 상징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한 분을 예배하면서, 창조주, 계약을 만든 분,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목자, 위로자, 최고통치자, 생산자, 담지자(擔持者)로서 하나님을 말함으로써 인간 체험의 상징을 구사하였다. 그들은 자연세계에 있는 바위, 생수, 불, 독수리, 암탉, 사자 또는 빛의 성격을 하나님께 귀속시켰다. 그들의 예배는 상징적 행동 언어로도 총만되어 있었다:

금식하고 풍족히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울부짖으면서
행진하고 휴식하는 가운데,
춤추고 손뼉을 치면서,
정결과 봉헌으로서,
할례와 기름부음으로써,
번제의식과 속죄제로서,
정의와 자비의 베품으로,
음악과 노래로 주를 경배한다.

W-1.2004
신약의 상징들

a.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관하여 구약의 상징들과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예배의 상징적 행위에 참여했다. 많은 경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개인화했고, 친숙한 상징들에 대해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다. 이는 하나님을 아바(Abba), 즉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른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신랑, 사람의 아들 등으로 지칭하는 등, 많은 구약의 상징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의 강도를 더하였다. 그는 자선 행위, 세례, 빵을 떼는 일과 같은 당대의 종교 관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예수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적 자비의 행동들, 즉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발을 씻기시는 일등을 하셨고, 이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

b. 부활하신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이 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현실에 대해 구약의 상징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상징적 언어도 사용하였다: 즉 영원한 말씀, 모든 피조물의 첫 탄생, 적대하는 분

W-1.2003: 시편, 이사야 또 다른 시가와 예언서들

W-1.2004: 요 1:1, 36; 고전 15:45; 엡 2:14; 골 1:15

열의 벽을 무너뜨린 우리의 평화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 찬송과 다른 찬양의 형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참된 상징으로 영광속에서 찬양되었다(W-1.1003-.1005).

W-1.2005
참되고 적절한 언어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문화 속의 교회는 성경 속의 상징과 이미지와 이야기와 단어들을 예배에 사용했고 채택하였다. 교회의 이런 언어의 사용이 항상 본래적이고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표현의 개혁파 교회 전통에서, 언어의 문화 역사적 사용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서적 증거를 반영할 때 본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언어는 예배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공동체의 고유한 언어로 주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절한 것으로 증명된다. 본질상 적절한 언어는

- a. 이성적 분석적이기 보다는 풍부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b. 알리고 묘사하면서도, 점증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 c. 질서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 d.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전 신앙공동체의 말이어야 한다.

적절한 언어는 성서적 진리를 각 전통의 말과 행위의 형태로 참되게 반영하는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려고 힘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 전통의 언어를 존중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적절한 새 예배언어를 찾아 새롭게 혁신하려는 자유가 있다. 오랜 전통의 형식과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언어를 재구성할 수 있다.

W-1.2006
포괄적인 언어

a. 미국장로교(PCUSA)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들이 하나로 된 가족이므로, 그 예배에 쓰일 적절한 언어는 이 백성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형식과 행위와 언어 또는 예배의 환경이 그 교회 구성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의 표현을 배제하거나, 교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필요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된다.

다양한 언어

b. 교회는 예배에서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성경과 신학의 전통이 다양하고 다른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양하고 다른 언어로 사용하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 일원들 모두가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단한다. 전세계를 향해 증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서적 진리에 충실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성별이나 피부색깔이나 삶의 기타 조건에 의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나 잘못하여 배제하는 일이 없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힘쓴다.

W-1.3000

3. 시간, 공간, 물질

W-1.3010

a. 시 간

W-1.3011

안식일, 주의 날

(1) 크리스천은 어느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계약 공동체는 매일 예배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특별히 따로 선별하시고 주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전적으로 주님께 바치는 날로 선별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약에서는 주간의 첫째 날, 부활의 날을 새 계약의 백성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켰다.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

(2) 아주 초기부터 교회는 주의 날에 말씀의 선포와 해석 그리고 성례전 축하를 위해 모였다. 개혁파 전통은 주의 날을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 속에서 성례전을 축하하는 시간으로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W-3.2001; W-5.5001).

W-1.3012

매일 예배

(1) 이스라엘 예배에서는 매일 찬양과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도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졌다. 예수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두었고, 신앙공동체는 성전에서,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모여 매일 기도하였다.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권고하였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무(聖務)의 일과로서 불리운 매일 기도를 위한 특별 시간을 전 시대를 통하여 지속하였다.

기도와 성경

(2) 개혁파 교회 전통은 성무(聖務)의 일과 모범을 채택했으며, 기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성경봉독 및 그 해설을 듣는 행

W-1.3011: 창 1:3, 14-; 2:3; 출 20:8-11; 신 5:12-15; 행 20:7; 계 1:1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03; 제2스위스고백 5.223-5.226; 웨스트민스터고백 6.118-6.119; 소요리문답 7.060; 대요리문답 7.226-7.227

W-1.3012: 행 1:14; 2:42; 3:1; 10:9;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사를 마련한 것이다. 매일의 공중 예배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면서 교회의 삶과 증거의 차원으로 권고된다. 매일의 공중 예배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면서 교회의 삶과 증거 차원으로 권고된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족의 매일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했고, 이는 크리스천 삶의 정기적 훈련의 일부가 되도록 권장되고 있다(W-3.4000; W-5.2000; W-5.7000).

W-1.3013
교회력

하나님께서 날들을 만드시고 요일을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기를 만드셨고 예배의 절기를 지정하셨다. 구약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경배의 축제행사로써 금식의 절기와 잔치의 절기를 지켰다. 예수님은 이러한 축제 절기들을 지키셨다. 신약의 교회에서 축제 절기들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의해 변화였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은 이러한 절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배의 연례 주기가 정해지고 교회 생활에서 봉독되고 선포될 교훈의 선택을 하게 된다. (W-3.2002; W-3.2003).

W-1.3020
W-1.3021
구약

b. 장소

크리스천들은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왜냐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간도 만드셨고 질서도 주셨기 때문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셨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특정한 장소가 인정되었으며, 그러한 만남을 기억하고 만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곳이 돌로 쌓은 족장들의 제단이든,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의 회막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의 성전이든 또는 흩어진 유대인 예배당이나 회당이든 간에, 각기 그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며 표현하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W-1.3022
예수

계약공동체의 예배장소에 대한 이해는 예수의 생애를 반영한다. 그분은 정기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광야와 갈릴리 언덕에서 예배하셨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한정시키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W-1.3013: 롬14:5, 6; 골 2:16, 17

W-1.3020: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W-1.3022: 요 4:21-24

W-1.3023
초대교회

크리스천 예배의 실재를 확인하는 일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던 까닭에 초대 크리스천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카타콤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예배를 볼 수 있었다. 말씀을 해석하고 빵을 떼는 무리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거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모이고 찬양과 예배로 응답하는 특별한 장소를 선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교회가 모일 때 예배의 본체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에 있다.

W-1.3024
장소 배치

한 예배 장소가 선별되었을 때, 그 곳은 접근하기 편리한 곳이고 모임을 갖기 용이한 곳이어야 하고,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교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 곳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설교하거나 강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곳에서 성례전을 축하할 수 있게 적절한 관리되어야 하고, 세례반이나 세례못, 그리고 주의 만찬 축하에 적절한 성찬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공간 배치에 말씀과 성례전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중심 사이에 있는 핵심관계가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W-1.4004)

W-1.3030

W-1.3031
구약

c. 물질

하나님께서서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그것을 좋다고 선언하셨다. 계약공동체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물질이 하나님을 적절히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표현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법궤, 진설병, 짜서 만든 수놓은 천, 대야, 기름, 등불, 악기, 곡식, 과일, 동물 등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표현물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대용으로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경고했다.

W-1.3032
예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물질의 실재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그의 목회활동에서 그물, 생선, 광주리, 향아리, 기름, 진흙, 수건과 대야, 물, 빵과 포도주 등 평범한 물건들을 이용하셨다. 이런 물질들 안에서,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는 백성을 축복하시고 치유하셨으며, 그들을 화해케 하시고 공동체 안

W-1.3024: 제2스위스고백 5.214-5.216

W-1.3031: 암 5:21-24; 사 1:11-17; 미 6:6-8; 참조 시50편; 1967년도 신앙고백 9.16

에 묶어 두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셨다.

W-1.3033
교회: 성례전

(1) 초대교회는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셨듯이, 예수를 따라 생명의 주요한 세가지 요소인 물과 빵과 포도주를 취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기본 상징으로 삼았다. 세례수로 씻김 받음으로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봉헌하였다. 그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지속적 임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 계약의 약속을 명령했으며 순종의 서약을 새롭게 하였다.

개혁전통: 성례전

(2) 개혁과 교회의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례전으로 이해했다. 성례전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임재와 권능의 징표요, 하나님 행동의 상징이다.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원을 인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며 섬기도록 그들을 인치신다.(W-3.3601)

W-1.3034
예배 시 물질 이용

(1) 교회는 크리스천들의 삶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 속한 것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자신을 바치는 제물의 징표와 상징으로서 그들이 만든 것과 주요한 소유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색채, 질감, 형식, 음향, 동작의 풍요함이 예배행위에 도입되었다.

예술적 표현

(2) 개혁과 교회의 유산은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물질 예물을 가져오도록 권장했으며,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룩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진리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준다. 하나님 백성들은 건축, 비품, 설비, 제의, 음악, 연극, 언어와 동작 안에서 창조적인 표현으로 응답해왔다. 이러한 예술적 창조력이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일깨울 때, 그것들은 예배에 적절한 것이 된다. 예술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 아름다움 자체가 목적으로서 봉헌될 때는 우상숭배가 된다. 예술적 표현은 하나님의 실재하심과 은총에 대해 예배자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복돋으며 고양시키고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W-1.3033: 스콧고백 3:21; 하이델베르크문답 4.066-4.068; 제2스위스고백 5.169-5.180; 웨스트민스터고백 6.149-6.153; 소요리문답 7.092-7.093; 대요리문답 7.272-7.274

W-1.3034: 제2스위스고백 5.020-5.022; 1967년도 고백 9.50

W-1.3040
선교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다. 크리스천 예배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목적에 참여하도록 이끌면서, 세월을 아끼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며 물질적 현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모시키는 것이다.

W-1.4000

4. 예배의 책임과 책임 소재

W-1.4001
책임

예배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하라는 성경의 명령,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 예배가 반드시 정해진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정성이 없고 무질서한 예배는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예배 책임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보편교회의 역사적 경험, 개혁파 교회의 전통, *신약고백서*, 예배공동체의 필요와 특수 상황, 그리고 정치형태 및 이 예배모범 조항에 의해 지도받아야 한다.(W-3.1001; W-3.1002)

W-1.4002
평가와 감독

이 같은 지도원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회를 대신하여 개체 예배 회중의 사역을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자들은 당회와 함께 예배의 질적 요소, 그것을 주관하는 수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 등을 논의해야 한다.(G-11.0502c)

W-1.4003
예배 참여자와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직을 가지며 그 안에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 목회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공중예배에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깔, 계급, 연령, 성별, 또는 지체부자유의 이유로 참여나 지도자 역할에서 제외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받은 은사나 교육에 의해 예배를 인도하는 특정 행위로 부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 교인들이나 안수 제직들로 하여금 예배인도를 조력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W-1.3040: 미 6:8; 롬 12:1; 엡 6:16; 약1:22-27; 웨스트민스터고백 6.174

W-1.4001: 갈 5:1; 고전14

W-1.4003: 벧전 2:9-; 1969년도 고백 9.39

W-1.4004
당 회

개체교회에서는 당회가 예배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예배에 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당회는 정기적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a. 말씀의 설교
- b. 성례전 거행
- c. 단체 기도와
- d.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 바침(W-2.0000-W-3.0000).

당회의 권한은,

e. 목사에게만 위임된 책임을 제외하고, 개체교회 삶 속의 모든 공중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일(W-1.4005)

f. 예배 행사, 날짜, 시간, 장소를 결정하는 일.

당회의 책임은,

g. 예배 장소 마련 및 성구와 비품을 비치하고 정돈에 대해,

h. 꽃, 촛대, 깃발, 제의, 헌금접시, 기타 장식도구 같은 특별 비품 사용에 대해,

i. 교회의 음악과 그 밖의 예술에 관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

j. 음악, 연극, 춤, 기타 예술을 통해 예배 인도에 대해 (G-10.0102d).

W-1.4005
목 사

a. 목회자로서 담임목사는 당회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는 특정한 책임이 있다. 특정 예배에서 목사의 책임소관은,

- (1) 봉독할 성경 교훈 선택,
- (2) 설교 준비와 설교, 말씀의 주해,
- (3) 교인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 봉헌, 예배시 교인들이 사용할 기도문 준비,
- (4) 부를 찬송 선택,
- (5) 연극, 춤, 그 밖의 예술 형식 사용.

목사는 특정한 예배 예식을 계획함에 있어서 예배위원회와 협의할 수도 있다(G-6.0202).

목사와
성가 지휘자

b. 목사는 찬양음악과 기타 봉헌음악이 그 특정한 예배에 적절한지에 대해 성가대 지휘자나 다른 음악담당자(가 있는 경우)와 협의한다. 당회는 이러한 협의가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인한다.

W-1.4006
당회와 목사

예배요소들의 순서와 조화를 이룩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며 당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중예배에서 회중이 사용할 찬송가, 성가집, 예배서, 성경, 기타 자료의 선택은 목사의 동의를 얻고 음악담당자와 교육담당자(가 있을 경우)와 협의해서 당회가 결정한다.

W-1.4007
당회의 교육 책임

당회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교인들을 적극 권면하는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교인들의 나이와 관심분야와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크리스천 예배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W-3.5202; W-6.2000; G-10.0102d, e, f). 당회는 또한 교회의 제직교육을 위해서도 정기적인 성경공부시간을 마련해야 한다(G-10.0102k, l).

W-1.4008
노회에 보고 의무

예배의 책임 수행에 대해 목사와 당회는 헌법에 의해 회원 감독권을 행사하는 노회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G-11.0502c).

W-1.4009
노회의 교육 책임

노회는 회원교회들에게 격려와 지도와 자원 제공의 책임 이행을 위해, 적절한 교육 이벤트를 주선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목사 후보생의 안수시험과 목사의 계속회원권을 위해 시취할 때 이 예배모범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예배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G-11.0103f; G-14.0482; and G-11.0404-.0405).

W-2.0000

제2장 크리스천 예배의 구성요소

W-2.1000

1. 기도

W-2.1001

크리스천의기도

기도는 예배의 중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 의해 발견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청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은총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다. 기도는 말의 기도, 노래의 기도, 침묵의 기도, 또는 행동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 기도는 성령에 응답하는 가운데 개인 삶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기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공동체의 삶에 의해 형성된다.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결단에서 나온다.

W-2.1002

기도의 내용

우리는 기도를 통해 수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 그대로 숭배하고 찬양한다. 우리는 감사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고백기도를 통해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회개를 시인한다. 우리는 간구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모인 공동체를 위해 간구한다. 우리는 중재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전세계를 위해 기원한다. 우리는 자기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우리를 바친다.

W-2.1003

기도로서 음악

찬송가와 기악 음악

찬송은 기도로써 자신의 전부를 개입시키는 온몸의 응답이다.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건 집이건 또는 다른 특별한 장소이건 간에 공동의 기도 안에서 그들을 하나되게 한다. 계약 백성들은 언제나 노래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를 바쳐왔다. 시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중에 불리어지도록 지어졌다. 시편은 응답으로 읽거나 함께 봉독할 수 있지만, 노래로 불리워질 때 그 힘이 가장 크게 표현된다. 찬송으로 불리어질 때 힘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시편에 덧붙여서 신약의 교회는 찬송과 영가를 불렀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로부터 교회는 공중기도를 위한 음악형식을 추가하여 발전시켰다. 이같이 다양한 음악형식을 기도 대신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학적 음악생활에서 우리나라의 그것들을 사용토록 격려받았다.

W-2.1004

기도로서 음악

성가대와 기악

회중을 기도의 노래로 이끄는 것은 성가대와 다른 음악인들이 담당하는 일차적인 역할이다. 그들은 입진송(Introits), 응답송, 그리고 기타 음악 형식으로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다. 언어가 기도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악(器樂)이 기도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그 목적을 즐거움이나 예술적 표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음악이 단순히 어색한

W-2.1000: 하이델베르크문답 4.116-4.118; 제2스위스고백 5.218-5.221; 웨스트민스터고백 6.114-6.115; 소요리문답 7.0798-7.099

W-2.1003: 열 5:19; 골 3:16

침묵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기도로서 음악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치있게 바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참조W-2.2008, W-3.3101).

W-2.1005 신·구약에서 그리고 여러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말과 기도의 행동화 노래로, 행동으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 a.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또는 일어서서 손을 높이 올리면서 기도하고,
- b.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기쁨과 찬양으로 열싸 안으며,
- c. 중재기도와 간구기도에서, 파송식과 안수식에서 기쁨을 붓고 손을 얹는 것.

W-2.2000 2. 성경봉독과 선포

W-2.2001 교회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고백한다. 어디서나 그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면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현존하신다. 이런 이유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고백하는 것은 크리스천 예배의 중심이 된다. 당회는 공예배시에 그 개체교회의 공통언어로 성경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봉독되고 선포되도록 한다.

W-2.200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모든 공예배시에 봉독한 성경본문을 고를 책임이 있고, 또 이 때 교인들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일 예배시에는 구약, 신약의 서한과 복음서를 봉독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편의 전 범위도 예배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W-2.2003 공예배시 봉독할 본문은 교회력의 절기와 개체교회의 목회적 관심사, 성구집 세계적인 사건과 조건 그리고 그 교회의 특정 프로그램 강조점에 맞게 선택되어야 한다. 교회에 의해 제공되는 성구집들은 보편교회와 일치되고 연관된 폭넓은 독서목록이 되어야 한다.

W-2.2004 하나님 백성들은 가족예배와 개인예배에서 읽을 성경본문을 고를 때 이 성경을 읽는 훈련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W-5.3000).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예배에서 읽는 성경 본문이 성경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훈련을 행사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W-2.20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예배 때 봉독할 성경 본문의 번역판을 선택할 번역판 책임이 있다. 만일 의역이 읽히거나 개작이 만들어지거나 새 번역이 나왔으면, 회중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W-2.2000: 스룻고백 3.18-3.19; 제2스위스고백 5.001-5.007; 웨스트민스터고백 6.001-6.010; 6.116 소요리문답 7.088-7.090; 대요리문답 7.113-7.115, 7.264-7.270; 바르멘선언 8.11-8.12, 8.26; 1967년도고백 9.27-9.30, 9.49

W-2.2006 성경의 공중 봉독은 분명한 발음으로 잘 들리게 의미가 명료하게 성경의 읽기와 듣기 전달되도록 읽어야 하며, 그렇게 읽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성경봉독을 듣는 것은 기대감과 정신집중을 요구하며, 예배의 일부로서 교인들이 성경을 교독하거나 교송하거나 함께 읽을 수도 있다(W-3.3401).

W-2.2007 말씀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모인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확신으로 선포된 성경말씀이어야 한다. 설교는 성경공부에 있어서 근면함과 분별성이 있을 것을, 매일기도에 규율이 있을 것을, 인간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연마된 민감성이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성이 있을 것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설교는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직제상의 이유로, 말씀의 설교는 보통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당회 동의를 받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가 위임한 다른 사람을 초빙할 수 있으며, 담임목사 부재 시에는 당회가 초빙할 수 있다. 노회가 설교할 분을 보낼 수도 있다(G-6.0304; G-11.0103g, k; G-11.0502f; G-14.0420; G-14.0550; G-14.0560).

W-2.2008 말씀은 성경에 바탕을 둔 찬양과 독창으로, 성경이야기를 전하는 칸타타와 다른 형식의 선포 오라토리오로서, 시편과 아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의 진리를 전하는 찬송과 영가와 신령한 노래로서도 선포된다. 예배에서 노래는 봉독되고 노래되고 행동화되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의 응답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연극과 춤, 시와 축제행렬, 기타 인간 예술형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하고 응답하는 표현이 되어 왔다. 예술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떠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W-2.2009 사람들은 말씀의 봉독과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을 신조와 신앙고백을 신조와 신앙고백서들 통해서도 표현한다(G-2.0100). 교회는 다음에 관련하여 그 신앙고백을 한다.

- a. 보편교회
- b. 그것의 특별한 역사적 유산, 그리고
- c. 지역적 상황.

교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축하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할 때는 보편교회의 신조를 사용해야 한다 (W-3.3603). 고백된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서 입증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판별된다.

W-2.2010 교인들이 말씀 선포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을 위해 듣는 것이다:

말씀 듣기

- a.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
- b. 그가 제공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
- c.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참여는 성령의 조명에 좌우되며, 이를 간절한 기도로 구해야 한다. “듣기”와 “들음”이라는 말은 단지 감각의 인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W-2.3000

3. 세례

W-2.3001

예수와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표시이며 인침이다. 예수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 예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의해 아들로 입증받았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종의 길을 택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부활하신 주 예수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표준새번역). 제자들은 넘치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섬기는 생활을 살기로, 포용적인 예배공동체가 되기로,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생활을 나누기로 다짐하였다.

W-2.3002

세례에서 죽고 살아남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세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지게 한 것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세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명된 하나님 은총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향하게 한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

W-2.3003

계약과 세례수

세례에서 성령은 그 교회를 주님이신 창조주와 계약으로 묶는다. 세례수는 창조의 물과 홍수의 물, 그리고 출애굽의 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세례수는 하나님 창조의 선하심과 노아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연결되게 한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 세대 가운데 나타나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하였다(암 5:24).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표현, 즉 정화수의 뿌림에 수반하는 새 언약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예수는 목회사역에서 생명수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의 표시이며 인침이다.

W-2.3000: 스콧고백 3.21-3.23; 하이델베르그문답 4.069-4.074; 제2스위스고백 5.185-5.192; 웨스트민스터고백 6.154-6.160; 소요리문답 7.094-7.095; 대요리문답 7.275-7.277, 7.286-7.287; 1967년도고백 9.51

W-2.3001: 마 3:15; 28:19-20; 막 10:38-40; 행 2:38-47

W-2.3002: 롬 6:3-11; 골 2:12

W-2.3003: 창 1:2; 렘 31:31-34; 겔 36:25-27; 요 4:7-15; 7:37, 38; 고전 10:1, 2; 벧 3:20-21

W-2.3004
은혜의 계약에 포함

할례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에서 포용성의 표시이고 상징이었던 것처럼, 세례도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약에서 포용성의 표시이고 상징이다. 하나의 신분 표시처럼 세례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하나님의 신실하심,
- b. 죄의 씻어냄,
- c. 새로 태어남,
- d.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음
- e.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침받음,
- f. 교회의 계약 가족으로 양자됨,
- g.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조명 받음.

W-2.3005
그리스도와 일치 상호
일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화합하는 가운데, 세례는 그들을 서로 뭉치게 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의 교회들과도 화합한다. 인종과 성별, 신분과 나이의 장벽에서 초월해야 한다. 국적과 역사와 관습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W-2.3006
세례 은혜 회개 파송

세례는 선포된 말씀을 행동화하고 인침한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고, 그 은총에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례는 회개하고 신실하고 제자직으로 향하라는 부름이다. 세례는 교회에 정체성을 주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하라고 파송하는 것이다.

W-2.3007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와 인침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도, 세례에서 표시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恒常)하시고 확실하시다. 세례는 오로지 한 번만 받는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시작을 뜻하고 완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회개와 새 생명으로 부르시며 부단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롭게 되어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반복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세례는 그 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직면하는 각 단계마다 결단을 요구한다. 이는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어릴적부터 신앙가정에서 양육된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W-2.3008
‘하나의 세례’: 그 의
미

a. 신자들과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계약의 사랑에 포함된다. 신자들의 자녀는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신앙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든지 어린이 세례로서 집행하든지 간에 하나이며 동일한 성례전이다.

W-2.3004: 창 17:7-14; 요 3:5; 행 2:39, 22: 16; 고전 6:11, 12:12-13; 고후 1:22; 갈 3: 27; 엡 1:13-14; 5: 14; 골 2:11-12; 딛 3:5

W-2.3005: 고전 12:12-13; 갈 3:27-28; 엡 2:11-22; 4: 4-6

W-2.3006: 마 28: 18-20; 눅 3:3, 8-14 | 행 2: 38, 41-47; 참조 사 44:3; 요 4: 7-15; 7:37-38; 계 7:17, 22: 17

- 어린이 b. 어린이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 성인 c.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하여 계약에 들어간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 신실한 응답으로 이행을 요구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 W-2.3009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는 일이 예배 중에 여러 번 있다. 다른 사람의 세례예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만찬의 지속적인 양육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세례때 한 결심을 재확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약에 순종한다고 새롭게 서약한다.
- W-2.3010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세례도 하나이다(엡 4:4-6). 미국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기독교 교단이 거행한 모든 물세례를 인정한다.
- W-2.3011 a. 직제상의 이유로 세례의 허가는 당회가 하며, 세례의 집행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하거나 당회가 초대하고 노회의 허가를 받을 때 파송 평신도목사가 할 수 있으며, 세례 후에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뒤따라야 한다(G-11.0103p; W-3.3602-3608). 세례는 공예배의 예식으로 거행된다. 전체 회중의 예배와 떨어진 곳에서 세례의 거행을 요구하는 특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원이 1명 이상 참석한다;
 - (2) 성례전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목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3) 가능한 때 당회와 협의한다;
 - (4) 집행한 목사가 세례 사실을 보고하며, 당회가 이를 기록한다.
- 기관목사들 b. 치리회는 병원이나 교도소나 학교 등의 기관목사들이나, 치리회가 허가한 목회나 공기관 증거를 맡고 있는 기타 목사들이나, 군인이나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군종 목사들이나, 치리회 관할의 새개척교회에 관여하는 목사들에게 세례의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세례를 거행했을 경우, 말씀과 성례전 목사는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개체교회의 교인 명부에 등록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등록은 교회의 당회와 협의하여 사전에 주선할 수 있다. 아니면, 치리회가 그러한 새 세례인을 치리회 관할의 특정 개체교회에 부재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개척교회가 새로 조직될 때까지 치리회의 보유 명단에 등록되도록 마련할 수 있다.
- W-2.3012 세례에 관한 당회의 책임은
- 당회의 책임 a. 부모에게 어린이 세례를 권면하고, 신자의 자녀가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 받아야 할 것을 상기 시키며, 이들의 세례를 정식 허가한다(W-2.3014);
- b. 부모(둘 다 또는 한명)나 친권행사자(들)에게 적절히 지도하고 그들과 협의한 후 신자의 자녀의 세례를 허락한다, 이 행위에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

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크리스천 삶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양육할 부모와 회중의 특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알린다;

c. 개인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시험을 치른 후 세례를 허락한다;

d. 모든 세례받은 이들을 교회의 교인명부에 올린다;

e. 세례받은 이들이 세례와 주의 만찬 의미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양육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자들의 격려와 지지를 주변에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다(G-10.0102b, d, e; G-10.0302; W-2.3011).

W-2.3013
교회의 책임

전체 회중은 보편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은 이들을 크리스천 생활에서 양육할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목회사역을 행사함에 있어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양육하는 특별한 책임을 맡도록 특정 교인들을 지정할 수 있다. 당회는 세례를 원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과 그 자녀들을 위해 후원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세례 받는 사람을 양육하는 특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W-6.2001; W-6.2005).

W-2.3014
부모의 책임

어린이에 대해 세례 요청을 할 때는 대개 부모(둘 다 또는 한 명)나 정당한 친권행사자가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한다. 어린이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는 어린이가 커서 개인 신앙고백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신앙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W-4.2002; W-4.2003). 당회는 다른 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는 크리스천 부모로부터 어린이세례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만일 당회가 그러한 요청을 승인할 경우, 다른 교회의 치리회와 협의해야 하고 성례전이 거행될 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W-2.4000

4. 주의 만찬

W-2.4001
예수와 성찬식

a.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 교류 속에서 식음하는 표시이고 인증이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공동체의 표시이고 인정의 표시로서 그리고 당신의 목회 행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약기념을 축하하셨다.

최후 만찬

b.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빵을 떼고 나누셨으며, 그의 살과 피를 새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

W-2.4000: 스코트고백 3.21-3.23; 하이델베르크문답 4.075-4.082; 제2스위스고백 5.193-5.210; 웨스트민스터고백 6.161-6.168; 소요리문답 7.096-7.097; 대요리문답 7.278-7.287; 1967년도고백 9.52

W-2.4001: 마 14:13-21, 15:32-39; 눅 5:27-32; 7:36-50, 10:38-42; 비교 요 2:13, 5:1, 7:2-37, 10:22-33, 12:1-3, 13:1-4; 공관복음서 병행성구 마 26:17-29; 막 14:12-25; 눅 22:7-20, 24:41-43; 요 21:13; 행 1:4

- 부 활 c.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축복하고 떡을 떼시면서, 공동의 식탁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나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W-1.3033).
- W-2.4002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그리고 공동 식탁에 헌신하였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공표하는 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마시는 전통을 교회에 전달하였다. 신약은 이 식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서로 참여하는 식탁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향연을 미리 맛보는 식탁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 W-2.4003 주의 만찬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 감 사 a.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통해 이룩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b.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c.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통치에 순종으로 섬긴다.
- W-2.4003 주의 식탁에서 교회는
- 기억함 a.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다.
- b.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지속된다;
- c.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제물이 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인침된다.
- 기억하면서 신자들은 그들과 세상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화해하고 화해되는 은총의 계약의 실체를 증거하며; 정의와 평화 속에서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힘을 선포한다.
- W-2.4005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들은 성령을 불러
- 기 원 a.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들어올림 받도록;
- b. 자신들이 드리는 떡과 잔이 받아들여지도록;
- c.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도록;
- d. 그리스도와 묶여지고 서로 결속되도록;

W-2.4002: 행 2:42, 46; 고전 11:23-26; 마 8:11, 22:1; 고전 10:16-17; 계 19:9; 비교. 시 107:1-3; 사 25:6-8; 43:5-7

W-2.4005: 고전 10:16

- e. 하늘과 땅 위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 되도록;
- f.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완성에까지 성숙하게 하도록;
- g.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신실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게 기원한다.

W-2.4006
 믿는자들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식탁에 둘러 앉아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과도 교통한다. 그리스도와의 화해는 상호 화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세례받은 충실한 자들은 모두 주의 식탁에 오도록 환영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나이나 경제 사회적 신분, 지체장애의 조건, 상이한 문화와 언어, 기타 인간적 부당성에 의해 초래된 장애에 의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식탁에 나옴으로써 충실한 신도들은 그들과 이웃간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화해하기 위해 적극 힘쓴다. 신앙공동체는 주의 식탁에 모일 때마다

- a. 세상 어디에서든 교회와 하나되며, 전체 교회가 현존한다;
- b.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예배 드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신실한 자들과 동참한다;
- c. 세례받을 때 행한 맹세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스스로 새롭게 결단한다.

W-2.4007
 천국잔치를 미리 맛봄

이 식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즐거운 잔치를 축하하고 큰 축제와 어린양의 큰 결혼잔치를 기대한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속에 오실 날을, 하나님이 만유의 찬양을 받으실 날을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한다. 이 소망으로 양육받은 교회는 주의 식탁에서 일어나 성령의 힘으로 세계로 보냄 받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자비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침내 올 때까지 정의와 평화의 사역을 한다.

W-2.4008
 말씀과 성례전을 함께

예배 회중의 삶에서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 필요의 관계이다. 주의 만찬이 집례될 때는 반드시,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선행되어야 한다. (W-1.1005).

W-2.4006: 마 5:23-24, 18:15-18; 고전 11:18-22, 27-29; 갈 3:28; 약 2:1-7

W-2.4007: 마 22:1-10; 눅 14:15-24; 고전 15:20-28; 엡 1:23; 빌 2:10, 11; 골 3:1-4; 살전 4:16, 17; 계 19:9; 시 72:2-4, 12-14; 사 2:1-4; 미 4:1-4, 6:8 마 5:21-26, 28:18-20; 눅 3:10-14, 4:18-21; 행 1:3-8; 약 2:14-17; 요일 3:16-18

W-2.4009
시간, 장소, 빈도

주의 만찬은 정기예배 장소에서 특정 행사와 개체 교회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일에 거행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은 주일날 자주 축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자주, 정기적으로 거행되어서 주일 예배의 핵심요소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W-2.4010
특별 행사

성례전이 신앙공동체 전체에 개방되어 있는 한,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에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의 만찬은 환자들이나 공예배에서 격리된 사람들의 방문과 관련하여 거행될 수 있으며, 이로써 교회사역이 그들에게 확장하는 수단이 된다. 성례전을 축하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있어야 한다. 그 같은 성례전에 설령 두서너명의 교인들만이 참여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예식이나 기도의 행사가 아닌 전체 교회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같은 예식은 목사나 노회에 의해 성례전 집행 권한을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당회에 의해 교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받은 한 사람 이상의 교인들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W-2.4012; W-3.3609-3618; W-3.6204).

W-2.4011
성찬을 받는 사람

a. 주의 만찬으로 초대는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주의 식탁에 앉을 권리는 합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들어오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명심한다. 이 성례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 믿는 자들은 죄와 부서짐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기 힘쓰며, 정결해지고 갱신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의심을 하거나 신뢰가 흔들리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확신받기 위해 주의 식탁에 올 수 있다.

세례받은 어린이들

b. 주의 식탁에 초대와 응답의 의미에 대해 양육과 지도를 받고 있는 어린이 세례자들에게 대해서는, 참여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이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만찬에 초대한다. (W-4.2002).

W-2.4012
책임

a. 당회는 개체교회의 삶에서 주의 만찬 집행 권한을 부여할 책임을 가지며, 성례전 축가가 정기적으로 자주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1년에 4번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교회의 다른 치리회도 회의를 가질 때 주의 만찬집례의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치리회는 관할권의 신자들이나, 선교사역을 하거나 허가된 목회사역이 있는 기관의 신자들이 회집하여 공예배를 드릴 때, 이와 관련하여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치리회는 주의 만찬 집례를 승인하는 권한을 치리회의 관할기관 내의 적절한 감독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비교 W-3.6205).

기관목사들

b. 병원, 교도소, 학교, 또는 다른 기관에서 봉사하는 원목이나 다른 목사들, 그리고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목회하는 군종목사들은 개체교회의 목회

사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의 허가가 있을 때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다. 성찬례 집행 권한의 조건은 목사의 청빙서나 승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목사가 집행

c. 직제상의 이유로 성찬례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행하거나, 당회가 초대하고 노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파송 평신도목사가 집행해야 한다. 선교적 관여가 특례를 만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회가 결정하고 권한을 부여한다(G-11.0103k, p, z; G-14.0560).

W-2.5000

5. 자신을 바침

W-2.5001

그리스도께 응답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삶이다. 사람들을 예배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에게 묶임으로써 자유함을 얻고, 자신의 삶과 재능과 능력과 물질을 바침으로써 응답하게 된다.

W-2.5002

영적 은사를 바침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으로 부르심에 대해 신앙 고백으로, 교회와 일치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를 떠맡음으로써 응답하는 기회를 항상 제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제자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교인 각자에게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므로, 예배는 이러한 은사를 감사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W-2.5003

물질 은사와 재물을 바침

a. 예배시에 물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기 헌신의 공동 행위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 죄와 악으로부터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1) 모든 피조물에 대해 청지기가 된다는 헌신;
- (2)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책임;
- (3)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편교회에 관련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
- (4)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갖는 공통의 유대.

W-2.5001: 제2스위고백 5.110-5.123; 웨스트민스터고백 6.088

W-2.5002: 롬 12:4-8; 고전 12; 엡 4:7-16

W-2.5003: 창 1:28-, 2:15; 레 23:22; 민 18:21-29; 신 28:7-12; 대하 24:8-14; 말 3:8-10; 마 28:19; 행 1:8, 2:44-45; 4:34-37; 고전 16:1, 2; 고후 8:1-15, 9:5-15; 딤후 5:17, 18; 약 2:4; 요삼 5-8; 제2스위스고백 5.211

규율적이며 후한
지원

b.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 집의 사역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바치도록 명령받았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이 규율있는 지원을 필요로 함을 인정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필요 충족을 위해 넉넉하게 기부하도록 권면받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후하게, 규율있게 주라고 하신다(W-5.5004).

예배시 드림

c. 공예배 중 적절한 시간에 감사의 한 행위로서 교인들은 십일조와 봉헌금을 모아서 바친다.

W-2.6000

6. 상호유대 및 세계와 유대

W-2.6001
공동체의 관심사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 공동 삶의 활동이다. 거기서 교인들이 서로를 돌보고, 자신들의 삶과 목회사역을 돌보는 것은 죄의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실체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여하시는 것처럼, 예배공동체의 일원들도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목회사역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표시한다.

인사

a. 그들은

- (1) 서로 인사하고, 예배 인도자의 인사를 받으며;
- (2) 방문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와있음을 주목하며, 크리스천 환대를 베풀다;

화해

b. 그들은

- (1)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오해가 생겼거나 교인간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며;
- (2) 화해와 그리스도의 평화의 표시와 말을 교환함으로써 하나님의 화해 행위에 응답한다;

기도 준비

c. 그들은

- (1) 개체교회와 전체 교회와 세상의 궁핍한 자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중재기도를 준비하고;
- (2)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삶에 대해, 삶의 전환에 대해 감사드린다;

해석

d. 그들은

- (1)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W-2.6000: 제2스위스고백 5.135; 웨스트민스터고백 6.146-6.147; 1967년도고백 9.35-9.38

선 교

- (2)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해석하고;
- (3) 신앙과 봉사를 증거한다;
- e. 그들은
 - (1) 언약을 하고 새롭게 하며;
 - (2) 연민과 정의, 화평 조성, 화해와 증거를 위한 특정 단체/개인 사역에 헌신하고 파송받는다.

W-3.0000

제3장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

W-3.1000

1. 순서의 원칙과 참고 출처

W-3.1001

성경과 역사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책임자들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위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이외에 예배 순서에 권위를 갖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역사와 문화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이해되고 형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국장로교의 예배는 수세기를 통해, 특히 개혁전통을 통해 일어난 교회의 역사적 경험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W-1.4001).

W-3.1002

형식과 자유

a. 교회는 언제나 예배의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해왔다.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예배순서의 제정형식을 제공했다. 다른 이들은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예배공동체 대한 고정된 형식의 강요를 저항했다. 미국장로교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잠정적이고 개혁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교회는 예배순서를 정할 때 예배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창의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질서와 자발성을 반영하되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W-1.4001).

당회의 지도

b. 예배에서 성령의 발현하심이 전체교회를 교화시킨다. 예배의 행위들이 단지 개인적인 표현에 그칠 때나 그 자체에 관심을 집중시킬 때, 또는 예배 회중에 대해 민감성이 없을 때, 그것들은 적절한 것이 아니며 당회의 자문과 지도를 요구한다.

W-3.1003

참여와 인도

예배순서는 목회하는 교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풍요하게 반영해야 하고, 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필요를 또한 반영해야 한다. 예배순서를 정하는 권한은 예배순서를 정하는 권한은 예배 담당자에게(G-6.0202; G-10.0102d; W-1.4000) 그리고 재능과 교육과 권한(W-1.4003)을 가진 예배 인도자에게 지정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마련하고 격려하도록 예배 순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W-3.1004

예배시의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져오며, 그들이 교회의 예배에 정규적으로 포함되고 참여함으로써 신앙 안에서 자란다. 어린이들의 예배참여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책임자들은 어린이들의 이해력과 응답력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형식성이나 지나치게 수준을 낮추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정기 프로그램이 주일날 전체 회중을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전체 예배에 어린이들의 완전 참여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W-3.3201; W-3.5202; W-6.2001; W-6.2006)

W-3.1000: 스콧고백 3.20; 웨스트민스터고백 6.006

W-3.1002: 전 12-14

W-3.2000

2. 날들과 절기

W-3.2001

날들

하나님께서서는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정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선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는 집에서 매일 예배하도록 하셨다(W-1.3011-3012; W-5.5001).

W-3.2002

교회력

하나님께서서는 삶에 질서를 주고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계절의 리듬을 주셨다(참조 W-1.30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의 삶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중대한 행사로서 예배순서의 중심형태를 제공한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의 날들과 절기들을 지켜왔다.

- a. 강림절,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희망을 회상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 b.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 c. 현현일, 만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념하는 날;
- d. 사순절,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축하를 대망하면서 영적 훈련과 준비를 하는 절기;
- e. 성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때;
- f. 부활절, 주의 부활하신 날이며 그의 승천까지의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 그리고 계속하여;
- g. 오순절, 교회에 내리신 성령의 은사를 축하함.

교회는 또한 이 절기 이외에도 주의 수세일, 주의 변모 축일, 삼위일체 주일, 모든 성현들의 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날들을 지킨다.

W-3.2003

그 밖의 절기들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삶은 크리스천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리듬을 반영한다. 시민활동, 농업, 학교, 사업의 연례주기, 가족의 특별 기념일과 축하일; 또 문화적 축하행사와 기념일과 행사의 다양한 양식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교회에서 선교를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활동, 프로그램, 기념일의 주기가 만들어진다. 크리스천 예배에서 그런 행사들을 기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그것들이 주의 날에 선포되는 복음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W-3.3000

3. 주일 예배

W-3.3100

a. 적절한 행동들

W-3.3101

주일 예배 안에:

포함되는 것들

성경

- (1) 성경이 봉독되고 선포되어야 한다(W-2.2001). 성경 교훈은 신구약에서 봉독되어야 한다(W-2.2002). 성경은 설교나 강해 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W-2.2007-2008).

- 기 도 (2) 기도가 바쳐져야 한다(W-2.1001).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다. 이때 회중은 긍정의 ‘아멘’으로 단체 응답에 참여한다. 기도의 형식은 회중기도와 응답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와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 예배자들의 참여를 격려할 수 있다. 명상과 기도를 위한 묵도의 시간이 제공되어도 좋다 (W-2.1000).
- 음 악 (3) 음악은 성경말씀의 봉독과 해석의 표현으로, 복음에 대한 응답의 표현으로, 그리고 시편과 찬미의 노래, 찬송가와 송가, 신령한 음악이나 영가를 통해 기도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 (W-2.1003-1004; W-2.2008).
- 세 례 (4) 세례의 성례전은 교인들이 교회와 합일하기 위해 자신과 자녀들을 봉헌하는 가운데 집행되어야 한다. (W-2.3000).
- 주 의 만 찬 (5) 주의 만찬 성례전은 당회가 결정한 대로 규칙적으로 자주 거행되어야 한다(W-2.4000).
- 십입조와 헌금 (6) 교인들의 십입조와 헌금을 거두어서 봉헌해야 한다 (W-2.5000).
- 특별 시간 (7) 모임과 인사, 예배의 부름, 공동관심사 알리기, 축도와 파송의 시간이 개체교회의 삶에 적절하게 예배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W-2.6000)
- 특별 예배 (8) 새교인 입교예식, 안수예식, 취임예식, 파송예식, 언약과 언약갱신 예식, 삶의 전환의 인정과 축하의 예식들이 회중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로 거행되어야 한다 (W-2.5000-6000; W-4.0000).

W-3.3200

b. 행동의 순서

W-3.3201
예배순서의 설정

담임목사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 주일예배 순서를 설정하며, 이 순서를 통해 최연소자로부터 최고령자에 이르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바치는 일에 참여하는 기회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W-1.4004-4007; W-3.1004).

W-3.3202
제안된 순서

여기서 제공되는 순서는 논리적인 진행이고, 구약과 신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보편교회의 전통과 우리 개혁파 교회의 유산을 반영한다. 달리 정한 예배 순서도 개체교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성경에 충실하며 역사적 원리에 참될 수 있다. 아래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5개의 주요 행동들이 제시된다:

- (1)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
- (2) 말씀의 선포;
- (3) 말씀에 응답;
- (4) 말씀의 인침;
- (5) 세상에서 말씀을 짚어지고 말씀을 따라감.

W-3.3300

W-3.3301

모임

(1) 말씀 중심으로 모임;

- (a)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시작한다. 다음 행동들 중 한가지 이상이 적절하다; 교인들이 서로 인사 나눔; 교인들이 묵도나 명상 가운데 준비함; 공지사항 알림; 음악을 들려줌.
- (b) 하나님께 예배의 시작 선언. 성경말씀을 구두로나 노래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이룩하셨는지 선포한다.
- (c) 기도 또는 경배와 찬양의 찬송이 바쳐진다.
- (d) 개인적으로 공동 삶 속에서 지은 죄의 실재를 고백하는 기도가 따른다. 죄사함의 선언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선언된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간 삶의 주관하심이 기억된다.
- (e)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이 때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나눌 수 있다.

W-3.3400

W-3.3401

선포

(2) 말씀의 선포

- (a)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들을 준비를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적절히 바쳐진다.
- (b) 목사나 교인 한 명이 그 날 적절한 성경말씀을 읽거나, 회중들이 응답식으로나 답창식으로, 또는 다같이 함께 봉독한다 (W-2.2006).
- (c) 성경 봉독에는 시편이나 성가 또는 성경의 교훈이나 주제를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다른 음악적 형식이나 예술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
- (d) 말씀은 목사의 설교로 또는 당회나 목사의 허가를 받은 다른 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W-1.4004-4006; W-2.2007-2008). 이 선포는 기도, 환호, 또는 찬양하는 말씀으로 끝 맺는다. 교인들을 제자직으로 부름도 적절하다 (W-2.2007; W-2.2009).

W-3.3500

W-3.3501

응답: 확인

(3) 말씀에 응답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응답은 신앙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또는 다른 적절한 음악 응답을 통해, 아니면 교회 신경을 고백하거나 노래함으로써 공동의 확인을 표시할 수 있다. 성가대는 찬양으로 또는 다른 음악형식으로 회중의 확인을 인도할 수 있다. 개인 응답의 기회도 이 때 제공될 수 있다.

W-3.3502

결단의 확인과 재확인

말씀에 응답은 결단과 인식의 행위도 포함한다. 세례의 성례전이 거행될 수 있다(W-3.3601-3607). 세례 받은 신자들은 첫 공적 신앙고백이나 신앙의 재확인을 통해, 또는 교회의 교적 이명을 통해 개체교회의 새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교인 입교와 파송에 대해 W-4.2000; W-4.3000; 비교 G-

5.0000; G-10.0102b 참조). 개인들이나 회중들로 하여금 세례 때 행한 결단과 재확인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적절하다 (W-4.2005).

W-3.3503
결단의 다른 행위

말씀의 응답으로서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타 행위들:

- (a) 크리스천 결혼 (W-4.9000),
- (b) 교회 제직의 안수 및 취임 예식 (W-4.4000),
- (c) 기독교 교육자, 교회학교 교사, 조직 임원 또는 그룹 상담자 역할을 하도록 교회 내부에서 파송하거나 교회로 파송하는 예식 (W-4.3000; 비교 W-3.3701).

W-3.3504
인정의 행위

말씀에 응답으로써 인생 자체에 대해, 인생의 전환에 대해 인정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

- (a) 개인들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의미깊은 사건들을 기념하는 일,
- (b) 재회를 축하하고 이별을 고하는 일,
- (c) 고인이 된 이들의 생애를 잊지않고 추모하는 일(비교 (W-4.5000; W-4.7000; W-4.8000).

W-3.3505
선교적 관심

신앙간증, 교회 선교 및 프로그램 제공과 설명이 말씀의 응답으로써 예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순서들은 이 응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들어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역의 지원에서 자기 자신과 재능을 바치기 위해, 사람들의 중보와 탄원의 기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W-3.3506
기도

사람들이 말씀에 응답하면서 다음을 위해 중재기도들이 올려진다

- (a) 보편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목회사역을 위해, 세상이 믿음을 가지도록 ;
- (b) 세계를 위해, 슬픔이나 특별한 필요에 처한 자들을 위해, 모든 권력자들을 위해,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도록;
- (c) 국가와 주 정부, 지역공동체를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 그들이 무엇이 바른지 알고 옳은 것을 행하는 정신적인 강건함을 가지도록.

간구의 기도는 다음을 위해 올려진다

- (d) 개체교회를 위해, 특별한 문제점이나 필요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 (e) 신앙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확신을 얻도록;
- (f) 생의 전환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인도와 도움을 받도록;
- (g) 중대한 결정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지혜를 얻도록;

- (h) 병든 자, 슬픔을 겪는 자, 외로운 자, 근심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위로와 치유를 받도록;
- (i) 모든 교인들을 위해, 은총으로 하나님 목적에 합치하도록 (W-2.1000)

이때 고백 기도가 포함될 수 있다 (W-3.3301). 예배순서에 주의 만찬이 포함되어있지 않을 때는 감사기도를 올리고, 주의 기도로 마친다(W-3.3613).

W-3.3507
헌 금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십일조와 헌금은 거두어서 구두 기도나 노래의 기도와 함께 받는다(W-2.5003). 화해와 평화의 표시가 아직 교환되지 않았다면 이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말씀의 응답으로서 교환될 수 있다.(W-3.3301). 주의 만찬이 축하될 예정일 때는, 빵과 포도주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로서 성찬상에 가져올 수 있다 (W-2.4003; W-3.3609).

W-3.3600

(4) 말씀의 인침: 성례전

W-3.3601
인침으로서
성례전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전들은 회중이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공동체 안의 믿음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인침하시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성례전에서 선포되고 행동화된 말씀에 대한 신앙인의 응답들이 포함된다.

W-3.3602
세례

하나님 은총과 우리 응답의 표시이고 인침인 세례 예식 (W-2.3000)은 크리스천 결단의 토대가 되는 인정 행위이다. 세례식은 말씀의 봉독과 선포에 이어 적절히 거행된다. 이 예식에는 세례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자신이 세례를 받기 원하거나 자녀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책임에 대해, 그리고 교회가 떠맡을 양육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W-3.3603
결단과 서약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세례의 성례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서약을 해야 한다:

- (a) 주와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 (b) 악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을 확인,
- (c)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
- (d) 자녀의 기독교 신앙의 양육을 제공할 의도를 선언한다.

교회의 회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e)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 (f) 세례 받은 자들을 돕기로 공개 진술;
- (g) 세례받은자의 신앙양육을 위해 기꺼이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장로 한 분이 이 신앙고백과 확인에서 교인들을 인도한다(W-2.2009; W-2.3011-3014).

잔으로 준비되거나, 사람들 수에 알맞은 여러 잔으로 준비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포도열매를 사용할 것인지는 당회가 결정한다. 이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회는 성서적 전례와 교회의 역사, 에큐메니컬 사용과 지역적 관습, 그리고 회중들의 건강 관심사와 양심의 문제를 알아두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W-3.3612
초 대

목사나 집례자는 성경의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주의 만찬에 초대해야 한다 (W-2.4011). **제정의 말씀이**(고전 11:23-26, 또는 공관복음서에 병행된 기록) 빵을 떼 때에 말하지 않거나, 감사 기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언어는 초대의 일부로서 언급되어야 한다.

W-3.3613
기 도

집례자는 기도로써 교인들을 인도한다.

- (a)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에 대해, 언약의 역사에 대해, 절기의 축복에 대해 찬양의 환호로써 감사드린다;
- (b)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기억한다: 그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재림의 약속에 대해, 성만찬 제정(이미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을 다함께 큰 목소리로서 믿음을 확인한다;
- (c) 성령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이끌어 주십사고 청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 (1')양식을 공급받으며,
 - (2')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인들의 통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 (3')충실한 제자로서 섬기기 위해 보내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 (d) 주의 기도를 드린다.

W-3.3614
빵을 떼

집례자는 빵을 들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떼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써 또는 성찬 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때에 고린도 전서11:23, 24절이 사용되어야 한다.

W-3.3615
잔을 제공함

집례자는 잔을 채운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을 제공한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서나 성찬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때 고린도 전서 11:25, 26절이 사용되어야 한다.

W-3.3616
빵과 잔의 분배

빵과 포도주는 특정행사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분배한다.

- 모임 a. 교인들이 성찬상에 둘러서서 빵과 잔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성찬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이에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는 이들이 교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성찬을 분배할 수 있다.
- 빵 b. 빵은 성찬상에 있는 빵에서 떼어 교인들 손에 놓아주거나; 교인들이 쪼개놓은 빵 덩어리나 분배를 위해 준비된 다른 빵에서 빵조각을 떼거나; 아니면 분배를 위해 준비된 빵조각을 받을 수 있다.
- 잔 c.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동의 잔이 제공될 수도 있고; 대여섯 개의 잔으로 함께 사용하거나; 분배용으로 날개의 잔을 준비할 수도 있다. 성찬 참여자들이 공동의 잔으로 마시는 대신에 빵을 포도주에 적실 수도 있다.
- 분배 d. 빵과 잔은 그 교회의 안수받은 제직자들이 나누어 줄 수 있고, 아니면 당회나 권한있는 치리회가 초청한 다른 교회 제직원들이 분배할 수 있다.
- e. 예배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의 안수받은 제직원들 2명 이상이 다음 조건 하에서 빵과 잔을 베풀 수 있다:

- (1) 모인 회중에게 성례전을 베풀 후, 이의 직접적인 연장 예식으로서 같은 날, 또는 실제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교회의 성례전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빵과 잔을 제공한다;
- (2) 성경을 읽고 기도를 바침으로써,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가 지켜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성찬식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 목회의 신학적 목회적 기반이나 전례 자원을 받는 당회나 권한있는 치리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W-6.3011).

W-3.3617
성찬을 받을 때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 (a) 교인들은 시편이나 찬송가, 영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b) 성가대가 성가나 그 밖의 적절한 음악의 헌정을 노래할 수 있다;;
- (c) 예배 행사에 적절한 기악을 연주할 수 있다;
- (d) 적절한 성경 구절들을 낭독할 수 있다; 아니면
- (e) 교인들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다.

W-3.3618
성찬 후 축복

교인이 모두 성찬을 받은 후, 남은 빵과 포도주가 성찬대에 놓여 있을 때, 집례자는 회중들을 기도로 인도하고,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찬에서 사람들이 서약한 것을 이행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며, 약속된 천국이 오기를 간구드린다. 회중은 시편이나 아가, 찬송가나 영가 또는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

W-3.3619 성례전을 마치면 술과 포도주는 성찬대에서 치우거나, 당회가 승인한 남은 빵과 포도주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 이의 방식은 성례전에 대한 개혁파 교회의 이해 방식과 일치되게, 또한 선한 청지기정신의 원칙에 일치되게 해야 한다.

W-3.3700 (5) 세상에서 말씀을 짚어지고 말씀을 따라감

W-3.3701 (a) 제자직의 결단 행위, 세례받기로 의도의 선언, 그리고 결단과 인정의 행위 세례식에서 서약한 것을 재확인하는 행위들은 성례전에서 받은 말씀에 적절한 응답이다 (W-2.4005; W-2.4007). 예식이 끝날 무렵에 결단과 인정의 다른 순서를 거행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음전도, 연민, 정의, 화해와 평화조성을 위한 특정 단체/개인 행위에 헌신하고 파송받을 수 있다 (W-4.3000).

이별의 시간 (b) 특정 개교회의 성도교제에서 떠나는 사람들 (1')이 같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2')교육, 국가 임무, 직업 변화, 가족상황, 건강상의 이유로 타지로 떠나갈 때 고별회로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교인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을 이 때 기억해주는 것도 적절하다.

W-3.3702 예배는 공식 폐회로 끝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성삼위 축도로써, 또는 고린도후서 13:14에 있는 사도의 축도와 같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사용하여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화해와 평화의 표시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W-3.4000 4. 매일 기도회

W-3.4001 a. 매일 기도회는 주중에 정기적으로 지키는 공예배 예식이다(W-1.3012; 매일 기도 W-3.2001). 이 예배는 교회와 교회가 목회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맞추어, 아침이나 정오나 하루 일이 끝났을 때, 또는 저녁이나 밤에 드릴 수 있다.

말씀과 기도 b. 이 예배에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하다.

W-3.4002 성경 본문을 읽고 명상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성경의 강해가 제공될 수도 있다. 말씀은 음악이나 연극이나 춤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매일기도회에서는 특히 시편과 송영성구가 적절하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예배자들이 말씀을 나타내고 응답하기 때문이다(W-2.2000).

W-3.4003 기도는 말로, 노래로, 행동으로 그리고 침묵 가운데 드릴 수 있다. 매일 기도회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묵상과 명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차원의 기도회는 공동체의 개인과 공적 관심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W-2.1000).

W-3.4004 매일기도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져야 한다.

순서

- (1) 찬양,
- (2) 성경 말씀을 읽고 듣기,
- (3) 명상과 기도와 노래로서 말씀에 응답,
- (4)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감.

W-3.4005 당회의 정식허가를 받은 예배는 반드시 담임목사와 협의해서 계획되어야 하고, 교회의 적절히 준비된 제직들이나 다른 교인들이 인도할 수도 있다.

W-3.5000 5.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W-3.5100 a. 일요일 예배

W-3.5101 일요일의 대예배는 주의 날 예식으로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한다. 그 밖의 예배 예식들도 일요일 아침, 오후, 저녁시간에 정기 일정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예식들의 시간과 성격은 당회가 회중과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예식들을 계획할 때는 주의 날 예식의 순수성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요일의 다른
예식들

W-3.5102 이 예배는 말씀을 읽고 듣기, 기도, 자신을 바치는 기회, 세계와 상호간에 유대감을 갖는 기회들이 있어야 한다(W-2.1000-2000; W-2.5000-6000). 기도와 회중의 노래, 성경의 교훈, 예술을 통한 말씀의 해석에 특별한 강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배는 말씀의 설교를 포함하거나 또는 목사나 당회가 인가한 다른 선포의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W-1.4000; W-2.2000; W-3.3400). 그러한 경우에 성례전이 축하될 수도 있다.

구성요소들

W-3.5103 각 예배의 순서는 특별한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모범의 예배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순서

W-3.5200 b. 교회학교

W-3.5201 교회학교의 여러 학급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기도와 찬송, 성경말씀을 읽고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재능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바치고 세계와 유대감을 갖는 적절한 표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교회학교

W-3.5202 교회학교에서 각 반 별로 정기 예배를 보는 기회를 정규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러한 예배는 큰 그룹에서보다는 덜 형식적이고 더 자발적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나오는 찬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자기 헌신과 결단의 행위와 표시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다음으로 발전될 수 있다.

구성요소와
순서

- (1) 세례 요청,
- (2) 주의 만찬에 참여
- (3) 세례 때 행한 맹세 확인.

교회학교의 예배가 주일 대예배 참여를 대신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W-3.1004; W-3.3201; W-6.2001).

W-3.5300

c. 기도회

W-3.5301
기도 모임

교회생활에서 교인들은 여러가지 배경으로 기도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당회는 그런 기도 모임을 인정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정기 기도 모임들은 주중의 저녁기도회나 아침 기도회나 낮 기도회 그리고 조찬점 오찬 기도회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소그룹들은 기도회 서클, 중재적 친교, 또는 언약그룹으로서 정기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와 보편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날들이나 행사가 있을 때 교인들이 기도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W-3.5302
구성요소들

이런 기도회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선포하고 가르치고 토의할 수 있으며, 또는 음악이나 다른 예술형식으로 말씀을 표현할 수도 있다. 기도를 바친다, 기도는 말로 하거나 노래로 하거나 행동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침묵으로 나눌 수도 있다. 공식 인정과 헌금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결단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상호 관심의 표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환영과 화해와 상호사역의 행위로서 나타낼 수도 있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기도로써 연민과 정의와 평화 조성 및 증거로써 행동화될 수 있다.

W-3.5400

d. 치유 예식

W-3.5401
치유하는 예식

치유는 예수님 목회사역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일을 교인 건강에 관심을 갖는 한 차원으로 알고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치유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에서 그 사역을 행동화할 수 있다.

W-3.5402
정식 허가

치유예식은 당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목사의 지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예식은 정기 예배로서나 가끔 드리는 예배로서, 아니면 주일 대예배의 일부로서 거행될 수 있다(W-3.3506). 이 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 것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예식은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W-3.5403
기도의 형식

온전함을 회복하는 예식에서 필수적인 예배요소는 기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온전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드리고 중보기도와 탄원기도를 바쳐야 한다. 말의 기도와 노래의 기도와 더불어 침묵기도의 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행동화된 기도는 손의 얹음과 기름부음 형식이 적절하다(약 5:14). 기도의 행동화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집례와 믿음 공동체 대표자들이 개입된다.

W-3.5404 이런 기도는 읽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특별한 초점은 말씀과 성례전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된다는 복음의 약속 선포에 두어야 한다. 이 약속의 인침은 주의 만찬에서 축하될 수 있으며, 기도와 손 얹음이 따라야 한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에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와 더불어, 목회를 위해 자신의 삶과 재능을 바치는 행사가 마련되어야 한다.

W-3.5405 온전함 회복의 예식에 기름 바름과 손 얹음이 개입될 때, 이러한 행동화된 기도가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치유는 이러한 행동 기도를 하는 자의 거룩함이나 진지함이나 능력이라고 보거나 또는 치유하고자 하는 자의 믿음의 결과라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W-3.5500 e. 복음전도의 예식

W-3.5501 주일 대예배 때 자주,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응답하도록 초대해야 한다(W-2.5002). 당회가 특정 전도 목적의 예배를 정식으로 허가하고 정기적으로 계절에 따라 그런 예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W-3.2003; W-7.2000).

W-3.5502 복음전도의 예식에서 중심적 예배요소는 말씀의 선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은사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힘을 받은 제자직의 삶으로 초대를 특별하게 강조한다. 이 선포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성경 읽기와 듣기,
- (2) 설교와 증거,
- (3) 말씀을 노래로 행동으로 고백으로.

이 중심 행위를 기도로 둘러싸야 한다,

- (4) 예배의 준비에서,
- (5) 예배에서 찬미, 감사, 고백, 중보, 간구의 기도로서;
- (6) 새 제자들의 결단을 지원하고 그들이 교회의 삶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도록, 예배에 끝난 후에도 기도한다.

W-3.5503 이 예배는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이나 새 결단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계약공동체 안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분명하게 초대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은사의 표시와 자기 헌신의 행위이며, 다음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1) 새로운 상호 유대를 통해,
- (2) 자신의 목회 재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 (3)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행위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W-3.5500: 웨스트민스터고백 6.055-6.058, 6.187-6190

W-3.5504

새로운 결단에
응답

초대에 응답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결단을 지지받고 제자직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육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G-5.0501). 첫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세례받지 않았다가 그 예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일 예배시에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결단을 갱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일 대예배에서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W-3.5600

W-3.5601

선교 강조 예배

f. 프로그램과 선교 해석

교회의 프로그램과 선교에 대한 해석은 이 목적으로 갖는 예배예식에서 해야 하고, 연중 적절한 절기에 정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W-3.2003). 이 예배의 주요 초점은 프로그램과 선교의 해석에 있으며, 특별 예배(들)를 당회가 인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해석에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배에서는 세계와 유대 및 상호 유대를 특별하게 강조한다(W-2.6000).

W-3.5602

예배 내용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들어야 한다. 감사기도, 간구기도, 중재기도는 예배에서 해석된 사역을 위해 드러져야 한다. 헌금을 드리고 삶의 결단을 하는 기회가 적절히 포함된다. 물질적 예물을 바치고 삶의 결단을 하는 기회가 적절히 포함될 수 있다.

W-3.5700

W-3.5701

특별 그룹들

g. 개체교회 내의 특별 그룹들

모든 개체교회에는 연령별로 성별로 또는 관심사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그룹들이 있다. 이런 그룹들의 모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례이며, 이 예배모범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성례전을 제외하고 제2장에 나오는 예배의 전 요소들이 이 환경에서도 적절하다. 이 요소들은 보통 전체 회중의 참여를 위해 당회가 인가한 예배의 행위들이다.

W-3.6000

6. 특별한 모임들

W-3.6100

W-3.6101

치리회 예배

a. 치리회

치리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모범의 원칙에 의해 예배 순서를 정한다. 각 치리회가 예배를 책임 맡고 감독할 그룹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또한 그 회의시 예배의 계획과 진행 지침을 채택할 수도 있다.

W-3.6102

말씀과 성례전

당회 위 상급 치리회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들으며,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규정을 만든다(G-9.0301).

W-3.6103

기 도

치리회가 회집할 때마다 기도로서 개회하고 기도로서 폐회해야 하며 (G-9.0301), 안건의 심의 과정에서도 기도할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기도는 찬양과 감사, 고백, 중재, 그리고 치리회의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간구를 표현해야 한다.

W-3.6200

W-3.6201

집회와 수양회에서
예배

b. 수양회, 캠프, 특별 모임

특별집회 예배의 인가 책임은 관할 치리회가 가진다. 예배는 수양회, 캠프, 집회 활동에서 핵심요소이다. 그 예배는 이 예배 모범의 원칙과 해당 치리회가 마련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W-3.6202 예배의 성격과 초점은 모임의 종류, 목적, 참석자들, 장소, 계절 그리고 순서 삶의 리듬과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배에서 매일 기도서의 순서(W-3.4000)를 사용하거나, 주일 대예배의 순서 (W-3.3000)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 예배모범에 기술된 다른 예식의 형식을 응용할 수도 있다 (W-3.5000).

W-3.6203 각 집회에 적절한 예배의 구성요소들은 기도, 성서 읽기와 듣기, 자기 구성요소들 헌신, 그리고 상호유대 및 세계와 유대이다(W-2.1000; W-2.2000; W-2.5000; W-2.6000).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은 다양한 설정에서 강조될 수 있다:

- (1) 침묵의 기도나 부부관계 강화를 위한 수양회,
- (2) 자연 캠프나 선교 카라반,
- (3) 청년지도자 양성이나 음악훈련 집회.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말씀을 온전하게 바치고 적절한 기도가 드러져야 한다 (W-2.1000-2000).

W-3.6204 주의 만찬은 다음의 경우에서 어떤 특별 모임에나 적절하다:

- 특별한 모임에서 주의 만찬
- (1) 그 모임을 주관한 치리회나 행사 소재지의 관할 노회가 인가했을 때,
 -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례하고 교회의 다른 제직원들이 참석해 있을 때,
 - (3) 말씀의 설교나 치리회가 인가한 다른 형태의 선포에 뒤따른 예식으로 거행될 때,
 - (4) 소수를 위한 경건회라기 보다는 전체 신앙공동체의 삶에의 참여로 이해될 때 (W-2.4010-4012).

아주 다양한 교단들이나 다양한 민중 그룹들로 이루어진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가질 때, 또는 주의 만찬 축하를 위한 에큐메니컬 집회로 모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일치성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W-2.4006).

W-3.6205 에큐메니컬 환경에서 주의 만찬을 집례하거나 참석하도록 초청받은 말씀과 예큐메니컬 성례전의 목사들은 그 참여가 개혁과 교회의 성례전의 이해에서 모순되지 않은 성찬식 범위에서 그렇게 할 권한을 갖는다.

W-4.0000

제4장 특별 취지 예배의 순서

W-4.1000

1. 특별행사와 인정

W-4.1001

특별 행사 및
취지의 예식

회중의 삶과 교인들의 삶에는 예배에서 적절히 인정받는 특별한 행사와 삶의 전환기가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은 보통 주일 대예배의 어느 시점에서 축하된다. 다른 일들도 주일 대예배에서나 다른 정기 예식에서,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한 특별 예식으로 축하될 수 있다. 특별 인정의 순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기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축하하는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면 주일예배 예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W-1.3011).

W-4.2000

2. 환영과 영접 예식

W-4.2001

세례와 교회회원권

세례를 통해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교회 회원으로서 정체성이 주어져서, 성찬상으로 환영받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을 하도록 선별된다(W-3.3602-3608; W-3.5504). 세례의 이러한 국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찬상으로 환영, 견진례와 파송식, 새 교인 입교식을 통해 예배의 표현이 강화된다 (W-6.2001). 이런 순서는 보통 주일 대예배 예식에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써 갖는다 (W-3.3502).

W-4.2002

성찬상으로 환영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세례를 받도록 양육하는 책임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며, 이 책임은 특별히 당회를 통해 행사된다. 어린이가 세례를 받으면, 부모(둘다 또는 한 명)나 부모 책임 행사자가 그 어린이에게 주의 만찬 받는 것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당회가 그 부모들을 준비시키고 지원해야 한다.(W-2.3012). 그 어린이가 이 성례전 수락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당회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인정과 환영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W-4.2003

견진례와 파송

교회는 세례받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공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고 교회 삶의 책임을 수락하도록 부른다. 이들이 스스로 준비될 때 당회에 의해 심사된다(G-10.0102b). 당회가 그들을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공예배 시 그들을 회중 앞에 내세운다. 이 예식에서 교회는 그들의 세례적 신분을 확고히 한다. 그들은 세례 예식에서 행한 서약을 다음과 같이 거듭 확인해야 한다.

- a.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 b. 악을 끊고 하나님 은총에 의탁함을 다짐하며
- c.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한다

(W-3.3603).

그들은 교회의 선교와 치리에 전면 참여하도록 파송되며, 전 회중의 환영을 받는다 (W-3.3502; W-3.3602-3608; W-3.3701).

W-4.2004

다른 교인의 영접

교인 이명증서나 신앙의 재확인에 의해 입교하는 교인들을 영접하는 예식은 그의 첫 세례와 신앙고백과 제자직으로 결단을 일깨우는 행사이다. 당회의 심사

를 받고 영접이 끝난 후, 새 교인들은 정규 공예배에서 인정되어야 한다(W-3.3502). 그들이 세례시 결심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모시는 신앙고백을 다시 공적으로 하며,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 참여할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W-3.3602). 그들은 개체교회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환영받으며 교인으로서 봉사 위임을 받는다.

W-4.2005
전교인 재다짐

개체교회 회원으로 들어하는 사람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는 각 행사시에, 세례받은 전 예배자들도 세례시 행한 결심을 공적으로 재다짐하는 것이 적절하다.

W-4.2006
갱신과 새 결단

신앙인 개인의 삶에는 공적 표명과 인정과 축하를 받을 만한 특별한 각성과 갱신과 새로운 결단의 시기들이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목사(들)과 당회와 나누도록 격려해야 한다. 예배예식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확고한 결심을 공개하고 교회가 기도와 감사로서 인정하는 것은 대체로 적절하다(W-3.3502; W-3.3701).

W-4.2007
환영과 인정의 행동

이 모든 예식에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파송하고 확인하는 일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야 한다. 적절한 행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그리스도 평화의 나눔;
- b. 환영의 손내밀;
- c. 기름 부음;
- d. 포옹하기.

그리고 참여자들의 문화(들)에서 공통적인 인정과 축하의 기타 행위.

W-4.3000

3. 제자직의 특정 행동을 위임

W-4.3001
제자직의 인정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은 제자직의 특정 행위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와 세상안에서 봉사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특정 행위들에 대해 예배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함으로써 격려와 힘을 북돋을 수 있다.

W-4.3002
제자직의 형식

제자직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a. 개체교회 내의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교회조직의 제직으로서, 다양한 교회그룹의 고문이나 보조자로 봉사함으로써;
- b. 개체교회를 대표하여, 공동체 안의, 공동체를 위한 목회사역을 통해;
- c. 전체교회에서 노회와 대회와 총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 협의회의 목회사역에 봉사함으로써;
- d. 교회 밖에서, 연민과 화해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동함으로써 (W-7.3000-.4000);

W-4.3003
인정과 위임

제자직의 그러한 행위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파송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W-3.3500), 또는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일로써, 주일 대예배예식에서 행할 수 있다 (W-3.3700). 제자직의 특정 행위에 대한 인

정과 파송은 이 취지로 제공된 예배 예식이나 기타 적절한 예식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W-3.5100; W-3.5300; W-3.5600).

W-4.4000

4. 안수, 취임, 파송

W-4.4001

안수와 취임

a. 안수식에서 교회는 집사와 장로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도록 교회의 선거를 통해 부름 받은 사람들은 기도와 안수로써 선별한다. 취임식에서 교회는 집사나 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책에 이미 안수받은 이들을 기도로써 선별하며 그 직책으로 부름을 새롭게 한다.

안수와 취임 및

파송의 예식

b. 장로나 집사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안수식과 취임식, 그리고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대한 파송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목회사역으로 봉사하는 기쁨과 책임에 대해 초점을 두며, 그에 적절한 설교가 있어야 한다. 집례하는 목사는 직책의 성격을 간단히 진술해 주어야 한다.

W-4.4002

예식의 장소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의 예식은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 대예배 예식 중에 거행될 수 있다 (W-3.3503).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목회사역에 대해 초점을 두는 특별한 예식으로 거행될 수 있으며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취임식은 노회에서 상당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을 잡아 거행해야 한다.

W-4.4003

제직과 파송받은

자들에게 하는 헌법상의

질문

해당 치리회 회장은 안수와 취임 또는 파송받을 사람들을 치리회 앞에 서게 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게 한다:

a.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하고도 권위있는 증거이고,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입니까?

c.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과 교회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지도 받겠습니까?

d.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직책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f.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g.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겠습니까?

h. 당신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힘쓰겠습니까?

i. (1) (장로에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2) (집사에게) 당신은 박애정신을 가르치고 관심을 일으키며, 백성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하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보이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까?

(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4) (파송받은 평신도 목회자에게) 당신은 복음 선포로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평신도 파송목회자가 되겠습니까?

(5)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목회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충실한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가 되겠습니까?

W-4.4004

장로나 집사의 안수 또는 취임 예식에서

장로나 집사의 안수 또는
취임

교인에게 하는 질문

a. 장로와 집사로 피택된 자들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후, 장로 한 명이 그들과 같이 교인들 앞에 서서 전체 교인들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묻는다:

(1)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이름들)_____을/를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로들이나 집사들로 알고 받아들입니까?

(2)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기도와 안수

b. 교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후에, 안수 받을 사람들은 기도와 당회의 안수를 위해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전에 안수 받은 이들은 취임 기도시 회중과 함께 (가능할 경우)일어서는 것이 통례이다.

당회는 다른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을 안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선언 c. 이와 같이 안수 받고 취임한 자들에게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본 교회의 장로들이고 집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당회의 환영 d. 그런 다음, 당회 회원들과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 안수받고 취임한, 또는 새로 취임한 장로들과 집사들을 목회사역의 교제 안으로 환영해야 한다.

회중의 인사 e. 예식이 끝난 후에 교회의 교인들은 새 장로들과 새 집사들에게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 보이면서 인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W-4.40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 안수 예식에서

안수 질문

a. 노회는 질문 i(3) 본문을 사용하여 W-4.4003에 제시된 안수 질문을 하여야 한다.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기도와 안수

b. 그 후보생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후,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고, 노회위원회는 그 후보생을 기도와 안수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해야 한다. 그 집례자는 그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이름)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노회의 환영

c. 그 다음에 노회 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목회에 부름받은 새 목사를 환영해야 한다. 새 목사가 안수 예식 끝에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으며, 축도로 끝내야 한다.

W-4.4006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취임

모든 기독교인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교회로 부르신다. 개교회와 노회와 목사(혹은 후보생)가 모두 영구 목사직이나 임명 목사직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노회는 취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취임예식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노회 임무를 위해 전권위원회가 임명될 수 있다.

취임예식

a. 정해진 취임 날짜에 노회나 이 목적으로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예식절차를 개시하고 교인들을 예식에 회집해야 한다. 그 예식은 안수예식처럼 동일한 초점과 형식을 취해야 하고, 취임되는 사람은 안수시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회중에게 하는 질문

b. 취임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후에 장로 한 사람이 취임하는 목사(또는 취임 받을 부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물어야 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들은 (이름) _____ 목사님을 하나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담임목사 (부목사)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줄 분으로 받아들입니까?

(2) 우리는 그(그녀)를 격려하고, 그(그녀)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며, 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로 동의합니까?

(3) 우리는 그(그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그(그녀)가 우리 가운데서 목회할 때 그(그녀)의 복지를 제공하며, 어려울 때 그(그녀)의 곁에서서 그(그녀)와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합니까? 우리는 그(그녀)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그녀)의 목회적 돌봄을 환영하며, 그(그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고 주님으로 순종할 때 그(그녀)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목사의 취임

c. 교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으로 대답하면,

(1) 안수와 취임을 받는 중인 그 후보생은 (가능할 경우)무릎을 꿇으며, 노회는 기도와 안수로서 그이나 그녀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에 안수하고 특정한 목회 직분에 취임시킨다.

(2) 이전에 안수받은 목사가 지금 취임하는 중이면, 손을 얹을 때와 취임 기도 시에 (가능할 경우)일어서는 것이 통례이다.

목사에게 선언

d. 그 집례자는 그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1) (안수와 취임을 받는 중인 분에게) (이름) 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2) (이전에 안수받은 목사에게)(이름) _____, 당신은 이제 본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 환 영 e. 그런 다음, 노회 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새로 안수받고 취임한 목사에게, 또는 새로 취임한 목사에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통해 그들의 친교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해야 한다.
- 권 면 f. 노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목사(부목사)와 회중에게 상호 유대와 공동의 책임에 충실하도록 간단한 권면의 말을 그때 할 수 있다.
- 축 도 g. 그 예식 끝에 새로 취임받은 목사가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으며, 축도를 내려야 한다.

W-4.5000 5. 목회의 전환기

W-4.5001 제자직의 특정 활동에 특별히 파송받은 사람들, 안수 받은 집사나 장로
 전환기 인정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그리고 기타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임기를 마칠 때, 전체 회중과 그 사역과 관련된 다른 이들이 임기를 마친 사람의 재능과 봉사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W-4.5002 이러한 인정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서(W-3.3503) 하거나,
 인정 형식 세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일로써(W-3.3701) 하거나, 또는 달리 지정한 예배 예식에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 예배는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치하와 사의 표명이 포함될 수 있고, 목회 전환기에 있는 그들을 위해 감사와 중재의 기도가 포함될 수도 있다.

W-4.6000 6. 책벌과 복권

W-4.6001 책벌과 복권의 형식은 이 *규례서*의 권징조례에 명시되어있다 (D-12.0102; D-12.0103; D-12.0104; D-12.0105; D-12.0202; D-12.0203).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형식의 사용이 어디까지나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당 공동체 내의 예배의 맥락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4.7000 7.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인정

W-4.7001 교회의 특정 선교사업 이상으로 공동체에 행해진 봉사에 대해서는 기독교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예배 중 적당한 기회에 기도와 감사로 적절하게 인정할 수 있다.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룩하거나 명예나 다른 형태의 인정을 받았을 때도 신앙공동체와 더불어 축하 행사를 가질 수 있다.

W-4.8000 8. 수용과 화해의 예식

W-4.8001 기독교인들은 죄많은 세상에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들은 부서진 관계로 고통받으며 그들의 부서진 관계는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온전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은 관계의 부서짐과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 a. 친구와 결혼 관계에서,

W-4.8000: 고후 5:18-20; 약 5:16; 웨스트민스터고백 6.068; 1967년도고백 9.07, 9.22

- b. 가족과 교회 관계에서,
- c. 직장과 학교 관계에서
- d.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W-4.8002

수용과 화해의 예식

이 밖에도 크리스천 공동체는 죄와 부서진 조직과 부서진 관계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 인간 관계의 실패에 대한 인식과 인정을 위해, 관계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기 위해, 신앙공동체 안에서 상호 용서와 화해를 위한 특별 예배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W-2.6001; W-3.3301; W-3.5400; W-6.3007-3008; W-6.3011; W-7.4004).

W-4.8003

예식의 형식

이러한 예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하나님의 은총이 계시된 성경구절 봉독,
- b. 고백, 중재와 간구의 기도,
- c. 용서의 선언, 죄의식과 수치감에서 해방 선언,
- d. 찬양의 표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감사,
- e. 상호 결단과 화해의 행동화.

W-4.9000

9. 결혼

W-4.9001

크리스천 결혼

결혼은 전인류 가족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은 시민계약이다. 크리스천들에게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직의 삶을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계약이다. 크리스천 결혼예식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는 서로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언약을 하며, 신앙공동체가 이의 증인이 되고 확인을 한다.

W-4.9002

결혼 준비

a. 결혼 예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목사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다음에 관하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1) 크리스천 결단에 대해, 그리고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신앙고백을 한 크리스천임을 확인한다,
- (2) 주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 (3) 크리스천 결혼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
- (4) 결혼 예식의 성격과 형식에 대해,
- (5) 그들이 결혼식에서 하게 될 서약과 결단에 대해,
- (6) 제자직의 삶과 이러한 결심의 상관성에 대해,
- (7) 그들의 결혼서약 이행에 도움이 되는 신앙자료와 크리스천 공동체에 대해.

이러한 상담은 첫결혼에서나, 배우자가 죽은 사람들의 재혼에서나, 이혼한 사람의 재혼에서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

만일 결혼이 현명치
않으면

b. 만일 목사가 결혼할 두 사람과 상담한 다음, 그들의 결심이나 책임감이나 성숙도, 또는 기독교적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여 그 결혼이 현명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교회가 그 두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해주고 결혼식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당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W-4.9003
예식의 시간과 장소

크리스천 결혼은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크리스천 예배로서의 결혼식은 담임목사의 주례와 당회의 감독하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W-1.4004-4006). 결혼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리스천 삶의 축복의 표현으로서의 결혼에 초점을 두는 특별 예배로 거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목사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예식을 인도하게 할 수 있다. 결혼식에서 성찬식을 축하하려면 당회의 승인을 반드시 구해야 하고, 참석한 모든 세례인들이 성찬식에 초대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당회가 승인할 경우 결혼 예식을 주일 대예배 예식 중에 거행할 수 있다. 이때 결혼식은 말씀 선포의 응답으로서 예배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주의 만찬 성례전이 뒤따를 수도 있다 (W-2.4010; W-3.3503).

W-4.9004
예식 형식과순서

예식은 성경구절과 간단한 예식 취지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남자와 여자는 크리스천 혼약을 맺을 의도를 선언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충실하겠다는 서약을 교환해야 한다. 그 예식에는 선포의 다양한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적절한 성경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랑신부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제자직에 들어가는 그들을 도울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충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바쳐져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는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결혼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권면을 해줄 수도 있다. 그 공동체와 문화에서 보편화된 다른 행위들도 적절히 지켜질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크리스천 결혼의 이해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식은 축도로써 끝낸다.

W-4.9005
음악과 장식

결혼식에 어울리는 음악은 하나님께로 관심을 이끌어 가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W-2.1004). 회중은 찬송가와 기타 음악형태의 찬양과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 꽃과 장식, 그 밖의 실내장식이 예배 장소로서 적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예배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크리스천 생활의 고결성과 소박함을 반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W-1.3034; W-1.4004-4005; W-5.5005).

W-4.9006
시민결혼 인정

예배 예식에서 시민결혼을 인정하고 신앙공동체가 이를 확인하는 일은 결혼한 부부의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할 수 있다. 그 예식은 결혼 예식과 유사하다, 다만 그 남녀가 시민법에 따라 이미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개회사와 의도 선언, 남편과 아내의 서약교환, 그리고 목사의 공선언에서 그렇게 반영된다.

W-4.10000

10. 상례 예식들

W-4.10001

크리스천과 죽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교리의 하나이며, 죽음의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응답의 기틀을 형성한다.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상실감과 비탄과 큰 슬픔을 가져온다.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기쁨으로 복음의 희망을 확인한다. 크리스천은 사별의 슬픔을 격리된 채 홀로 감당하지 않으며, 성령과 신앙공동체의 힘으로 견디어낸다. 교회는 사별의 슬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목회를 제공한다 (W-6.3006).

W-4.10002

준비 계획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현명하게 계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비하여 필요한 절차 - 매장, 화장, 의학적 목적의 장기 기증의 결정문제 포함 - 를 미리 상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장례준비는 소박하게, 부활의 희망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가 중심이 되도록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례 절차로서 거행하는 예식들에 관해 당회가 전반적인 방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W-1.4004).

W-4.10003

예식의 환경

상례예식은 신앙공동체의 지속적인 삶의 예식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으로 참여하도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반 예배의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장례식은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예식의 인도자로서 참여하도록 목사의 재량으로 초대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어느 날이나 거행할 수 있다. 그러한 예식을 주일날 예배의 일부로서 거행하거나, 상례의 절차로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요청은 당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W-4.10004

형식과 순서

예식은 성경구절로 시작한다.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확신케 하는 찬송, 시편, 영가 또는 영적인 노래를 예배자들이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을 봉독해야 하고, 설교나 말씀의 해설이 선포될 수 있으며,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말할 수도 있다. 고인의 생애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기도를 올려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약속에 대해,
 - (2) 고인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에 대해,
 - (3) 성령의 위로해 주심에 대해,
 - (4) 신앙공동체에 대해;
- 중재의 기도를 드린다
- (5) 슬퍼하는 유족을 위해,,
 - (6) 유족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7) 상실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 기도를 올린다

(8) 참석자 전원의 믿음과 은총을 위해,

주기도로 마친다.

이 예식은 고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부탁하고 축도로써 조객들을 보내면서 마친다.

W-4.10005
대안과 선택

이 예식은 매장 전후에 거행될 수 있다. 예식이 하나님께로만 주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이 있을 때는 보통 뚜껑을 닫는다. 관보로 덮여있을 수 있다. 그 예식에 그 공동체와 문화에서 보편화된 다른 행위들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동들이 크리스천 죽음과 부활의 이해를 손상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식은 그 자체로서 끝나야 한다. 어떠한 형제의례나 공민의례나 군장 의례는 별도로 거행되어야 한다. 평상시의 예배 장소를 사용하지 못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정이나 장의사나 화장터 또는 장지와 같은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W-4.10006
하관 예식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이 장지나 화장지에 모여 고별예식으로 거행하며, 이 예식은 간소하고 간결하고 정중해야 한다. 그 예식은 성경구절 봉독, 기도, 하관기도문, 축도의 순서를 포함하며, 죽음의 실재를 성찰하고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죽음에서 부활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W-5.0000

제5장 예배와 개인의 제자직

W-5.1000

1. 개인예배, 제자직, 신앙공동체

W-5.1001
개인
과
공동의
예배

크리스천은 공동의 예배와 봉사로, 그리고 개인의 예배 행위와 제자직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거기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제자직의 삶과 하나님께 향한 개인적 응답의 삶으로 파송받는다. 신자의 응답과 제자직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와 봉사의 생활 속으로 흘러들어간다 (W-1.1006; W-2.1001).

W-5.1002
예배와 생활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은 그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부터 예배의 필요성이 나오고; 또 예배드리는 중에 신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며; 예배로부터 세상에서 삶을 위한 선견과 능력이 나온다.

W-5.1003
예배와 목회

예배에서 선포되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신자에게 세상에서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요청한다.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제자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는다. 신자의 생활 리듬은 예배에서 목회로, 목회에서 예배로 움직이는 것이다.

W-5.1004
예배와 훈련

크리스천의 생활은 은총으로 힘을 얻고 순종으로 표현되고 훈련으로 형성된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의 요소들을 주셨다 (W-2.0000).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순종과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성장하는 방편으로서, 이 예배모범에 기술된 훈련 내용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W-5.2000-5.5000).

W-5.2000

2.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

W-5.2001
매일 개인예배

매일 개인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종의 훈련이다. 날마다 제자직에 도전은 날마다 예배로 양육 받음을 요구한다. 매일 개인예배는 신앙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W-1.1006; W-1.3012; W-3.4000), 가정에서/가족들과 (W-5.7000) 또는 사적으로 드릴 수 있다. 성경읽기, 기도, 자기 헌신, 또 봉사하기 위한 결심 등은 매일 개인예배의 요소이다. 세례와 주의 성만찬은 그 성격상 집합적이지만, 이런 성례전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일 개인예배에 중요하다.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의 한 국면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개인 헌신과 봉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W-5.3000

3. 개인예배 시 성경 봉독

W-5.3001

성 경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이며, 이를 통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신앙생활을 위한 권위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들을 때 개인예배는 성경에 중점을 두게 된다(W-2.2000).

W-5.3002

성경 사용

a. 우리는 인도, 지원, 위로, 격려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도전에 대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 연구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또 더욱 충실히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의 문학적 형식,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명 상

c. 우리는 말씀을 명상할 수도 있는데,

- (1) 성경구절들을 외우려고 결심하며,
- (2)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상과 성찰을 하며,
- (3) 성경의 주제들, 이미지들, 그리고 형식들을 비교 분석하며,
- (4) 성경과 실제생활 사이에 있는 상관성을 찾아보고 관계시킬 수 있으며,
- (5)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경에 묘사된 세계와 그 사건들 속으로 상징적으로나마 개입해 들어가 볼 수 있으며,
- (6) 복음의 도전과 요구를 붙잡고 씌름하며,
- (7)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면서 명상할 수 있다.

W-5.3003

성경 이용에 도움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개인의 통찰과 반응을 기록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그것들을 자주 나누는 일은 도움이 된다. 풀어서 적어두는 일, 요약하는 일, 간단한 성찰, 창의적 반응을 하는 일, 그리고 일지를 적는 일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보조해 주는 훈련이 된다. 개인예배에서 성경을 폭 넓게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구집과 각종 번역과 의역서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 듣는데 도움이 된다(W-2.2004).

W-5.4000

W-5.4001

4. 개인예배 때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열어보이는 것이고, 그 분은 우리와 영적 교류와 대화를 주도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받고 응답하고, 말하고 듣고, 또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로, 고백과 간구로, 중재와 자기 헌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W-2.1000).

W-5.4002

기도의 표현

개인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식적인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쁨과 걱정, 공포와 희망, 생의 필요와 갈망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세심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명상할 수 있다. 우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 접근해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 또는 사적인 훈련으로써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춤으로, 신체 운동으로, 음악으로, 또는 은혜에 응답하는 다른 능동적 표현을 통하여 행동화된 개인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철야기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는 행동이나 항거를 통하여, 또는 훈련된 봉사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공적 증거로서 기도를 행동화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 거래, 그리고 세상에서 생기는 일상적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 계약을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정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롬 12:12, 살전 5:17)하는 생활로 부름을 받았다.

W-5.4003
기도에의 도움

개인예배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a. 성경에서 특히 주기도와 다른 기도들, 시편과 또 다른 성경의 송가들에서;
- b. 찬송가와 영가, 그리고 그 밖의 송가들에서;
- c. 예배서, 기도서, 또 예배의 보조 서적들에서;
- d. 문학과 시각예술에 표현된 기도와 헌신의 유산에서.

그러한 자원들은 일간 뉴스와 교회 프로그램 해석 자료 및 개인예배 안내서와 더불어 기도의 기회와 제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W-5.5000

W-5.5001
주일날
성수주일 훈련

5.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위한 기타 훈련

a. 하나님은 성경과 성례전, 그리고 기도 이외에도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b. 크리스천은 주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의 날을 받았다(W-1.3011; W-1.2001). 주일은 신자의 일주일의 시작이며 제자직의 삶에 모습을 부여한다. 주일을 잘 지키는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공중예배의 참여
- (2) 말씀 증거와 봉사, 그리고 구제의 목회에 참여
- (3) 영적 재창조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고, 일상적 직업으로부터 휴식한다.

이런 규율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 일하는 크리스천은 주중 다른 날을 이렇게 지킬 목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W-5.5002
계 절

교회력의 계절은 개인예배와 제자직에 리듬과 내용을 제공한다(W-3.2002). 특별한 계절, 행사, 그리고 각자 생활의 변화 등이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또한 지시해준다.

W-5.5003
금식훈련과
행동화한 기도

크리스천은 금식, 철야, 또 다른 행동화된 기도의 훈련을 위한 특별한 때와 절기를 지킨다. 특별히 제자직의 특별 행동을 준비하거나 회개, 화해, 평화운동, 사회적 항거, 동정의 행동으로서 어느 때나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역시 적절하다.

W-5.5004
기독교인의
봉헌

봉헌은 언제나 크리스천의 결단과 제자직의 표징이 되어왔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총과 개인 재능과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일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라고 분부하신 데 대한 충성된 응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의 기본적 표현이다(W-1.3030; (W-2.5000).

W-5.5005
삶의 청지기 정신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규율로 사는 자들은 스스로 소박함, 관용, 정직성, 환대, 연민, 이해심, 그리고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W-7.5000).

W-5.6000 6. 크리스천의 소명

W-5.6001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 a.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라;
- b. 순종하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 c.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
 - (1) 개인생활에서
 - (2) 가정에서 가족들과
 - (3) 일상 직업에서
 - (4) 지역사와 국가와 세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W-5.6002
우리의 응답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또 신앙공동체의 예배와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목회를 통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우리들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응답한다

- a. 일을 하면서, 노는 가운데
- b.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가운데
- c. 사적 관계에서, 공적 관계에서.

W-5.6003
예배와 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일상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크리스천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는 일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 없다.

W-5.7000

7. 가족 예배 및 가족예배

W-5.7001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으로 또는 한 가정에서 함께 살 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매일 함께 모여 가정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식탁에서 기도하기, 그리고 성경 읽기와 찬송이 뒤따를 수 있다;
- b.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 c.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찰하고 암송한다;
- d. 성가, 찬송가, 영가 및 그 밖의 찬가를 부른다;
- e. 베풀고 나누는 표현을 한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시간을 서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가정예배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쌓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만일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통 시간을 정해두고 개인예배를 드리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킬 수 있다.

W-5.7002
가정예배시의
어린이

부모 둘다 또는 자녀교육을 책임진 부모 중 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의논하고 지시를 함으로써 크리스찬 예배에 대해 가르친다. 자녀들은 가정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참여한다

- a. 기도하고 찬송한다
- b.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c.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
- d.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나눈다
- e. 행동으로 실천하고 응답한다.

자녀들은 주일예배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예배의 적절한 요소들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W-2.3012-3013; W-3.1004; W-3.3100; W-3.5202; W-6.2000).

W-5.7003
특별한 날과 절기

가정예배는 교회생활과 가족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표창을 받거나 축하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생일, 세례받은 날, 그 밖의 특별 연례 기념일들은 특별히 기념해야 할 날들이다. 또한 가정예배에서 주의날과 세례식과 성찬식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교회력에 의한 절기는 대강절, 사순절의 절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기념 등, 특별히 가정예배에서 잘 지켜지는 행사들로서 가정예배를 위한 방향과 내용을 제공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예배는 자연의 절기 변화, 세계와 국가와 지역사회 삶의 리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신자들을 일깨우는 사건들과 필요에 대해서 인식한다. (W-2.3014; W-3.2000; W-3.3600)

W-6.0000

제 6장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예배와 목회

W-6.1000

1. 교회 내의 상호 목회

W-6.1001
목회에서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은 개인예배 및 공동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신앙과 제자직으로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신앙공동체 생활에서 세상 목회를 하고 상호 목회를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바친다(W-1.1000; W-5.1000; G-3.0300; G-4.0200; G-4.0400).

W-6.1002
교회 안에서
상호 목회

교회 안에서 상호 목회는 선포된 말씀을 듣고, 집계된 성찬을 받고, 예배에서 기도를 봉헌하고 함께 나누면서 생기고 키워진다.

W-6.1003
양육과
목회적 돌봄

양육과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들이 서로에게 봉사하는 방식들이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신자와 자녀들의 양육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개인과 공동의 필요와 위기가 있을 때 서로에게 제공하는 협조를 의미한다. 양육은 종종 목회적 돌봄을 포함하고,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 양육을 증진한다.

W-6.2000

2. 크리스천 양육

W-6.2001
공동체에
가담함

크리스천 공동체는 전체적인 삶과 삶의 변천과정에서 소속 구성원들에게 양육을 제공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양육을 제공한다.

- a. 세례준비를 시킴으로써,
- b.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교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 c. 그들을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에 나오도록 영접함으로써,
- d.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 e.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로서 살게 준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W-2.3012; W-2.3013; W-4.2002; W-4.2003)

W-6.2002
책임 수용

교회는 이 세상에서 책임을 떠맡도록 교인들을 양육시키며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a. 자기 발견 및 세계 인식을 하도록
- b. 자기 수련과 제자직을 수행하도록
- c.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개발하도록
- d. 교육과 직업에 대해 이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 e. 개인관계와 결혼에 대해 현명한 결단을 하도록 지원한다.

W-6.2003
소명 생활

교회는 크리스천 소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공생활과 활동에서 크리스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양육을 제공한다. (W-5.6000) 교회는 제자직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지원한다.

- a.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목회자로서,
- b. 물질적 자원, 시간과 재능의 청지기로서,
- c. 특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히 그들 가정의 다른 일원들과 믿음을 함께 나누는 역할에서,
- d.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 e.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W-6.2004
변화에 응답

교인이 새로운 제한과 새로운 자유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제자직을 계속해 나갈 때, 교회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지원할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W-6.2005
교회의 양육 제공자

세례 예식에서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보편 교회를 위해 크리스천 양육을 제공할 책임을 서약한다(W-2.3013; W-3.3603). 당회와 장로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하는 책임, 교회 제직들을 훈련하는 책임, 그리고 교인들에게 제자도 영성을 함양하는 책임을 가진다(G-6.0304; G-10.0102e, f, h, j. l).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통하여,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공식 및 비공식 가르침으로, 그리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공동체를 양육한다 (G-6.0106; G-6.0202). 특별한 재능과 교육으로 교육 목회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공동체 내의 어떤 이들은 양육하는 지도자 과제를 맡도록 부름을 받는다. 교사들, 상담자, 또 당회의 임명을 받은 그 밖의 지도자들은 교육과 양육을 책임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준비되게 한다(W-3.3503). 부모와 부모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W-4.3002; W-5.7000).

W-6.2006
양육자료와
기회

교회 양육의 주요 표준과 자원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거행되는 주일 낮 예배이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교인, 곧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권해야 한다. 주일낮 정기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 활동을 계획해서는안 된다 (W-3.1004). 기독교인 양육을 위한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현장은 예배와 교육과 실제 모범을 통해 신앙을 서로 나누는 가정이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양육의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 a. 교회학교의 교실에서,
- b. 교육과 양육 목적으로 조직된 다른 그룹 및 친교에서,
- c. 봉사와 선교 목적으로 모인 그룹과 단체에서,
- d. 위원회, 이사회, 또는 치리회에서,
- e. 수양회, 캠프, 또는 대회에서.

교회의 신앙고백 문서는 양육의 지침을 제공한다 (G-2.0000). 연구와 지도의 형태와 내용은 교회의 예배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유산의 풍부한 자료에 의해서 마련된다. 크리스천 교육을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개발된 교재들은 당회의 승인을 받은 바,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G-10.0102f).

W-6.3000

3. 목회적 돌봄

W-6.3001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인들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에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회는 여러 다른 차원에서 상호 돌봄의 목회를 제공할 수 있다.

W-6.3002

모든 신자에 의한 돌봄

모든 크리스천들은 일상 생활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지원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주로 신앙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어진다. 또한 이것은 교인들이 공동체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양육 그룹에 들어옴으로써, 또는 교회의 목회사역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제공된다. 장로들과 집사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공동 목회적 돌봄의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G-6.0202; G-6.0304; G-6.0402)

W-6.3003

목회 상담

신앙공동체 내의 특별한 재능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이들은 이 목적으로 조직된 그룹들 및 개인들과 함께, 목회상담을 하는 특별 목회를 하도록 교회에서 부름 받았다.

- W-6.3004
상담 소개
- 어떤 환경에서는 목회적 돌봄 사역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요법을 마련하게 하다.
- W-6.3005
환자의 돌봄
- 교회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울 때나 삶의 위기에 있을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인이 아플 때 크리스천들은 기도와 문병을 함으로써, 그리고 병자와 병자 가정 및 가족, 친지들에게 애정과 지원을 표시하는 그 밖의 행동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병이 위중하거나 오래 갈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말기 환자일 경우, 하나님 신뢰를 중재하고, 고통에서 의지가 되어주고, 괴로움을 위로하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주는 특별한 돌봄이 요구된다.
- W-6.3006
사망시의 돌봄
-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는 즉시 목사의 입회를 제공하고, 상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고, 평범한 행위에서 돌봄과 사랑을 표시한다. 상실의 슬픔과 적응의 시기 중에도 교회는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계속한다(W-4.10000).
- W-6.3007
상실의 돌봄
- 삶에는 다른 상실도 있다. 즉,
- a. 힘의 상실,
 - b. 한 때는 중요했던 관계가 멀어짐,
 - c. 자식들이 집을 떠나갈 때,
 - d. 중요한 직장, 생계유지 수단, 또는 경제적 안정 상실,
 - e. 결혼이 별거나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이러한 상실들은 슬픔의 기회를 주고 재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목회적 돌봄을 요구한다.
- W-6.3008
깨어진 관계의 돌봄
- 교회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이 것은 가정과 가족간의 관계, 학교와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를 파괴로 이끄는 상처와 적대감과 갈등의 일상생활에서 헤어날 수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원할 사람들을 부른다(W-4.8000).

W-6.3009
죄와 용서에서 돌봄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치유에로 부름은 각자의 삶 속에 죄가 실재하고, 이것이 인간 부서짐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다:

- a. 부서짐에 대한 자신들의 죄와 공모를 고백하라
- b. 슬픔과 변화할 결심으로 회개하라,
- c.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하라,
- d.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의 용서를 또한 받아들이라,
- e. 부서짐 안에서 화해를 향해 정진하라,
- f. 치유와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W-4.8000).

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 삶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하고 용서받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화해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목회적 돌봄 행위이다.

W-6.3010
삶의 변천기에 돌봄

교회는 인간생활에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는 변천이 있음을 인정한다:

- a.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독립하고, 그들 부모는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의탁하게 된다;
- b.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하고 직업을 바꾸고 은퇴하게 된다;
- c. 가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거처로 옮기고 가족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 d. 사람들은 힘을 얻고 회복하고 새 결단을 한다.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적응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기도록 하며, 삶의 새로운 역할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생의 변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W-6.3011 신앙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상호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고, 교인
목회적 돌봄을 위한 예배자료 들은 목회적 돌봄을 주기 위해 예배자료를 사용하다.

a. 성경은 지원과 위로와 지침을 구하는 핵심 자료이다. 설교와 찬양으로 하는 말씀의 선포는 필요를 인정하도록 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W-2.2000; W-3.3400)

b. 기도는 침묵으로나 말로나 노래로나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대해 감사드리고 중재하고 간구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며 기도드리는 것은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W-2.1000; W-3.3506; W-3.5400).

c. 성찬식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거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신앙공동체를 성전 안에 국한하지 않고 성전 밖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W-2.3000-4000; W-3.3600).

d.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회중예배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순서들은 특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에게게까지 신앙공동체의 지원과 돌봄을 확대시키며,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존재와 위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e. 추모의 시간,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표명, 중재의 기도, 그리고 그 밖의 단체예배 행사들을 거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앙공동체 예배에로 끌어들인다(W-3.3500; W-3.3700).

W-6.4000 예배와 목회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하나님 예배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의 근본 이고 맥락이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목회에서도 마찬가지 다.

W-7.0000

제7장 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예배와 목회

W-7.1000

1. 예배와 선교

W-7.1001
예배와 목회

교회는 그 목회와 예배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마지막 부활로서 약속하신 거룩한 통치의 실존을 제시한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와 성례전으로 이루는 일치감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재를 표시한다. 목회하는 교회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연민과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창조와 생명의 창지기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한다. 하나님 통치의 표징은 또한 성령의 주도로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하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나타난다 (G-3.0000).

W-7.1002
예배와 선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불러 세계에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케 하신다.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교회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G-1.0200).

W-7.2000

2. 복음 선포와 전도

W-7.2001
전도의 범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시고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신다.

-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화해한다는 복음을 알리라,
- b.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부르심을 전하라,
- c.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라,
- d.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와 영원히 충만한 삶을 제공하라,
- e.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따르라,
- f. 사람들을 신앙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하신다 (G-1.0200; G-3.0300).

W-7.2002
전도의 맥락

예배는 백성들이 복음의 선포를 정규적으로 듣는 주요한 맥락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의 행동으로 응답할 기회를 얻으며,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는 곳이다 (W-2.2000; W-2.5001; W-3.3501-3503; W-3.5500); 교회의 삶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계시되며, 사람들을 분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는 신앙공동체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함께 나누자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나오라고 초대한다.

W-7.3000

W-7.3001
연민의 목회

3. 연민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보내 세상에서 연민을 실천하라고 하신다.

- a. 굶주린 자들을 먹이라,
- b.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라,
- c. 병자들을 돌보라,
- d. 죄수들을 면회하라,
- e. 포로들을 풀어주라,
- f.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라,
- g.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 하신다.

W-7.3002
연민과 예배

하나님의 연민으로 부르심은 예배에서 선포된다. 부름받은 자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에 의해 연민의 사역을 하도록 준비되며 힘을 얻는다. 그 부르심은 고백과 중재의 기도를 통해,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으로, 그리고 연민의 목회에서 나누어 쓰여질 물질을 바치는 가운데서 신실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진다 (W-2.1002; W-2.5000; W-3.3505-3507). 부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연민의 행위를 행하도록 교회의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는다 (W-2.6000; W-3.3701; W-4.3000).

W-7.3003
연민과 주창

단체적으로 행하든지 개별적으로 행하든지 간에 그러한 연민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시급한 필요에 조력하고 상처를 달래주도록 부름받았다. 또한 교회는 부서짐과 왜곡을 일으키거나 조장하는 구조와 제도에 대해 적극 관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창운동과 연민의 행동으로, 교회의 공동사역의 봉사로, 또 여기에 목표를 두고 헌신하고 기관들 및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부름에 응답한다 (G-3.0300).

W-7.3004
성실한 동정

오늘의 신실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민을 표현한다.

- a. 궁핍한 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며,
- b. 자격 없는 자로 판단된 사람까지도 돕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 c. 자신들의 안락과 안전을 무릅쓰려는 기꺼운 마음으로,
- d. 주고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 e. 봉사의 사역을 하는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배공동체의 새롭게 하는 힘과 항상 교통하는 가운데(G-3.0400).

W-7.4000

4. 화해: 정의와 평화

W-7.4001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보내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세상에서 이룩하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도록 하신다(G-3.0300).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는 정의와 평화의 토대이다(1967년 신앙고백 9.45).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예배에서 선포하고 영접하고 실천하며, 교회 자체의 삶과 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정진하는데 헌신한다.

W-7.4002
정의 실행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위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주도록 세우신 질서이다. 정의를 실행하는 성경적 비전은 다음을 요구한다.

- a. 개인이나 공공업무를 정직한 거래,
- b. 공동의 선(善)을 위한 힘의 행사,

W-7.3004: 막1:32-38; 눅 6:12

W-7.4000: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W-7.4002: 출 22:21-27; 레 19:33, 34; 시 34, 82; 사 2:1-5, 32:1-8, 16, 17; 압 5:6-15; 미 6:8; 마 23:23-24; 눅 4:16-21; 웨스트민스터고백 6.127-6.128; 대요리문답 7.246, 7.251, 7.252, 7.254, 7.255;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 c. 거부 당해온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와 존중을 추구하는 자들을 지지,
- d. 공정한 법을 위해, 법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정진,
- e.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환영,
- f. 빈부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추구,
- g.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는 증언,
- h. 교회와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개인과 그룹과 민족들을 억압하는 비리를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W-7.4003
평화 조장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부서짐과 폭력과 불의가 있는 어느 곳으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 만들기에 부름 받는다.

a. 역사와 문화에 의해 갈라지고 분리된 보편교회 안에서, 상호 불신에 의해 내적으로 양극화된 교단들에서, 분열과 알력이 난무하는 개교회들 안에서;

b.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세상에서, 종교나 민족이나 이념의 광적인 행위가 폭력을 도발하는 세상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힘을 쟁취하고 지키려는 욕망이 폭동과 전쟁을 유발하는 세상에서;

c. 범죄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공동체 내에서, 잔인한 경쟁과 질서를 뒤집어 엮는 반동으로 점철된 학교와 일터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폭력으로 상처 입고 공포로 마비된 가족과 가정에서.

W-7.4004
화해 예배

화해, 정의 및 평화의 목회는 교회의 하나님 예배에서 시작되고 양육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죄의식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주의 성찬에서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경계와 분열을 뛰어넘어 신앙의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인정한다(W-2.3000-4000). 기도 가운데서 충실한 신자는 인간의 부서짐과 폭력과 불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탄원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와 정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의를 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화해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W-2.1000; W-2.6000; W-3.3506; W-3.3700).

W-7.4003: 사 2:1-5, 32:16, 17; 미 6:8; 약 3:13-18; 웨스트민스터고백 6.128; 대요리문답 7.245, 7.246;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9.53-9.56

W-7.5000

5. 창조계와 생명의 돌봄

W-7.5001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창조작업과 보존작업에 참여하기를 명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구를 다스리고, 길들이고, 지속시키고, 다시 꾸미고, 다시 채우고, 재생시키라는 막강한 힘과 힘든 책임을 주셨다.

W-7.5002

예배와 창조계의 이용

예배에서 크리스천은 창조된 우주, 지구,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창조계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스스로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말씀에서 선포되고 성례전에서 인증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구속과 갱생의 약속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것을 결심한다 (W-1.0000).

W-7.5003

창조계의 청지기

하나님의 창조계의 청지기로써, 지구의 수탁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 a. 약탈이나 오염이나 파괴 없이 지구 자원을 책임있게 이용하도록,
- b.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지구환경에 우호적인 기술방식과 절차를 개발시키도록,
- c. 생산과 소비를 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유지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는 방식으로,
- d. 번식과 재생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와 실행을 위해,
- e.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움, 질서, 건강, 그리고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 지구의 산물을 사용하고 형성하도록.

모든 창조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신자들은 찬양의 표현으로서, 자기 봉헌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지구의 산물을 함께 나누는 결심의 표시로서, 예배시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 (W-2.5000; W-3.3507; W-5.5005-5.5006; W-5.6000).

W-7.6000

W-7.6001

교회와 신국

6.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예배와 봉사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 통치의 표시이며, 이는 현재의 실현이고 미래의 약속이다. 교회의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적대적이었던 시대에도 교회는 예배드리고 섬겼으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미 세워졌다는 신념과 하나님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리라는 굳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W-7.6002

확신과 희망

현 시대에서 전도와 창조계의 돌봄, 연민과 화해에 대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이다. 또한 이것은 생명을 부인하는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제시한다. 그 희망은 교회사역의 성공이나 교회 예배의 효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하고 예배드릴 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속된다.

W-7.7000

W-7.7001

찬양을 드림

7. 찬양으로서의 예배

예배 안에서 교회는 변화되고 갱신되며 만민의 준비를 갖추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다. 교회는 그 날을 기다린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유 1:24).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계 7:12).

권징조례

The Rules of Discipline

[Approved 1996, Effective July 6, 1996.]

D-1.0000

제 1장 교회권징의 원리

전문

D-1.0101
교회권징

교회 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이다. 교회권징 절차는 세속적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법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인됨의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을 양육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공의로움과 인애를 이룩하며; 잘못 행동하는 교인의 언동을 교정하거나 제재하여 회개와 회복에 이르도록 하고; 권징사유에 의해 손상된 개인의 위엄을 지키고; 불화와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 과정의 올바르고 신속하고 실속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모든 점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은 절차상 안전과 합당한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례를 마련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D-1.0102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 곧 교회가 권징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난 권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또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다.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흠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D-1.0103
조정과 중재

분쟁 없이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려는 전통적인 성서적 의무는 본 권징조례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 권징조례가 교회 내에서 필요시 사법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방식의 사법절차를 권장하거나 비용을 더 들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려는 데 그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마태 5:25)는 교인에 대한 성서적 의무가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모든 교회 교인의 의무는 불화, 불평, 비행이나 변칙의 조절이나 해결을 (기도함으로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논의한 후 그것들이 교회의 순결과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본 권징조례 하에서 공식 절차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D-2.0000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100

1. 사법절차

D-2.0101

교회권징

사법절차는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맥락에서 교회권징이 수행되는 수단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위해 교회의 치리회들에 의한 권위 행사이다.

변칙과 비행 방지와 시정

a. 치리회 변칙과 비행의 예방과 교정, 총회**선교협의회**, 또는 총회의 기관(교정사건, D-6.0000);;

위법의 시정

b. 개인들에 의한 위법의 방지와 시정 (징계사건, D-10.0000).

D-2.0102

교회 치리회들

사법절차를 위한 교회의 치리회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는 자체적으로 재판을 주관한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재판을 주관하고 청문회를 가진다.

D-2.0103

해결의

대안형식

D-1.010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소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전문교육과 자격증을 받은 조정자들과 중재자들에 의해 처리되는 해결의 대안 형식을 개시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취지는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정의의 목표에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진술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간에 차후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D-2.0200

2. 사건의 형태

D-2.0201

교정이나 징계

사법절차는 두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D-2.0202

교정사건

교정사건은 하급치리회나 총회**선교협의회**, 또는 총회 기관의 변칙과 비행이 상급치리회에 의해 교정되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변칙

a. 변칙이란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비행/직무태만

b. 비행/직무태만이란 행동의 결여나 불이행이다.

D-2.0203

징계사건

징계사건이란 교회 교인이나 제직이 위법으로 견책받을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교회 제직원

a. 교회 제직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위법

b. 위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이다.

D-3.0000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 D-3.0101 사법절차에 있어서 각 치리회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갖는다;
관할권
당회 a.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 교회 교인들을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 노회 b. (1) 노회는 그 노회 목사 회원들과 그 노회 소속의 지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들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G-11.0502f).
- (2) 회원권을 가진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 구역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는, 그 사역이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자체로서, 징계의 취지상 그 노회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이 조항에 따라 목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원권을 가진 노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본 단락은, 구역 경계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사역의 허가에 관한 G-11.0401b의 조항들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단락은 G-11.0410 조항에 의해 인정된 목회 범위 안에서 목사가 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노회, 대회총회 c.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교정사건(D-6.0000)과 상소사건(D-8.0000, D-13.0000)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 교회해산 d. 교회가 해산될 때, 노회는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확정지어야 한다.
- D-3.0102 교정사건이건 징계사건이건 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일단 사건이 회부될 경우, 발의한 치리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이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의 못함
- D-3.0103 하급 치리회가 교정사건에 대한 항의나 징계사건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고 나서 하급 치리회가 90일 동안 특정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급 치리회 결정하지 못할 회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건의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특정한 지시를 보내거나 그 문제 자체를 종결지을 수도 있다.
- D-3.0104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명한 목사는 두 번째 노회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이명한 목사의 첫번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이명한 목사는 그 관할권 교단에 입교되기까지는 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 D-3.0105 각 치리회는 다른 모든 치리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취한 판결과 결정과 명령들을 시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D-3.0106
관할권의
종결시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은 교회 제직원이나 교인이 그 교회의 관할권 포기선언을 할 때 종결된다. 만일 징계사건의 피소자가 G-6.0501과 G-6.0503에 명시된 대로 관할권 포기 선언을 할 경우, 서기나 지정서기는 치리회에 피소자의 이름, 조사나 재판 도중에 관할권을 포기한 사실과 날짜, 제기된 혐의사항을 포함하여, 그 당시 사안의 진행상태와 포기선언을 보고해야 한다.

D-4.0000

제4장 위 입

D-4.0100

1. 위 입

D-4.0101

정의

위임은 당회에 의해 또는 노회나 대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미결의 교정사건 및 징계사건의 재판, 결정, 또는 상소 청문을 차상급 처리회로 위임하는 서면청원이다.

D-4.0102

적절한 주제

위임의 적절한 주제는 상급 처리회가 그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필요한지에 대한 사안들과 논점들을 포함한다.

D-4.0103

하급처리회
의무

상급 처리회에 서면으로 위임 청원을 할 때, 하급 처리회는 그 청원의 이유를 상술해야 하고 그 사건 절차의 전체 기록을 송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결정도 취할 수 없다. 만일 위임 청원이 수락되면,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그 이후 부터는 상급처리회에서 주관한다.

D-4.0200

2. 위임 결의

D-4.0201

상급 처리회 의무

위임 청원이 접수되면, 상급처리회 지정서기가 이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에 송부하여 사건을 맡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D-4.0202

접 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임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동 위원회가 재판이나 결정 또는 상소의 청문을 주관한다.

D-4.0203

거 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위임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고 하급처리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유를 첨부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하급처리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관하고 판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5.0000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1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

D-5.0101
선출

총회, 각 대회와 각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목사와 장로 중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목사와 장로가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의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산하 노회 가운데서 균등하게 배분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11개 이하의 노회를 갖고 있는 대회에서는 각 노회가 적어도 1명을 보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노회 산하 각 개교회로부터 장로 위원 1인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징계사건의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 조사위원회 절차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D-10.0204) 및 고발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결정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D-10.0303)를 하기 위해 선정한다. 이 두 위원은 추후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당회는 노회의 전권위원회에 청원 양식 중 하나를 회부한다.

D-5.0102
임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이어야 한다. 단,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원권은 그 위원이 공천받은 대회 밖에 있는 개교회 또는 노회로 회원권을 이명할 때 끝난다. 매 짝수 연도에 총회는 그때 생긴 공석을 메꾸기 위해 6년 임기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총회가 폐회될 때부터 시작한다.

D-5.0103
연조

대회나 노회는 전권위원들은 각 3개조로 선출받되, 한 조 내의 위원수가 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 한 조는 2년간, 두 번째 조는 4년 간, 그리고 세 번째 조는 6년 간 봉사해야 한다.

D-5.0104
공석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로 생긴 공석은 어떤 회의에서든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한 그 선출 치리회에 의해 메울 수 있다.

D-5.0105
자격

6년의 전체 임기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은 6년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선될 자격이 있다. 아무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다른 어느 기관의 위원인 사람은 그가 그 회원권을 사임하기까지는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어느 치리회의 의장이나 서기나 직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협회회의 직원은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D-5.0106
위원회 비용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는 그 선출 치리회에서 지불해야 한다.

D-5.0200

2. 회의

D-5.0201
임원

각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D-5.0202
권한의 근거

송부된 사건의 경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그것에 따라 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D-5.0203
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선출 치리회가 지시한 때와 장소에서 모이거나, 그런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 전권위원회가 결정한 때와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 D-5.0204
정족수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징계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는 정족수가 D-10.0204 또는 D-10.0303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위원을 제외한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법 절차에 대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 및 장로 회원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D-5.0205
참여치 못할 자
- 개체교회 또는 하급 치리회가 어떤 사건의 대상자라면, 그 교회나 그 하급 치리회나 그 하급 치리회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 사건의 심리나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D-5.0206
정족수 부족
-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결석이나 무자격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정족수에 미달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정족수를 얻을 때까지 회의를 휴회해야 한다.
- 정족수 확보 불능
-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들을 선출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정족수 미달을 보고해야 한다.
- 전임 위원의 명단
- b. 치리회의 서기는 과거 6년 이내에 임기가 끝난 상임사업 전권위원회 위원의 최근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그 명단은 가장 최근 연조로 시작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하면, 서기는 정족수를 이루기 위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이전 위원 중에서 충분한 수를 그 명단에서 윤번으로 즉시 선택해야 한다. 서기는 그 치리회에 매년 그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 참석자 비용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면, 그 치리회는 참석하도록 요청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D-6.0000

제 6장 교정사건

D-6.01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1
착수 방법

교정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에게 고소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D-6.0102
고소의 정의

고소란 어느 특정한 결정이나 결의에 있어서 번칙을 주장하거나 비행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을 말한다. (D-2.0202) 고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결정이나 결의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D-6.0103
집행유예

치리회나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D-6.0202b에 명시된 피고인의 결의나 결정은 집행유예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집행 유예란 고소나 상소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결정이나 결의의 시행 지연을 명령하는 D-6.0103a 조항에 따라 허가된 서면 명령서이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

a. 고소나 상소 통지를 제기한 뒤, 그러나 그 결의가 결정이 있은 후 45일 이전에, 다음 중 어느 방법으로나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다:

(1) 치리회 결정이 내려진 다음, (a)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개인이나 하나 이상의 치리회 서명에 불법이 있다고 치리회 결정을 도전하는 고소장, 그리고 (b) 치리회에 의해 그 결정과 결의가 내려졌을 때 출석한 위원의 적어도 1/3 이 서명한 집행유예 요청서를 치리회 서기, 즉 피고인 결정을 내린 치리회이며 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임전권위원회가 소속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전달함으로써; 또는

(2)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의하고 나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나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치리회 서기를 통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집행유예를 요청하고, 그 사건을 결정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적어도 1/3 이 집행유예에 서명함으로써; 또는

(3) 치리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결정이나 결의에 관해 고소나 상소를 청문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적어도 3 명의 위원이 서명한 집행유예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를 통해 상임사법위원회의 그런 위원들에 제출한다. 이 하위 조항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a) 고소인이나 상소인은 동 서기의 사무실 주소로 다음 사항을 즉, 고소의 사본이나 상소의 통보, 그리고 결의나 결정에 도전하는 근거에 관한 짧은 진술이 포함된 집행유예 요구서, 결의나 결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관한 짧은 진술서, 고소인이나 상소인, 그리고 반대 당사자나 치리회의 전화번호와 주소 명단을 우송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

(b) 동 서기는 즉각,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고소나 상소 재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집행유예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c) 집행유예를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하는 위원은, 그의 또는 그녀의 판단에 의해, 결의나 결정에 대해 오류가 발견될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러한 결의나 결정이 유예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진술하는 증명서를 서명하여 동 서기에게 반송해야 한다;

(d) 3, 4 명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정하는 증명서를 보내올 경우, 동서기는 이를 접수한 즉시 집행유예가 내려졌음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 제공

b. 집행유예의 사본은 고소나 상소를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도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유효기간

c.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 제기의 기일이 만료되기까지나, 또는 기일에 맞추어 접수했으면 차후에 있을 조건을 제외하고,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d.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제기 45 일 이내에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접수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 명 이상이 집행유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양편 당사자들이 그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청문회에서 집행유예는 조절되든지, 종결되든지,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건의 공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든지 할 수 있다.

D-6.0200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1
당사자들

교정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고소인이나 고소인들이라 하고 고소를 받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피고인이나 피고인들이라 한다.

D-6.0202
고소 제기자

변칙의 고소나 비행의 고소는 어느 치리회의 관할권에 종속하면서 거기에 조치를 상신하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치리회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치리회 상대

a. 노회나 대회를 상대로 하는 고소나 어느 치리회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치리회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 다음 회의 때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서면 요청서가 상기 회의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 등록 기간 중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노회원으로 등록된 목사나 장로;
- (2) 총대의 등록기간 중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대회의 총대;
- (3)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제기한 당회;
- (4)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5) 동일 수준의 타 치리회를 상대로 그 치리회가 소속한 차상급 치리회에 고소를 제기하는 어느 한 치리회;

(6) 치리회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를 상대로 당회에 혹은 당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대회 또는 노회나 대회 기관의 고용직원.

당회나 총회선교협의회/기관에 대한 항의(기한)

b. 당회나 총회**선교협의회** 또는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하고 이의 교정을 요구하는 서면요청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다음 회의 때 주장된 비행을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로부터 90 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1) 해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 교인;
- (2) **총회선교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당회, 노회, 대회가 총회에 제기**
- (3) **총회선교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에 의해 개인적 또는 재산상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선교협의회나 총회 기관의 고용직원이 총회에 제기;**
- (4)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당회 또는 당회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의 고용직원.

D-6.0300

3. 사전 심리 절차

D-6.0301
고소 진술

고소는 다음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 a.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 b. 날짜, 장소, 그리고 그 환경을 포함한 특별한 변칙 ; 또는 그 비행을 치유하기 위한 서면 요구서의 날짜와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던 차기 회의의 날짜를 포함한 특별한 비행.
- c. 변칙 또는 비행에 대한 고소 사유.
- d.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고소인의 관심과 관계.
- e. 요청한 구제책.
- f. 고소 사본이 피고인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고소인은 수취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인편 전달의 공술서를 첨가하여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D-6.0302
변호인단

치리회나 총회**선교협의회**, 또는 총회의 기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될 때 세 명 이하의 변호인단을 지명해야 한다. 이 변호인단은 그 사건을 상소한 최상급 치리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인을 대표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마련

a. 치리회나 총회**선교협의회** 또는 총회의 기관은 규칙에 따라 변호인의 임명을 제공해줄 수 있다.

봉사 못함

b. 당회 서기, 노회나 대회의 서기나 총무는 봉직하는 치리회의 변호인단에 봉사해서는 안된다.

D-6.0303

고소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간명한 답변서를 상급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그 답변서는 고소에 혐의 사실이 진실함을 인정해야 하고,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된 그 주장을 부인해야 하고, 또한 변칙이나 비행으로 확인된 상황을 설명할 다른 사실들을 내세워야 한다. 답변서는 D-6.0305 에 언급된 어떤 다른 문제도 역시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각하 할 행동도 포함할 수 있다.

D-6.0304

심리 이전 절차

그 고소와 답변이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 그 서기는 즉시 그들 서류를 그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넘겨야 하고, 그리고 그 서기는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5

서류 검사

D-6.0304 에서 규정한 문서를 접수하면, 그 사건을 심리할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신속히 다음 사항을 결정짓기 위하여 서류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 a. 그 치리회의 관할권 여부 ;
- b. 그 고소인이 그 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 c. 그 고소가 적시에 상소 접수되었는지 여부 ;
- d. 그 고소가 구제책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D-6.0306

예비 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그들의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사법적인 질문에 대한 청문회 이전에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 b. 만일 논의 중인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금전적 고려를 포함하여 고소에 관한 심리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고소에 관한 심리 이전 적어도 30 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6.0305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D-6.0307

응답자의 의무
당회 서기 또는
치리회의 서기

a. 고소를 접수한 후 45 일 이내에, 당회 서기나 응답할 치리회의 서기, 피고인의 기관이나 중앙협의회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회의록 및
서류들

b. 그 후 15 일 이내에, 그 고소인은 서면으로 그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의 추가 회록철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c. 관할 상급치리회의 서기에 의해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당회 서기나 응답할 치리회의 서기는 가능하면 포함할 추가적인 서류들에 대한 청원서들과 기록 목록과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회의록과 서류들을 지체함이 없이 상급치리회의 서기에게 넘겨야 한다.

D-6.0308
등록 절차

그 회의록과 서류가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 그 서기는 그들 서류를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그리고 예상 심리 날짜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9
심리 요약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 어느 편에게 출판할 수 있도록 증거의 개요를 담은 심리 요약서와 그 증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6.0310
사전 심리회의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이후 어느 때나, 그 위원회는 당사자들이나,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에게 해결 가능성들을 모색토록 규칙에 따라 마련해 줄 수 있다 ; 또는 사전 심리회의에서 사실 진술과 논쟁 이슈에 관해 합의를 구하고, 문서와 기타 증거를 교환하고, 그 논쟁을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좁히고 그것의 해결을 진척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결의를 하도록 한다.

D-7.000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100

1. 재판의 주관

D-7.0101

재판 -교정사건

교정사건의 재판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주관한다.

D-7.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 장소에서 정중한 예의와 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D-7.0200

2. 소환과 증언

D-7.0201

당사자와
증인 소환

일방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당사자들이나 증인에 대한 재판 출두 소환장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가 반드시 서명하여 송달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 소환을 받을 수 있다.

기타인들 요청

b. 기타인들에 대해서는 출두 요청만 할 수 있다.

타 치리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치리회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다른 치리회에 증인소환을 의뢰하며, 다른 치리회 서기나 지정서기는 증인들이 재판지에 출두하여 필요한 증언을 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비 용

d. 증인은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인소환을 요청한 당사자로부터 변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D-7.0202

소환장 송달

소환장 송달은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사건의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는 송달 및 배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D-7.0203

2차 소환

미국장로교 회원으로서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소환장은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나 증인이 불순종과 모욕죄로 간주되고 그러한 위반은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D-7.0204

증인의 증언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D-7.0205
선서 증언

선서 증언은 D-14.0304의 규정에 받아들이고 접수될 수 있다.

D-7.0300

3. 재판 절차

D-7.0301
변호인

교정사건의 각 당사자들은 출석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에 나올 수 없다.

D-7.0302
자료의 배포

교정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사건에 관련된 어떤 서면 자료나 인쇄물이나 시각 자료들을 사건이 최종 처리되기 이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서류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D-7.0303
재판 진행 통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이 극도로 정중하고 격식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재판 진행과 모든 당사자들, 증인들, 변호인, 일반 방청인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솔하는 권한과 힘을 가진다. 여기에는 그들을 퇴장시키는 권한도 포함된다.

절차에 관한
질문

a.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상의 문제나 증거 입증능력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편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결에 의해 그 문제를 결정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결석하면 이를 반드시 기록한다. 그 사람은 그 이후 그 사건에 참여할 수 없다.

D-7.0304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무효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7.0400

4. 재 판

D-7.0401
교정사건의 절차

교정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위원장이 선언
- a. 위원장은 D-1.0101과 D-7.0102의 본문을 큰소리로 낭독하고, 치리회가 재판을 집행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치리회의 판정관들로서 냉정함과 높은 품위를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엄숙하게 이행하도록 명한다.
- 전권위원들의 자격
-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자격 탈락
-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적으로 재판 사건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를 적극 지지나 반대해 왔거나 또는 D-5.0205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을 경우 실격하게 된다.
- 이의 제기
-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당사자 어느 편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한다.
- 절차적 반대
-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예심에서의 모든 반대사항과 재판 절차 질서나 규칙성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반대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 고소장 수정
- d. 고소인이 재판시에 그 고소장을 수정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단, 수정이 고소장의 본질을 바꾸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개정 진술
-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증거의 규칙
-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반드시 따른다.
- 증거
- g. 증거가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과 피소인을 대신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최종 진술
- h.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논의를 개시하고 마감할 권리가 있다.
- D-7.0402
결 의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회집한다.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심 의

a. 증거의 우세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교정사건의 고소도 지지받을 수 없다. 증거의 우세란 증거와 반증과 저울질 하여 볼 때 증거가 보다 설득력 있고 사실일 개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심사숙고한 후 그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에 명기된 각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그 회의록에 표결을 기록해야 한다.

결 의

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결의해야 한다. 만일 고소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지지를 받으면, 그 전권위원회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하급 처리회로 그 사안에 대해 추후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결의문

c. 결의문은 회기 중에 작성되어야 하고, 결의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최종 결의문이 된다. 서면 결정서의 부분은 직접 배달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즉시 서류제출

d. 결의문은 재판 종료 30일 이내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사건을 위임한 처리회 지정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추후 공포

e.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지시하는 대로 그 결의문을 배포해야 한다.

D-7.0500

5.상소의 규정

D-7.0501
상소 시기

각 당사자의 상소 제출 시점은 그 결의가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일자로부터 시작된다.

D-7.0502
상 소

상소는 원 당사자들의 한 사람이나 그 이상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8.0000에 있다.

D-7.0600

6. 절차의 기록

D-7.0601
절차의 기록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축어적 기록

a.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를 축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한다.

증거물

b.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증거능력이 인정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자료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절차의 의사록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사건에 관련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나 명령, 그리고 표결의 기록이 포함된다.

기록 d. 다음의 목록의 사건 기록을 준비한다.
(1) 고소와 그에 대한 소답;
(2) 그 사건에 접수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들;
(3) 요구가 있을 경우, 안중 등본;
(4) 적절히 표시된 모든 증거물,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5) 결의문
(6) 사건에 관련된 표결을 포함하여,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명령.

보 존 e. 결의가 최종화 된 후 14일 이내에 선출 처리회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고 전달해야 하며 서기는 그것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등 본 f. 요청에 의해, 요청 당사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에 관한 빠짐이 없는 완전한 인증사본이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이 기록의 사본이 기록 담당자에 의해 사실과 틀림없는 완전한 내용으로 증명될 때, 만족할 만한 수수료 결제 방식에 의해 사본 요구 당사자에게 배달되어야 하며, 이 기록의 추가 사본을 만들어두고 D-8.0000에 의거하여 상소가 있을 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D-7.0602 기록에 추가 재판 진행 담당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사건 기록을 보충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기록 보충에 관한 요청이 하급처리회 지정서기에 의해 서면으로 접수되고, 이것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정서기에 전달될 때까지는 어떤 보충 요청도 고려될 수 없다. 요청서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는 10일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D-7.0700

7. 서기의 임무

D-7.0701 결의 보고

처리회가 회기 중에 있을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로부터 결의문이 접수되면, 처리회 서기는 이를 즉시 알리고, 결의문 내용 전체를 처리회 회의록에 입력한다. 처리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첫 번째 정기회의나 폐회한 직후 회의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서기가 그 결의를 처리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의문의 전내용을 회의록 기록에 입력한다.

D-8.0000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100

1. 상소의 착수

D-8.0101

정의

교정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반복 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급 처리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급 처리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8.0102

상소의 착수

상소는 그 사건의 원 당사자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 의해서 착수될 수 있으며 서면 상소장을 접수함으로 이루어진다.

D-8.0103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집행유예가 D-6.0103 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한, 상소 중인 그 결정을 시행하는 앞으로의 어떤 결의도 더 이상 보류시켜서는 안된다.

D-8.0104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8.0105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a. 절차상 변칙;
-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D-8.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8.0201

서면 장소장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에게 배달(서면)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 a. 서면 상소장은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급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 b. 상소하는 당사자는 상소자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처리회의 서기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D-8.0202

서면 장소장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 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 우는 상대면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처리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상소장과 함께 판결이나 결정 사본을 동봉할 것);
-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의 또는 청문회를 처리했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과실 진술서(D-8.0105); 및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 당사자들 각 사람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처리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마련되었다는 확인서.□

D-8.0203
상소장을 직원들에게 전달

상소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상소될 때,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이 기록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8.0300□

3. 청문 이전 절차□

D-8.0301
서류 검사

D-8.0203 에서 규정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 a. 그 처리회의 관할권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제기할 자격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8.0105 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8.0302
예비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에 관한 청문 이전, 적어도 30 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8.0301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당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8.0303
상소 기록 기록의 목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기록

-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하급 처리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7.0601d)
- 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급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7.0601d 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 기록의 접수

c. 그 사건이 용인된 관할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 의한 통지 시, 하급 처리회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진술이 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질문서는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 일자의 통보

e.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 통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 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상소 당사자 어느 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D-8.0303 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8.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통지서내에 오류협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협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 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8.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거기에 응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8.0306
기록 및 적요서 전달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의 접수 시한의 만료에 따라,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8.0307
사전청문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논점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청문회를 규정할 수도 있다.

D-8.0400

4. 상소의 청문

D-8.0401
청문 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8.0402
출두 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의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8.0403
청문

청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D-14.0502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8.0404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 되면

a. 만일 오류가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급 처리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급 처리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조절하든지, 파기하든지, 반복하든지, 그 사건을 새로운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결정의 사본을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8.0101에 마련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 접수

e. 청문의 종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했던 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공개

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9.0000

제 9장 결백 입증의 요청

- D-9.0001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장로교 회원은 혐의 전
결백 입증의 요 말을 명료하게 설명한 경위서와 청원문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 결
청 백입증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치리회에 의한 a. 적절한 위원회를 통하여 치리회가 청원을 허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의할
심의 경우, 그것은 D-10.0201에 마련된 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진행해야 한다.
- 조사위원회 b. 조사위원회는 사실과 정황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보고를 서면으로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 D-9.0102 결백 입증을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공소 중이라고 조사위원회가 보고하지 않는
사건의 종결 한, 보고서로서 사안이 종결된다. 만일 혐의가 고발되어야 한다면, D-14.0402에 따라
 시작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그 사안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D-10.0000

제 10 장 징계사건

D-10.01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1
예비절차의 착수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는 범법 혐의의 서면 진술서를 입증 자료와 함께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 착수된다(D-3.0101). 그 진술서는 구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만일 진실이 증명되는 경우 징계 결정에 귀결할 만한 혐의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D-10.0201).

D-10.0102
범법의 진술

서면 진술은 다음 사람에게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고 소

a.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미국장로교의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치리회

b. 징계의 목적으로 조사받아야 할 범법이 발생했으리라는 정보를 어떤 출처로부터 얻은 치리회의 회원;

자 책

c. 자책감을 갖고 나서는 미국장로교회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D-10.0103
조사위원회에 회부

범법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범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그 치리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D-10.0104
타치리회의 고소

한 회원이 본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 다른 치리회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 의해 범법이 있다고 고소받게 될 때, 그 당회서기나 그 노회서기는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연루된 치리회들은 사법 절차를 상호 협력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D-10.0105
이명 불가

조사나 고발이 심리 중이면, 당회는 교인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노회는 목사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이유가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나 노회서기에 의해 해당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D-10.0106
직위해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동의를 하기에는 정신적 능력이 박약한 것으로 주장된 자에 대해 성희롱 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의 서면진술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상대로 접수되는 경우에, 그러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 받은 서기는 즉각 이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내에 2명의 위원들(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전임 위원명부에서 선출 가능)을 지명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범법 혐의자를 유급 직위해제할 것인지 소견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비용부담은 고용기관이 가능한 한 부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회가 분담해야 한다. 직위해제를 받은 목사나 다른 직원은 목회업무, 행정사무, 교육이나 감독 업무를 돌볼 수 없으며, 세례식, 장례식, 또는 결혼식을 집행할 수 없다.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준 다음에, 주장된 범법행위의 성격과 상당한 진실성 여부에 비추어 숙고하면서 직위해제나 목사직무 제한을 요구할 만한 위협이 교인들과 잠재적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직위해제나 직무제한은 권징조례에 규정된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혹은 직위해제나 제한이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에 의해 변경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b. 만일 동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이 직위해제나 직무제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장된 범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어느 시점에서 자유롭게 직위해제나 직무제한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지명된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10.0200

2. 조사

D-10.0201
조사위원회

조사는 고발이 접수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회원권

a. 조사위원회는 5 명이 넘지 않으면서 3 명 이하가 아닌 위원을 가져야 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D-10.0104 에 따라 타 치리회에서 온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회는 당회 회원들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b. 노회는 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임명을 마련할 수 있다.

비용

c. 조사위원회의 비용은 동 위원회를 임명한 치리회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치리회로 제출된 정보에서 서면진술서가 발생되었다면, 범법혐의가 일어난 구역 내의 치리회가 그 구역내의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10.0202
조사위원회 책임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피소인에게 D-10.0101 에 기술된 범법 혐의에 대한 진술서의 사본을 마련해 준다;

b. 고발인에게 조사위원회 절차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c. 범법 혐의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다;

d.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 서류와 문서와 기록을 조사한다;

e. 모든 해당되는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리한다;

f. G-9.0102 와 D-2.0203b 에 따라 범법이 피소인에 의해 범행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가능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g. 그 성격, 유효성과 증인들의 신용도와 유효한 증거를 적절히 검토한 후, 접수된 고발(들)이 - 서류, 문서, 기록, 증언이나 다른 증거의 근거 위에서 -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의한다;

h. 일반적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합당한 이유가 결정된 다음, 그러나 혐의가 제기되기 전에, 대안의 해결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시한다. 해결의 대안 방식의 취지는 제기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있을 것이다.

(1) 어떤 조정이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연기가 허락되지 않는 한 120 일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어떤 해결 합의점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3)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 합의서를 접수한다; 이 안은 표결에 부쳐지고 최소한 3 분지 2 이상의 투표권자 회원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한다; D-11.0601d 규정에 따라 회의절차를 기록하되, 여기에 피소인 이름, 혐의(들)과 징계의 요지가 들어가야 한다; 당회의 서기나 지정 서기에게 그 결정을 보내고, 당회서기나 회의 서기는 D-11.0701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피소인이 합의 협상의 전과정에서 대리인을 제공받게 해야하며,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5)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양방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의 해결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D-10.0202j** 에 대한 **기소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협제기된 혐의로** 사건을 진행시킨다.

기소위원회 지명

i. 피소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처리회에 고발을 접수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한다.

j.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D-10.0401-.0404 의 규정에 따라 그것들을 준비하고 접수하며 그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들(기소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지명한다.

D-10.0203

피소인의 권리

a. 고발인이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리인의 역할은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다.

b. 고발인 진술서가 범법혐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사람을 대신하여 제출되었다면, 그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c. 위원회나 그 회원과 더불어 갖게 되는 회의마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회나 그 회원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권한과, 만일 고발이 늦게 접수되어 변호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변호인을 지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D-11.0301-.0302)

D-10.0204

조사 과정동안, 피소인은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을 위한 합당한 사안은 조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증거 수집과정을 따랐는지 여부, 고려 중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여부, 조사위원회가 피소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a. 청원의 검토는 양 당사자 및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D-5.0101 에 따라 선정된 전권위원회의 위원 2 인이 주관하는 청문회에서 행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접수 30 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청문회 후 15 일 이내에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 검토 결과를 전권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야 하고 D-10.0405 의 고발 검토를 통지한다.

D-10.0300

3. 결정의 전달

D-10.0301
결정의 전달

만일 조사위원회가 해결의 대안 형식을 발의하면, 그 위원회는 해당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를 통해 치리회에 통지해야 한다.

D-10.0302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만일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심리시 이 고발을 뒷받침할 증거를 낼 수 있는 사실의 개요를 포함하여, 그 고발을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개인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그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바라는지를 피소인에게 물어야 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안할 견책을 지적해야 한다.

D-10.0303
검토청원

만일 아무런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조사위원회는 당회 서기나 노회서기에게 그 사실의 서면 보고서만을 접수해야 하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던 그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a. 그 보고서의 접수 후 30 일 이내에, 그 개인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 청원서는 조사위원회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주장해야 한다.
- b. 조사위원회는 청원서에 나타난 혐의사실에 대해 서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한다.
-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 징계의 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청원과 응답을 고려해야 한다. 그 청원과 응답에 관한 전권 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의 결정은 90 일 이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 d. 이 지명 위원들이 청원을 승인할 경우, 새 조사위원회가 당회나 노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 e. 만일 또다시 고발이 접수 안되면, 그 사건은 종결된다.
- f.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조회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D-4.0000)

D-10.0304
기록의 처리

만일 고발이 접수 안 되면, 조사위원회의 기록의 처리는 당회나 노회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D-10.0400

4. 고소

D-10.0401
시간제한

고소가 범법 혐의가 있던 때로부터 3 년이 지나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 년이 넘어서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 단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이 적용된다. 다음의 예외 조항이 있다.

- a. 민사 사법기관의 재판이 시작된 상황 하에서, 조사위원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당회에 고소장 제기 기한을 민사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된 후 6 개월까지 연장해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허가를 받았을 때이다. 조사위원회는 그러한 민사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판정할 수 있도록 민사 사법기관과 접촉을 계속해야 한다.
- b. 3 년 제한 기한이 적용될 수 없다. 범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자에 상관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c.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 18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어느
개인; 또는

(2) 그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책이나 직권 남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역사적 주: D-10.0401c 의 원문은 제 214 차 총회(2002년)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D-10.0402
사건의 기소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기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소하고 어떤 상소가
있는 동안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D-10.0202h).

당사자들

a. 모든 징계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
회를 통해서 치리회에 의해 접수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 교회의 대표이며 그런 자격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해당 치리회의 모
든 권리를 갖는다.

두 당사자들만

b. 징계사건에서 당사자들만이란 기소치리회와 피소인이다.

D-10.0403
고소의 형식

한 건의 고발은 단지 한 건의 범법만을 주장해야 한다(D-2.0203b).

여러가지를
함께

a.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고소를 동시에 치리회에 접수시킬 수 있다.

고소의 명세서

b. 매 고소는 번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소는 (가능하면) 혐의받은 행위의 수행의 시간, 장소,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소는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함께 심리

c.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고소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재량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D-10.0404
고소의 접수

매 고소는 서면으로 준비되어서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당 회

a. 고소의 접수와 함께 당회서기는 차기 회의시 당회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그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D-4.0000)

노 회

b. 고소의 접수와 함께 노회서기는 그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10.0405
사전 심리회의

그 사건을 심문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고소들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 심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

a.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기소위원회에 사전
심리와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하고, 고소장(들)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

b. 사전 심리회의의 시간이 정해지면,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기소위원회,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위원장(당회장)과 당회서기의 재량에

따라 다른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출석해야 한다. 위원장(당회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 (1) 피소인에게 고소를 읽어 준다;
- (2) 피소인에게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D-11.0301);
- (3) 피소인에게 그때 알려진 모든 증인들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과 문서의 명세서를 전해 준다;
- (4)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고소 내용들을 피소인과 기소위원회에 결정해 주고 정식재판에 대한 대안을 토의한다;
- (5) 조사 위원회의 작업 검토를 위한 청원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사건의 해제 또는 고발 내용의 수정을 허가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취하면서, 고발의 적절함과 관련한 추가적인 신청들을 심리한다. 그와 같은 예비 결정들은 D-11.0402c 에 따라서 노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
- (6) 모든 당사자들이 고소에 포함된 사실들이 진실이고 제안된 책벌의 정에 동의하면, 책벌 청문 일정을 정한다;
- (7) 모든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령한다.

아무 일도 못함

D-10.0406
증인 공개

c. 그 회의에서는 그 이상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피소인은 주소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증인들의 명단을 적어도 재판 일자 20 일 전에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기소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소위원회와 피소인은 재판 일자 전 10 일보다 늦지 않게 증인들의 최신 명단을 그 전권위원회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D-11.0000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100

1. 재판의 집행

D-11.0101
재판 - 징계적

징계사건의 재판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D-11.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독립적인 장소에서 예의 범절이 분명하게 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11.0200

2. 소환과 증언

D-11.0201
당사자와
증인소환

당사자들이나 어느 편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인들이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하도록 소환받을 수 있다.

요청받는 사람들

b. 다른 사람들은 출석을 요청받을 뿐이다.

타치리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재판하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서기나 다른 치리회의 서기가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비용

d. 어느 증인이나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상환은 증인을 부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D-11.0202
소환장 전달

소환장은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한 사실과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차 소환

a.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서 보내야 한다. 즉, 만일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정한 시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욕의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런 범법으로 인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b. 징계사건에서 피소인이 이차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피소인을 대신하여 변호할 어느 사람이나 사람들을 임명한 후, 피소인의 궤석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D-11.0203
증인의 증언 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D-11.0204
선서 증언
선서에 의한 증언은 D-14.0304 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받아들여진다.

D-11.0300

3. 재판 절차

D-11.0301
변호인

징계사건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은 출두해야 하며 변호인에 의해 대신할 수도 있으나 단,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변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재직 중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D-11.0302
변호인을
얻지 못함

만일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이 변호인을 얻지 못하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합리적 변호 비용은 사건이 발단한 처리회에 의해 위임하고 상환받아야 한다.

D-11.0303
자료의 회람

징계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의 최종처리 이전에 사건에 관련된 어떤 기록되거나 인쇄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배포되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D-11.0304
재판집행 통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과 그들을 해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양편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고, 중국에는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

a.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거물의 허용에 대한 질문은 양편 당사자들이 청문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나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회나 전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에 의해 그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결석

b. 재판이 시작된 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원의 결석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D-11.0305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그 사건을 미결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11.0306
비공개 회의
절차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편의 요구나 그 자체의 발의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어느 과정에서 출석회원 2/3 의 투표로서 당사들이나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D-11.0400

4. 재판

D-11.0401
무죄의 추정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은 그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피소인은 무죄로 인정된다.

D-11.0402
징계사건의 절차

징계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위원장에
의한 선포

a. 위원장은 D-1.0101 과 D-11.0102 를 큰 소리로 읽고 치리회가 재판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선언하고 위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치리회에 속한 관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

전권위원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청취되도록 할 수 있다.

(1)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을 적극 지지나 반대를 해왔거나, 또는 D-5.0205 의 규정에 의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면 실격하게 된다.

의

(2) 어느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편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항의 타당성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반론

c.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당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의의 촉진을 위해 고소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런 개정이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소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변론

d. 만일 절차가 질서 있게 되어 있고 고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소인이 매 고소에 대해 “ 유죄 ” 나 “ 무죄 ” 를 주장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그 변론 주장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피소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 무죄 ” 라고 주장하면, “ 무죄 ” 의 주장을 기록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인 “ 유죄 ” 를 주장하면 그 치리회는 D-11.0403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정진술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 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기소

g. 기소위원회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고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론

h. 피소인은 기소위원회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박

i. 기소위원회는 그때 추가 증거를 소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소인을 대신하여 소개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추가 증거는 피소인에 의해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진술

j.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D-11.0403
결 정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 신중한 심의 후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매 고소를 분리해서 투표하고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피소인에게서

고소의 유죄를 찾기 위해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 내에서 그 타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발견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모든 증거의 비교와 고려에 의해 고소를 입증할 물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시켜줄 때 나타난다.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b. 투표권이 있는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3 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할 수 없다.

서면 결정서

c. 매 고소에 대한 판결과, 만일 있다면, 책벌의 정도의 결정을 진술한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회장과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했을 때 최종 결정이 된다.

공개회의에서 공포

d.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했을 때, 당회장(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고소에 대한 평결을 각각 분리해서 공포해야 한다.

책벌의 정도

e. 피소인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죄 답변을 한 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손상입은 정도, 경감, 복권과 배상에 관한 증언을 청문해야 한다. 이 증거는 당사자의 어느 편이나 원고나 그 사람의 대리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범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이 피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때 부과할 책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D-12.0000). 그런 결정에 이어 공개회의에서,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때 책벌을 선포해야 한다.

즉시 접수

f. 그 결정은 당회서기나 치리회의 서기에게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당사자들의 통보

g.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결정에 이름이 적힌 때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공개

h.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을 배포해야 한다.

D-11.0500

5. 상소의 규정

D-11.0501
상소의 시일

상소를 접수할 시일은 그 결정이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그에 의해 거절된 일자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D-11.0502
상소

유죄로 판명된 사람만이 상소의 첫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편이나 항소 결정의 상소를 주도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13.0000 에 나온다.

D-11.0600

6. 절차의 기록

D-11.0601

당회의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구두기록 a. 모든 증언과 구술 절차에 대한 정확한 구두 기록을 미리 마련한다.
- 증거물 b. (증거물로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시해서) 증거로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 회의록 c. 그 절차의 회의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투표와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 기록 d.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 (1) 고 발;
 - (2) 매 고소에 관해 피소인에 의해 제기된 변론의 기록;
 - (3) 만일 요청이 있다면, 증명받은 등본;
 - (4) 적절히 표시된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 (5) 매 고소를 위한 평결과, 만일 있다면, 치리회가 부과한 책벌의 정도를 포함한 서면 결정서;
 - (6) 그 사건에 관련된 투표를 포함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
- 기록의 보존 e. 모든 기록의 원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한다;
 - (1) 당회서기는, 최종 결정 후에, 사건의 기록을 적어도 2년간 보유해야 한다.
 -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종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선출 치리회의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적어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등 본 f. 청원에 따라서 그리고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의 정확하고 완전한 등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등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그 사람이 확인할 때, 만족할 만한 비용 지불 절차에 따라 그것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D-13.0000에 의한 상소에 대비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추가 사본 1부는 기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D-11.0602
기록에 추가

아무도 그 재판 집행에 책임을 진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건의 기록에 보충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요청은 당회서기나 하급 치리회의 서기로부터 서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그 서기는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청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는 데 10일 기한을 가져야 한다.

D-11.0700

7. 서기의 임무

D-11.0701
결정 보고

만일 노회가 그 결정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접수할 때가 회기 중이면, 그 서기는 그 결정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노회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그 서기는 그 첫 번째 정기회의가 그 후 휴회한 회의나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그 결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노회의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D-11.0800

8. 집행

D-11.0801
치리회에 의한
집행

당회가 재판을 끝내고 피소인의 유죄가 판명되고 그 결정이 선언되었을 때, 또는 상급 치리회의 서기가 피소인이 유죄하다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했을 때, 당회나 상급 치리회는 그 결정의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노회가 상소 계류 중에 그에게 직무를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요구를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상소가 결정되거나 상소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황에 따라서 직무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D-12.0000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회복

D-12.0100

1. 책벌

D-12.0101
교회 책벌의 등급

교회 책벌의 등급은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안수식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정지, 그리고 안수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다.

D-12.0102
기도가 따른
견책

견책은 범법에 대한 책벌의 최하 등급이고 선포했을 때 완료된다(D-11.0403e). 그 것은 범법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책망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포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후로 더욱더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도

이 공식적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D-12.0103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은 책벌의 최하등급의 바로 위다. 그것은 책망, 그리고 당회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기간을 명하는 일과 함께, 범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당신은 성경/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하며, 아래
_____ 에 기술된 대로 _____ 의
지도하에 감독 복권 상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제 후로 더욱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도

a. 그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

b.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과 복권 상담의 목적을 감독기관과 책벌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평가와 복권
상담의 진술

c.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기술서는 진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과 만일 감독 복권상담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술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 다른 사람을 성희롱한 범법 사건에 있어서 복권 프로그램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자발적 회개나 회개행위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조언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로서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커뮤니티 봉사, 피해자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한 상징적인 복구, 그리고/또는 피해자의 의료/심리상담 지불기록에 대한 경비 분담.

D-12.0104
일시 정지

안수 직책이나 회원으로부터의 일시 정지는 더욱 심한 범법에 대한 보다 높은 책벌의 등급이고, 일정한 기간 또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범법 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여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_____ 부터 _____ 동안 _____ 또는 _____ 의 감독하에서 아래 기술된 대로 _____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완성시까지 이제 일시 정지처분을 선언합니다.

기도

a.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감독 복권 상담

b. 만일 일시 정지 기간이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의해 한정되었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한을 감독기관과 유죄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직책수행의
자제

d. 안수 직책으로부터의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안수 직책의 어떤 기능의 수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e.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일과 어떤 직책을 갖거나 수행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목사의 일시
정지의 영향

f. 만일 목사가 안수 목사 직책의 수행으로부터 일시 정지되었다면, 노회는, 만일 사건의 상소가 계류 중이 아니라면, 목회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일시 정지의 통지

g. 일시 정지의 책벌이 목사에 관련하여 선언되었을 때, 노회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일시정지
책벌의 종료

h.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당회서기나 상회의 서기를 통해 정지 기일의 종료나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근거하여 회복을

치리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책벌을 부과했던 치리회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치리회가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회복을 승인해야 한다.

조기 복권

i. 안수 직책의 수행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정지 기간의 완료나 책벌에 정해진 감독 복권 상담의 종결 이전에 회복되도록(서기를 통해) 책벌을 부과했던 치리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그 치리회는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그런 회복을 승인할 수 있다.

D-12.0105
직권이나
회원권 박탈

직책이나 회원으로부터의 박탈이 책벌의 최고 등급이다

직책 박탈

a. 직책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없이, 모든 직책에서 박탈되는 책벌이다.

회원권 박탈

b.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회원권이 종결되며, 그 사람이 모든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 사람의 안수와 모든 직책에의 선출이 취소되는 책벌이다.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 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에
유죄하여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_____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_____ 권위로 당신을

(여기에 박탈이 안수받고 선출된 직책으로부터인지 또는 모든 직책으로부터의 삭제를 포함하는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인지를 기술한다)로부터 취소하고 박탈합니다.

기도

c.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직책으로부터
박탈의 결과

d. 만일 목사가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아닌 직책으로부터 박탈되면, 노회는 그 목사에게 회원 증명을 주어 그 목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기독교회로 보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목회자면, 그 목회 관계는 책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박탈 통지

e. 박탈의 책벌이 목사에 관련하여 선포되었을 때, 해당 노회의 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D-12.0200

2. 회복

D-12.0201
치리회의 결정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치리회가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와 그 사람이 회원권 회복을 위해 신앙의 재확인을 하거나 직책에 회복하기 위해 재안수를 받을 때 그 책벌을 부여한 치리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양식은 D-12.0202 와 D-12.0203 에 기술되어 있다.

D-12.0202
박탈 후 직책
회복 양식

목사, 장로나 집사의 직책에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치리회장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양 식

a. 당신(이름) _____ 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본 교단의 당회)는
이제 당신을 _____ 의 직책에 회복시키고,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이 안수 행위에 의해 그 직책에 회복시키고,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이 안수 행위에 의해 그 직책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정식 안수 예식이 거행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어야 한다 (W-4.4000).

D-12.0203
박탈 후 회원권
회복양식

회원권에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치리회의 회의에서
치리회장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양 식

a.
당신(이름) _____
_____ 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이제
당신을 이 재확인 결의에 의해 교회의 완전한 회원권에 회복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재확인 결의가 취해져야 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거나 회원 증명서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어느 기독교회로
발부되어야 한다.

직책에 회복

c. 만일 회원이 안수직에서도 회복되려면, D-12.0202 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D-13.0000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100

1. 상소의 착수

D-13.0101

정의

징계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반복 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급 처리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급 처리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13.0102

상소의 착수

일방의 당사자가 상소의 서면통보를 접수시킴으로 상소의 첫 단계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3

항소판결의 상소

어느 편 당사자나 서면 상소장을 접수시킴으로 항소 판결의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4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만일 적절하게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었다면, 하급 처리회에 의한 앞으로의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단, 예외는 안수직책의 수행이나 회원권의 일시 정지 또는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경우, 그를 상대로 그 판결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상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직책의 수행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일을 그만두는 일이다.

D-13.0105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13.0106

소의 근거

a.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상소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 (1) 절차상 변칙;
- (2)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3)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4)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5)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6)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7)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 (8) 책벌의 지나친 가혹성.

b. 기소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상소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 (1) 절차의 불법성;
- (2) 당사자가 증언하거나 증거를 입수하거나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거부 당함;
- (3) 불법 증거자료를 받아들임, 또는 합법적인 증거나 증언 청취를 거부 당함;
- (4) 증거 또는 증언을 충분히 받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림;
- (5) 사건 처리에 있어서 편견 표시; 그리고
- (6) 헌법 해석의 오류.

D-13.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13.0201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 a. 서면 상소장은 당회서기나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 b. 상소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상소장의 사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D-13.0202
서면 상소장의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 그리고 있을 경우 그들의 변호인이라고 불리우는 상대방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치리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상소장과 함께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을 동봉할 것);
-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리 또는 청문을 처리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당회의 과오 진술서(D-13.0106); 및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권 당사자들과 각 사람들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

D-13.0203
직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상소장이 접수되고 결정이 상소되었을 때, 상급치리회의 서기는 그 기록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직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D-13.0300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1
서류 검사

D-13.0203 에서 규정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 a. 그 치리회가 권한권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접수시킬 자격이 있는지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13.0106 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13.0302
예비 질문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 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다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 청문 이전 적어도 30 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13.0301 에 열거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13.0303
상소 기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의 기록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당회서거나 하급 처리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11.0601d).

추가 기록

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급 처리회의 서기에 접수 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11.0601d.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기록의 접수

c. 서기에 의한 통지 시, 하급 처리회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 진술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 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서는 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일자 통보

e. 상급 처리회의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상소하는 당사자 어느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D-13.0303 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13.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오류 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장에서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급 처리회의 서기에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로 판단해야 한다.

D-13.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상급 처리회의 서기와 함께 거기에 응답하는 서면 적요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방 당사장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13.0306
기록과 적요서
전달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과 접수 시기의 만료에 따라 상급처리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13.0307
사전청문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논점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청문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D-13.0400

4. 상소의 청문

D-13.0401
청문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 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13.0402
출두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에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13.0403
청문

청문 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D-14.0502 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13.0404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급 처리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급 처리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파기하든지,

반복하든지, 조절하든지, 그 사건을 새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이 서명할 때 그것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13.0101 에 마련된 대로 구제계획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접수

e. 그 결정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처리회의 서기와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공개□

f.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13.0405
징계사건의 상소반복 효력

징계사건의 상소를 맡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유죄의 모든 판결을 반복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무죄 방면이며 그 사람은 교회의 직책이나 회원권에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이 효력에 대한 선언은 하급 처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14.0000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100

1. 증거

D-14.0101
증거의 정의

증거는 증인들의 구술 증언 외에, 사실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하는 기록과 글, 중대한 물적증거와 기타 사물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되어야 한다. 필수적 증명의 등급에서 직접 증거와 상황 증거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D-14.0200

2. 증인

D-14.0201
이의 제기

당사자나 증언할 증인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증인의 적격성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D-14.0202
남편이나 아내

적격성이 있다 할 때, 남편과 아내, 서로 상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대하는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D-14.0203
상담인

치리회 관할권 안의 사람들에게 상담업무를 제공하도록 치리회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나와 증언할 수 없다. 단, 증언의 표적이 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때는 예외이다.

D-14.0204
당사자들의
변호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변호인은 개인기밀 문제에 관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의뢰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는다..

D-14.0205
증인의 신빙성

신빙성이란 증인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D-14.0300

3. 증언

D-14.0301
분리 심문

어느 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증인들은 다른 증인이 심문을 받는 중에 출석할 수 없다. 이 것이 피소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단의 출석 권리 또는 전문가 증인의 출석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D-14.0302
증인의 심문

징계사건이나 교정사건의 증인들은 증언을 요청한 쪽의 심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의 대질 심문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당회 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선 서 a.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지금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 없는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확 약 b. 만일 증인이 선서하기를 반대할 경우, 다음 질문에 긍정의 답변을 해야 한다: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건으로 당신이 지금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없는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까?”

D-14.0303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 속기사에 의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D-14.0304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계류 중인 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편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언녹취의 형태로 증언을 받아 기록하도록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타치리회에서 온 사람 a. 필요할 경우, 그와 같이 임명받은 사람(들)이 타치리회의 지역 내에서 올 수 있다.

증언 취득 b. 증인들의 심문 시간과 장소가 양방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다음, 그와 같이 임명받은 사람은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제공하는 증언을 기록한다. 당사자들은 전원 출석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심문할 기회가 허락되어야 한다.

증거로서 제공 c. 그와 같이 임명된 사람(들)의 서명(들)에 의해 적절하게 검증된 녹취서는 어느 한 당사자의 증거로서 현안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증거 허용성의 쟁점들 d. 증언녹취에서 진술된 내용의 증거 허용성에 관한 모든 쟁점들은 그러한 증언 기록이 증거로서 제출될 당시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판정을 내린다.

D-14.0305 현안의 사건에 대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원이 증언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증언을 한 다음에는 그 사건에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D-14.0400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1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증된 서면기록은 어떤 절차에 기록의 허용성 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402
증언의
허용성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정기적으로 검증이 된 증언의 기록이나 사본은 어느 재판 과정에서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500

5. 새 증거

D-14.0501
새 재판 신청

상소 통보를 제출하기 이전, 상소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서, 위법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또는 교정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이나 판결에 상소하는 당사자는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새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고려될 때 다른 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납득될 때,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재판 당시에는 제출할 수 없었다고 납득이 될 때, 그런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

D-14.0502
상소의 고려

만일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 상소가 제기된 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 증거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소통지 접수 이전에 발견될 수 없었다면, 상소를 접수받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재량으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받아들이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건을 확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증거 도입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나 제3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개최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사본을 보내고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증거의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록

1.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2. 한국어 어휘

3. 색 인

4. 합의조항

5.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양 식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Form No. 26)..... P. 21

치리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Form No. 27)..... P. 22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Form No. 9)..... P. 13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204
 (Form No. 28-B)..... P. 24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Form No. 32)..... P. 27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Form No. 10)..... P. 13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Form No. 49)..... P. 38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Form No. 22)..... P. 19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Form No. 7)..... P. 12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3)..... P. 33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6)..... P. 16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Form No. 47)..... P. 36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Form No. 20)..... P. 18

공소, D-10.0403, D-10.0404
 (Form No. 34)..... P. 29

4 규례서/부록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Form No. 12).....	P. 14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Form No. 11).....	P. 14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7).....	P. 30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5).....	P. 29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9).....	P. 31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6).....	P. 30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Form No. 40).....	P. 32
증인에게 소환장, 교정사건, D-7.0201a, D-7.0202 (Form No. 13).....	P. 15
고소장, D-6.0301 (Form No. 6).....	P. 12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Form No. 29).....	P. 26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204b (Form No. 28-C).....	P. 2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Form No. 33).....	P. 28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Form No. 51).....	P. 39
반대, G-9.0303 (Form No. 1).....	P. 7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D-13.0305 (Form No. 48).....	P. 37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D-8.0305 (Form No. 21).....	P. 19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Form No. 46).....	P. 36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Form No. 19).....	P. 18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2).....	P. 33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5).....	P. 16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Form No. 31).....	P. 27
조사 진행 중에 조사 절차의 검토 청원, D-10.0204 (Form No. 28-A).....	P. 23
항의, G-9.0304 (Form No. 2).....	P. 7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Form No. 8).....	P. 13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Form No. 30).....	P. 26
위임, D-4.0000 (Form No. 50).....	P. 21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입증 절차, D-9.0101b (Form No. 25).....	P. 2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3명에 의해 서명된 시행중지 청원서, D-6.0103a (Form 5-A).....	P. 11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Form No. 45).....	P. 34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Form No. 18).....	P. 17
결백입증 요구, D-9.0101 (Form No. 23).....	P. 20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Form No. 44).....	P. 34

6 규례서/부록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Form No. 17).....	P. 17
결백입증 요구의 검토, D-9.0101a (Form No. 24).....	P. 20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Form No. 38).....	P. 31
증인에게 2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Form No. 41).....	P. 32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Form No. 14).....	P. 15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1.0102c (Form No. 28).....	P. 22
시행중지, 치리회의 1/3이 서명, D-6.0103a(1) (Form No. 3).....	P. 8
시행중지,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Form No. 4).....	P. 9
시행중지,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Form No. 5).....	P. 10
시행중지,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이 서명해야 할 청원서, D-6.0103a(3) (Form No. 5-A).....	P. 11
증인 – 비밀보장에 대한 유한 포기서, D-14.0201 (G-6.0204, G-14.0563) (Form No. 45-A).....	P. 35

치리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기재하는 양식

양식 No. 1 반대, G-9.0303

본인 _____ 은 _____ (치리회의 명칭)에 회원 또는 총대
로서 _____ (결정 또는 결의)에 본인의 반대표를 등록한다.

(서명)

[반대는 결정이 취해진 특정 회기가 휴회하기 전에 구두로 표명해야 한다. 상기 양식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기나 지정서기 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줄 수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 들어가야 한다.]

양식 No. 2 항의, G-9.0304

본인 _____ 은 _____ (치리회 이름)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 (변칙 또는 직무태만)에 항의하고자 한다.

본인의 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서명)

[항의의 서면 통보는 항의 사건이 발생한 그 치리회 회기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항의는 폐회 되기 이전에 당회서기 또는 지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교정사건의 양식

양식 No. 3

시행중지

치리회의 1/3이 서명 D-6.0103a(1)

수신자: (고소장에서 시행중지를 요구하는 결의를 취한) 치리회 서기와 (관할권을 가진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의) 치리회 서기)

_____ ,
 고소인
 대
 _____ ,
 피소인

하기 서명인들은 _____ (치리회 이름 삽입) 회원들 중 최소한 1/3을 구성하며, _____ (시행중지되기 원하는 결의 삽입)에 대한 결의나 결정이 취해졌을 때 그 모임에 출석하였하였으며, 그 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이 시행중지는 반드시, 취해진 결의에 도전하는 치리회 위원 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변칙에 대한 고소장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소인은 시행중지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시행중지에 대한 반대를 제기해야 한다. 시행중지를 존속시킬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중지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주: 필요한 수의 서명을 기록하도록 충분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각 서명은 본인의 실제 서명이어야 한다. 이름만 기입된 페이지 또는 서명 페이지의 부분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 고소인이 시행중지를 추구하는 결의를 취한 치리회 서기나 지정서기는 그 서명자들이 치리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결의나 결정이 내려질 때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서를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치리회 서기에 보내야 한다.]

양식 No. 4

시행 중지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다음의 _____(치리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사건의 결의에 참여하였으며, 상급 치리회에서 사건의 상소가 재심될 때까지 시행중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 여기에 서명을 한다.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날짜

서기나 지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청원서를 반드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치리회 서기에게 송부해야 한다.]

양식 No. 5

시행중지,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하기에 명기된 사람들은 _____(결정이나 결의 제목 삽입)과 관련하여,
_____(치리회나 그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 기명된 피소인 이
름 삽입)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나 상소를 _____(날짜 삽입)에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로서, 시행중지 청원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결
정이나 결의에서 오류를 발견할 만한 논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결정이나 결의가 중지되지 않으
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바, 시행중지를 허가한다.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_____, 날짜 _____,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날짜

서기나 지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반드시 고소나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
회의 치리회 지정 서기에게 시행중지 청원서와 시행중지 양식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장을
송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 통보와 더불어,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
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와 양식No. 5A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NO. 5-A

시행중지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를 접수받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최소한 3명이 서명해야 함, D-6.0103a(3)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고소인이나 상소인은 _____(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간략하게 삽입)과 관련하여, _____(날짜)의 _____(치리
회나 동 치리회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서 기명된 피소인 이름) 결정이나 결의가 시행중지
되도록 이 청원서를 제기하는 바이다.

그 결정이나 결의가 중지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결정이나 결의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간략하게 진술)

본 사건의 당사자들, 전화번호, 주소가 아래에 적혀있다.

_____, 고소인/상소인 이름

_____, ▪ ▪

_____, ▪ ▪ ▪ ▪

_____, ▪ ▪ ▪ / ▪ ▪ ▪ ▪

_____, ▪ ▪

_____, ▪ ▪ ▪ ▪

▪ ▪ ▪ ▪ ▪ / ▪ ▪ ▪ ▪ ▪

[* : 고소인/상소인은 반드시, 고소나 상소에 대한 심리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치리회
지정서기에게 시행중지 청원서와 시행중지 양식 및 고소장, 또는 상소 통보장을 송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
는 고소나 상소 통보장과 더불어,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와 양식
No. 5A가 동시적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양식 No. 6
고소장, D-6.0301

고소인
대

피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중앙협의회나 총회 기관)

고소 진술

본인(우리) _____ (고소인(들) 이름(들))은/는 _____ (치리회, 총회중앙협의회, 또는 총회기관 이름)이/가, 20__년 __월 __일자 _____ (장소)의 회의에서 범한 _____ (변칙 또는 직무태만)와/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의 _____ (치리회나 기관 이름)를 상대로 (변칙 또는 직무태만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를 _____ (차상급 치리회나 총회)에게 제기한다.

고소인들은 그 결정/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또는 치리회가 다음의 관점 _____ (그 결정/결의가 왜 변칙적인지, 또는 불이행이 왜 직무태만인지 사유를 기입)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믿는다.

고소인(들)은 다음의 근거 _____ (D-6.0202a, b 명기된 대로 고소인의 입장 진술)에 의해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소인(들)은 _____ (고소를 접수시킨 치리회 명칭)가 _____ (피소된 치리회 명칭)에게 _____ (특정 구체책 명시)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원한다.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고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Form No. 7이 함께 접수되어야 함.]

양식 No. 7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본인은 상기의 고소장 사본이 _____ (총회중앙협의회 또는 총회기관의 서기나 지정 서기)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_____ (피소된 치리회 또는 기관명)에게 20__년 __월 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8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본인은 _____ (치리회나 총회중앙협의회 또는 총회 기관명)의 _____ (치리회나 총회중앙협의회나 총회기관 서기, 지정서기, 대리인 이름)으로서, _____ (인편 배달 또는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또는 수취확인서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으로, 20__년 __월 __일자 _____ (고소인 이름)의 고소장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날짜

서기, 지정서기, 또는 대리인

양식 NO. 9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고소인
대

피소인 _____, (당회, 노회, 대회, 총회중앙협의회, 피소인 또는 총회기관)

답변서

_____(피소인의 변호인단)은 _____(고소인(들) 이름)의 고소장에 제기된 _____ (변칙 및 직무 태만)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는 고소장에 제기된 그러한 주장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라거나, 오류진술이라고 부인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칙이나 직무태만으로 확인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국면들을 주장해야 한다. 답변서는 D-6.0307.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다.]

[피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양식 No. 10**을 함께 접수해야 함.]

양식 No. 10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본인 _____(이름)은 _____의 고소에 대한 답변서로서 첨부문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답변서 사본이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 또는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고소(들)에 대해 20__년 __월 __일자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피소인(들)의 변호인의 서명

양식 No. 11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수신자: _____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제기된 고소와 관련하여, 권징조례 D-6.0310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에 예심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_____ (치리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2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수신자: _____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20__년 __월 __일자, (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귀하를 상대로 제기되었거나 또는 귀하가 제기한 고소와 관련하여, 귀하가 자신을 변론하거나, 또는 귀하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내용이 충분히 심리되고 판결되도록 하기 위해,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 _____ (치리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3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a,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고소인 또는 피소자 처리회 기관 이름[들])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_____ (처리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 (도시), _____ (장소)로 20__년 __월__일 (오전/오후) __시에 출두하여, 교정사건 _____ (사건 이름)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4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장소와 날짜의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13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7.020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5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귀하에게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6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인은 _____ (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년 __월 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 _____ [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 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17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수신자: _____ (증인의 이름)
발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_____ (고소인 이름[들])의 요구에 따라, _____ (치리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 (도시), _____ (장소)로 20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에 귀하가 출두하여 줄 것과, 교정사건 _____ (사건 이름)과/와 관련하여 귀하의 증언을 요청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8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수신자: _____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고소인[들]이나 피소인의 이름)

본인 _____ 은/는 _____ (사건 이름)의 재판에서 _____ (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고소인이나 피소인)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19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수신자: _____ (상소를 요청한 판결을 내린 치리회 서기)

발신자: _____ (상소인)

제목: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노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년 __월 __일자

(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상소에 대해 _____
(대회나 총회)에 통보
하였다.

(D-8.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0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0

상소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본인은 상소통보 사본이 _____ (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급 치리
회 서기)와/과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
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20__년 __월 __일자 제공되었
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2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0305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오류 명세서

[하급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8.0105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의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결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제책이나 교정의 제
거를 진술한다.]

부록

[해당될 경우, 하급처리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처리회 회
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2**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2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본인 _____ (이름)은/는 _____ (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 사본이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
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20__년 __월 __일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의 서명

양식 No. 23
결백 입증 요구, D-9.0101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노회 서기)

발신자: _____ (결백입증 요구자 이름)

본인 _____ (이름)이 _____ 의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_____ (소문이나 험담)에 의해 본인이 명예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_____ (당회나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지명하여, 주장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조사하
고 진상을 파악해줄 것을 요구한다.

[주장된 사실경위에 대한 서술서와 진술서를 제공한다. 소문이나 험담에서 귀하가 위반에 해당하는 어떤 행
위를 했다고 주장되었는지? 그에 대응하여 귀하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24
결백입증 요구 검토, D-9.0101a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나 노회 서기)

발신자: _____ (목회위원회나 기타 적합한 위원회)

조사위원회 임명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_____ (위원회 이름)는
_____ (이름)이가 접수한 결백입증 요구를 검토한 다음, D-10.0201에 의거하여 조사
를 진행하도록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안된다) 고 _____ (날짜)에 결정하였다.
_____ (당회서기나 노회 서기)는 D-10.0201 조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사위원회
임명을 마련해야 한다.

_____ (당회서기나 노회 서기)는 D-10.0201 조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사위
원회 임명을 마련해야 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25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 입증 절차, D-9.0101b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또는 결백 입증 요구자)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에 관한 소문과 험담을 조사하기 위해 _____ (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_____ (공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소할 것이다).

[소문과 험담이 일어난 사실과 상황이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조사위원회가 그 문제 대해 공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D-10.0402에서 시작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날짜

서명

징계사건의 양식

양식 No. 26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자: _____ (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 _____ 은/는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의 관할하에서, 성경과 미
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범법을 한 _____ (피고발자 이름)을/
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 _____ (피고발자 이름)이/가 _____ (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_____ (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전
말과 주장된 사실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7

치리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자: _____ (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 _____ (고발자 이름)은/는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의 회원으로서, 성경과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범법을 한 _____ (피고발자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 _____ (피고발자 이름)가/이 _____ (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_____ (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 설명과 주장된 사실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0.0102c

본인은 _____ (당회, 노회) 관할하에 있으며,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_____ 의 죄가 있음을 진술한다. 본인 스스로 고발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본인은 _____ 은 _____ (날짜)에 다음을 행하였다:
_____ (자신을 상대로 고발하는 내용 삽입).

날짜

고발자 서명

NO. 28-A

조사 진행 중에 조사 절차의 검토 청원, D-10.0204

• • • : _____ (• • • • • • • • • •)

• • • : _____ (• • • • •)

본인 _____ 은/는 _____ (노회나 당 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의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와 관련 된 다음의 문제점들을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가 검토해주시기 청원하는 바이다.

[조사위원회의 오류나 누락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서술한다. 그러한 검토에 대한 적절한 제목은 D-10.0204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 : 조사위원회의 답변서와 더불어 이 청원서는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것 이다. 당회는 그러한 요청을 반드시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D-5.0101). 검토 의 결과로서,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조사위원회에게 제안이 제시할 것이다. 검토 결과 의 내용들은 재판의 준비절차 회의에서도 숙고될 것이다 (D-10.0405).]

• • • • •

[• : 이 청원서는 죄목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까지(“조사 과정 중에”)만 의사진행순서에 들 어간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조사절차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는 재판의 준비절차회의(pretrial conference) 에서다(D-10.0405).]

• • • • •

[• : 이 청원서는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까지(“조사 과정 중에”)만 의사진행순서에 들어간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조사절차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재판준비절 차회의(pretrial conference) 도중이다(D-10.0405).]

▪ ▪ NO. 28-B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204

수신자: _____ (.)

. . . : _____ (.)

본 조사위원회는 _____ (이름)을/를 상대로 제기된 위반혐의 조사를 위촉받은 위원회로서, 현시점까지의 조사 절차들의 검토를 촉구하는 _____ (이름)의 검토 청원에서 주장된 사실들에 대해 다음의 답변을 제출한다:

[주장된 각 사항에 대한 응답]

.

[:당회 서기는 '양식 No. 31'과 동일한 송부 방식으로 이 답변서를 노회 서기에게 전달한다.]

양식 NO. 29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발자)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된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_____ (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_____ (공소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소할 것이다).

[공소 하기로/또는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어 그러한 결의(D-10.0300 조항에 명시된)는 반드시 조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30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20__년 __월 __일자에 구성된 _____ (치리회 이름)의 조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_____ (공소 하기로 또는 공소하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날짜

서기 또는 지정서기

양식 NO. 31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자: _____ (처음 고발장을 낸 사람)

본인 _____은/는 본인이 _____ (당회서기 또는 지정서기)에 제출한 서면 고발장과 관련하여 어떤 죄목도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_____ (날짜)에 받은 바,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 대해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토를 청원한다.

[조사위원회가 공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된 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들에 대해 서술한다.]

[이 청원서는 조사위원회의 답변서와 함께 당회에 의해 또는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검토 결과,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새로 조사하도록 결정될 것이다.]

날짜

서명

양식 NO. 32
검토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수신자: _____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_____ (이름)이/가 _____ (이름)을/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고발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공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 바, 이에 대한 검토 청원을 받고 _____ (이름)에 의해 주장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주장된 사실의 각 내용에 대한 답변서]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 서명

[주: 당회 서기는 양식 No. 31을 전송한 방식과 동일하게, 이 답변서를 노회 서기에게 보낸다.]

양식 NO. 33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토 종결, D-10.0303

수신자: _____ (노회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발자)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나 상임사법전권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_____ (사람 이름)을 상대로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이

_____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_____ (청원자 이름)의 청원은 _____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청원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D-10.0303d). 만일 청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종결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주: 중국적인 재판 (D-4.0000)에 대한 위임의 필요를 피하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서와 답변서의 검토자로서 2~3명의 회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편리할 것이다. 재판이 중국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그러한 회원들은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양식 NO. 34

공소, D-10.0403, D-10.0404

미국장로교는 귀하 _____ (교회 또는 노회 회원 이름)를 다음의 죄목(들)으로 공소한다:
[“범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를 뜻한다.”]

귀하 _____ (이름)는/은 _____ (날짜) 또는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은 범법을 행하였다: _____.

[각 공소 항목에 대해 번호를 붙이고 범법을 구성하는 행위를 명시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주장된 행위를 저질렀던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대로 명시해야 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공소를 지지하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열거하고, 입증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 종류를 열거한다.]

공소를 지지하는 증인들(이름과 주소 열거):
공소 항목을 입증할 기록과 문서(각각의 이름과 종류 열거):

날짜

서명, 조사위원회

양식 NO. 35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 (피소인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 _____ (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6.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첨부문서는 공소장 사본이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6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기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 _____ (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10.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
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7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귀하 _____ (이름)을/를 상대로 미국장로교가 _____ (당회나 노회 이
름)을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
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여 공소에 답변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
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삼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8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37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b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즉,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귀하의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이나 대리인들을 임명하고, 마치 귀하가 출석한 것처럼 귀하의 증언 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귀하는 권징결의에 처해질 수 있고, 불순종과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D-11.0202a).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	------------------------------------

양식 No. 39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귀하가 _____(이름)를/을 상대로 20__년 __월 __일자, _____(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에게 제기한 공소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시에 있을 예정이므로 _____(치리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여 공소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	-----------------------------------

양식 No. 40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 권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1

증인에게 이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40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a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2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3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서기)

발신자: _____(소환장 송달자)

본인은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년 __월 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 _____[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4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수신자: _____ (이름)

발신자: _____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 (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제기한 공소 사건의 절차
가 _____ (도시)의 _____ (장소)에서 20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시에 개최되는 바,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 (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 회의에 귀하의 출석과 증언을 요청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5

증언 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수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 (기소위원회 또는 피소자 이름)

본인 _____ 은/는 _____ (사건 이름)의 재판에
서 _____ (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기소위원회)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서명

양식 No. 46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수신자: _____ (당회서거나 상소받은 판결을 내린 치리회 서기)

발신자: _____ (상소인)

제목: _____
상소인(치리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D-13.0103])
대
피상소인(치리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년 __월 __일자 _____
(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어 이를 _____ (노회, 대회 또는 총회)에 통보하였
다. (D-13.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7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7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본인은 상소 통보가 _____ (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급
치리회 서기)와/과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20__년 __월 __일자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48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0305

상소인

대

피상소인

오류 명세서

[하급 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13.0106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 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 론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제책이나 교정의 제거를 진술한다.]

부 록

[해당될 경우, 하급처리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처리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9**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9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본인 _____ (이름)은 _____ (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 사본이 _____ (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20__년 __월 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위임 양식

양식 NO. 50
위임, D-4.0000

수신자: _____ (차상급 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 (교회, 노회, 대회)의 _____ (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차상급 처리회 이름)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게 다음의 사건에서
_____ (재판과 판결, 또는 상소 청문회) 관할권을 맡도록 청원한다:

고소인

대

피소인

또는

미국장로교

대

피고인

사건을 위임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급처리회가 사건을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사유 설명):

날짜

처리회장

서기

양식 NO. 51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수신자: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 (차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 (노회, 대회, 또는 총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징계 또는 교정) 사건을 본 치리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는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_____ (승인한다, 또는 불승인한다).

_____ (치리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사건의
원 관할권을 _____ (수락한다, 또는 거절한다).

[거절 사유를 기술한다, (D-4.0203).]

[만일 차상급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관할권 거절할 경우, 하급치리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재하고 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거나 서기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서 문

본 합의조항은 두 교회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 미국장로교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며, 또 그렇게 되는 방편에 관하여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계약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 합의조항은 재연합의 세목을 기록한다. 그 내용들은 각기 그 전례를 가진 재연합 교회의 지속성을 증명한다. 재연합 교회는 모든 교회적, 사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속적인 실재가 될 것이다.

두 교회가 그들의 개별적 헌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승인했고, 재연합이 효력을 발생했으므로 재연합된 단일 교회로 존재하며, 두 교회의 개별적 존재는 해소된다. 원래 합의에 따라 두 당사자들은 개별적 교회로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따라서 그 합의는 향후 변경될 수 없다. 재연합 행위에 의해 그 합의에 반영된 두 당사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단일의 재연합 교회로 연합되었으며, 그 합의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제안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이전 조직의 관심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재연합 교회 수립에 곧이어, 그 새헌법(G-1.0500)¹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본 합의조항보다는 새 헌법이 단일 교회의 기본문서이며 그 규정에 따라서 개정될 것이다.

¹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G - 정치형태

D - 권징조례

S - 하나님 예배 지침서(1988년 이후 이 책은 예배모범으로 불리운다.

제1조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더불어 갖는 미국장로교의 지속성

- 1.1 본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미국장로교라고 불리우는 단일 교회를 형성하도록 의도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연합 이후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국장로교가 각자의 후계자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 후계자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역사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역사이며, 그것을 구현한다. 본 조항들은 전술한 내용과 일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장로교(PCUSA)는 각각, 미국장로교(PCUSA)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재연합의 결과에 의해 일어난 지속적 교회이고, 단일 교회의 실체로 의도되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다.
- 1.2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교인은 각각 미국장로교의 교인이어야 한다.
- 1.3 미국 남장로교의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 안수 제직원은 각각 목사나 치리장로나 집사이든 간에,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안수 제직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어야 한다.
- 1.4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지교회는 각각 미국장로교의 지교회여야 한다.
- 1.5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에 있는 담임목사, 동사무사, 부목사나 보조목사와 지교회와의 모든 목회관계는 미국장로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 설교자나 파송 교회 사역자로서의 현존하는 관계는 미국장로교의 수립에 의해 방해받아서 안 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동일한 지교회와 그 관계를 계속하는 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1.6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당회, 노회, 대회 각각은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치리회여야 한다.
- 1.7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교회의 최고치리회이며, 미국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 총회의 후계자여야 한다.
- 1.8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 또는 두 교회의 공동 감독하에 있는 모든 이사회, 대행기관, 단체와 위원회들은 각각 지금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치리기관에 대해 가진 것과 동일한 관계를 미국장로교의 해당치리회와 가져야 한다.
- 1.9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의 지시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공포된 모든 정책 선언들은 각각 미국장로교 총회의 행동으로 폐기, 변경, 또는 대체되기까지는 그것을 채택했거나 공포한 교회에서와 같이 미국장로교에서도 동일한 권한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조 재단이사회와 법인체 조직

- 2.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단체의 모든 수탁자와 법인체 조직 각각은 그들에 의해 보유된 모든 재산, 곧 부동산 및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단체의 수탁자가 되고 법인체 조직이 된다. 그와 같은 법적 절차는 필요에 따라 지체없이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수탁자들과 법인체 조직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모든 재산(부동산과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수탁자이고 법인체들이고 조직들이며 재산으로 명백히 식별되어야 한다.
- 2.2 그런 수탁자나 법인체에 의해 신탁 보관된 모든 기금의 지속성과 보존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신탁증서에 명백히 설정된 대로 재산 양도자나 유언자의 의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장로교의 적절한 기관이 그런 신탁증서에 지명된 수익자를 승계했음을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3조 고백문서들

- 3.1 두 선행 교회의 고백문서들은 재연합 교회의 고백문서들이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임시 서기는 G-1.0501에 정의된 대로 고백문서들의 공식원문을 작성해야 한다.
- 3.2 재연합 장로교의 총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다양한 관점과 그룹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개회 초기에 임명하여, G-18.0201에 마련된 대로 *신앙고백서*에 삽입할 만한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 3.3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이 신앙고백서에 통합되기까지, 미국장로교(PCUSA)는 1962년 미국 남장로교의 제102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간추린 신앙선언*” (A Brief Statement of Belief)을 성경에 명시되었고, 미국장로교의 고백서들에 포함된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혁교회 이해의 개요로서 수락한다. 그 과도기 기간동안, “*간추린 신앙선언*”은 교인들과 제직들의 교육에서, 안수 이전의 목사후보생들과 타노회/타교단 이명에 의해 노회회원권을 구하는 목사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목사고시에서, 교회 고백서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총회 사무처

- 4.1 재연합에 곧 이어 총회사무처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두 최고 치리회 기관은 기록과 기능이 새 최고치리회로 질서있게 인계되게 하기 위해 재연합의 발효일 이후 1년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 과도기 기간에 미국 남장로교의 서기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서기는 총회의 임시 서기로서 자격을 가지며,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임시 서기들은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합이 발효된 일년 후에 총회 사무처에 대한 임무와 조직기구를 제안해야 한다.

- 4.2 총회 중앙협의회는 연합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서기공천 특별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연합 교회의 전 지리적 구역을 대표해야 한다. 동 위원회에 뽑힌 위원은 총회 서기직에 공천될 수 없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개인과 치리기관의 공천을 받은 전 후보자들에 대해, 그들이 직책을 맡을 용의가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하고, 동 위원회 자체적으로 적임자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 동 위원회는 적임자로 고려되는 추천자 명단을 3명이 넘지 않은 범위로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직접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회는 총회서기공천위원회를 수립하고, 상기 문단에서 언급된 특별위원회로부터 추천에 대한 보고를 받게 해야 한다. 동 총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명단에 제한하여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특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다음, 총회위원회는 2명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 명단이 총회 폐회 48시간 전까지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피지명자가 단 한명이고 회의장에서 더 이상 지명이 없을 경우,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의장 선출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선언되어야 한다.

제5조 총회 중앙협의회와 대행기관의 과도기적 구성과 임무

- 5.1 재연합 직후 기간 중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총회장과 두 교단의 가장 최근 총회장 두 명, 그리고 아래의 5.2에 명시된 대로 총회에 의해 선출된 48명이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외에도, 총회서기와 총회중앙협의회 추천에 의해 총회가 수시로 임명하는 직원들은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이 없는 객원위원이 된다.
- 5.2 미국 장로교의 첫 총회는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 48명을 선출해야 한다. 24명은 남장로의 마지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그 중 21명은 그 총회 선교이사회 위원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총회 운영위원들이어야 한다. 24명은 미국 연합장로교의 마지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피지명자는 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동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중 최소한 1명씩은 교단의 각 대회 거주자여야 한다. 선출된 위원들은 연합하는 교단의 총회중앙협의회와 기관 및 부서에서 나와야 하고, 교회인종협의회, 교회여성협의회, 여성문제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들의 절반은 목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평신도들이어야 한다. G-9.0104와 G-9.0105 규정에 합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 없이 5년간 시무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총회가 결원을 채운다. 5년이 되었을 때, 총회중앙협의회가 그 위원들을 동수로 3개조로 나누어, 1년 추가, 2년 추가, 3년 추가 기간 말에 만료되도록 할당한다. 그 이후에는 G-13.0202와 의거하여 위원들을 선출한다.
- 5.3 재연합 후 첫 5년간, 총회 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직원 임명을 하나, 이 임명과 선출은 총회의 재가에 종속된다. 총회 서기는 기록 서기여야 한다.
- 5.4 총회 중앙협의회는 G-13.0201에 열거된 책임을 가지며, 더하여 통합하는 교단 총회들의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에 대한 필수적인 조정과 관리와 통합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첫 총회가 폐회하면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 선교협의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국 남장로교의 총회 선교이사회(총회 중앙협의회의 선출 이후에 잔류 위원들로 구성)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프로그램부, 협력부와 소명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지 않은 한, 그들 각자에 의해 이전에 수행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기간 중 상기 부서에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없이 계속 시무해야 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지명을 받고 총회 선거를 통해 결원을 채운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본 합의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재연합 교회의 총회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련시키는 총회 업무 기획을 개발하여 차기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단, 아래의 제11장에 마련된 은급기관은 제외한다. 그 기능이 재연합 교회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때 그 대행기관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5.5 총회 중앙협의회는 재연합 이전에 양 총회가 승인한 지속적 선교 방향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총회 대행기관들의 프로그램 사역을 조화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세계선교·복음전파·교육·교회갱신과 확장·경제·사회 정의의 분야들에서 교회 일치의 맥락으로 전세계에서 조직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기관의 창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입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각 나라와 남녀 각각에게 알려지는 방식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미국 국내외적으로, 타 교단들 및 타 단체들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5.6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사역기획을 개발함에 있어서 교회인종협의회(양 교단의)와 여성문 제위원회(미국 남장로교) 및 교회여성협의회(미국연합장로교)와 같은 기존 협의회에 대한 지지와 기능 감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사역의 기획이 완성되고 이런 기능들이 보장될 때까지는 기존 기관의 체계와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 5.7 재연합 교회 총회들의 다양한 이사회, 대행기관, 협의회, 사무국이 재연합 교회의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하는 가운데, 또는 새로운 대행기관들이 재연합 시에 창설되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총회 사무처와 대행기관들이 들어설 위치나 위치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민감성이 보여져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가능한 한 대등한 차원에서 고용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는 평등고용기회(G-13.0201b)와 전체 참여 원칙(G-4.0403)에 관한 전체 교단의 계획과 일치되게 충원되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형평성있는 해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총회 대행기관들의 장소

- 6.1 총회 중앙협의회는 즉시 대표위원회를 임명하고, 총회 대행기관들의 소재지로 단일 지역이 좋을지, 복수 지역이 좋을 지에, 전문가 자문가들과 검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가능성있는 지역이나 지역들을 제안해야 한다. 동위원회는 만일 재배치가 포함될 경우, 이전(移轉) 계획표를 짜서 제안해야 한다.

제7조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

- 7.1 노회와 대회구역 특별위원회가 조직되게 하고, 기존 교단들의 노회와 서로 중복되는 곳에서 치리회들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노회들과 대회들도 도와야 한다. 동 위원회 임무는 총회를 대신하며, 총회 결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권고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다. (G-13.0103, l, m)
- 7.2 재연합 교단의 각 대회에서 1명씩 뽑아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기존 교회의 정규 공천 절차를 통해 연합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총회가 폐회되고 나서 즉시 임시 총회서기에 의해 개회될 때 자체적으로 그 위원장을 선출한다.
- 7.3 특별위원회는 중복 노회들/대회들의 절충절차를 추진하고, 상호 절충을 통해 양방이 만족스러운 계획 개발을 위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계획은 재연합한 후 5년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영향을 받는 노회들/대회들의 치리기관들이 총회에 예비교섭의 방식으로 구역조정을 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노회들/대회들이 서로 중복되어 오랜 세월 나란히 존재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G-9.0104에 반영된 공정대표제 원칙이 준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노회 회원이 현재 누리는 치리의 책임과 특권이 존중되고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치리기관 지침서를 개발하여 절충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된 치리기관들과 특수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각 안을 총회로 보내 승인을 추천한다. 지역을 지리적으로 연관시킬 때 친교의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고 치리회 업무 관장도 용이해진다는 원칙 하에서 특별위원회는 전체 교단의 선교를 증대시키는 충분한 교세와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치리기관들의 위치가 유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높은 목표를 두어야 한다.

- 7.4 새로 형성된 치리기관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연합하는 치리기관 회원들의 권리와 특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 7.5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들이 이룩하는 경과 보고를 총회에 매년 상정해야 한다. 만일 재연합한 후 5년 내에 모든 관련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재조정이 상호개발되지 않으면, 그 과정의 연장을 총회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될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연합하는 차기 총회가 향후 10년 한도 내에서 지역적 통합을 완전히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매 총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7.6 민중이나 언어적 고려가 바탕이 된 노회일 경우나 민중 그룹의 회원들이 지배적인 노회의 경우, 재조정안은 10년의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절차의 연장을 신청하고, 이것이 총회에 의해 허가되면 총회가 연합된 후 15년까지 성취되어야 한다.
- 7.7 그때에는 경계 중복에 관한 모든 문제들과 기타 노회들/대회들의 관련문제들은 총회 결정으로 수락되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소되어야 하며, 미래의 경계이슈들은 G-13.0103 l, m의 조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 민중 대표, 참여와 조직

- 8.1 미국장로교는 당회 위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회원권은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수 위원들이 치리회 내에 있는 민중그룹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전체 회원에 다음의 각 범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되어야 한다:
 - a. 다수 남성회원
 - b. 다수 여성회원
 - c. 민중 남성회원
 - d. 민중 여성회원
 - e. 남녀 청년회원

동 위원회의 주 기능은,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다른 부서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효과적인 대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 8.2 교회의 치리회들은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와 포괄성에 관한 교회의 결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치리회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중적 배경을 근거로 차별해왔던 과거의 행동 양식을 시정해야 한다. 미국내 민중계 회원들(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중계 코커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중회원 참여와 대표는 대표위원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8.1).

- 8.3 총회 중앙협의회는 8.2 명시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과 일치되게, 교단 민중 코커스와 협의하고 인풋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협의에 필요한 경비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민중교회와 목회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민중교회 개발을 위한 교단적 전략 개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민종 그룹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어 왔던 학교와 기타 기관의 기금과 운영상 필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일.

- 8.4 민종 교육기관은 민종교회 지도력을 개발했던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민종교회 지도력의 시급한 필요와 일치되게, 총회가 대학과 고등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민종 그룹의 필요를 제공해온 장로교 신학교들의 운영상, 개발상 필요를 충족하는데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제9조 여성의 대표, 참여와 조직

- 9.1 G-9.0105에 의해 당회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해 요구되는 대표위원회는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기타 부서의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며,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과 다수인종과 민종그룹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9.2 9.3에 기술된 대로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될 때까지는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그룹에서 선출된 대표위원들과 협의 하에, 총회 중앙협의회가 두 교단에 있는 각급 여성 프로그램들과 기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 9.3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 그룹들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대표자 그룹은 회집하여 프로그램과 기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대표자들이 대표한 그룹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 승인은 각 여성그룹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총회 중앙협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그룹은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그들의 임무는 6년 내에 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조 신학교육기관

- 10.1 재연합 교단은 신학교육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책임을 진다. 이 기관들은 안수직 목회를 위한 남녀와 다른 전문직 교회 지도자 소명을 준비시키며, 전체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강력한 신학적 자원센터를 제공할 책임을 떠맡고 있다.
- 10.2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기관들: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²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Virginia,

²이 신학교들은 미국 연합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Richmond, Virginia,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기관들: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Johnson C. Smith Seminary,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Atlanta,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³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California,

이 기관들은 그들의 현 이사회와 정관과 설립허가 및 경영안을 가지고 재연합 교단으로 들어와 지속되어야 한다.

- 10.3 재연합 당시에 이 기관들과 관련된 치리회 법원과 사법행정에 의해 주어진 현 재정지원 방침을 연합교단이 지속해야 한다. 치리회들이 재연합 이전 연도에 할당한 유사한 총계 비율로 각 신학기관들이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신학기관에 대한 대회와 총회의 재정지원 수준이 지속되어야 한다.
- 10.4 재연합 교회의 첫 총회에서 신학기관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한 위원회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명은 교단 전체에서 (총회의 특별위원회를 공천하고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전술한 11개 기관의 이사회들에서 각각 한명씩의 대표자를 동 위원회에 대표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첫 총회의 총회장이나 총회장의 지명자가 개회해야 하고, 그런 다음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의 예산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하고 동 위원회 직원회가 지원해야 한다.
- 10.5 특별위원회는 신학교육기관과 재연합교회 치리회기관의 관계를 검토하고 치리회기관의 신학교육 자금조달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현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보조안을 세워야 하며, 특히 흑인장로교 구역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Johnson C. Smith Seminary 신학교 개발의 필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총회의 6년차 개회나 그 이전에, 신학교육기관들이 치리회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는 방식에 대한 건의사항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³이 신학교는 미국 남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 10.6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교협의회와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교 교육위원회는 그들의 현 기능과 회원권을 보유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회원권 범주에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여 결원을 채워야 한다. 협의회와 위원회는 신학교 교육기관의 특별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나올 때까지, 신학교 교육기관의 공동관심사를 위해 협력적으로 일한다.

제11조 은급, 연금, 보험, 복지후생, 지원, 구제 프로그램들

- 11.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연합이 완성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그들의 책임이 11.3에 명시된 법인체로 인계 되기까지는 각자 설립조항에 따라 분리된 법인체로서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법인체 들이 분리된 조직체로서 존속하는 동안, 이사회 회원권은 두 교단의 재 연합 당시에 조직된 그대로 동결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연합 교회 총회에서 새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재연합 당시 효력을 가진 계약책임의 이행이나 다른 절차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11.2 두 교단을 재연합하기로 두 총회가 최종 표결을 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사항들을 개발하여 재연합 교회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 a.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현 은급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지원구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 통합 플랜과 프로그램들;
 - b. 연금과 구제이사회들의 현 연금과 구제기금 및 보험기금에 대해, 그리고 기금을 따로 예비해 둔 목적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확인하는 은급이사회들의 현 은급, 재단, 보조, 시설/장비와 특정 신탁기금을 형평하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 11.3 새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이 재연합 교단 총회에 의해 승인될 때, 이 것들은 민간설립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적 책임을 가진 법인체에 의해 관장되어야 하며, 이 법인체는 이러한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업무 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미국 남장로교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은급제도이사회와 구제프로그램 책임을 떠맡는다. 이 법인체 이사회의 이사들은 재연합교회의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기존 기금의 형평 적용 프로그램에 대해 재연합 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러한 기금은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 충족됨과 동시에 곧 바로 이전 문단에서 명시한 법인체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새 플랜과 프로그램이 발효할 때까지는 두 교단의 기존 플랜과 프로그램들이 수정 없이 지속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은 재연합 되기 전에 속한 플랜으로 계속할 것이다. 단, 새 안수목사, 새 평신도직원, 그리고 교회의 사무처를 바꾸거나 고용기관을 바꾸는 사람들의 경우, 참여 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고용기관과 개인이 같은 플랜에 동의해야 하고, 선택 플랜의 봉급과 필수적인 부과금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새 통합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은 재연합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평신도 직원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한 현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은급 플랜과 복지후생 플랜들이 일단 운용된 다음에는, 어떤 새 회원도 이전에 존속한 플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새 플랜이 발효된 날짜 다음에는 월급과 관련하여 징수된 부과금은 이존에 존속하던 플랜으로 징수될 수 없다.

각 연금과 은급 기금은 모든 법적 의무사항과 일치되게 계약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발생하여 전자산 최종분배에 목적을 두고, 그 사용을 활동회원과 은퇴회원의 회원 독점용으로, 보험 회계학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에큐메니컬 관계

12.1 교단 재연합 전에 한 쪽 교단과 관계된 교단들과 재연합 교회가 일차적으로 관계를 지속한다면, 재연합교회의 총회가 에큐메니컬 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자산을 가진 지교회의 교단 이적 절차

13.1 본 합의서 조항의 취지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를 미국장로교(PCUSA)로 조직하는 재연합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교회 재산에 관한 소유권 원칙은 교회법과 민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로, 이전 교회에서나 재연합 교회에서나 어떤 형태로도 변경이나 축소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13.2 연합이 완성된 후 18개월 동안은 어떤 지교회도 이적할 수 없다. 단 총회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재연합 교단에 남기를 원치 않는 회원이나 제직이나 목사들은 G-10.0102r, G-10.0302b(1), G-11.0103n에 명시된 대로, 어느 때라도 다른 교단이나 특정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

13.3 연합이 완성된 1년 후, 이전에 미국 남장로교 교단에 속했던 지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이적할 수 있다:

a. 교회의 당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_____(이름)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개혁신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한 회의소집에 대한 정당한 공고가 연속적으로 두 주일날, 교회의 정기 일요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고, 첫번 공고는 회의가 소집되기 적어도 10일 전에 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정족수는 회원의 1/4; 또는

회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25명이나 회원의 1/10 중에서 더 많은 숫자이다.

b. 관할 노회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과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c. 회의에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떠한 종류의 표결도 하지 않는다.

d. 이적문제 고려의 목적으로 공동의회가 소집된 날짜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 그러나 12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 내에 당회가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e. 그러한 회의 소집에 대한 정당한 통보가 적어도 회의 개최되기 30일 전에 전 교인들에게 우송되어야 하고, 연속 두 주일날, 교회의 정규 일요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공고되어야 하며, 첫번 째 구두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전에 발표한다. 노회위원회가 그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하게 한다.

회의 소집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_____(이름)는 ‘타 개혁신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지 요청하지 말 것인지?’를 숙고하고 결정하기 위해 20__년 ____월

_____일자 (오전 또는 오후) _____시에 _____(장소)에서 특별공동회의를 소집한다. 이 특별회의 소집의 근거와 권위는 합의조항 제13조에 있다. 이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한 교회로 다시 합쳐서 미국장로교(PCUSA)를 세우기로 합의를 체결한 연합계획의 일부이다. 이 취지의 정족수는 정식으로 등록되고 확인된 활동회원의 1/3 보다 적어서는 안 한다. 것처럼 중대한 사안의 결정은 전체 교인의 의사를 진정하게 반영시킬 만큼 충분히 큰 집단에 의해 의결되게 하도록 촉구한다. 토의 후, 다음의 단언적 질문을 비밀투표에 부친다:

미국장로교(PCUSA)의 _____ 교회가 타개혁신단인 _____(으)로 옮기는 것을 요구할 것인가?

이적을 요구한다 _____ 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_____
 만일 출석한 투표교인의 2/3가 교단이적을 요구하면, 이 개체교회는 본 합의서 제13조의 특별조항에 의해 이적될 것이며, 기존의 압류처분이나 채무 책임과 함께 동 교회의 전재산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지교회로서 회원권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 f. 10일 내에 패자 쪽의 어느 누구라도 관할노회에 보낸 공동의회 서면통보 정규성이나 투표과정이나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노회는 이슈가 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새로운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g. 만일 미국장로교 교단으로부터 이적 찬표를 던진 사람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접수될 경우, 그 이의제기는 노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교회는 미국장로교의 회원교회로서 존속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이적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 의해 접수되고 노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교회는 타 개혁신단으로 이적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가 (압류처분이 채무가 있을 경우 이와 함께) 허락되어야 한다.
- h. 본 정관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의는 노회 권한이 최종적이다.

13.4 연합의 완성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재산을 가지고 교단 이적을 청원할 경우, 그러한 청원은 정치형태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재연합 실행 절차

14.1 재연합한 두 교회의 총회들이 찬성 투표로서 공식질문 1을 승인할 때, 두 교단의 노회들은 다음 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안을 숙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1: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승인하며 노회들에게 추천한다.

14.2 각 노회는 다음의 공식 질문 2에 대한 결의를 2월 말 이전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결보고는 총회서기가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연합노회들은 그들의 표결을 양 총회 서기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2:

결 의: _____의 노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도록 조언하며 (승인의) 동의한다.

- 14.3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필수적 숫자의 노회들이 공식질문2에 승인하면,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총회들은 다음의 공식질문 3을 승인해야 한다: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그런 다음 각 총회의 총대들이 공동회의 장소에 회집하여 미국장로교(PCUSA)의 총회를 개최한다. 재연합하는 교회 총회들의 모든 총대들은 재연합된 교회에서 총회의 총대가 되어야 하며, 동 총회는 재연합하는 양 총회의 적절하게 예정된 안건의 모든 업무에 대해, 그리고 재연합에 관한 정치형태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 총회에 제기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절히 조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 14.4 재연합하는 총회의 두 서기는 재연합된 교회의 임시서기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재연합 계획 합의서 4.1에 명시된 대로, 총회위원회들의 임명과 회원권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하며, 적절한 업무 위임에 대한 건의사항을 재연합된 교회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립한다.
- 14.5 총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총회장 선출은 주님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초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표준 에큐메니컬 선언 지침서(참조 G-15.0302c):

공식본문

합의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망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제209차 총회(1997년)에서 승인

제210차 총회(1998년)에서 선포

판권 ©1998
미국장로교
총회사무처 소유

본 출판물은 발행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느 부분도 어떤 형태 또는 방편으로든지, 전자를 사용해서나 기계적으로나 사진복사나 녹음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잡지나 신문 평론에 사용되는 간략한 인용을 제외하고) 복사하거나 재생계통에 저장하거나 송신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의 당회와 노회 및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출판물의 항목들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인쇄

본 책자는 다음 처소에서 \$1.50 (권당)에 구입할 수 있다.

Presbyterian Distribution services (PDS)

100 Withers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1-800-219-6700 (OGA 판매처)

PDS 주문번호 #OGA-98-013

공식 본문 합의약정서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명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서 문

1997년 개혁전통을 가진 네 교단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에큐메니컬 제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일치와 복음을 선포할 긴급성의 점증에 비추어 지난 32년 이상 발전해 온 교리적 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확인된 교리적 일치에 비추어, 교회의 일치를 향한 가시적 증거를 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선교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들으면서 다음이 제안되었다:

즉,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America) 및 그리스도연합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공동소명(Common Calling)*과 본 *합의약정서(A formula of Agreement)* 채택을 바탕으로 상호 완전교류를 하고 이를 선언한다. 이로써 각 교단은 다른 세 교단과 완전 교류에 들어가며 이를 확인한다.

“완전교류”(full communion)란 용어는 여기서 네 교단이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된다:

- 서로의 교회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 우리 교회들의 삶과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서로 비방해온 우리의 역사적 관행을 지금 철회한다;
- 계속하여 상대교회의 세례를 서로 인정하고, 완전교류 회원들 간에 서로의 교회에서 집례하는 주님 만찬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상대 교회의 다양한 목회사역을 인정하며,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의 질서있는 상호 교환 규정을 마련한다;
- 교단들의 현 조직 내에서 적절한 협의와 의사결정의 경로를 수립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전도·증거·봉사의 공동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전도와 증거와 봉사에 대한 공동 표현을 조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복음 아래서 삶을 함께 할 것이며, 상호확인과 권고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을 서약한다.

이 문서는 <공동소명: 현대북미개혁교회들의 증언>에 논리정연하게 표현된 교리적 합의를 수용하며, 그 문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합의협정서*의 목적은 완전교류를 체결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상호확인과 권고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그리고 *공동소명*에 기술된 그러한 결정에 함축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공동소명*은 루터-개혁교회 신학대담위원회(1988-1992)의 보고서로서, 1962년¹ 시작된 그 절차가 지속되어 왔다. 그 보고서 안에는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및 그리스도연합교회가 서로 완전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 만장일치의 권고사항”이 있다(*공동소명*, 66-67). 이어, 완전교류가 신학적대담의 연구와 함께 개발되어 실행될 수 있는 7개 권고안이 나온다(*공동소명*, p. 67). 그 결과로서 완전교류에 대한 요구가 4개 교단에 제시된 것이다. 각 교단 내의 회의에서 완전교회 선언에 대한 표결은 1977년에 있을 예정이다.

상호확인과 권고 (Mutual Affirmation and Admonition)

1차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서 일찍이 확인된 개념으로서 신학적 대화에 대한 이해의 기틀이 되었다. 그 대화의 참석자들은 “진리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관련 교리들에 다양한 강조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은 서로 상호모순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Marburg Revisited*, 서문). 동 신학적 대화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통찰에 함축된 의미들을 재발견하고 숙고했으며, 이를 네 교단간의 완전교류에 대한 권고의 기초로 보았다.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보안성이라는 이 획기적인 개념은,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¹북미 루터교회-개혁교회 대담의 연혁에 대한 요약은 *공동소명* pp.10-11에서 참조한다. 제1차 대화(1962-1966년)의 결과는 *마르부르크의 재방문(Marburg Revisited)* (Augsburg, 1966)에 발표되었다. 제2차 대화는 1972-1974년에 개최되었다. 이의 간추린 보고서는 *An Invitation to Action* (Fortress, 1983)의 pp.54-60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는 1981년에 시작되어 1983년에 종결되었으며, 이것은 *An Invitation to Action*의 책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에 이어, “신학적 대화(Theological Conversations)”의 모임이 1988-1992년에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그 보고서로서 <공동소명: 현대 북미 개혁교회들의 증거> (Augsburg, 1993)가 출간되었다. 더 나아가,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 참석한 북미 참석자들은, 1973년 유럽 개혁교회들간의 일치선언문으로서, *An Invitation to Action*, pp.61-73에 발표된 Leuenberg Agreement와 루터교 세계연합 국제공동위원회와 세계 개혁교회연맹의 보고서(1985-1988)인 *Toward Church Fellowship* (LWF and WARC, 1989)에서 발견된 신학적 사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증거하는 상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서로 화해할 수 없었던 개혁교회들의 여러 전통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 개념은 루터교회-개혁교회 관계에 대해 세가지 본질적인 국면을 인정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1) 각 교회들은 그 삶의 바탕을 그리스도의 정통적 신약성서의 전통에 둔다; (2) 이들 교회들의 핵심 전통들은 다같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3) 이들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주고받은 논쟁(give-and-take)은 묵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호비방을 초래했으나, 이는 “우리의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해 다양한 증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소명*, p. 66).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이 전개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빛으로 16세기 논쟁에 현대적 통찰력을 던져주었다.

우리의 공동 고백에 나타나는 신학적 다양성은 복음(상호확인)의 완전 적절한 증언에 필요한 상호보완과, 모든 신학적 접근이 복음의 부분적/불완전한 증언(상호권고)이라고 바로 잡아주는 각성을 제공한다(*공동소명*, p. 66).

“상호확인권고”라는 실용적인 원리는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상호 고양과 교정의 과정을 허용하는 가운데, 합의를 확인을 허용하였다. 서로 공유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일치에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고찰과 대화를 고취하는 가운데, 각 전통은 다른 전통에 대해 “교정적 증거”를 가져온다. “상호확인권고”의 원리는, 잔류하는 상이점들을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증거로서 보는 것이다. 재래적 사고방식은 불일치의 선언에 들어있는 일치의 기반을 가려지게 한 반면, 새 개념은 잔류하는 상이점들에 대해 부조화의 범위까지라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하는 일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류하는 상이점들은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다.

상호확인권고의 개념은 중대한 성과로 이어지며, 두 개념은 네 교단들이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설명해준다. 상호 보완의 원리와 수반되는 해석양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들 교단들이 완전교류에 들어감에 있어서,

- 고유한 전통적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 상대 교단들의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 중요한 상이점들에 대해서는 완전교류 관계 안에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명할 의도이다;
- 명백한 상이점들이 서로의 교단 안에서, 그리고 완전교류의 관계 안에서 충분한 교회로 상호 성장할 기회가 되도록 허용한다.

근본적 교리 합의 (A Fundamental Doctrinal Consensus)

신학적 대담(theological conversations)에 참여한 회원들은 완전교류의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루터교회 고백서 언어를 차용했다: “교회의 참 일치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satis est consentire) (*Augsburg Confession*, 7장). 신학적 합의는 완전교류를 위한 현 제안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 성례전, 묵회, 교회와 세계를 포함한다. 지속적인 다양성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분열”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신학적 대담에서는 다음의 표제로 다루어졌다: 정죄,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제1차 대화(dialogue)의 참석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의 문제 대해, “각 전통마다 죄의 용서와 생명의 새롭게 됨이 포함되는 복음의 전체성 보존을 추구했다”는 점에 동의했다(Marburg Revisited, p. 152). 제3차 대화의 회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생활지침으로 삼으며,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9). 그들은 더 나아가, “두 전통 다, 믿음만으로,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말로 이 복음을 고백한다”고 선언했으며, “의롭게 됨과 관련하여 우리를 갈라놓는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An Invitation to Action, pp.9-10).

루터교와 개혁교는 세례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간들을 구원의 교제로 받아들여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신앙생활, 매일의 회개, 그리고 제자직에 부름으로 체험된다(참조 Leuenberg Agreement, III.2.a.). 각 대화와 신학적 대답에서 주의 만찬에 예수님 임재의 중심교리가 주목을 받았다. Marburg Revisited(마르부르크의 재방문)의 개요선언문은 다음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반영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와 루터교가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보고 이해했을 때 동 교회는 둘 다 복음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동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것은 상호불신과 오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의 차이들이 적절하게 해석될 때는 상호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때가 많다(Marburg Revisited, pp.103-4).

제3차 대화는, 루터교나 개혁교의 어느 쪽도,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시며,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상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성찬에서 그가 받아들여진다”[재강조 삽입] 고 단언했다고 결론을 지었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목회 주제는 제3차 대화에서만 고찰되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갈라야 할 본질적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 대화는 이렇게 확인했다:

우리 전통의 목회는,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며, 목회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다. 목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례가 중점이 되며,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혜택이 계시된다는 확인에 기초한다 (An Invitation to Action, p. 24).

그 대화는 이어 모든 세례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에 참여할 책임을 언급하고, “안수 목회자들에 대해, 말씀의 전례와 성례전을 통해 은혜를 증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지적했고,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26, 28, 31).

제1차 대화는 교회와 세상의 주제를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간주했다. 그 대화는 차이점들을 고찰했고, 교정의 필요성을 주목했으며, 교회가 현재 처해있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음을 주목했다. “개혁 신학에 기독교 윤리의 공동 복음적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가운데(Marburg Revisited, p. 177), 그 대화는 교회와 세상, 율법과 복음, “두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의 관계에 관한 칼빈과 루터의 상이한 “강조점”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그 대화에서 발견한 것은, “율법과 복음사이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공식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 오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의 오류를 타파하려는 공동 우려에 의해 자극받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찬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에 관한 차이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대화는 “이것을 분열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Marburg Revisited, p. 177). 더 나아가,

20세기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비추어, 현재 루터교-개혁교 증거를 확정적 요인으로 만드는 가운데, 그들이 16세기에 취한 입장과 선택들을 방어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선언”에 관한 신학적 대화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다른 “강조점들”을 목회적 섬김과 교회의 증거에 도전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고무적인” 차이점들이라고 확인했다. “진행 중인 ‘의롭게 됨(justification과 정의)’에 관한 토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식이다. 우리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분별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A Common Calling, p. 61).

강조점들의 차이 (Differing Emphases)

정죄(The Condemnations)

종교개혁 시대의 정죄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그 정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적 상황 때문에, 그러한 정죄로 교회를 계속 분열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공동소명의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개념은 정죄 언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우위와 성례전 은사에 대한 공동 이해로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을 허용한다. *공동소명*은 *Leuvenberg Agreement*(*로이엔베르크 합의*)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즉. 교리적 합의 결과로서 고백문서에 표현된 정죄는 서로 찬동하는 교회들의 현대 교리적 입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Leuvenberg Agreement, IV.32.b). 신학적 대답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의 과제가 분리와 배제의 관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우려점을 말하고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신앙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정체성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공동언어를 찾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A Common Calling, p. 40).

정죄의 주요한 초점은 주님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문제였다.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성례전에 대한 그들의 공동 이해에서 하나님 말씀은 타협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의 특정 국면에 대해 협력 교회들 간에 합의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답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들을 상기하는 가운데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주신다. 따라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모두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 신앙인은 구원의 주의성찬을 받고, 불신자는 심판의 주의성찬을 받는다(Leuvenberg Agreement, III.1.18).

우리는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Leuvenberg Agreement, III.1.19).

그리스도의 임재(The Presence of Christ):

제3차 대화는 이미 달성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성례전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를 추구했다.

우리 개혁교인들과 루터교인들은 주의 만찬에 관하여 갖고 있는 공통점들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들은 성례전 신비를 전적으로 풍요하게 인식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신학적 대담에 가입한 회원들은, 16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고백적 진술들(confessional formulations)을 공동언어와 조화시켜서...“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든 통찰력, 확신, 관심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했다(*A Common Calling*, p. 49). 그러나, 이 신학적 대담은 지속적인 차이에 대해 주의 만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했다. 제3차 대화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이런 차이들이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선조가 고백했던 신앙과는 다른 견해와 확신에 대해 존중하였다. 양 교회는, “주의 만찬의 문제에서 개혁전통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목적도 동일하다고 함께 말할 수 있다. 즉 용서, 권능부여,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만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이렇게 동의한다: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 그는 그것으로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지체의 일부임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체험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신다. (공식 원문은 “*Er starkt uns zum Dienst an den Menschen,*” 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 (*Leuenberg Agreement*, II.2.15).

우리가 주의 만찬을 축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영광 속에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Leuenberg Agreement*, II.2.16).

주의 성찬에서 찾을 수 있는 상호보완성과 신학적 합의와 함께, 성찬례 집전의 함축적 의미도 인정되며, 이것은 개혁교회들의 전통을 대표한다.

우리 개혁교단 교단들은 각기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식에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되고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집례에 관한 특징적 차이들이 교단 별로 개발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 상대 교단에서 축하하는 만찬에 참여하면 거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판별된다. 즉, 성례전 양식과 성례전의 세목에서, 집전의 언어적 해석에 있어서,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적 양상에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찾는 교회/개별 회원들의 삶과 선교업무에 대한 함축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확신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양 교단은, 우리의 다양한 성례전 전통을 음미하면서 성장할 필요를 느끼며, 그 안에서 서로 풍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 만찬의 신비에 대한 우리 공동 체험과 표현을 더욱 깊게 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An Invitation to Action*, pp.16-17).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God's Will to Save):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하시는 힘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원을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하며 인간 협력에 있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공동 믿음에 불구하고 두 전통을 분리해온 이슈 가운데 예정론이 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실천 방식에서 서로 강조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든 문화적 낙관주의나 비판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구원의 뜻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A Common Calling*, p. 54). 주목되는 것은 “과거의 논쟁을 초월하면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공동 예정론에 대해 증언하는 공동언어가 신앙적 저서와 우리 교단들 내의 공식/비공식적 선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A Common Calling*, page 55). 두 전통은 교리적 균일성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통이 논쟁에서 생겨났다는 것, 현 신학적/교회적 정체성은 그러한 논쟁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근본적 교리합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온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를 우리의 분열에 의해, 세상에 공동 증거하는 일을 박탈하게 된다면 더 한층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 교류에 대한 구속력 있는 효과적인 결단
(**The Binding and Effective**
Commitment to Full Communion)

공동소명에 입각하여 최고수준의 *합의약정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교회들은 강력한 상호 결단을 한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상호 공약과 약속을 하고 있다. 동 교회들은 양방적인 전면 결단이 진지한 의도와 각성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단순한 공식 결의 이상의 훨씬 더 큰 범위로 결속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사와 변화와의 관계에 있다.

동 교회들은 이러한 의도의 선언이 자신들의 자아 이해, 생활/활동 방식, 자신들의 교회구조, 그리고 전체 교회적 특성에까지 도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동 교회들은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서 완전 교류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에 관한 타당한 우려를 억누르기로 스스로 결단한다.

동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공동소명에 전적으로 결단한다는 것, 신앙과 교리에 관해 앞서 기술한 상호 확인을 공약하며 변함없이 공약할 수 있다는 것,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 확인과 권고를 실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고 선언한다. *합의약정서*는 “가시적 일치 목적이나, 교회일치의 관심과 세계 투쟁의 참여에 관심을 연합하는 단일 에큐메니컬 운동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에큐메니컬 확신에 응답하고 있다(“완전한 코이노니아로 가는 과정: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5차 세계대회의 메시지”, 1983). 그리고 성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상기한 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그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살전5:24).²

²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LCA)가 이들 교단들(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과 완전교류를 맺기 위해서는, 최고 입법기관인 1997년 교단 총회(Churchwide Assembly)에서 2/3 찬성표가 요구될 것이다. 이어서 헌법과 정관에서도 완전교류를 맺기로 결정한 총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에 순응되도록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 헌법과 정관은 비루터교회들과 완전교류를 맺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근접한 유사 추론(analogy)은 ELCA의 헌법이나 정관이 수정에 있다고 본다. 동 헌법은 그러한 수정 절차를 제공한다(제22장). 둘 다의 경우에서 출석/투표권 회원의 2/3 표결이 요구되었다.

미국장로교(PCUSA):

미국장로교의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완전교류가 선언되고, 그 영향은 장로교 *규례서*와 본 *합의약정서*에 일치되게 전 교단에 파급될 것이다. 이는 총회의 과반수 투표와 노회들 안에서 과반수 투표, 그리고 노회들의 과반수 투표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는 헌법과 정치, 제직들과 재정 및 행정규칙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삶을 규율 한다. 이들은 선교임무의 도구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다. 다양한 직제들이 복음을 섬기나, 어느

직제도 배타적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장로교 정치체제는 모든 목회 회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단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 교단은 교회적/세속적 권력 야심에 의한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한다. 각 교회 직제는 그것을 화해 선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개혁에 대해 반드시 개방적이어야 한다(“1967년도 신앙고백,” *신앙고백서*, p.40).

미국장로교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들로 구성된 대표제에 의해 치리된다. 이러한 치리기관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규례서*, G-9.0100).

교회의 모든 치리기관들은 교회의 본질에 의해 연합되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같이 공유한다.

치리기관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거나, 어느 한 기관의 행동은 전체교회 행동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각 노회의 행동은 차상급 노회의 검토에 종속된다.

미국개혁교회:

미국개혁교회(RCA)는 General Synod에서 통과되면서, 완전교류를 선포하며, 그 효과는 전체 교회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즉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가 *교회규례서(Book of Church Order)*에서 부여한 책임과 일치되게, 그리고 *함의약정서*에 기술된 대로 완전교류가 의도될 수 있게 되도록 일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교회일치 전권위원회는 1997년 완전교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General Synod와 교단을 자문해왔다. 동 전권위원회는 *함의약정서*와 관련 제안들을 모두/어느 것이나 General Synod에 제시하고, 미국개혁교회가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와 미국장로교 및 그리스도연합교회와 완전교류를 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추구할 것이다.

미국개혁교회(RCA) 헌법은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한 책임을 General Synod에 부여한다(*교회규례서*, 제1장, 5부, 2조, 5항). 에큐메니컬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General Synod는 동 교단의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에게 타기독교 교단의 최고치리회나 총회와 통신관계 및 협력관계 관련 결정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주제로” 교단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RCA 헌법은 “현재 진행 중인 에큐메니컬 개발국면을 교단에 알리고, 에큐메니컬 참여와 관계에 관해 교회를 자문하는” 책임을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교회규례서*, 3장 1부 5조 3항).

General Synod에 의해 권한을 받은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는 1962년 이래 지금까지 RCA에 대화와 대담 상대자들을 지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모든 보고를 접수했고,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General Synod에 교회의 투표와 시행 제안을 제시했다.

그리스도연합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UCC)는 1997년 General Synod의 투표에 의해,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그리고 미국개혁교회와 완전교류를 하는 제안에 결의를 할 것이다. 이 투표는 General Synod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 교회들과 협회들 및 대회들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스도연합교회 헌법 제14, 15, 16항에 개요된 계약정치체제(convenantal polity)와 일치되게 시행한다.

UCC는 “지방교회, 협회, 대회, 그리고 General Syno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연합교회의 헌법과 정관은

에큐메니컬 삶의 책임을 UCC의 총무와 총회장과 더불어 회장 General Synod에 맡기고 있다. 동 헌법 제7조는 General Synod에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들에 다음이 포함된다:

- UCC와 에큐메니컬 조직들, 세계 고백단체 조직들, 기타 초교파 조직들과 관계를 결정한다(7조, 45h).
- 타 교단들과 대화를 장려하고, 적절하다면 그들과 공식연합을 지향하면서 그들과 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문한다(VII, 45i).

UCC 정치체제에서 General Synod의 권한은 헌법의 구절을 사용하자면, 절대로 “대회나 협회나, 또는 지방교회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지방교회 자치권은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 결정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IV, 15).” 그러나, 자치권에 대해 “크리스천의 상호 배려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IV, 14). 이러한 그리스도론적이고 전통적인 자치권의 이해는 교회 자치권에 관한 논의에 이어 즉각 나오는 헌법 구절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UCC의 지방교회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자체 교회와 사역과 확장에 관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듯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지방교회 복지와 필요와 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다. 크리스천의 상호배려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한 교회와 많은 교회는 공동의 크리스천 체험과 책임을 분담한다(IV, 14).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에 의해서, 또는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로부터 나오는 결정이나 조언에 대해 각 지방교회는 최고의 경의로서 대한다(IV, 16).

에큐메니컬 일치
성명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표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211차 General Assembly (1999) 승인

제212차 General Assembly (2000) 공포

(G-15.0302c)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표현한다:

1.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이 **상대서로의 교회를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서 참된 표현이라고 서로 인정한다.** 방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 구세주시고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다;
-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성전(聖傳)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전(聖傳)이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대해 충실함이 있다;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충실히 참여하려는 결단이 있다;
-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결단이 있다;
-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을 상호인정한다.** 이는 또한 목회직 인정을 함축한다. 목회직에 대해 모든 신자들이 공동 사제직을 공유하고 하나님 부름심을 받은 회원들은 안수를 받을 것이다.

3. **안수 사제직에 대해 상호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에 대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보아진다(‘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5장 규정에 기술됨).

4. **상대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성경과 성전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한다.**

5. **의도된 규칙성으로 성만찬 축하 자리를 함께 하는 조항.**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 삶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을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에 모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서로 반대 증언을 하며, 이는 그리스도 몸과 인간공동체의 부서짐의 가시적 표시이다.

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의 공유 선교 활동.** 예배·복음선포·전도·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평화·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교회연합협의회 제

18차 총회 보고서', 제 6장에 그 이유 개요)을 또한 인정한다.

7. 교회 안에서 전체성과 일치로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나이·성별·장애형태·성적지향·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데 결단한다.

8. 현재 진행중인 신학적 대답의 절차. 그러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2)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에 대한 공유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안수목사들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9. 적절한 책임체계와 적절한 협의와 의사결정 방식들.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간에 상호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보고서의 제 9장에 기술).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조직구성과는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로 회집하기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로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의 통합이 아니며,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의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부록 1

공식 문서

연합교회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1. 서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낡은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 후서 5:17-20)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나는 출발한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네.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쉬우리라 얘기해주지 않았네.

주님이 나를 버려 두기 위해 이렇게까지 멀리 데려왔으리라 믿지 않네.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성가, 가수 커티스 브르웰, 1978년, 세가스 음악회사 발행, 허가를 받고 사용함).

1999년 1월 20-24일 세인트 루이스에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에 모인 우리 교회연합협의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적인 연합으로 가는 길에 대해 항상 확신이 있었거나 우리여정의 속도에 항상 인내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도전들과 놓쳤던 기회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외로운 여정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하는 중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4:6).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연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서로를 정당하게 대우하기를 추구하며, 이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치를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인종적인 불공평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자신들을 서로 갈라지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백인 특권을 영속화시키는 사회제도 안에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편안에만 안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 신학적 견해 차이가 교회 분열을 초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질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이 우리 복음 사명에 충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보다 깊게 인정하고 화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향해 보다 큰 인내와 관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간에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어려운 작업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아메리칸 복음 성가의 가사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힘이 계시다고 하는 심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협의회(우리 동역자들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에 대해, 심지어 절망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II. 배경

1988년 교회연합협의회(COCU) 제17차 총회는 계약교류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서로서 “계약교류: 연합하는 교회” 문서를 승인했으며, 이를 9개 회원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다음의 3개 공식결의를 취하도록 했다:

1. 다른 참여 교회들과 계약교류에 들어가는 확정적인 합의서로서 이 문서를 승인하는 것과, 이를 가능케 하는 충분한 결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COCU의 회원 교회들, 그리고 이 합의를 유사한 방식으로 승인하는 여타 교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꺼운 용의를 선언한다.
3. 목회사역의 화해와 이 문서에 명시된 계약교류 준비에 필요한 절차들 및 과정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계약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 17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이 두 문서(COCU 합의서, 계약교류 관계 안의 교회들)에 들어있는 협의 제안에 대해 속고와 결의를 하고 나서, 교회연합협의회가 권고안에 대한 교회들의 결의를 신중히 심의하고, 그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모임을 가졌던 COCU 제18차 총회가 한 일이었고, 총회의 초점이었다. 우리는 전체 회원 교회들(9)들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했으나, 전체회원 교단들 가운데 일곱(7) 회원 교회들(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 제자회),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ter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만이 계약관계 제안에 대해 공식 결의를 취했고, 그리고 계약관계 절차에 상세한 주목을 필요로 하는 여러 논점과 관심사들을 확인하는 일을 하였음을 주목하였다. 미국장로교(PCUSA)는 계약관계로 들어가는 제안을 총회 수준에서 승인하였다. 미장로교 헌법에서 필요한 수정을 실행하고자 추구하던 과정에서, 노회들은 감독제(episcopé)와 계약관계협의회들 및 치리회 장로 역할에 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사역에 관련된 필수적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감독교회(Episcopal Church)에서 제18차 총회로 보낸 장문의 보고서는, ‘감독교회(Episcopal Church)가 계약교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동 교단이 <COCU 합의서>와 <계약교류 교회들>의 두 문서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선언한 1994년 연차총회(General Convention)의 결의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감독교회에게 미래의 COCU 절차 참여가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5개 지침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인트루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고자 구하였다. 교회들의 결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대답들이 신중하게 고찰되었으며, 여기서 많은 광범위한 확인들이 신속하게 나왔다:

1. 현재 가능한, 교단의 모든 표시들에 대해 가시적 표명을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협의회 교회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룩되기 갈망한다;
2. 그 새로운 관계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하는 보다 확실한 인식으로 나아가기 갈망한다;
3.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의 중심 표시로서 인종적 공평함에 결단하기 갈망한다.

다음의 권고사항은 우리 교회들의 결의, 본 총회의 노력과,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확인에서 나오기를 추구한다.

III. 권고사항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즉, 참여 교회들이 공식결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 불리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고, 2002년에 있을 ‘크리스찬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중에 공식 선언과 예전(禮典)을 통해 이 새로운 관계가 함께 개시되게 한다.¹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삶에 필수적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일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것이며(제 4항에 개요됨), 공동체 회원들은 소속 교회와 타 교회들과 더불어 이 일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제18차 총회는 COCU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2002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일치가 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의 동역자 교회로서 참여할 수 있게 초대될 것이며(제5항 참조), 다음과 같은 관계의 표시들을 가능한 한,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그외 다른 교단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과 관련를 갖도록 초대될 것이다.

IV.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맺는 관계를 표현한다:

4.1 *서로의 교회를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참되게 나타낸다고 서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참여하는 교회들이 상대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 구세주이시고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다;
-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성전(聖傳)을 증거하며, 성전(聖傳)이 증거하는 성경에 대한 충실함이 있다;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충실히 참여하려는 결단이 있다;
-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결단이 있다;
-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4.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 교회들을 상호 인정한다.* 이는 또한 목회직 인정을 함축한다. 목회직에 대해 모든 신자들이 공동 사제직을 공유하고, 하나님 부름심을 받은 회원들은 안수를 받을 것이다.

4.3 *안수 사제직을 상호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에 대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보아진다(제5항에 기술).

4.4 상대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된 대로, 성경과 성전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 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한다.

4.5 의도된 규칙성으로 성만찬 축하 자리를 함께 하는 조항.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을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 에 모임 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서로 반대 증언을 하며, 이는 그리스도 몸과 인간공동체의 부서짐의 가시적 표시이다.

4.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의 공유 선교 활동. 예배·복 음선포·전도·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평화·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교회가 그리스 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함 으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제 6장에 그 이유 개 요)을 또한 인정한다.

4.7 교회 안에서 전체성과 일치를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나이·성별·장애형태·성적지향·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데 결단한다.

4.8 현재 진행중인 신학적 대답. 그러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 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증거 분담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안수 목사들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쁨을 마련한다.

4.9 적절한 책임체계와 적절한 협의와 의사결정 방식들.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간에 상호책임성을 갖도록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 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제 9항에 기술). 그러한 현안의 조직구성과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 로 회집하기 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들에 의해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 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조직적 통합이 아니고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개시 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의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 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V. 우리는 더욱 충만한 일치 표시를 추구한다

새로운 차원의 가시적인 결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상호관계가 아직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은사의 공유로 특징되는 함께 사는 삶의 강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공유하는 것보다 더욱 깊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각 참여 교회들의 사제들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관련되는 하나의 사제직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추구한다. 이 절차는 이미 시 작된 화해의 절차이며, 우리는 이의 완성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완성시키는 방식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감독 목회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개별/단체 감독 교회들과 교구감독 전통에 의한 감독교회들이 보편적 인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본 총회는, COCU 내의 9개 회원교회 대

표자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할 것과 화해목회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을 동 집행위원회에게 지시한다. 그러한 의미의 명확성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출발하는 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함께 사는 삶에서 이러한 화해의 논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드러날 것이라고 희망한다. 전면 화해목회는 남은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2007년 ‘크리스찬 일치에 위한 기도 주간’ 시기까지 달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는 우리의 팽창일로의 서클에 미국개척교회와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포함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이들 교회들은 공식 자문회 참여자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팽창일로의 서클 안에서 대화를 추구하며, 이것은 로마카톨릭교회, 정교회들, 오순절교회들, 성결교회, 침례교회들, 그리고 기타 역사적 흑인교회들과 토론을 포함한다.

한층 더 확대된 서클에서 우리는 유대교와 회교, 기타 살아있는 신앙의 대표들과도 대화하고, 선의와 인간 긍정의 모든 사람들과 그 운동에 협력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핵심 서클들이 다양한 차원으로 우리와 합의하고 제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본다. 우리는 인류 단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징표와 방편들이 되기를 추구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화해의 표시로서 창조계 질서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만유의 뜻이며, 더 이상 인간 손으로 신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종국에는 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전인류 가족이 온전하게 화해하기를 갈망한다.

VI.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특징으로서 백인특권제도 철폐 투쟁 서약

인종차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분열적인 이슈이다. 본회의(Plenary)가 이 새로운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 특징을 인종정의(人種正義)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첫째, 백인특권을 대표하는 하얀피부색 자부심은 지속적인 죄의 실상이며, 그들이 가진 힘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유럽계 미국인들이 제도적 백인 특권에 의해 야기된 정치·사회·경제 평등 장애의 철폐 투쟁에 능동적인 참여를 꺼린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꺼린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 회중들, 회원들로서는 유럽계 미국인 교회들, 회중들, 회원들의 동등자로서 일치의 부르짖음에 진실성이 있다고 완전히 믿기가 힘들 것이다.

둘째, 만일 공동체의 백인 멤버들이 부당한 제도에서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비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흑인 멤버들에게 충만한 삶을 부인하는 부당한 사회질서에 침묵의 공범자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도적 백인 특권은 복음서 정의(正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 악의 세력이 도전받지 않고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장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교리적 기독교 이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존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한 신앙은 충실한 상호책임의 표시들이 삶 속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책임의 표시들은 경건 선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 표시들은 백인특권 철폐에 대한 명시적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결의여야 한다. *특별히 언급하자면, 우리는 교회들이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본회의(the Eighteenth Plenary of the Consultation on Church Union)에서 승인된 “크리스찬 결단과 인종주의 타파 결의 선언을 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제도적 백인특권의 작용과 파급효과를 공동후원으로 분석 연구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권한다.*

보상적 정의(正義)는 인종불평등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백인우세의 교회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의 노예노동 또는 다른 형태의 인종기반 경제착취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본구조의 수혜자들이다. 그 결과적 권리침해는 보상적 정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기관들이 교회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권한을 갖도록 자산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고 향후 결의를 건*

의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그 이상의 결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들이 각자 교단 내에서 인종적 정의목회 책임자들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하나의 참된 공동체로 되기 위해 정진하는 교회들의 한 그룹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억압의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명백관화한 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분석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당면하는 억압과 사회적 소외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결의에 가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VII. 지역과 지방적 삶에 관련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일체감으로 사는 것은 교단 각급에서, 특히 개체교회 차원에서 솔선수범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체감을 가시화시키는 성공 여부는, 그러한 솔선수범이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려는 방식의 일부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동역자 교회를 포함시키는 기강을 떠맡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모든 참여 교회들에 대한 역사와 신학과 정치체제를 우리의 신학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목회후보생들이 타 교단들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도록 한다;
- 한 개체교회의 선교나 사법행정조직에 관해 주요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개체교회들이나 사법행정조직과 대화가 포함되게 한다;
-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선포와 연구에서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통의 성구집이 사용되도록 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개체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취임식 거행과 동시적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회집하여 인종주의 타파에 대한 공동참여를 결정하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절차가 각지에서 일어나게 한다;
- 안수식이 거행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소속한 사람들의 출석과 참여가 있게 한다;
- 그 교회들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에큐메니컬 구성에 참여할 것과, 에큐메니컬 단체의 참여와 공동 프로젝트에서 에큐메니컬 리더십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갖게 제안한다.

개체교회들과 사법행정조직들은 우리의 단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끊임 없는 돌봄과 창조성을 장려할 것이다:

- 정기적인 합동 선교와 프로젝트;
- 합동 예배와 설교자 교환, 세례식과 취임식 및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그룹에 교회대표자들의 출석;
- 교회와 사회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합동 투쟁에 대한 빈번한 평가;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대해, 이에 참여하는 전 교회들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 대표 회원들의 동역자 교회의 개체교회 삶에 참여.

본 총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취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각 개체교회들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지역단위로 벌이는지, 크게 주목시키는 뉴스레터 제공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제4항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을 실천하기 추구하는 많은 연방교회, 연합교회, 유니온교회 및 교회연합목회 (Ecumenical Shared Ministries)들이 말한 증거들을 듣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에 대해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타교단들과의 합동 목회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회원 교회들은 회원들 서로 간에 삶과 선교활동을 함께 하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VIII. 시 행

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에 대해 응답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8개 참여교회들이 제4장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의 대부분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인지한다.

새로운 관계가 공식 출범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는 교회 연합에 관한 교회협의회 집행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모든 참여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a) 권고안을 수용하는 계획서를 공유하고,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출범을 위해 전국/지방/지역 단위로 함께 준비하고, (c) 시행이 더욱 촉진되도록 책임자들을 임명한다.
2. 2002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에 필요한 자금제공을 교회들에게 요청한다.
3. 새로운 관계 출범을 축하하는 적절한 예배식 거행의 조항을 작성한다.

IX. 상호 권한과 책임 체제

교회들에 의해 수립된 새로운 관계가 예배와 증거와 봉사의 새로운 공동생활로 교회들을 초대한다. 이 공동 생활은 상호 권한과 책임의 체제 하에서, 전국적/지방적/지역적 표현들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시적 방식들을 장려하고 조정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들이 공동 생활의 새로운 표현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공동 의사결정, 상호 시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의 리더쉽과 의사결정 체제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의 비전을 수행해 갈 수 있게 보장할 것을 결단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

- 다양성** 상호 권한과 책임 체제는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역 교회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목표는 지역적 상황과 그 지역 교회들이 개입하고 있는 특정 과제들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 포괄성** 체계는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교회들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반영된 체계여야 한다. 공동생활의 특정 지역과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동역자 교회들까지도 포함한다.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생활과 증거에서 상호 간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시성 체계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물론 교회에 번잡한 절차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그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충실하고 지속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비추어, 이 새로운 관계에서 회원들을 섬기는 최상의 체계가 분명히 정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전략대회를 회집할 것을 권고한다. 이 대회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 교단들의 핵심 지도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X. 보다 폭넓은 관계들

교회연합협의회는 그 초기부터, 폭넓은 에큐메니컬 운동 틀 안의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고자 목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조직이 세워지면서부터, 연합된 교회들 및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세상에 알리고 있다. 동 조직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에 관해, 연합 유대에 관해 경험한 것을 이들 교회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회원 교단들이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과 맺고 있는 연결과, 회원 교단들이 지역·지방·전국 단위의 에큐메니컬 기관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교회연합협의회는 양방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에서 공동생활의 표현을 함께 해온 여러 교회들을 포함해왔으며, 여기에는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es의 토론,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 제자회)- United Church of Christ Partnership 간의 토론들이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이러한 지속적 관계와 이 관계가 가져오는 기독교 생활과 신앙의 특정 국면의 이해가 전체 교회를 풍요하게 하는 요소들로서 환영한다.

일부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회와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사이에 제안된 협약,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교회와 미국장로교(PCUSA)와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사이의 완전교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도 가져올 은사의 기대감으로 환영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처한다. 우리는 보다 넓고 깊은 공동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갈망한다.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와 미국개척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일부 교회들과 이해와 공동생활에서 이룩한 특별한 성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의 여정에 합류하도록 정식 초대장을 보내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심의하도록 한다.

우리의 가시적 일치 탐구에 대해 로마카톨릭교회가 헌신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준 데 대해 정식으로 사의를 표하며,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공동생활을 탐구하는 가운데, 협조하고 서로의 삶을 살찌게 하는 기회를 찾을 것으로 희망한다.

송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희망과 환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아멘! “가로되 아멘!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 요한계시록 07:12

부록 1에 대한 각주(註)

1. ‘기독교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은 그러한 축하를 위해 상징적으로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마틴루터킹 목사 생일이 전국 공휴일로서 이 주간에 거행된 이래로 더욱 그러하다. 지방과 지역적 축하행사는 지역적 맥락에 보다 적절할 경우, 추후 거행할 수도 있다.

부록 2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기독교인 결단과 결의 요구

다음은 제18차 교회연합협의회 (COCU) 대표자들이 9개 회원 교단들에게 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동 증거와 공동 봉사는 에큐메니컬 조직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시이다. COCU 회원 교회들은 회원 교회들 내에서, 회원 교회들 간에, 모든 교회들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종차별 타파 운동의 필요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결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다.

교회연합협의회 경험은 교회의 일치가 창조와 구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이 일치는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공동체와 전 창조계를 위해서도 주어졌다. 이 것은 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내어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정의와 영성체의 징표이자 도구가 되기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 진리는 COCU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가시적 교회 일치를 탐구하도록 지시한다.

- 이는, 교회가 신앙과 성례전과 목회에서 일치감을 추구하는 것과, 교회와 인간 공동체 내에서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투쟁과의 사이에 반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 이는 참된 진리는 포용적이라는 것과, 교회와 사회 생활 내에서 인종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이는 인종주의와 모든 억압 권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예언적 증거가 이러한 교회들의 참됨을 일차적으로 시험하는 것임을 내포한다.

인종주의를 타파하는데 있어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9개 회원 교회들에게, 그들이 해방의 일치와 화해의 일치에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이 일치는 복음서에 제공된 일치이며, 그러나 이들 교회 생활과 조직에서 아직은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OCU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추구하며, 우리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결단하는 것이다.

미국의 인종관계에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미국의 전통과 문화적 관습에 깊게 침투된, 가장 현저한 악의 하나는 인종차별주의다. 특정 민족 그룹에 대해 유전적, 문화적 열등성을 간주하는 편견과/또는 그룹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들의 전인성(全人性)을 배제, 박탈하고 종속시키는 관습이다.

인종차별주의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습과 제도에 깊숙이 배어있으며, 여기에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배인종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없고, 피지배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억압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는 힘에 관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교회적 특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배그룹의 의도에 의한 힘의 남용이며, 그 결과적 일어나는, 피지배 그룹에 대한 기회의 박탈이다.

현 사태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은 한, 인종주의, 특히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을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참되게 실현하는 사회를 꿈꾸는 국가/교회적 포부를 흐리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와 백인특권주의 죄를 타파하는데 새롭게 결단하도록 정부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 투쟁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들의 도덕적 무결성과

신뢰감이 걸려있다. 특히 COCU 회원 교회들이 가시적 일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인종적 결속을 구현하지 않고, 인종평등과 공명정대함에 대한 핵심적 공적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 사실은 사기이다. 교회들은 COCU 회원 교회들에 의해 구상된 그리스도 연합의 교회를 통해서 이 결단을 함께 추구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해를 지시하는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주의는 악마적이고 벌받을 죄이다. 인종주의는 각 사람의 창조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 각 사람이 새로운 창조계에 들어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교회연합협의회 회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인종주의를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되게 보편적이고 참되게 복음적이며 참되게 개혁된 교회로서, 인종주의 반대투쟁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통찰한 것을 고려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지금 방해하는 것들을 고려해볼 때, 본 제18차 총회(Eighteenth Plenary)는 우리의 회원 교회들에게 다음의 9개 전략적 결단을 하기를,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함께 시행하기를 호소한다:¹

1. *계속적으로 인종주의 반대론의 설득력 있는 신학적 주장을 펴나가자.* 인종주의가 교회를 피난처로 찾거나 위안처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쌓아놓은 벽 - 우리를 소외된 신앙공동체로 갈라놓은 그 벽을 허물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에베소서 2:13-14).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동등한 차원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한, “참되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 창조계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나타내는 예언적 표징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정규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이 확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 회원 교회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과 이니셔티브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 명칭을 붙이고 공유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2002년 취임식을 앞두고 준비하는 성실한 첫 걸음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에 비추어 더 한층 결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협의회의 조직 가능성이 탐사되어야 한다.
3. *마틴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이와 유사한, 제도적 변화로 이끄는 적절한 기회를 주목하자.* 교회들 내부와 사이에서, 전체 공동체 회원들 안에서 인종간 대화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한다. 대화가 적절하게 계획될 때, 이는 정의와 화해를 위해 - 의심과 공포와 적의감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크리스찬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사이의 연결은 인종주의와 우리의 일치 추구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다.
4. *사회윤리 기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그 이유는 그러한 기강이 요구하는 신중한 토론과 뉴앙스 있는 구별은 효과적인 주창에 걸림돌이 되는 단순화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 결의의 선호 형태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는 부분적으로는, 분배와 보상정의에 대한 건전하고 섬세한 해석에 달려있다. 사회윤리는 인종주의 반대 전략에 필요한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
5. *예배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의도적 증거가 되게 하고 복음의 충만성이 반영되게 하자.* 예배는 때로 인종분리와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성례전의 분리는 신학적 장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와 교회들 사이의 인종분리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COCU의 회원 교회들은 공동 성찬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예전(禮典) 자원과 관행을 평가하고, 인종적 민감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6. *인종주의 역학에 대해, 그리고 인종 정의의 요구에 관한 강력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자.*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인종평등(특히 가족교육 관계에서)을 지지하는, 일관성 있는 증거가 되도록 예전(禮典) 자원 등의 교육 자원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7. *교회 조직과 정치체제 안에 골수로 박혀있는 인종차별관념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검열 활동을 벌일 것과, 우리의 개선을 측정하는 목표 설정을 하자.* 변화의 대상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러

한 자체 감사를 실행하는 것은 인종차별 위반을 극복하고 인종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교회들 사이의 상호 책임과 권고와 긍정적 확인의 맥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8. *주창운동을 통해 인간의 평등권 투쟁을 벌이기로 한 교회의 결단을 새롭게 하자.* 민권의 의제를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4가지 정의 도구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적절해 보인다: (1) 연방 인권법 보존과 강화, (2) 인종주의에 의해 초래된 불균형과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소수계보호법의 지속화, (3) 주택, 의료, 영양, 고용, 기타 중요 필수 조건들을 포함하는 경제권리 방어 (4) 형사재판제도의 개혁.
9. *새 이민/문화 그룹에 대한 회원 교회들의 수용능력과 대응력에서 인종차별 관련 이슈에 대처하는 자원을 개발하자.*

이 “인종차별 타파 결단과 결의 요구”에 대한 첫 행보로서, 제18차 총회 대의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는 필수 요소로서, 우리 나라와 교회 안의 인종주의 타파의 공동결단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로 결속하였다.

인종주의 타파는 보통 만만한 난제가 아니다 – 이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사고개조와 교회의 전면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대해 희망을 품고 끈기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 가장 주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인종결속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의도적인 일체감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한 COCU 교회들의 결단은 하나의 약속이고 기도이다. 이것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구속으로, 교회의 본질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들 9개 교회들의 이러한 결단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교회들이 되고자 하는 추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서 일치의 표시이고 예고이다.

이 글은 1999년 1월 24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개최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의 9개 교단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

- 부록 2에 대한 각주(脚註) -

1. 이 9개 결단 사항은 “인종주의 철폐”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9개 결단은 “인종주의 철폐: 인종 정의와 일치의 추구 전략”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이 문서는 COCU 제18차 총회의 기본자원 문서로서, 1998년 7월/10월판 Mid-Stream Vol. 37, Nos.3-4에 발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 문서를 회원 교단들에게 연구와 실행에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미국 한인장로교와
에큐메니칼 선언문
계약관계 합의서 채택 건

인준받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218차 총회(2008년) 승인
노회들의 다수 표결에 의해 승인
(G-15.0302c)

미국한인장로교 와 미국장로교 간에 맺은 계약관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히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1-6 (표준새번역)

I. 역사적 관계

미국장로교 [PC(USA)] 와 미국 한인장로회는 개혁전통에 공통적인 뿌리를 두고 이에 헌신하는 교회들이다. 두 교회 간에 흐르는 정서적 유대감은 양 교회 선교 역사의 유산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1885년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난 세기동안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된 동반자가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이민법이 바뀌고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 이민 문호가 열렸으며, 이로써 한인장로교에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장로교(PC(USA))는 많은 수의 한인장로교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한인들이 미장로교로 합류했으나, 다른 일부는 미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한인장로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코리안-어메리칸 장로교회들로 조직된 이러한 그룹들은 각기 그들의 고유한 은사와 부름을 통해 미국 장로교의 증거사역의 성장과 개발에 기여를 해 왔다.

수년에 걸쳐 양 교단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오다가, 미장로교(PC(USA))의 제204차 총회 (1992년)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17차 총회 (1992년)에서 PC(USA)와 KPCA 간의 장로교협력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Presbyterian Cooperation)를 구성하도록 인가했다. 지난 30여년간 동 합동위원회는 목회사역·교육·글로벌 선교·평화·정의·화해·교회정치제도 분야에 초점을 두어왔다. 지금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우리 교회들이 이민 중심적 목회로부터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지향하도록, 미국에서 나고 교육을 받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제시하는 기회에 관한 것이다. 합동위원회는 PC(USA)와 KPCA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합동위원회는 하나님께서우리를 부르시고 PC(USA)와 KPCA 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향하는, 두 교단 간의 계약관계를 선포하도록 총회에게 이르신 것으로 믿는다. 계약관계는 교회와 선교의 삶에서 공식적인 상호결단을 확립한다. 계약관계의 본질은 핵심신학 원칙에 기초를 둔 상호관계로 부름이다.

II. 상호 인정과 화해

A. 개혁교회세계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에 가입한 개혁전통의 교단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실천되고 있는 교회로 서로 인정한다.

B.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다는 표징이다. 성경말씀 대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엡 4:5). 그러한 안목에서 우리는 서로의 교회 세례를

인정하고 서로의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로 환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희생의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주님의 성찬 성례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도록 격려한다.

C.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으며, 사랑·의로움·평화·정의의 길에서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안수는 교회의 특정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남녀를 선별해 내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회 사역자들을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선별된 이들은 그리스도 선교를 위한 자들로 인정한다. 우리는 상호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안수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D.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에서 달성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자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교회의 삶과 신앙 증거의 모든 분야에게 복음, 정의, 화해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증거하고자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의 은사가 교회의 증거를 힘있게 한다. 교회의 분열이 교회 선교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파는 교회의 메시지와 선교로부터 관심을 흩어지게 한다. 우리는 지교회적 지원·자원과 지도자 개발·국내/세계 선교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들의 교회 선교가 힘을 받는다고 인정한다.

III. 계약의 결단

A. 우리는 기도와 대화,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상호 확인과 권고를 통해 성실한 관계를 갖으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시련을 나누며, 불일치가 있을 때도 이 계약을 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우리들 교회의 증거를 확인할 것을 추구하며, 교정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가시적인 교회를 위하는 사랑이 담긴 언어로 말을 한다.

B. 우리는 상호 교회의 목회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질서있는 상호교환의 사역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조항은, 교회 사역자가 누가 되어야 하고 승인할 것인지를 노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 절차는 목회자들의 상호 교단의 목회 분담과 목사의 이명절차와 이중교단 가입 절차의 확인을 허용할 것이다. 이 절차는 회원권이 유효한 목사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양방의 교회정치제도에 의거한 권징의 절차를 포함할 것이다.

C.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요, 우리 교회들에게 공통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PC(USA)와 KPCA 소속의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공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규율있는 개체교회 이명의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가능할 경우, 개체교회들이 목회사역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중소속권을 갖을 수 있게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양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키는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에 기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양 교단의 교회정치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D. 우리는 공동 선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음의 선교 분야에서 함께 사역할 것과 다른 사역의 분야들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기로 서약한다: 커리큘럼 개발, 2세 그룹들과 청소년/청년그룹의 목회, 개체 교회 단위의 지지와 지도자 개발, 여성지도자 및 자원 개발, 글로벌 선교와 세계 내의 화해의 분야.

IV. 권능을 부여하는 결의

A. 이 계약서는 양 교단의 적절한 경로를 통해 양방 총회로 전달되어 2008년까지 결의되도록 할 것이다.

B. 양방의 총회는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이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헌법 수정을 하도록 요청 받을 것이며, 노회로 보내 재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C. 노회의 재가를 받을 때 계약관계가 수립될 것이며, 공식적인 계약관계를 경축하는 예배의식은 2010년까지 기한 내에 거행될 것이다.

D. 계약실행위원회가 수립될 것이며, 동 위원회에 의해 계약절차의 형태가 부여되고 지지될 것이며 이 계약의 삶을 완전히 살게 하는 권고조항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V. 미래를 위한 기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으로 복음을 보내셨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한국의 교인들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강한 믿음을 길러주셨으며, 저희들은 한국의 교단과 미국의 한인장로교단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저희들은 인간적 제약 때문에 분리가 있다 하여도 당신께서 친히 저희 두 교회를 통해 계속 사역하시고 계심을 느끼나이다. 당신께서는 문화 관습 및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을 보다 긴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미국의 한인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회 사이에 지금부터 세세 대대로 계약관계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축복 내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는 비나이다. 아멘.”

에배소서 20: 21-6 (표준새번역)

한국어 어휘

Korean Glossary

A

1. Absentee	1. 결석자, 부재자
2. Administration	2. 행정
3. Administrative Commission	3. 행정전권위원회
4. Administrative Operation	4. 행정 운영
5. Administrative Review	5. 행정적 검토
6. Administrative Staff	6. 행정 직원
7. Administrator	7. 행정 책임자
8.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8. 성찬 참여 허락
9. Admission to membership	9. 회원자격 승인
10. Adult Members	10. 성인 회원
11.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11. 헌법자문위원회
12. Affiliate member	12. 관련교인
13. Affirmative Action	13. 소수계보호법
14. Agency	14. 대행기관
15. Amend	15. 수정/개정하다
16. Amendment	16. 수정/개정(안)
17. Annual Consultation	17. 연례 협의
18. Annual Report	18. 연례 보고서
19. Annual Review	19. 연례 검토
20. Answer to Protest	20. 항의에 대한 답변
21. Appeals	21. 상소(문)/항소(문)
22. Appellant	22. 상소인/항소인
23. Appellee	23. 피상소인/피항소인
24. Approval	24. 승인
25. Article of Agreement	25. 합의조항
26. Assistant Pastor	26. 보조목사
27. Associate Pastor	27. 부목사
28. Automatic termination	28. 자동 해직/해임

B

29. Ballot	29. 투표용지
30. Baptism	30. 세례
31. Baptized Member	31. 세례회원
32. Bereaved	32. 유가족

2 규례서/ 부록

33. Bible	33. 성경
34. Bicameral System	34. 양원/의원 제도
35. Unicameral System	35. 일원/단원 제도
36. Book of Order	36. 규례서
37. Bounds of Presbytery	37. 노회 구역
38. Budget of Particular Church	38. 지교회 예산
39. building	39. 건물
C	
40. Call to Minster	40. 목사청빙
41. Called to meeting	41. 회의 소집
42. Calling to Office in the Church	42. 교회 직분에 부름받음
43. Candidacy	43. 후보생
44. Candidate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 the Sacrament	44.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후보생
45. Candidates	45. 후보자들/후보생들
46. Care of Persons	46. 사람들의 보살핌
47. Cases	47. 사건/사례
48. Censures of Church	48. 교회의 책벌
49. Certificate	49. 자격증(서)/인정증(서)
50. Certified	50. 인정된/유자격
51. Chaplain	51. 기관목사
52. Charge	52. 권면
53. Catechism, Larger and Short	53. 대·소요리문답
54. Choir	54. 성가대
55. Christian Nurture	55. 크리스천 양육
56. Church	56. 교회
57. Church Discipline	57. 교회 권징
58. Church government	58. 교회 정치
59. Church Officers	59. 교회 제직원
60. Church Orders	60. 교회 규례
61. Church Polity	61. 교회 정치조직/체계
62. Church Power	62. 교회 권한
63. Church Property	63. 교회 재산
64. Church School	64. 교회 학교
65. Church Unions	65. 교회 연합
66. Church Vocations	66. 교회 소명
67. Citations	67. 소환장
68. Civil Jurisdiction	68. 국가 관할권

- | | |
|---|-----------------|
| 69. Clerk | 69. 서기 |
| 70. Commission | 70. 전권위원회 |
| 71. Commissioned Lay Pastor | 71. 평신도 파송 목회자 |
| 72. Commissioners | 72. 총대/전권위원 |
| 73. Commissioning | 73. 파송/위임 |
| 74. Committal | 74. 하관/매장 |
| 75. Committee | 75. 위원회 |
| 76. Committee on Ministry | 76. 목회위원회 |
| 77.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 77. 목회후보생위원회 |
| 78. Committee of Representation | 78. 대표위원회 |
| 79. Communion | 79. 성찬/친교 |
| 80. Complaint | 80. 고소/불만 |
| 81. Confessional Statement | 81. 신앙고백문 |
| 82. Congregation | 82. 교회회중 |
| 83. Congregational Meeting | 83. 공동의회 |
| 84. Conscience | 84. 양심 |
| 85. Constituency | 85. 교구민 |
| 86.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 86. 미국장로교 헌법 |
| 87. Constitutional Questions | 87. 헌법상의 질문 |
| 88. Co-Pastor | 88. 동사목사 |
| 89. Corresponding Member | 89. 객원회원 |
| 90. Corporation | 90. 법인체 |
| 91. Council | 91. 협의회 |
| 92. Covenant Relationship | 92. 언약/계약 관계 |
| D | |
| 93. Deacons | 93. 집사 |
| 94. Board of Deacons | 94. 집사회 |
| 95. Death | 95. 사망 |
| 96.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 96. 장례의식/부활의 의식 |
| 97. Deletion | 97. 삭제 |
| 98. Delinquency | 98. 비행, 직무태만 |
| 99. Deposition | 99. 증언녹취 |
| 100. Designated Pastor | 100. 임명목사 |
| 101. Directory for Worship | 101. 예배모범 |
| 102. Disciplinary Cases | 102. 징계사건, 권징사건 |
| 103. Accused | 103. 피소자 |
| 104. Charge | 104. 공소, 공소혐의 |

4 규례서/ 부록

105. Counsel	105. 변호인
106. Disciplinary Committee	106. 징계위원회
107. Preliminary Hearing	107. 예심/ 예비청문회
108. Preliminary Procedure	108. 예비절차
109. Prosecution of Case	109. 사건의 공소/기소
110. Renunciation	110. 포기(선언)
111. Vindication	111. 결백입증
112. Discipline	112. 권징/ 징계
113. Dissent	113. 반대
114.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114. 목회관계 해소
115.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115. 집사나 장로의 시무직 해소
116. Dissolving Church	116. 교회해산/해체
117. Divested of Office	117. 면직
118. doctrine	118. 교리
E	
119. Ecclesiastical Jurisdiction	119. 교회 관할권
120. Ecumenical Commitment	120. 에큐메니컬 결단/범기독교 운동 참여
121. Ecumenical Statements	121. 에큐메니컬 선언
122. Educational Program	122. 교육 프로그램
123. Elders	123. 장로
124. Election	124. 선출/ 선거
125.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125. 목사(또는 부목사)의 선출
126. Election of Trustees	126. 재단 이사의 선출
127. Emerita or Emeritus, Pastor	127. 명예목사/ 원로목사
128.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128. 평등 고용기회
129. Evidence in Remedial/ Disciplinary	129. 교정/징계사건에서 증거
130. Examination	130. 시험/심사
131. Exceptions	131. 예외(조항)
132. Executive Presbyter	132. 노회총무
133. Ex-Officio	133. 직책상/당연직
134. Expenses Attending Governing Bodies Paid	134. 치리회 참가비 지급
135. Extraordinary Inquirer or Candidates	35.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F	
136. Family worship	136.가족예배
137. Fasting & Thanksgiving	137.금식과 감사기도
138. Federated Church	138.연방교회
139. Finance	139.재무, 재정

140. Form of Call to Minister	140. 목사청빙 양식
141. Funeral	141. 장례
G	
142. General Assembly (GA)	142. 총회(GA)
143. General Assembly Council (GAC)	143. 총회 중앙협의회(GAC)
144. Manual Operation	144. 운영세칙서
145. Gifts	145. 회사금/은사
146. Governing Bodies	146. 치리회(기관)
147. Session	147. 당회
148. Presbytery	148. 노회
149. Synod	149. 대회
150. General Assembly	150. 총회
151. Governing Bodies Relations	151. 치리회 관계
152. Government, Church	152. 교회 정치
153. Government, Form of	153. 정치형태
H	
154. Higher Governing Body	154. 상회(상급 치리회)
155. Holy Spirit	155. 성령
156. Honorably Retired Minister	156. 명예 은퇴 목사
I	
157. Inactive Roll	157. 비활동교인 명부
158. Incorporated Church	158. 법인 등록된 교회
159. Individual Worship	159. 개인 예배
160. Infants	160. 유아
161. Inquirer for Ministry of the Word & the Sacrament	161.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지망생
162. Inquiry	162. 문의/지망
163. Install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 the Sacrament	16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취임
164. Instruction	164. 지침/ 지시/ 가르침
165. Interim Supply	165. 임시 설교자
166. Interpretation	166. 해석/해설
167. Irregularity	167. 변칙/오판
J	
168. Judgment of Court	168. 법원의 판정
169. Judicial Process	169. 사법절차
170. Judicial Case	170. 사법사례/사건
171. Jurisdiction	171. 관할권/교직권

- 172. Jurisdiction of Governing Bodies
- 173. Jurisdiction of Judicial Process

L

- 174. Laboring Outside Bounds
- 175. Lay Preacher
- 176. Laying on of Hand in Ordination
- 177. Local Congregation
- 178. Lord's Day
- 179. Lord's Supper
- 180. Administration
- 181. Lower Governing Body

M

- 182.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 183. Marriage
- 184. Members, Church
- 185. Active Member
- 186. At-large Member
- 187. Inactive Member
- 188. Baptized Member
- 189. Manse
- 190. Manse Allowance
- 191. Minister
- 192. Designated Pastor
- 193. Parish Associate
- 194. Pastor
- 195. Associate Pastor
- 196. Assistant Pastor
- 197. Co-Pastor
- 198. When Removed from Office
- 199. Temporary Exclusion
- 200. Restoration
- 201. Ministry
- 202. Committee on Ministry
- 203.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 204. Minutes
- 205. Moderator
- 206. Music in Public Worship

- 172.치리회의 관할권
- 173.사법절차 관할권

- 174.노회구역 외부에서 사역/목회
- 175.평신도 설교자
- 176.안수식의 안수
- 177.지교회/회중
- 178.주일
- 179.성찬
- 180. 집례
- 181.하급 치리회

- 182.행정운영 지침서
- 183.결혼
- 184.교인/회원
- 185. 활동회원
- 186. 일반/보통 회원
- 187.비활동회원
- 188. 세례회원
- 189.목사사택
- 190.사택수당
- 191.목사
- 192. 임명목사
- 193. 협동목사
- 194. 담임목사
- 195. 부목사
- 196. 보조목사
- 197. 동사무사
- 198. 교회직분 면직시(목사직 면직)
- 199. 임시 정직
- 200. 복직(목사직)
- 201.목회/사역
- 202. 목회위원회
- 203.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 204.회의록
- 205.의장/사회자
- 206.공중예배 음악

N

207. Nominating Committee	207. 공천위원회
208. For Deacons & Elders	208. 집사와 장로를 위한
209. For Pastor	209. 목사를 위한
210. Nominating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210. 총회 공천위원회
211. Nonresident Member	211. 타지역거주 교인/회원
212. Notice of Appeal	212. 상소 통보
213. Notice of Meeting	213. 회의 통보

O

214.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	214. 증인에게 선서시킴
215. Obligation	215. 의무(사항)
216. Offense	216. 위반/범법
217. Offerings	217. 헌금
218. Officers of Church	218. 교회 제직원
219. Order of Public Worship	219. 공중예배 순서
220. Ordination	220. 성직안수식/서품식
221. Ordination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 Sacrament	22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안수식
222. Ordination of Deacons & Elders	222. 집사와 장로의 안수(식)
223. Ordination Obligations	223. 안수의무(사항)
224. Organic Union	224. 기구 연합
225.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225. 개체교회 조직
226.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226. 사법절차에 관한 원 관할권
227. Overture	227. 건의(사항)

P

228. Parish Associate	228. 협동목사
229. Parliamentary Procedure	229. 회의진행 절차
230. Particular Church	230. 개체교회
231. Federated Church	231. 연방교회
232. Union Church	232. 연합교회
233. Partner in Mission	233. 선교동역자
234. Pastor	234. 목사/담임목사
235. Election of Pastor	235. 목사 선출
236. Pastor Emerita, Emeritus	236. 원로목사/ 명예목사
237. Pastoral Relations	237. 목사(목회)관계
238. Associate Pastor	238. 부목사
239. Co-Paster	239. 동사목사
240. Pastor	240. (담임)목사

241. Interim Supply	241. 임시 설교자
242. Stated Supply	242. 노회 지정목사
243. Temporary Supply	243. 잠정설교자
244. Pension Plan	244. 은급보험(계획)
245.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24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246. Polity, Church	246. 교회 정치조직/체계
247. Power	247. 권한
248. Prayer	248. 기도
249. Preaching & Hearing	249. 설교와 경청
250. Preparation for Worship	250. 예배준비
251. Presbyteries' Cooperative Committee on Examinations	251. 노회 목사후보고시위원회
252. Presbytery	252. 노회
253. Principles of church Order	253. 교회규례 원칙
254.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254. 장로교 정치원리
255. Private Judgment	255. 개인 판단/사적 소견
256. Private Worship	256. 사적 예배
257. Procedure in Trials	257. 재판절차
258. Profession of Faith	258. 신앙고백
259. Property	259. 재산
260. Prosecution of Call	260. 청빙절차 시행
261. Protest	261. 항의(서)
262. Pulpit Supply	262. 임시설교(자)
Q	
263. Quorum	263. 정원/정족수
R	
264. Rebuke	264. 견책
265. Reception of Member	265. 교인입교/ 회원입회
266. by Certificate	266. 이명증서로
267. on Profession of Faith	267. 신앙고백으로
268. on Reaffirmation of Faith	268. 신앙 재확인으로
269. Record of Proceedings	269. 회의진행 기록
270. Records of a Governing Body	270. 처리회 기록
271. References	271. 위임/위탁
272. Remedial Case	272. 교정사건
273. Removal from Membership	273. 회원 이명/제적
274. Removed Minister	274. 이명/제적된 목사
275. Renoucing Jurisdiction of Church	275. 교회 관할권 포기선언

- | | |
|---|--------------------|
| 276. Representation | 276.대표 |
| 277. Committee on Representation | 277. 대표위원회 |
| 279.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 279.교회의 대의 정치 |
| 280. Responsibilities | 280.책임(사항) |
| 281. Restoration | 281.복직/회복 |
| 282. Review & Control | 282.평가검토 및 조정관리 |
| 283. Ruling Elders | 283.치리장로 |
| S | |
| 284. Sacraments | 284.성례전 |
| 285. Scripture | 285.성경 |
| 286. Sentence | 286.판결 |
| 287. Separation of Church & State | 287.교회와 국가 분리 |
| 288. Sermon | 288.설교 |
| 289. Service of God | 289. 하나님 예배 |
| 290.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 290.장례의식/부활의 증거의식 |
| 291. Session | 291.당회 |
| 292. Special Organizations | 292.특수기구 |
| 293. Special Meetings | 293.특별회의 |
| 294. Standing/Permanent Committee | 294.상임/영구위원회 |
| 295.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 295.정규 안수고시 |
| 296. Standards of Church | 296.교회 표준 |
| 297. Stated Clerk | 297.정서기 |
| 298. Stated Meeting | 298.정기회의 |
| 299. Stated Supply | 299.노회 지정목사 |
| 300. Stewardship of Resources | 300.자원의 청지기직 |
| 301. Structures of Governing Bodies | 301.치리회 구조 |
| 302. Supervised Rehabilitation | 302.감독 복권 상담 |
| 303. Supper, Lord's | 303.성찬/주의 만찬 |
| T | |
| 304. Task Force | 304.소위원회 |
| 305. Teaching Elder | 305.목사/가르치는 장로 |
| 306. Temporary Exclusion | 306.임시 정직 |
| 307. Temporary Pastoral Relation Term(s) | 307.임시 목회 관계 임기/규정 |
| 308. Term of Office | 308.직분임기 |
| 309. Termination of Censure & Restoration | 309.징계 종결 및 회복 |
| 310. Testimony | 310.증언 |

- 311. Title
- 312. Trials

U

- 313. Union Church
- 314. Union Governing Bodies
- 315. Unity Of Visible Church
- 316. Universal Church
- 317. Unity

V

- 318. Visit Church
- 319. Visiting Minister
- 320. Voters

W

- 321. Waiver
- 322. Witness

- 311. 직함/등기
- 312. 재판/심리

- 313. 연합교회
- 314. 연합치리회
- 315. 가시적 교회의 일치
- 316. 보편(세계)교회
- 317. 일치

- 318. 교회심방
- 319. 심방목사
- 320. 투표자

- 321. 포기/보류/잠정
- 322. 증인

성서적 언급

정치형태

제 1 장

- G-1.0100a a. 엡 1:20, 21; 시 68:18
- b. 시 2:6; 단 7:14; 엡 1:22, 23
- G-1.0307 c. 사도행전 15:1-32 참조 및 자문
- G-1.0308 d. 마 18:15-18; 고전 5:4, 5
- G-1.0400 e. 행 15:1-29; 16:4 참조

제 2 장

- G-2.0200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 G-2.0300 b. 니케아 신조 1.3, 바르멘 신학 선언 8.01, 8.06
- G-2.0400 c. 스콧 신앙고백서 3.0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62, 6.065
- d.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108, 5.10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1, 4.065; 소요리문답 7.033; 대요리문답 7.180
- 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66
- G-2.0500a f. 스콧 신앙고백서 3.02, 3.13, 3.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1, 4.047, 4.117, 4.121;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74; 대요리문답 7.295, 7.299
- g.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4.036; 제 2 스위스신앙고백 5.036; 소요리문답 7.004; 대요리문답 7.262
- h. 스콧 신앙고백서 3.0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6, 4.027, 4.028;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29, 5.030, 5.0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8, 6.024, 6.025, 6.026, 6.027, 6.030, 6.117; 소요리문답 7.008, 7.011, 7.012; 대요리문답 7.124, 7.128, 7.129, 7.130, 7.300, 7.302, 7.303, 7.305; 1967 년도 신앙고백 9.03
- 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4, 6.037, 6.105;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9.16, 9.17, 9.50; 간추린 신앙고백 10.3
- j.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7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8, 6.190; 대요리문답 7.148, 7.303
- k.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7
- l.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4, 4.037; 간추린 신앙고백 10.3
- m.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간추린 신앙고백 10.3
- G-2.0500a(1) n. 스콧 신앙고백서 제 7 장;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1, 6.095, 6.193
- o.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81, 6.192; 소요리문답 7.20; 대요리문답 7.189, 7.191
- G-2.0500a(4) p. 스콧 신앙고백서 3.05, 3.14, 3.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94, 4.095; 소요리문답 7.215; 대요리문답 7.218, 7.300
- q. 스콧 신앙고백서 3.14

제 3 장

- G-3.0200c a. 골. 1:18; 엡 1:20; 고전 1:18

제 4 장

- G-4.0101 a. 계 5:9; 행 2:39
- G-4.0102 b. 갈 1:21, 22; 계 2:1
- G-4.0103 c. 행 2:41, 47; 고전 7:14; 행 2:39; 막 10:14 - 마 19:13, 14, 눅 18:15, 16 과 비교
- d. 히 8:5
- G-4.0203 e. 시 2:8; 계 7:9
- G-4.0304 f. 겔 43:11, 12

제 5 장

- G-5.0101a a. 행 2:46, 47
- G-5.0202 b. 히 8:5; 갈 6:16

제 6 장

- G-6.0103
 - a. 답전 3:1; 엡 4:11, 12
 - b. 답전 5:17
 - c. 빌 1:1
- G-6.0202a
 - d. 행 20:28
 - e. 램 3:15
 - f. 고전 4:1; 고후 3:6
 - g. 뱀전 5:1; 딛 1:5; 답전 5:1, 17, 19
 - h. 고후 5:20; 엡 6:20
 - i. 눅 12:42; 고전 4:1
- G-6.0301
 - j. 고전 12:28
- G-6.0302
 - k. 답전 5:17; 롬 12:7, 8; 행 15:25
- G-6.0401
 - l. 빌 1:1; 답전 3:8-15
- G-6.0402
 - m. 행 6:3, 5, 6
 - n. 행 6:1, 2

제 7 장

- G-7.0102
 - a. 행 2:41, 47

제 8 장

- G-8.0101
 - a. 행 15:1-29, 16:4

제 9 장

- G-9.0102a
 - a. 눅 12:13, 14; 요 18:36
- G-9.0301b
 - b. 고전 14:40
- G-9.0409a(2)
 - c. 행 15:22-24
- G-9.0503a(4)
 - d. 행 20:17; 6:2; 15:30

제 10 장

- G-10.0101
 - a. 고전 5:4
- G-10.0102
 - b. 히 13:17; 살전 5:12, 13; 답전 5:17
- G-10.0102b
 - c. 겔 34:4
- G-10.0102p(1)
 - d. 행 15:2, 6
- G-10.0102r
 - e. 살전 5:12, 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33
- G-10.0201
 - f. 행 20:17

제 11 장

- G-11.0101
 - a. 행 6:1, 6; 9:31; 21:20; 2:41, 46, 47; 4:4; 15:4; 11:22, 30; 21:17, 18; 6:1-7; 19:18-20; 고전 16:8, 9, 19; 18:19, 24, 26; 20:17, 18, 25, 28, 30, 36, 37; 계 2:1-6
 - b. 행 15:1-6; 고전 14:26, 33, 40
- G-11.0103g
 - c. 엡 6:18; 빌 4:6
- G-11.0103l
 - d. 답전 4:14; 행 13:2, 3
- G-11.0103n
 - e. 행 15:28; 고전 5:3
- G-11.0103t(3)
 - f. 행 15:10; 갈 2:4, 5
- G-11.0202
 - g. 행 14:26-27; 행 11:18

제 12 장

- G-12.000
 - a. 장로교 총회에서 예증된 교회정치에 지지의 증거는 대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지한다는 확증이며, 따라서 제 10 장[원문 표기 11 장]에서 언급된 성서구절 반복이나 다른 추가 언급은 불필요하다. (1888 미국장로교회 정부형태 제 10 장)

제 13 장

G-13.0101 a. 행 15:1-29; 16:4 참조

제 14 장

제 14 장 인용문은 예배모범 제 4 장으로 옮겨짐.

제 15 장

G-15.0103 a. 겔 43:11, 12

제 16 장

G-16.0301 a. 행 15:5, 6

제 17 장

G-17.0101 a. 행 21:17, 18; 행 6; 행 15:2, 3, 4, 6, 22

제 18 장

G-18.0201a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G-2.0200 참조

예배모범

제 4 장

W-4.4004a a. 행 6:5, 6
W-4.4003b b. 딤후 3:16; 엡 2:20
W-4.4003c c. 딤후 1:13
W-4.4003e d. 뱌전 5:5
W-4.4006b(2) e. 약 1:21; 히 13:17
W-4.4006b (3) f. 고헨 9:7-15
g. 살전 5:12, 13
W-4.4006c h. 행 13:2, 3
i. 딤헨 4:14
W-4.4006d j. 딤후 4:1, 2
W-4.4006e k. 갈 2:9; 행 1:25
W-4.4006f l. 막 4:24; 히 2:1

색인

본 색인의 참조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의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

(역자주-원문대로 영어 알파벳 순서를 따랐으며, 머리 항목에는 영문과 한글 번역을, 그리고 나머지는 한글 번역만을 실었다.)

Absentee May Not Vote in Congregational Meeting 불참자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할 수 없음	G-7.0301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Services of 용납과 화해 예배	W-4.8000
Accountability to Presbytery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노회의 책임	W-1.4008
Accused-Rights 피소인의 권리	D-10.0203 c
Accuser, Rights to petition if charges not filed 고발이 접수 안 되었을 때 고소인의 청원할 권리	D-10.0303
Active Member: 활동교인 :	
지교회의	G-5.0302
노회의	G-11.0406 a
	G-11.0409
Active Participation of honorably retired members as criterion for determining balance 균형을 맞추는 표준으로써 명예은퇴 목회자들의 적극 관여	G-11.0101 b
Acts of Commitment and Recognition 결단과 인정의 행위	W-3.3502 -.3504, W-3.3701
Acts of Jurisdiction of the Whole Church 전체 교회의 치리권의 행위	W-3.5503-.5504, , W-4.2006, G-9.0103
Acts of Recognition 인정행위	W-3.3502
Administration: 행정 (또한 “행정 원칙” 참조) :	W-3.3504, W-4.7000
정의	G-9.0401
구조	G-9.0402
Administrative Commissions: 행정전권위원회:	G-9.0503
결정과 절차	G-9.0505
위원	G-9.0504 b(3)
정족수	G-9.0504 c
Administrative Operations, Manual of 행정 운영 지침서	G-9.0405
Administrative Leave When Sexual Abuse Is Alleged 성적 비행 혐의가 있을 때 직위해제	D-10.0106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심리 :	
정의	G-9.0407
상급 치리회가 재고 요청할 수 있음	G-9.0410
검토 방법	G-9.0409
기록 검토	G-9.0807
특별 정의	G-9.0408
투표할 수 없는 자	G-9.0409 b
Administrative Staff: 행정 직원 :	
참여와 대표 원칙에 의해 선출	G-9.0704

2 규례서/부록

총무의 선출 방법 :	
총회에 의해.....	G-9.0703
노회에 의해.....	G-9.0701
대회에 의해.....	G-9.0701
기타 직원에게 권한 부여 방법 :	
노회에 의해.....	G-9.0702
대회에 의해.....	G-9.0702
대표 청빙위원회.....	G-9.0704
임시직.....	G-9.0706
Administrator: 행정 책임자 :	
치리회가 청빙할 수 있음.....	G-11.0410
사역 청빙을 받은 목사.....	G-11.0410
	G-11.0411
Admission to Membership, Terms of: 회원자격 허가 조건 :	
교단이 설정함.....	G-1.0302
설정 방식.....	G-5.0101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성찬에 참여:	
세례회원.....	G-5.0301, G-5.0401 b
세례받은 자의 자녀.....	G-5.0401 b
	W-2.4011 b
	W-4.2002
당회가 보관하는 교인 기록.....	G-10.0302
Adult: 성인 :	
교회의 돌봄받는 비회원.....	G-5.0401 b
신앙고백에 의해.....	G-5.0502 b
Advent, Season of 강림절.....	W-3.2002 a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규례서 개정을 위해 거쳐야 함.....	G-18.0301 b
총회에서 최소 3명 위원.....	G-13.0112 e
총회 120일 전 해석의 질문.....	G-13.0112 c
안건이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 중일 때의 역할.....	G-13.0112 d
최소한 연차 회의를 가짐.....	G-13.0112 b
총회의 각 회기 전에 소집되어야 함.....	G-13.0112 b
Advisory Handbooks, 자문서	
정의.....	서문
목회위원회를 위한.....	G-11.0504
지망이나 후보 절차를 위한.....	G-14.0402
총회가 제의해야 함.....	G-9.0405
Advocate in Disciplinary Process 징계 절차에서 지지자.....	D-10.0203 a,b
Affiliate Member: 관련교인.....	G-5.0304
	G-10.0302 a(2)b
2년마다 회원권 갱신.....	G-10.0302 a(4)
Affirmation in Place of Oath 선서 대신하는 확인.....	D-14.0302 b
Affirmation of Faith 신앙의 확인 (“신조와 신앙고백에서도” 참조).....	W-3.3500, W-4.10004
Affirmation Action: 소수계 보호법:.....	G-9.0104 a
노회위원회와 직원.....	G-11.0103 d
노회 직원.....	G-11.0303

대회 직원.....	G-12.0302
총회 직원.....	G-13.0201 b
Allegations of Offense 권징조례 위반주장.....	G-9.0505 d
	D-10.0101
Alternative Forms of Resolution 해결의 대안 형식.....	D-2.0103
	D-10.0202 h(1-4)
	D-10.0301
Ambassador, as Expressive Name for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하나님의 대사.....	G-6.0202 a
Ame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전권위원회 조치 수정.....	G-9.0505 a
Amending the Constitution: 헌법 개정 :	
규례서.....	G-18.0301
노회 다수에 의한 승인.....	G-18.0301 d
고백 문서들.....	G-18.0201
노회 2/3에 의한 승인.....	G-18.0201 a(2)
특별위원회 지명함.....	G-18.0201 b
예배모범.....	G-18.0301
정치형태.....	G-18.0301
개정 불가 조항.....	G-18.0302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의 방편.....	G-18.0101
헌법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함.....	G-18.0301 b
	G-13.0112 d
개정 불가 조항.....	G-18.0302
권징조례.....	G-18.0301
특별조항.....	G-18.0401
Annual Consultation 연례 협의.....	G-14.0421
Annual Report by Presbytery to GA 총회에 보낼 노회의 연례 보고.....	G-11.0306
Annual Reports Reviewed within presbyteries and synods	
노회와 대회 내에서 검토된 연례보고서.....	G-9.0407 b
Annual Review: 연례 검토 :	
목사의 보수에 대해.....	G-7.0302 a
	G-10.0102 n
	G-14.0511
	G-14.0534
대회에 의한 노회 기록에 대해.....	G-11.0305 a
노회에 의한 당회 기록에 대해.....	G-10.0301
차기 총회에 의한 대회 기록에 대해.....	G-12.0304
Answer to Protest 항의에 답변.....	G-9.0305
Apostles' Creed a Part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일부로서의 사도신경.....	G-1.0501
Appeals: 항소 :	
서면 통보의 내용.....	D-8.0202 a-f
	D-13.0202 a-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 a-f
	D-13.0404 a-f
정의.....	D-8.0101
	D-13.0101
징계와 교정사건에 있어서의 효력.....	D-8.0103
	D-13.0104
권징 사건의 상소 절차 접수.....	D-13.0200
교정사건의 상소 절차 접수.....	D-8.0200

4 규례서/부록

하회에서 상급 치리회까지	G-1.0400
근거.....	D-8.0105 a-g D-13.0106 a,b
청문.....	D-8.0403 D-13.0403
청문 통보.....	D-8.0401 D-13.0401
기록.....	D-8.0203 a-g D-13.0303 a-g
서면 통보 제출 시한.....	D-8.0201 D-13.020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제출 시한.....	D-8.0304 부터 D-8.0305 까지 D-13.0304 부터 D-13.0305 까지
주도할 사람.....	D-8.0102 b D-13.0102
철회.....	D-8.0104 D-13.0105
Appellant: 상소인 :	
허용된 시한내 제출 못할 때 소송 포기.....	D-8.0304 c D-13.0304 c
30일내 상소 통지를 전달.....	D-8.0201 D-13.0201
Appellee Shall File Response Within Thirty Days	
30일내 피상소인이 응답을 제출.....	D-8.0305 D-13.0305
Application for Release from Ordained Office 안수직 해제 청원.....	G-6.0600 a
“Appropriate” as a Term in the Directory 예배모범 용어로서 “적절한”.....	서문
Appropriate Language 적절한 언어.....	W-1.2002
Approval of Presbyteri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 개정의 노회 승인.....	G-18.0201 a,c-e G-18.0301
Architecture: 건축 양식.....	W-1.3021 –.3024, W-1.4004g
“Are to Be”, as a Term in the 서문에 정의된 용어로서 “되어야 한다”.....	서문
Art Forms and Worship: 예술 형태와 예배 :	
댄스.....	W-1.2001 W-1.4004 i,j W-1.4005 a(5) W-2.1005 b W-2.2008 W-3.4002
연극.....	W-1.2001 W-1.3034 (2) W-1.4004 j W-1.4005 a(5) W-2.2008 W-3.4002

개요.....	W-1.3034 (2) W-1.4004 i,j W-1.4005 a(5) W-3.5102 W-3.5302
음악 (또한 "공중예배에 있어서 음악" 참조)	W-1.4004, W-1.4005
Associate Pastor: 부목사 :	
목회위원회, 담임목사와 동사목사.....	G-11.0502 d
협의해야 함.....	G-14.0502 a
교인의 투표로 선출.....	G-14.0501 b
청빙 양식.....	G-14.0506 b
당회원.....	G-10.0101
동사목사 자격 없음.....	G-14.0501 d
하나의 예외.....	G-14.0501 d
담임목사 계승 자격 없음.....	G-14.0501 d
안수와 취임.....	G-14.0404 G-14.0405 G-14.0509 G-14.0510
영구 목회직.....	G-6.0202 b
그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좌우 안 됨.....	G-14.0501 d
Assurance of God's Pardon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	W-3.3301 (d) W-3.3507
At-Large Member 보통 회원 ("보통 회원"에서도 참조).....	G-11.0406 b
Audit 감사 ("재무검토" 참조)	
Authentic Language 확실한 언어.....	W-1.2005
Ballot: 투표 :	
집사와 장로 선출 시.....	G-14.0233
Baptism: 세례 ("또한 성례전" 참조) :	
기름 부음과.....	W-3.3607
성례전으로서.....	W-1.3033 (2) W-2.3008 W-3.3601
선교명령에 응답으로써.....	W-2.3001
군목과 타목사의 집례.....	W-2.3011 b
자녀들과.....	W-2.3008 b W-2.3014 W-2.4011 W-3.3602 W-3.3603
교회 책임.....	W-2.3013
신조와.....	W-3.3603 (a),(d)
세례반이나 세례못.....	W-1.3024
침례.....	W-3.3605
예식에 포함.....	W-3.3603 부터 W-3.3608 까지
유아 (참조 "세례, 어린이들")	
예수와.....	W-2.3001
안수와.....	W-3.3607

6 규례서/부록

성만찬과.....	W-2.3009 W-3.3608
의미.....	W-2.3002 부터 W-2.3008 까지 W-3.3601 W-3.3602
명부에 기재된 목사 자녀들.....	G-10.0302 a(1)
방식.....	W-3.3605
부모의 책임과.....	W-2.3014
물 붓기.....	W-3.3605
설교와.....	W-3.3602
준비.....	W-6.2001 a
신앙고백과.....	W-2.3008
재확인.....	W-2.3009
단 한번 받음.....	W-2.3009
기록.....	W-2.3011 a(4)
보관할 기록부.....	G-10.0302 c(2)
세례교인 명부.....	G-10.0302 a(1)
성경과.....	W-3.3602
순서.....	W-3.3603 부터 W-3.3608 까지
주일예배와.....	W-3.3502 W-3.3600
당회의 책임과.....	W-2.3011 W-2.3014
성령과.....	W-2.3001 W-2.3004 e
후원자와.....	W-2.3013
물 뿌림.....	W-3.3605
삼위일체적 형식.....	W-2.3010 W-3.3606
세례받는 자의 이름 사용.....	W-3.3606
물과.....	W-3.3605
회중의 환영과.....	W-3.3608 W-4.2001
집례하는 장소.....	W-2.3011
예식의 어디에서.....	W-3.3602
유효한 세례.....	W-2.3010
어린이를 데리고 나올 사람.....	G-5.0401 c W-2.3014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정의.....	G-5.0301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 부여 받음.....	G-5.0301 W-2.4011
당회에 의해 보관되는 세례 명부.....	G-10.0302 c(2)
명부.....	G-10.0302 a(1)
가르침 받음.....	G-5.0502

교회의 돌봄.....	G-5.0301
Benefits Plan of the PC(USA), Clarification of Participation in 미국장로교 복리후생제도 참여를 밝힘.....	G-14.0534
Bible: 성경 (참조“성서”):	
신앙고백은 부차적임.....	G-2.0200
안수 시험 과목에 포함됨.....	G-14.0402 a
Biennial General Assemblies: 2년마다 총회 개최:	
총대.....	G-13.0102 b
제안된 <i>규례서</i> 개정안.....	G-18.0301 c-e
절차와 결의 보고 및 검토.....	G-9.0407 c
대회의 검토.....	G-9.0407 d
Bishop, as Expressive Name for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감독.....	G-6.0202 a
Body of Christ, Church as the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G-3.0209 c
<i>Book of Confessions: 신앙고백서:</i>	
구성.....	G-1.0501
개정된 방식.....	G-18.0201
교회 헌법의 부분.....	G-1.0500
<i>Book of Order: 규례서:</i>	
구성.....	G-1.0502
개정이 되는 방식.....	G-18.0301
교회 헌법의 일부.....	G-1.0500
Bounds of Presbytery, Work Outside of Geographical	
노회의 경계, 노회 구역 밖의 사역.....	G-11.0401
Briefs: 적요서:	
상소인.....	D-8.0304
피상소인.....	D-13.0304
.....	D-8.0305
.....	D-13.0305
Broken Relationships, Pastoral Care and 목회적 돌봄과 깨어진 관계.....	W-6.3008
Budget of General Assembly 총회 예산안.....	G-13.0103 i
Budget of Governing Body 치리회 예산안.....	G-9.0404 d
Budget of Particular Church, Approval of, by Session	
개체교회 예산, 당회의 승인.....	G-10.0102 i
Building, Church: 교회 건물 :	
당회 감독하에 사용.....	G-10.0102 o
Calendar 월력 (또한 “교회력” 참조).....	W-3.3616e.(1)
Call to Certified Christian Educator 인증받은 기독교 교육자 청빙.....	G-11.0103 n
Call to Minister: 목사 청빙 (또한 “목사 선출” 참조):	
수당과 액수의 수락.....	G-14.0534
비목회 사역의 처리회나 기관에 의해.....	G-11.0410
조건 변경시, 노회의 승낙 받아야.....	G-14.0501 b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G-11.0502 d
.....	G-14.0530
.....	G-14.0532
특례의 경우.....	G-11.0404 b
양식.....	G-14.0534
군복무.....	G-14.0534

명단.....	G-11.0305 a
	G-11.0306
	G-11.0407
최저 보수 및 혜택.....	G-11.0103 n
목회위원회와 관계.....	G-11.0501 a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어린이 학대 보고 의무.....	G-14.0732
Certified Lay Employees (other) (여타) 유자격 고용직원.....	G-14.0130
Certified Ministry 정식 인준 받은 목회.....	G-14.0130
Challenge to Findings of PJC Moderator and Clerk: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결정에 이의 제기:	
징계사건의 장소.....	D-13 0302 a
교정사건의 장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Chaplain, Minister Called to Labor as 기관목사로 청빙받은 목사.....	G-6.0203
Chaplains Authorized to Celebrate the Sacraments:	
기관목사에게 성례전 집례 권한 부여 :	
세례.....	W-2.3011 b
주의 만찬.....	W-2.4012 b
Charge: 권면 :	
안수와 취임시 회중에게.....	W-4.4006 f
안수와 취임시 담임목사나 부목사에게.....	W-4.4006 f
Charges, in Discipline 고발, 권징에 있어서.....	D-10.0101
	D-10.0400
Child Abuse – Report Required by: 어린이 학대 – 보고 의무를 가진 자: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G-14.0732
집사.....	G-6.0402
장로.....	G-6.0304
목사.....	G-6.0204
Children: 자녀 :	
세례받은 자의 성만찬 참여.....	G-5.0301
세례와.....	W-2.3008
	W-2.3014
	W-3.3602
	W-3.3603
목회의 돌봄과 가르침 받을 자격.....	G-5.0301
가족예배와.....	W-5.7002
개요.....	W-3.1004
성만찬과.....	W-2.4011
	W-4.2002
가시적 교회의 회원.....	G-5.0300
신앙고백을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G-5.0502 a
Choir 성가대 (참조 “음악”)	
Christ: 그리스도 :	
교회내의 임명 직분자들.....	G-1.0303
	G-6.0101
교회의 머리.....	G-1.0109 a
일상생활에 있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	W-1.1003 c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응답.....	W-1.1003 b
Christian Nurture: 크리스천 양육:.....	W-6.2000

당회의 책임.....	G-10.0102 f W-6.2005
Christian Year 크리스천 절기 (또한 “교회력” 참조).....	W-5.5002, W-5.7003
Christmas, Day and Season of 성탄일과 절기.....	W-3.2002 b
Church: 교회 :	
그리스도의 대행자.....	G-1.0109 b
그 고백.....	G-2.0000
그 회원.....	G-5.0000
그 선교.....	G-3.0000
그 체직.....	G-6.0000
그 일치.....	G-3.0200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G-3.0200 G-1.0109 d
부름 받음 :	
그리스도의 충실한 복음 전도자로.....	G-3.0309 c
열림으로.....	G-3.0401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리도록.....	G-3.0309 b
위기와 신뢰.....	G-3.0400
복음을 전하도록.....	G-3.0309 a
그리스도께서 불러세우심.....	G-1.0109 b
그리스도의 충실한 복음전도자.....	G-3.0309 c
해산.....	G-11.0103 i
타 기독교 조직들과 연합 집회.....	G-16.0401 r
타 개혁신교단들과 연합 집회.....	G-16.0201 x
해소나 소멸 :	
회원.....	G-10.0302 b(2)
재산.....	G-8.0401
기록.....	G-10.0302 b(2)
재무.....	G-10.0401
교회의 큰 목적.....	G-1.0200
법인체.....	G-7.0401 G-8.0202
그 소명.....	G-3.0300
회원.....	G-5.0300
선교.....	G-3.0100
체직.....	G-4.0104
직분.....	G-6.0103
체직의 안수.....	G-14.0120 G-14.0300 W-4.4000
“개체”의 정의.....	G-4.0102 부터 G-4.0104 까지
법인체나 재단이사의 권한.....	G-7.0402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린다.....	G-3.0309 b
재산.....	G-8.0000
취지.....	G-1.0200
개혁된, 항상 개혁 하는.....	G-2.0200
미국장로교와 관계 절단은 노회의 헌법상 결의에 의해서만.....	G-8.0601
개체교회의 명부.....	G-11.0103 i G-10.0302

재단 이사.....	G-7.0401 G-8.0202
헌법 조항에 따라.....	G-7.0402
비법인체.....	G-7.0401
교과 의 이유로 일치를 꾀 수 없다.....	G-4.0203
일치.....	G-4.0200
“보편성” 의 정의.....	G-4.0101 부터 G-4.0102 까지 G-1.0100
Church Censures 교회 책벌 (또한 “교회의 책벌” 참조).....	D-12.0100
Church Finances: 교회 재무 :	
연례 재무 검토 의무화.....	G-10.0401 d
적어도 2명이 현금 계산과 기록.....	G-10.0401 a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의 기준.....	G-10.0401 a-d
당회 책임.....	G-10.0102 i
회계는 당회에 의해 매년 선출.....	G-10.0401
Church Government: 교회 치리:	
공동 관할권, 개별적 아님.....	G-4.0301 h
다수에 의한 치리.....	G-1.0400
대표.....	G-4.0301 b-e G-6.0107
성서적.....	G-4.0304 G-1.0109 c
보증.....	G-1.0109 c
Church Location 교회 소재지.....	G-11.0103 j
Church Officers: 교회 직분자 (참조 “집사”, “장로”, “목사”) :	
그리스도로부터의 권위.....	G-6.0101
직무에서만 교인들과 다름.....	G-6.0102
관계의 해소.....	G-6.0500
교인들에 의한 선출.....	G-1.0306 G-6.0102
목회의 형식.....	G-6.0104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G-6.0101
새로 개척된 교회에서.....	G-7.0202 G-14.0101
선출하는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	G-6.0107
성경에 순종하고 신앙고백에 일치하는 삶.....	G-6.0106 b
삶의 양식.....	G-6.0106
직분에 합당한 남녀.....	G-6.0105
이름.....	D-2.0203 a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박탈되지 못함.....	G-14.0210
피택자들이 마쳐야 할 공부와 준비 기간.....	G-14.0240
해직.....	D-12.0105
교회의 관할권 포기선언.....	G-6.0700
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D-3.0106
사임.....	G-6.0500
복권 :	
제적 후.....	D-12.0202
회원자격 복원.....	D-12.0203
양식.....	D-12.0203

복직.....	D-12.0202
양식	D-12.0202
개혁신앙과 처리의 기본에 충실	G-6.0108 a
	W-4.4003 c
직분 임기	G-14.0222
Church Power: 교회 권한 :	
양심을 억압하지 못함	G-1.0307
시민법과 다름	G-1.0301 (1)(b)
교회 제직에 의해 행사됨	G-6.0302
제직 선출은 교인에 의해 행사됨	G-6.0107
목회적이며 선언적	G-1.0307
대회나 협의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	G-1.0307
Church Property: 교회 재산 :	
해체되거나 소멸된 교회의 재산	G-8.0401
규정에 대한 예외	G-8.0701
신탁되어 있는	G-8.0200
임대, 매각 또는 저당 :	
교인의 승인 받아야	G-7.0402
노회의 승인 받아야	G-8.0500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교회	G-8.0400
분열 중인 교회	G-8.0600
재단이사	G-7.0401
	G-7.0402
	G-8.0202
교인의 승인 후에만 시행	G-7.0402
당회의 통제하에 사용	G-10.0102 o
	G-7.0402
헌법에 위배된 재산 사용시	G-8.0300
Church School: 교회학교 :	
당회의 책임	G-10.0102 f
예배	W-3.5200
Church Treasurer: 교회 회계 :	
당회가 매년 선출	G-10.0401
보통 당회의 감독하에 일함	G-10.0401
Church Unions: 교회 연합 (참조 “연합교회”) :	
교단에 의한 유기적 연합	G-15.0301
개체교회	G-15.0204
Church Vocations Not Requiring Ordination	
안수를 요구하지 않는 교회의 직분	G-11.0103 q
	G-14.0140
Church Year : 교회력 :	
개요	W-1.3013
	W-3.2002
	W-3.2003
성구집과	W-2.2003
계절과 날들	W-3.2002 a-g
	W-3.2003
	W-3.5301
	W-3.5002

Churches: 교회 :	
연방적.....	G-15.0204
연락관계에 있는.....	G-15.0201 b
가입과 탈퇴.....	G-15.0203
연합.....	G-15.0204
	G-16.0000
Citations: 소환장:.....D-11.0201	
피고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D-11.0202 b
2차 소환장.....	D-11.0202 a
송달.....	D-11.0202
Civil Jurisdiction: 시민 관할권 :	
교회 관할권과 구별.....	G-9.0102 a
Civil Legal Authorities and Child Abuse 사법 당국과 어린이 학대.....	
	G-6.0204
	G-6.0304
	G-6.0402
	G-14.0732
Civil Marriage, Recognition of 민법상 결혼 인정.....	W-4.9006
Civil Powers and Religion 민간정부 권한과 종교.....	G-1.0301 (1)(b)
Civil Proceedings: 시민법 절차:	
조사위원회 조사와 동시적.....	D-10.0401 a
Clergy Confidentiality 성직자의 비밀유지.....	
	G-6.0204
	G-14.0563
Clerk: 서기 :	
재판 사건의 의무.....	D-11.0601
공동의회의.....	G-7.0307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G-9.0203 b
결정보고.....	D-11.0700
책임.....	G-9.0203 a
Commission of Governing Body: 치리회의 전권위원회 :	
행정적 :	
위원회로서 추가 의무 부여받을 수 있어.....	G-9.0503 c
청문회와 적법 절차.....	G-9.0505 b,c,d
위원.....	G-9.0504 a,b
의사결정은 치리회 선출에 관한 결의.....	G-9.0505 a
위원회와 다른 점.....	G-9.0500
기능,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G-9.0503 a
사법적.....	G-9.0503 b
	D-5.0000
위원.....	G-9.0504 a,b
	D-5.0101 부터
	D-5.0105 까지
새로운 교회 개척.....	G-9.0503 a(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노회와 대회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지명함.....	D-5.0101
정족수.....	G-9.0504 c
	D-5.0204
절차의 모든 기록 보관.....	G-9.0502

14 규례서/부록

규모 :

총회의.....	G-9.0504 b(1) D-5.0101
노회의.....	G-9.0504 b(3) D-5.0101
당회의.....	G-9.0504 a
대회의.....	G-9.0504 b(2) D-5.0101

Commissioned Lay Pastor: 평신도 파송 목회자 :

위임.....	G-14.0560
비밀유지.....	G-14.0563
정의.....	G-14.0560
고시.....	G-14.0560
지시.....	G-14.0560
세례를 집행할 수 있음.....	G-14.0562 b
성찬례를 집행할 수 있음.....	G-14.0562 a
인정된 목회활동을 할 수 있음.....	G-14.0560
조직 목사가 될 수 있음.....	G-14.0552
노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	G-14.0562 e
노회에서 투표할 수 있음.....	G-14.0562 e
당회를 사회할 수 있음.....	G-14.0562 c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음.....	G-14.0562 c
장로여야 함.....	G-14.0560
유효기간.....	G-14.0561
대답 받을 질문들.....	G-14.0565, G-14.04003
노회의 감독하에.....	G-14.0564

Commissioned Ministry 파송 목회 G-14.0140

Commissioners: 총대 :

총회에 :

경비, 지급 방식.....	G-9.0308
각 노회의 총대 수.....	G-13.0102
요구되는 정족수.....	G-13.0105
특별 회의에서 대표.....	G-13.0104

노회에..... G-10.0102 p(1)

대회에..... G-12.0101

Commissioning: 파송 (참조 “견진과 파송”) :

세례와.....	W-2.3006
정의.....	G-14.0140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3 (c)
제자직의 특별한 행위.....	W-4.3000

Commitment and Recognition, Acts of 결단과 인정 행위.....	W-3.3502–.3504 W-3.3701 W-3.5503–.5504 W-4.2006
--	--

Committal, Service of 하관예식..... W-4.1006

Committee of Counsel Defined: 변호인단의 정의:..... D-6.0302

규칙에 따라 마련..... D-6.0302 a

변호인단에 들어갈 수 없는 자.....	D-6.0302 b
Committee of Governing Body: 치리회의 위원회 :	
평신도와 목사로 구성, 적어도 1/2은 평신도.....	G-9.0501 b
정의.....	G-9.0501 a
Committee on Ministry: 목회위원회 :	
임시 부목사에 관해 동의.....	G-14.0553
임시 목사에 관해 동의.....	G-14.0553
대회나 총회 기관들과의 협력.....	G-11.0504
장로가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G-7.0306
목사 승인 권한을 부여받음.....	G-11.0401
	G-11.0502 h
평등 고용기회.....	G-11.0502 g
회원.....	G-11.0501 b
성격.....	G-11.0501 a
의사 소통 개방.....	G-11.0503
정족수.....	G-11.0501 b
책임.....	G-11.0502
	G-14.0507 b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지원.....	G-14.0730-0731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목회후보생 준비위원회.....	G-9.0902 a
	G-14.0400
목사 후보생에게 목사고시 수험자격을 부여하는 권한.....	G-14.0450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	
회원권과 인사 고용에 관한 자문.....	G-9.0105 b
옹호와 자원.....	G-9.0105 c
공천위원회와 협의.....	G-9.0801 c
민중위원회와 협의.....	G-9.0105 d
장애인.....	G-9.0105 c
평등 고용기회.....	G-9.0105 e
규정에 대한 예외.....	G-9.0106 a,b
여타 위원회와 통합될 수 없음.....	G-9.0105 f
위원.....	G-9.0105 a
총회의.....	G-13.0108
노회의.....	G-11.0302
대회의.....	G-12.0301
Communion 친교	
완전한 친교.....	G-15.0201
주의 만찬 (“ 주의 만찬” 에서도 참조).....	W-2.4000
Community: 공동체 :	
크리스천 예배와.....	W-1.1005
	W-2.6001
다양한 배경과 구성원.....	G-4.0403
교회의 역할.....	G-3.0101 a
	G-3.0401 b
보다 광범위한 인간 목회.....	W-1.3012 (2)
	W-3.3505
	W-7.0000

Compassion, Ministry of 연민의 사역	W-7.3000
Compensation 보수	G-14.0534, G-14.0730 b
Complaint: 고소 :	
동급의 처리회를 상대로	D-6.0202 a
답변	D-6.0303
변호인단	D-6.0302
정의	D-6.0102
피소인의 의무	D-6.0304
직원이 제기할 수 있어	D-6.0202 a,b
직무태만의 교정 요청을 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어	D-6.0102
해임 발의	D-6.0303
(재판) 준비절차	D-6.0307 부터 D-6.0319 까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절차	D-6.0305
진술	D-6.0301
시행중지	D-6.0103 a
신청제기 시한	D-6.0103 a
재판 적요서 내용	D-6.0306
고소 제기자와 피고소자	D-6.0202
Conciliation 중재	G-9.0609 부터 G-9.0603 까지
Confessional Statements: 신앙고백 선언 :	
보편교회의 신앙	G-2.0300
개신교 개혁의 신앙	G-2.0400
개혁 전통의 신앙	G-2.0500
의도	G-2.0100
부차적 표준	G-2.0200
Confidentiality and Child Abuse 기밀유지와 어린이 학대	G-6.0204 G-6.0304 G-6.0402 G-14.0732
Confidentiality, Ministers, Commissioned Lay Pastors 기밀유지, 목사, 평신도 파송 목회자	G-6.0204 G-14.0563
Confirmation and Commissioning 견진과 파송	W-4.2003
Congregation: 회중:	
당회에 의해 예배드리려고 모임	G-10.0102 d
정의	G-7.0301
면제 :	
For smaller nominating committee 소규모 공천위원회에 대해	G-14.0226 b
대표적 제직의	G-14.02226 a
제직 윤번제의	G-14.0226 c
여성 제직의	G-14.0226 a
Questions asked at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취임시 묻는 질문	
of deacons and elders 집사와 장로에게	G-14.4003
of minister 목사에게	G-14.4003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 :	
연례회의와 특별회의	G-7.0302

처리할 사안.....	G-7.0304 a,b
입교인 1/4에 의해 소집.....	G-7.0303 a(3)
노회에 의해 소집.....	G-7.0303 a(2)
당회에 의해 소집.....	G-7.0303 a(1)
당회서기가 공동의회의 서기임.....	G-7.0307
목사 청빙건.....	G-7.0303 b
	G-7.0304 a(2)
	G-14.0530-.0531
장로, 집사, 재단이사 선출건.....	G-7.0304 a(1)
	G-6.0102
	G-6.0107
	G-14.0230-.0233
교회재산 관련 사안.....	G-7.0304 a(4)
목회관계 관련 사안.....	G-7.0304 a(3)
	G-9.0505 b
지교회에 허용된 권한에 관련된 사안.....	G-7.0304 a(5)
목사는 투표할 수 없음.....	G-7.0308
회의록.....	G-7.0307
의장.....	G-7.0306
공천과 표결의 필수사항.....	G-14.0231-.0233
회의 진행방법, <i>Robert's Rules of Order</i> (로버트 회의진행법).....	G-7.0302
연속적으로 두 주일날 공지.....	G-7.0303 b
	G-14.0531
목사 취임시 묻는 질문.....	W-4.4006 a-b
정족수.....	G-7.0305
목사 사례비 검토.....	G-7.0302
공동의회의 서기는 당회서기임.....	G-7.0307
별도 법인체 회의.....	G-7.0403
동수 투표일 때.....	G-7.0308
제직 선출에 무기명 투표.....	G-14.0233
투표권을 가진 자.....	G-7.0301
Conscience: 양심 :	
교회 치리회들은 억압적인 법을 제정할 수 없음.....	G-1.0301
양심의 자유 :	
목회후보생.....	G-6.0108 c
하나님만이 홀로 주인이심.....	G-1.0301
제직은 한계 내에서 행사.....	G-6.0108
Constituted Congregation 집회를 구성할 때.....	G-7.0202 a
Constituted Session 당회를 구성할 때.....	G-11.0102
Constitution, Advisory Committee on 헌법, 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도 참조).....	G-13.0112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헌법 :	
신앙고백서.....	G-1.0501
규례서.....	G-1.0502
정의.....	G-1.0500
개정이 되는 방식.....	G-18.0201
	G-18.0301

교회 치리회의 관할권의 제한.....	G-9.0103
Constitutional Questions, Affirmative Answer Required:	
헌법상의 질문, 긍정적 대답을 받아야 :	
집사와 장로의 안수 및 취임 시.....	W-4.4003
목사의 안수 및 취임 시.....	G-14.4003
Co-Pastors: 동사목사:.....	G-6.0202 c
	G-10.0103 a
	G-14.0512
윤번제로 당회장.....	G-9.0202 b
	G-10.0103 a
부목사는 청빙 못 받음.....	G-14.0513
예외.....	G-14.0513
임명목사는 허용됨.....	G-14.0522
목사 공천위원회.....	G-14.0502 a
개체교회가 선출할 수 있음.....	G-6.0202 c
한 목사가 떠나면, 남은 목사가 담임목사가 됨.....	G-14.0512
Corporation 법인체 (“법인 조직”도 참조).....	G-7.0400, G-8.0202
Correspondence: 통신 연락 :	
교단들.....	G-15.0201 b
필수요건.....	G-11.0405 a
Corresponding Members: 객원회원 :	
총회의.....	G-13.0102 c
	G-13.0106
노회의.....	G-11.0203
대회의.....	G-12.0203
Councils: 협의회:.....	G-9.0900
총회.....	G-13.0200
노회.....	G-11.0103 v
대회.....	G-12.0102 r
Counsel: 변호인 :	
피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D-11.0302
대표자를 내세울 권리.....	D-7.0301
	D-10.0203 c
	D-11.0301
	G-9.0705
Counselor for accused—not testify 피소인의 변호인 - 증언하지 못함.....	D-14.0203
Court Reporter 법정 기록자.....	D-7.0601 a
	D-14.0303
Covenant: 계약 :	
Constituting, for new church 새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	G-7.0201
확립.....	G-3.0101
삼.....	G-2.0509 a(2)
Creeds and Confessions: 신조와 신앙고백 :	
세례와.....	W-2.2009
	W-3.3502
	W-3.3603 (a),(d)
헌법의 일부.....	G-1.0501 a
개요.....	W-2.2009

주의 만찬과.....	W-2.2009
주일예배와.....	W-3.3501
Daily Worship: 매일예배 (또한 “매일 기도회” 참조):	
규율.....	W-1.3012
	W-5.2000
개요.....	W-3.2001
기도와.....	W-5.4000
성경과.....	W-5.3000
Deacons: 집사 :	
자문위원.....	G-6.0403
집사들의 분담 사역, 당회의 연례 평가 받음.....	G-6.0403
집사회.....	G-6.0403
집사회를 갖지 않는 결정.....	G-6.0407
선거 조항.....	G-14.0201
면제.....	G-14.0202
지시와 시험.....	G-14.0205
	G-10.0102 l
당회와 합동 모임.....	G-6.0405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음.....	G-6.0402
당회 동의로 사임할 수 있음.....	G-14.0210
위원회 위원이나 재단이사 직 맡을 수 있음.....	G-6.0406
집사회 모임.....	G-6.0405
연민과 증거와 봉사의 목회.....	G-6.0401
교회 제직.....	G-6.0103
집사회로서 조직체.....	G-6.0403
특별한 과제에 의해 조직.....	G-6.0403
피택자들이 마쳐야 할 공부와 준비 기간.....	G-14.0240
예배시 기도.....	G-6.0402
Preparation for office 직분에 대한 준비.....	G-14.0200
예배시 성경봉독.....	G-6.0402
당회에 제출하는 기록.....	G-6.0404
보관할 기록부.....	G-10.0302 c(4)
안수직 수행의 해제.....	G-14.0600
어린이 학대 보고의 의무.....	G-6.0402
사임.....	G-6.0500
책임.....	G-6.0402
당회의 감독 받음.....	G-6.0403
	G-6.0404
	G-10.0102 m
직분의 임기.....	G-14.0222
Death: 사망 (또한 “상례 예식” 참조):	
사망시 돌봄.....	W-6.3006
징계 죄목 혐의를 받은 피소인의.....	G-9.0503 a(7)
당회가 보관하는 기록.....	G-10.0302 b(8)
Declaration of Pardon 용서의 선언 (참조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	

Deletion of Name of: 이름 삭제 :

- 타교회로 이적한 회원..... G-10.0302 b(4)
- 관할권 포기한 제직..... G-6.0703

Delinquency: 불이행 :

- 정의..... D-2.0202 b
- 고소장의 진술..... D-6.0301
- 교정 사건의 제목..... D-6.0102

Department of History 역사부..... G-9.0406

Deposition, Testimony Taken by 증언 녹취서, 기록된 증언..... D-7.0205,
D-14.0304

Designated Pastor 임명 목사..... G-14.0520-.0523

 담임목사가 됨..... G-14.0523

Desire to Be Restored to Office 직분에 복권되기 원함..... G-6.0609 c

Directory for Worship: 예배모범 :

- 그 권위..... W-서문
- 개요..... W-서문

Disability: 핸디캡 :

- 후보생들, 심사..... G-14.0313 b
- 장애인 포함..... G-9.0105 a
G-10.0301
G-11.0502 g
G-14.0201
G-14.0201 b
G-14.0202 a(1)
- 장애인..... G-9.0105
G-11.0302

Disapproved Work 승인되지 않은 사역..... G-6.0702

Disciplinary Cases: 징계사건 :

- 피소인, 권리..... D-10.0203 c
- 고소, 제기..... D-10.0404
- 고소, 형식..... D-10.0403
- 변호인..... D-10.0203
D-7.0301
- 정의..... D-2.0201
- 징계위원회 심문..... D-10.0103
- 판결의 집행..... D-11.0801
- 치리회 심문..... D-10.0102
- 개인, 스스로 고발..... D-10.0102 c
- 해당의 서면 진술서..... D-10.0102 c
- 개시 방법..... D-10.0101
- 조사위원회..... D-9.0101
D-10.0103
D-10.0201
D-10.0402
- 노회 회의 사이에 임명..... D-10.0201 b
- 목사가 소속하지 않은 타노회에 통보..... D-10.0105
- Parties ar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accused
- 당사자들, 미국장로교와 피소인..... D-10.0402

재심 청원.....	D-10.0303
정족수.....	D-5.0204
범위.....	D-10.0204
	D-10.0405
예심 회의.....	D-13.0307
예심 절차.....	D-10.0100
재판전 이의 제기.....	D-10.0204
Pretrial conference (재판) 준비절차 회의.....	D-10.0405
사건의 소추.....	D-10.0402
위반 혐의를 특별 징계위원회에 회부.....	D-10.0103
안수직 수행의 해제.....	G-6.0600
포기선언의 효력.....	D-3.0106
임시 박탈.....	D-12.0103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D-10.0401
계류 중일 때 이명 금지.....	D-10.0105
결백 입증 요청.....	D-9.0101
Discipline: 권징 (권징조례 전문을 또한 참조) :	
행정적 심리.....	G-9.0407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맥락.....	D-2.0101
매일예배와.....	W-1.3012
정의.....	D-1.0101 부터
	D-1.0102 까지
	D-2.0101
교회적.....	G-1.0308
그 수행을 위해 임명된 제직.....	G-1.0303
사법절차.....	D-2.0100
도덕적 또는 영적.....	G-1.0308
취지.....	D-1.0101
Discontinuance of Functions 기능수행의 중지.....	G-6.0609 b
Dismissal: 해산 :	
교회 회원.....	G-10.0302 b(1)
교회.....	G-11.0103 i
타 기독교 교단들과 연합 집회.....	G-16.0401 r
타 개혁신교 교단들과 연합 집회.....	G-16.0201 x
Dissent: 반대 :	
정의.....	G-9.0303
사법 처리를 주도하거나 막지 않음.....	G-9.0307
제기한 시기.....	G-9.0303
제기 할 수 있는 자.....	G-9.0305
	G-9.0306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목회관계의 해소 :	
해소에 따르는 활동.....	G-14.0630
노회의 행위에 의해.....	G-14.0610
행정전권위원회에 의해.....	G-9.0505 b
목회위원회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	G-14.0611
	G-14.0603

목사나 교회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	G-14.0610-.0613
	G-14.0603
담임목사는 교인들의 우려사항 들을 권리 있음.....	G-9.0505 b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집사나 장로의 활동 관계 해소 :	
노회에 의해.....	G-11.0103 s
당회에 의해.....	G-14.0500
거주지 변경이나 장애요소에 의해.....	G-14.0500
Dissolving Church: 교회 해산 :	
노회의 권한.....	G-11.0103 i
재산.....	G-8.0401
Dissolving Relationship with Union Church 연합 교회와의 관계 해소.....	G-16.0201 x
	G-16.0401 r
Diverse Language 다양한 언어.....	W-1.2006
Diversity 다양성.....	G-4.0400
Divorced Persons 이혼자들.....	G-4.0403
Doctrine: 교리:	
전 제직들에 의해 인정되고 채택된 제도.....	W-4.4003
Due Process: 적법 절차 (“재판 사건의 당사자들” 또한 참조):.....	G-9.0505 b
고소자를 대면할 권리.....	G-9.0505 d
Duties of presbytery and session in inquiry and candidacy	
지망과 후보에 관한 노회와 당회의 의무.....	G-14.0410-.0413
Easter, Day and Season of 부활절, 날과 절기.....	W-3.2002 f
Ecclesiastical Jurisdiction: 교회 관할권(“교회 치리기관의 관할권” 또한 참조):	
공유 권한.....	G-4.0301 h
포기선언.....	D-3.0105
Ecumenical Commitment: 에큐메니칼 결단:.....	G-15.0100
모든 차원에서.....	G-15.0103
	G-10.0102 q
타교단과의 관계.....	G-15.0200
Ecumenical Statements: 에큐메니칼 선언:.....	G-15.0302
총회의 승인 받음.....	G-15.0302 b
“인준받은 에큐메니칼 선언”.....	G-15.0302 c
Education: 교육 (참조 “크리스천 양육”):	
노회의 책임.....	W-1.4009
당회의 책임.....	W-1.4007
Educator 교육자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도 참조).....	G-14.0710 - .0732
Educator Certification Council 교육자자격 심사위원회.....	G-14.0720-.0722
Elder, as Expressive Name for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G-6.0202 a
Elder Member of Committee on Ministry May Moderate Congregational Meeting	
목회위원회 위원인 장로가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G-7.0306
Elder Reporting Child Abuse 장로, 어린이 학대 보고.....	G-6.0304
Elders: 장로 (“당회” 또한 참조):	
시무시, 공동의회 당회장.....	G-7.0306
예배시 보조.....	G-6.0304

예산 책임.....	G-10.0102 h
교인들에 의해 피선.....	G-6.0302
교회법과 시민법, 모순성 조정, 재단이사로서 장로들에 관해.....	G-7.0401
직무기술서.....	G-6.0300
활동관계의 해소.....	G-6.0500
	D-12.0103
	D-12.0104
직무.....	G-6.0302
	G-6.0304
집사가 공석일 때 직무.....	G-6.0407
교인들에 의해 피선.....	G-6.0107
	G-6.0302
선출.....	G-14.0220-0226
Expense to church governing bodies 교회 처리 기관에 지출되는 경비.....	G-9.0308
Former committee on ministry member may moderate congregational meeting	
전임 목회위원회 위원이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G-7.0306
Government by 처리하는 방식.....	G-9.0100
Instruction and examination 지시와 시험.....	G-14.0240
	G-10.0102 l
제한 임기 선출.....	G-14.0222
성만찬 집례 위임.....	G-6.0304
	G-11.0103 z
	W-3.3616 e(3)
지망생일 때.....	G-14.0420
삶의 양식.....	G-6.0106
당회 동의로 사임할 수 있음.....	G-6.0500
당회 모임이나 공동의회의 사회 지행.....	G-7.0306
	G-10.0103 a
비현역자도 상회 처리기관에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음.....	G-14.0210
교회 제직.....	G-6.0103
안수는 단 한 번 받음.....	G-14.0210
안수일자, 당회가 정함.....	G-14.0240
처리회에서 목사와 동격.....	G-6.0302
피택자들이 마쳐야 할 공부와 준비 기간.....	G-14.0240
직분에 대한 준비.....	G-7.0202 a
	G-14.0200
	G-14.0240
자격.....	G-6.0303
안수 질문.....	G-14.0207
보관할 기록부.....	G-10.0302 c(3)
안수직 수행에서 해제.....	G-14.0211
해직.....	G-6.0500
	D-12.0104
노회, 대회에서 교회를 대표.....	G-10.0102 p
교인들의 대표.....	G-6.0107
어린이 학대 보고의 의무.....	G-6.0304
요구사항.....	G-6.0303

사임.....	G-6.0500
책임 :	
치리상.....	G-6.0302
구체적.....	G-6.0304
성서적 관례.....	G-6.0301
감독을 하는 집사회 및 재단이사회.....	G-10.0102 m
가르치는 장로.....	G-4.0301 b
직분의 임기.....	G-14.0201 a
재단 이사를 겸직하는 사람.....	G-7.0401
Election of Deacons and Elders: 집사와 장로의 선출 :	
활동교인, 제직에 들어갈 권리.....	G-5.0202
교인의 투표에 의해.....	G-1.0306
.....	G-6.0107
공동의회 소집.....	G-14.0204
제한 된 임기에 피선.....	G-14.0222
선거 조항.....	G-14.0220-.0226
면제.....	G-14.0226 a
피택 제직을 당회가 심사.....	G-14.0240
안수와 취임.....	G-14.0300
직분에 대한 준비.....	G-14.0240
공동의회 절차.....	G-14.0231-.0233
공동의회 정족수.....	G-7.0305
교인들의 선거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G-6.0107
재선시 안수받지 않고 취임함.....	G-14.0210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	G-7.0301
Election of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총회 공천위원회의 선출.....	G-13.0111 a
Election of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목사청빙위원회 선출.....	G-14.0531-.0532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목사 (또는 부목사)의 선출 :	
교인의 투표에 의해.....	G-14.0501 b
.....	G-14.0503 b
.....	G-1.0306
타교단의 목사 청빙.....	G-11.0404
임명 목회관계.....	G-14.0520-.0523
청빙 양식.....	G-14.0506 b
취임 예식.....	G-14.0510
영구 목회관계.....	G-14.0501
.....	G-14.0510-.0513
소수가 동의치 않을 때 절차.....	G-14.0505
요구사항 면제.....	G-11.0404 b
임시 목회관계.....	G-14.0550
Election of Trustees 재단 이사 선출.....	G-7.0401
Emerita or Emeritus, Pastor 명예 (원로) 목사.....	G-14.0620
Employee Standing to File Remedial Complaint	
직원—교정 소송을 제기해준다.....	D-6.0202 a,b
Enforcement of Judgment: 판결의 집행:.....	D-11.0801
상소 계류 중에 직권 행사 삼가해야.....	D-11.0801

Epiphany, Day of 현현절	W-3.2002 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평등 고용기회	G-9.0105 e
	G-11.0502 g
	G-12.0102 d
	G-13.0201 b
	G-14.0502 a
Equitable Compensation: 적절한 보수 :	
노회에서	G-11.0103 f
당회에서	G-10.0102 n
대회에서	G-12.0102 f
Equivalency, Immigrant Fellowship to Elders and Session	
이민자 개척교회, 장로 및 당회와 동등한 수준	G-9.0503 a(2)(a)
Evangelism: 복음 전도 :	
당회의 책임	G-10.0102 a
목회	W-7.2000
예식 (“복음전도 예배”를 또한 참조)	W-3.5500
Evangelist 복음전도자	G-6.0203
	G-11.0103 p
Evidence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 (참조 “증언”) :	
정의	D-14.0101
유형	D-14.0101
새로 발견된 증거	D-14.0501
죄목의 입증	D-11.0401
고소의 입증	D-7.0402
Examination: 심사 :	
목사고시 후보생	G-14.0430- .0432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G-14.0703
피택 집사나 피택 장로	G-14.0205
노회에 가입하는 목사	G-11.0402
타교단 출신의 목사	G-11.0404
안수 필기시험	G-14.0430-.0432
Exceptions: 예외 :	
교회재산 조항에 대한	G-8.0701
대표위원회 조항에 대한	G-9.0106
대표 제직 선출에 대한	G-14.0202 a(1)
후보생의 요구사항에 대한	G-14.0470 -.0474
장로와 집사의 임기 운변제에 대한	G-14.0226 c
To size of nominating committee 공천위원회 규모에 대한	G-14.0226 b
Executive: 총무 :	
치리기관이 청빙함	G-9.0701 a
선출	G-9.0701 b
명예/원로	G-9.0707
참여와 대표	G-9.0704
대표자 청빙위원회	G-9.0704
종결	G-9.0705
Exemption from Ordination Requirements 안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	G-14.0470-.0474

Expenses Attending Governing Bodies Paid 치리회 참석하는 비용 지급	G-9.0303
“Extraordinary Circumstances”: “특례적 상황”:	G-14.0470-0474
Record of case 사례의 기록	G-11.0404 b D-13.0303
Requirement regarding 요구사항	
교육.....	G-14.0471
고시.....	G-14.0472
스;호 기간	G-14.0473
Fair Employment Practices (See “Equitable Compensation”)	
공정 고용 실행 (참조 “정당한 보수”)	
Fair Representation 공평한 대표.....	G-14.0221
Faith and Practice, Connection Between 신앙과 실천의 연결	G-1.0304
Faith, Reaffirmation of 신앙의 재확인	G-5.0101 f
Families and Worship 가족과 예배	W-5.7000
Fasting 단식	W-1.2003 W-1.3013 W-5.5003
Federated Churches 연방교회들	G-15.0204
Field Education 현장 교육.....	G-14.0412 G-14.0429
Filing a Complaint 고소 제기 (또한 “고소” 참조).....	D-6.0200
Filing Deadlines: 접수 시한 :	
직무태만 고소.....	D-6.0202
변칙성 고소.....	D-6.0202
사법 사건에 있어서 최종 판결	D-7.0402 c
Filing of Charges 공소 제기	D-10.0401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disciplinary case 권징 사건의 항소 절차 신청	D-13.0200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항소 절차 신청	D-8.0200
Final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Clarifying the Process of 최종평가와 증명 절차 확인	G-14.0450
Finances 재무 (참조 “교회 재정”).....	G-10.0400
Financial Review (Full) of Presbyteries Required	
노회에 대한 재무 검토 (전면)의무화.....	G-11.0307
그리고 당회에 대해	G-10.0401 d
그리고 대회에 대해	G-12.0305
Floor Nominations, 회의장 공천	G-14.0232
Form of Call to Minister 목사칭빙 양식	G-14.0534
Former Committee on Ministry Elder May Moderate Congregational Meeting	
전임 목회위원회 장로가 공동의회 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G-7.0306
Former Pastor Returning for Services 전임목사의 예식 집례	G-14.0630
Forms of Worship 예배 형식 (“예배순서” 또한 참조).....	W-3.1000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양심” 참조)	
Full Communion: 완전 교류:	G-15.0201 a G-15.0302
완전 교류관계의 목사 받아들임	G-11.0405 b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전적인 신뢰와 신용” 조항.....	D-3.0105
Funerals 장례식(“상례 예식”도 참조).....	W-4.10000

Furnishings 성구와 비품 비치 (“예배 장소”도 참조).....	W-1.4004g
General Assembly: 총회 :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대표성의 근거.....	G-13.0102
개체교회와 치리기관들이 일치에의 유대감.....	G-13.0101
예산.....	G-13.0103 i
노회의 총대.....	G-13.0102
대표위원회.....	G-13.0108
객원회원.....	G-13.0106
정의.....	G-13.0101
에큐메니칼 선언.....	G-15.0302
평등 고용기회 계획.....	G-13.0201 b
경비, 지급 방법.....	G-9.0303
총회 중앙협의회.....	G-13.0200
법인등록.....	G-8.0202
관할권.....	G-13.0101
운영 지침서.....	G-13.0203
회의(자격).....	G-13.0104
회원.....	G-13.0102
회의록과 기록.....	G-9.0406
	G-13.0110
의장.....	G-13.0102 c
공천위원회.....	G-13.0111
특별회의 통보는 적어도 60일 전에.....	G-13.0104
상임위원회, 위원.....	G-13.0107
정족수.....	G-13.0105
대회 관련 기록.....	G-9.0407 d(3)
총무와 행정직 인재 청빙위원회의 요구사항.....	G-9.0704
	G-13.0109
책임.....	G-13.0103
직원.....	G-13.0109
대회 참여.....	G-13.0107
General Assembly Council: 총회 중앙협의회 :	
예산준비.....	G-13.0201 f
회장과 부회장.....	G-13.0202 e
운영 지침서.....	G-13.0203
위원.....	G-13.0202
책임.....	G-13.0201
지정서기가 기록 서기임.....	G-13.0202 e
재단 이사.....	G-8.0202
“Gifts” for Discharge of Duties as Officers 제직의 의무 이행의 “은사”.....	G-6.0106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 :	
예배에서 발현.....	W-3.1002 b
교회에서의 역할.....	W-1.1005
Giving, Christian 크리스천의 봉헌.....	W-2.5000
	W-5.5004

God: 하나님 :

인간과 대면하심	W-1.1002 b
인간 조건으로 들어오심	W-1.1002 c
주도권	W-1.1002 a
하나님의 영	W-1.1002 a

Governing Bodies: 치리회:

한 치리회 행위는 전체 교회의 행위	G-9.0103
행정적 권위	G-4.0301 i
	G-9.0401
행정직 인사	G-9.0700
모두 본질상 하나	G-9.0103
연례 감사 의무화	G-10.0401 d
	G-11.0307
	G-12.0305
상소는 하급 치리회에서 상회급으로 이동	G-1.0400
출석비용 지급	G-9.0303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음	G-1.0307
서기	G-9.0203
파송	W-4.3003
전권위원회	G-9.0502 부터
	G-9.0505 까지
	G-9.0901
행정적	G-9.0503 a
위원회로서 추가 의무를 맡을 수 있음	G-9.0503 c
사법적	G-9.0503 a,b
대표위원회	G-9.0105
위원회	G-9.0501
	G-9.0901
구성	G-9.0101
중앙협의회	G-9.0900
총회	G-13.0200
노회	G-11.0103 v
대회	G-12.0102 r
정의	G-9.0101
헌법이 규정한 대로만 차이 있음	G-9.0103
장애인	G-9.0105 c
정당한 보수	G-9.0404 b
규정에 대한 예외	G-9.0106
출석 비용과 지급 방법	G-9.0303
공정 고용정책 실행	G-9.0404 b
총회	G-13.0000
민사 관할권 없음	G-9.0102 a
교회 관할권만 있음	G-9.0102 b
포괄성	G-9.0104 부터
	G-9.0106 까지
	G-4.0403
	G-10.0102 p(3)
징계사건에서 심의	D-10.0102 b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한 관할권 제한.....	G-9.0103
교회의 일치를 표명하기 위해, 타교단들과의 관계와 활동 유지.....	G-15.0101
	G-15.0102
다수에 의한 처리.....	G-4.0301 e
행정 운영 지침서 개발해야.....	G-9.0405
회의.....	G-9.0300
회의록과 기록.....	G-9.0406
선교 내용이 형식을 결정함.....	G-9.0402 a
의장.....	G-9.0202 b
	G-9.0301 a
이름.....	G-9.0101
공천위원회 :	
노회와 대회.....	G-9.0800
총회의.....	G-13.0111
체직.....	G-9.0201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함.....	G-9.0301 b
운영 비용 지급.....	G-9.0404 d
의사 진행.....	G-9.0302
상회비 기금.....	G-9.0303
회의 참석비용 지급.....	G-9.0303
운영 경비 지급.....	G-9.0404 d
인사 정책.....	G-9.0404 b
설교와 성찬례,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포함되어야.....	G-9.0301 b
노회.....	G-11.0000
행정 원칙 :	
정의.....	G-9.0401
하급 치리회의 직무대만과 변칙시 절차.....	G-9.0407
차상급 치리회가 검토하는 하급 치리회 기록.....	G-9.0407
각급.....	G-4.0301 c
상회와 하회 치리회 관계.....	G-9.0103
회의 진행방식은 <i>Robert's Rules of Order</i> (로버트 회의진행법)의 최신판을 따름.....	G-9.0302
당회.....	G-10.0000
기구 구성 명시됨.....	G-9.0902
총회에 관해.....	G-9.0902 c
노회에 관해.....	G-9.0902 a
대회에 관해.....	G-9.0902 b
양방간에 상호관계 지속.....	G-9.0103
대회.....	G-12.0000
일치.....	G-9.0103
예배.....	W-3.6100
Grounds for Appeal: 상소의 근거 :	
징계.....	D-13.0106
교정.....	D-8.0105
Harm, Risk of, Knowledge of 위해, 위협, 인식.....	G-6.0204
	G-6.0304
	G-6.0402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G-1.0100
Healing Services 치유 예배.....	W-3.5402
Hearings and Due Process 청문회와 적법 절차.....	G-9.0505 b G-9.0705 G-11.0502 j
Higher Governing Body: 상회 치리회 :	
하회 치리회로 하여금 재고하여 교정하도록 지시.....	G-9.0410 D-3.0400
절차상의 기록 검토.....	G-9.0407 c
Historic Principles: 역사적 원칙 :	
교회 치리의.....	G-1.0400
교회규례의.....	G-1.0300
History, Department of 역사부.....	G-9.0406
Holy Spirit: 성령 :	
세례와.....	W-2.3001 W-2.3004 e W-2.3010 W-3.3604 (c) W-3.3606 W-3.3607
치유와.....	W-3.5405
성만찬과.....	W-2.4005 W-2.4007
교회의 선교와.....	G-3.0103 G-3.0309 c(1)(2)
예배 순서 설정과.....	W-3.1002 a
설교와.....	W-2.2007
예배에서 역할.....	W-1.1002 a W-1.1004 W-2.2010
성경과.....	W-2.2007
성령과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	G-1.0109 c
Holy Week 성주간.....	W-3.2002 e
Homebound – Lord’s Supper 집밖 외출 못하는 자에게 성찬.....	W-3.3616 e
“Honorably Retired” Minister: “명예 은퇴” 목사 :	
정의.....	G-11.0412
노회 회원권.....	G-11.0412 b
노회가 지정할 수 있음.....	G-11.0412
불균형 시정.....	G-11.0101 b
Household Worship 가정예배.....	W-5.7000
Humidity and Storage of Records 습도와 기록 보관.....	G-9.0406
Husband Not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Wife 남편에게 아내 반대 증언 강요하지 않음.....	D-14.0202
Hymnals and Song Books 찬송가와 성가집.....	W-1.4006
Illness, Care in 병자 돌봄.....	W-6.3005
Imbalance—Ministers and Elders, Redressing 목사 및 장로의 불균형 시정.....	G-11.0101 b
Immigrant Congregations, Meeting Mission Needs of,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이민교회, 선교적 필요에	

부흥, 범지역적 노회	G-12.0102 k
Immigrant Fellowships Equivalent to Elders and Session	
이민교회, 장로 및 당회와 동등	G-9.0503 a(2)(a)
Immigrant Leader Granted Voice and Vote in Presbytery	
이민교회 지도자의 노회 발언권과 투표 허용	G-9.0503 a(2)(b)
Immigrant Pastors 이민 목사	G-11.0404 f
Inactive Member of Presbytery: 노회의 비활동 회원 :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G-11.0406 c
비활동자 명부에 기재된 목사	G-11.0415 a
Inactive Roll: 비활동자 명부 :	
정의	G-10.0302 a(3)
기재되기 전에 복권을 위한 부단한 노력	G-10.0302 a(3)
1년 후, 비거주 회원으로 기재	G-10.0302 a(3)
기록, 당회가 보관	G-10.0302
명부에 기재될 자	G-10.0302 a(3)
Inclusive Language 포괄적 언어	W-1.2006
Inclusiveness: 포괄성:	G-4.0400
	G-5.0103
	G-9.0104
	G-11.0103 d
예배에서 :	
개요	W-1.4003
	W-3.1003
성만찬과	W-2.4006
Incorporated Church: 교회의 법인체 :	
같은 공동의회에서	G-7.0304 b
별개 법인체 회의	G-7.0403
재단 이사	G-7.0401
	G-8.0202
Incorporation of Higher Governing Bodies 상급 치리회의 법인체	G-8.0202
Individuals, Right of, to Face Accuser 개인에게 고소인을 대면할 권리	G-9.0505 d
	G-9.0705
	G-11.0502 j
	D-11.0000
Infants: Membership in Church: 유아 : 교회 회원:	G-5.0300
수세기 세례 명부에	G-5.0301
	G-10.0302 c(2)(a)
Initiating Appeal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를 개시	D-13.0102 a
	D-13.0106 a
Inquirer for Ministry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지망생 :	
연례 협의	G-14.0421
연례 보고	G-14.0421
성만식 집례를 허가 받음	G-14.0420
노회와 계약 관계	G-14.0401
이명	G-14.0460-.0462
제외	G-14.0463
정의	G-14.0302
명단에 등록	G-11.0103 v

교육적요구사항의 일부 면제	G-14.0471
특례적 지망생	G-14.0470-0473
6개월간 지교회 회원	G-14.0403
절차와 요구 사항	G-14.0404
명부에서 삭제	G-14.0463
교회를 섬김	G-13.0420
당회 책임	G-14.0411
	G-14.0413
타노회로 이명	G-14.0460-0461
Inquiry by Governing Body 치리회에 의한 심의	D-10.0102 b
Installation: 취임 (“안수” 또한 참조) :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3 (b)
	W-4.4000
Installation of Elders or Deacons 장로나 집사의 취임	W-4.4000
Install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취임 :	
절차	G-4.4006
후보생에게 묻는 질문	G-14.4003
회중에게 묻는 질문	G-14.4006 b
Questions asked ordained minister 안수받은 목사에게 묻는 질문	W-4.4003
Instruction Required for Deacon- or Elder-Elect	
피택 집사나 피택 장로에 대한 필수적 지침	G-14.0240
Insurance, Property and Liability: 보험, 재산과 책임보증 :	
교회와 당회	G-10.0102 o
노회	G-11.0308
대회	G-12.0306
Interim Associate Pastor: 임시 부목사 :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	G-14.0553
정의	G-14.0553
Interim Pastor or Co-Pastor: 임시목사나 동사무사 :	
임시 목회관계	G-14.0550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	G-14.0553
타교단의 목사	G-14.0405
차기 담임 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될 수 없음	G-14.0553
12개월 기한의 한도 내에서	G-14.0550
Interpretation of Book of Order: “규례서”의 해석:	G-13.0112 c
권위적 해석	G-13.0103 r
Investigating Committee: 조사위원회 :	
치리회의 회의 사이에 임명	D-10.0201 b
타치리회로부터 고발	D-10.0104
‘회의’ 용어 정의	D-10.0203 a,b
소요 경비	D-10.0201 c
질의	D-10.0202
위원 자격	D-10.0201 a
재심 청원	D-10.0303
고발자에게 제공된 절차	D-10.0202 b

기소위원회.....	D-10.0202 j
범법주장 회부.....	D-10.0103
책임.....	D-10.0202
피소인의 권리.....	D-10.0203 c
결백 입증의 요청시.....	D-9.0101 a
Irregularity: 변칙 :	
정의.....	D-2.0202
“Is to Be” as a Term defined in the Preface 서문의 “이어야” 용어 정의	서문
Jesus Christ as Head of the Church (See also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또한 “그리스도” 참조).....	G-1.0100 a
Judgment of Court Suspended: 판결 유보 :	
Effect of complaint stayed 고소 중지의 효과	D-6.0103
Judicial Case: 사법 사건 (“상소”, “사건”, “고소”, “조회”를 또한 참조):	D-6.0101
	D-10.0101
상소나 고소에 의해서만 파기됨	D-8.0100
Judicial Commission 사법 전권위원회	G-9.0503 b
	D-5.0000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 :	
정의.....	D-2.0101
치리회.....	D-2.0102
	G-9.0505 c
	G-10.0102 q
관할권.....	D-3.0101
당회 의장.....	G-10.0103 c
목사가 소속하지 않은 타 노회에 통보.....	D-10.0105
사건의 유형.....	D-2.0201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의 관할권 :	
정의.....	D-3.0101
치리회의 관할권.....	D-3.0101 a-d
전입 목사에 대한.....	D-3.0104
비회원 목사에 대한.....	D-3.0101 b(2)
포기선언.....	G-6.0700-.0703
	D-3.0105
교회의 해산시.....	D-3.0101 d
관할권의 종결시.....	D-3.0106
하급 치리회의 불이행시.....	D-3.0103
Jurisdiction of Church Governing Bodies: 교회 치리회의 관할권 :	
공동권한.....	G-4.0301 h
전체 교회의 행위.....	G-9.0103
행정적 권위.....	G-4.0301 i
	G-9.0401
각 치리회에 대한 정의 :	
총회.....	G-13.0101
노회.....	G-11.0101
당회.....	G-10.0101
대회.....	G-12.0101
교회적으로 제한하여.....	G-9.0102

헌법에 의해 제한.....	G-9.0103
목회적이며 선포적.....	G-1.0307
노회가 평신도 파송목회자에 대해.....	D-3.0101 b
노회가 목사에게 대해.....	D-3.0101 b
당회가 교인들에 대해.....	D-3.0101 a
원문 : 당회와 노회.....	G-11.0103 s
	D-3.0101 a,b
비거주 목사에게 대한.....	D-3.0101 b(2)
포기선언.....	G-6.0700-0703
	G-10.0302 b(4)
	D-3.0106
관할권 종결시.....	D-3.0106
	G-6.0701
회원이 타교단에 가입시.....	G-10.0302 b(4)
체적이 불승인 사역을 고집할 때.....	G-6.0702
Justice 정의.....	W-7.1001
	W-7.4002
Justice and Compassion for All Parties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연민.....	D-1.0101
Laboring Outside Bounds by Minister: 관할권 밖에서 목사 사역:.....	G-11.0401
서기가 노회에 통보하여 승인요청.....	G-11.0401
Language in Worship: 예배의 언어 :	
Appropriate and authentic 적절하고 참된 언어.....	W-1.2005
다양하다.....	W-1.2006
개요.....	W-1.2001
포괄적.....	W-1.2006
상징적.....	W-1.2002
Lay Preacher 평신도 설교자 (“평신도 파송 설교자” 또한 참조).....	G-14.0560 -0565
Laying on Hands in Ordination 안수식에서 손을 얹음.....	W-4.4004 b
	W-4.4005 b
	W-4.4006 c
Leadership in the Church 교회내의 리더쉽.....	G-14.0100
Leadership of Worship: 예배의 리더쉽 :	
회중의 참여와.....	W-3.1003
당회의 책임.....	W-1.4004
예배 인도자.....	W-1.4003
Lectionary: 성구집 :	
교회력과.....	W-1.3013
성경 봉독과.....	W-2.2003
Lent, Season of 사순절.....	W-3.2002 d
Limited Term of Active Service for Deacons and Elders:	
집사와 장로에 대한 활동임기 제한:.....	G-14.0222
면제.....	G-14.0226 c
Liturgical Calendar 예배력 (“교회력” 참조)	
Local Congregation 지교회 (또한 “지교회”, “개체교회” 참조).....	G-7.0000
Location of Ordination 안수 장소.....	G-14.0481

Lord's Day: 주일 :

설명..... W-1.3011
 W-3.2001
 말씀의 경청과 성례전..... W-1.3011 (2)
 개인적 사용..... W-5.5001 b
 예배 (참조 “주일예배”)

Lord's Supper: 주의 만찬 (참조 “성례전”) :

목사가 집례..... W-2.4012 c
 성례전으로..... W-1.3033
 W-2.4010
 W-2.4011
 W-3.3601
 세례와..... W-2.3009
 W-3.3608
 떡과..... W-3.3610
 W-3.3614
 W-3.3616
 평신도 파송목회자에 의해..... G-11.0103 k
 G-14.0562 a
 집사에 의해..... G-6.0402
 W-3.3616 e
 특정 장로에 의해..... G-6.0304
 G-11.0103 z
 W-3.3616 e
 기관목사와 기타 목사가 집례..... W-2.4012 b
 어린이들과..... W-2.4011 b
 신조와..... W-2.2009
 포도주와..... W-3.3611
 W-3.3615
 W-3.3616
 규율있게 준수..... W-5.5001
 남은 떡과 포도주 처분..... W-3.3619
 에큐메니칼 모임과..... W-3.6205
 떡과 잔 :
 남은 것 처분..... W-3.3619
 성찬대가 차려져 있어야 할 때..... W-3.3609
 치리회와..... W-2.4012
 W-3.6102
 집밖 외출을 못하는 자에게 성찬례..... W-3.3616 e
 성례전 집례는 얼마나 자주..... W-2.4009
 W-2.4010
 W-2.4012
 초대와..... W-3.3612
 예수와..... W-2.4001
 의미..... W-2.4003 부터
 W-2.4007 까지
 음악과..... W-3.3617 (a)-(c)
 신약시대의 교회와..... W-2.4002
 사적인 의식이 아님..... W-2.4010

감사의 기도.....	W-3.3613
설교와.....	W-2.4008
	W-2.4010
준비.....	W-3.3609
노회와.....	W-2.4012
공지.....	W-3.3609
수양회/특별모임과.....	W-3.6204
순서.....	W-3.3612 부터
	W-3.3618 까지
	W-3.3701
	W-3.3702
치유예배와.....	W-3.5404
상례예식과.....	W-4.10003
당회의 책임.....	W-2.4012
	W-3.3616
	W-3.3619
재단상.....	W-1.3024
병자의 심방과.....	W-2.4010
성례전 집례는 언제.....	W-2.4009
	W-2.4010
초대되는 자.....	W-2.4006
참여할 수 있는 자.....	W-2.4011
성찬 분배는 누가 하는가.....	W-3.3616
포도주와.....	W-3.3611
제정의 말씀과.....	W-3.3612
	W-3.3615
Loss, Care in Times of 상실의 시기에 돌봄.....	W-6.3007
Lower Governing Body: 하급 치리회 :	
변칙과 직무태만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	G-9.0408
How proceedings brought before higher governing body	
상급 치리회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	G-9.0409
사법절차를 취하지 못할 때.....	D-3.0103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행정 운영지침서.....	G-9.0405
	G-9.0701
Marriage: 결혼 :	
시민법 혼인의 인정.....	W-4.9006
결혼식 결혼식 장식.....	W-4.9005
진임목사가 주례.....	G-14.0630
개요.....	W-4.9000
현명한 결정이 아닐 경우, 목사가 당회와 상의.....	W-4.9002b
결혼식에서 주의 만찬 거행.....	W-4.9003
목사와 결혼식.....	W-4.9002
	W-4.9003
결혼식 음악.....	W-4.9005
결혼식 순서.....	W-4.9004
기도와.....	W-4.9004
선포와.....	W-4.9004
보관할 기록부.....	G-10.0302 c(1)

주일예배와.....	W-3.3503 (a)
당회와 결혼식.....	W-4.9002 b
	W-4.9003
결혼식의 시간과 장소.....	W-4.9003
Matter: 물질 :	
예수와.....	W-1.3032
선교와.....	W-1.3040
구약과.....	W-1.3031
성례전과.....	W-1.3033
예배와.....	W-1.3034
“May” as a Term in the <i>Book of Order</i>	Preface
규례서 용어로서 “할 수도 있다”.....	서문
Mediation Provisions 중재 조항.....	G-9.0601
	G-9.0602
	D-1.0103
Meetings: 회의: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b
지교회 (“공동의회” 또한 참조).....	G-7.0300
총회.....	G-13.0104
치리회.....	G-9.0300
노회 (참조 “노회: 소집”).....	G-11.0200
당회(참조 “당회, 모임”).....	G-10.0200
대회.....	G-12.0200
Member-at-Large of Presbytery: 노회의 보통 회원:.....	G-11.0406 b,c
	G-11.0413
	G-14.0570
연례적으로 검토 받아야.....	G-11.0406 c
Members, Church: 교회 회원 :	
활동회원.....	G-5.0202
	G-7.0301
활동회원 명부.....	G-10.0302 a(2)
활동회원으로 등재.....	G-10.0102 b
관련 회원권은 2년 간 유효.....	G-10.0302 a(4)
세례회원.....	G-5.0201
세례회원 명부.....	G-10.0302 a(1)
전에 세례받은 자.....	G-5.0101 c
이명증서.....	G-5.0101 e
당회가 수여한 이명증서.....	G-10.0102 r
해소됨.....	G-10.0302 b(1)
활동교인으로 가입.....	G-5.0101 b
비활동교인.....	G-5.0203
비활동교인 명부.....	G-10.0302 a(3)
특정 환경에서 이름 삭제.....	G-10.0302 b(3)–(8)
비거주자.....	G-10.0302 a(2)(c)
세례받은 적이 없는 자.....	G-5.0101 d
비활동 교인들에게 목회적 돌봄 제공.....	G-10.0302 b(7)
신앙의 재확인.....	G-5.0101 f

입교 :

신앙고백, 신앙의 재확인, 이명증서에 의해 G-10.0102 b
 G-5.0403
 W-4.2001 부터
 W-4.2004 까지

당회에 의해 기록됨 G-10.0302

교회의 해산 시 G-10.0302 b(2)

통보 없이 타교회에 들어갈 때 G-10.0302 b(4)

교인의 사망시 G-10.0302 b(8)

이사했으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G-10.0302 b(6)

1년 이상 비활동교인 명부에 비거주자로 있을 때 G-10.0302 b(5)

본 교단의 관할권 포기선언을 할 때 G-10.0302 b(4)

회원자격 종료를 요청할 때 G-10.0302 b(3)

거주자가 비활동교인 명부에 기재될 때 G-10.0302 b(7)

Membership in Congregation: 입교인 자격:

활동교인 :

정의 G-5.0302

명부 G-10.0302 a(2)(a)

관련교인 :

증명받음 G-10.0302 a(2)(b)

정의 G-5.0304

명부 G-10.0302 a(4)

세례교인 :

정의 G-5.0301

명부에 기재된 목사 자녀들 G-10.0302 a(1)

명부 G-5.0300

범주

..... G-5.0200

비활동 교인 :

정의 G-5.0203

명부 G-10.0302 a(3)(a)

의미 G-5.0100

목회 G-5.0102

비회원의 특권 G-5.0401

준비하는 것, 당회의 책임 G-5.0500

체적 D-12.0104 b

취소됨 G-10.0302 b(4)

책임 G-6.0102

..... G-6.0107

체적 후 복권 D-12.0200

교인에 의한 검토편 G-5.0601

당회에 의한 검토편 G-5.0602

당회가 보관하는 명부 G-10.0102 s

교인 서약 G-5.0502

Mentor for Commissioned Lay Pastor 평신도 파송 목회자를 위한 선도자 G-14.0564

Microfilm of Records 기록의 마이크로필름화 G-9.0406

G-10.0302

Minimum Compensation 최저 보수: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G-11.0103n
 목사.....G-11.0103 n
 목사.....G-14.0739 b
 목사.....G-14.0534

Minister, Censured: 책벌받은 목사 :

면직되었을 때 교단 회원권.....D-12.0104 e
 2차 소환장이 무시되었을 때 절차.....D-11.0202
 임시 박탈의 책벌 후 복권.....D-12.0200

Minister, Name Expressive of Duties 목회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G-6.0202 a

Minister of Other Denomination, Reception of 타교파 목사를 받음.....G-11.0404

In correspondence or full communion with PC(USA)
 미국장로교와 통신 연락관계나 완전 교류관계.....G-11.0405
 Other Christian churches 타 기독교 교단들.....G-11.0405 c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

노회에 대한 책임.....G-6.0201
 성만찬 집례.....W-2.4012 c
 부목사로서.....G-14.0510-.0511
 교목으로서.....G-6.0203
 기관 목사로서.....G-6.0203
 동사목사로서.....G-6.0202 c
 G-14.0512
 임명목사로서.....G-14.0520-.0523
 협동목사로서.....G-14.0570-.0571
 담임목사로서.....G-6.0202 b
 G-14.0510-.0511
 목회상담자로서.....G-6.0203
 교사로서.....G-6.0203
 세례 집례자.....W-2.3011
 청빙, 조건과 변경 사항, 노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G-11.0103 n
 청빙과 취임.....G-14.0500
 책벌 (“책벌받은 목사” 참조)
 성가대 지휘자와.....W-1.4005 b
 목회위원회가 부여받은 승인 권한.....G-11.0401
 G-11.0502 h
 보수의 연례 검토.....G-7.0302
 G-10.0102 n
 G-14.0534
 비밀유지.....G-6.0204
 동사목사가 선출될 수 있음.....G-6.0202 c
 “연합”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의 규율.....G-16.0401 m
 직무 중지.....G-6.0609 b
 이중 회원권.....G-11.0405 a
 치리회 참석에 지출된 비용.....G-9.0303
 명예 은퇴.....G-11.0412
 타교단 소속을 받아들이는 방식.....G-11.0404
 타노회 소속을 받아들이는 방식.....G-11.0402

타교단에 가입.....	G-11.0416
성만찬 집행자.....	W-2.4012 c
삶의 양식.....	G-6.0106
결혼식과.....	W-4.9002
	W-4.9003
어떤 상황에서 의지에 어긋나게 면직될 수 있음.....	D-12.0104
노회 회원.....	G-6.0201
	G-11.0100
노회의 보통회원.....	G-11.0406 b,c
연례 적으로 검토받아야.....	G-11.0406 c
면직이나 직분 박탈시 교단의 회원권.....	D-12.0104 e
군복무.....	G-14.0534
부름 받은 자의 칭호.....	G-6.0202 a
새 이민 목사들의 안수 인정.....	G-11.0404 f
통신 연락관계에 있는 타 교단.....	G-11.0405 a
완전 교류관계에 있는 타 교단.....	G-11.0405 b
본 교단 교회를 섬기는 타 교단.....	G-11.0404 b
교단 기관을 섬기는 타 교단.....	G-11.0404 b
연합교회서 섬기는 타 개혁교단.....	G-11.0410
대개는 사역하는 지역의 노회에서 회원권 유지.....	G-11.0401
특례.....	G-11.0401
안수와.....	W-4.4000
참여 :	
에큐메니칼 성만찬.....	W-3.6205
교회의 광범위한 목회.....	G-6.0201
영구 목회직.....	G-6.0202 b
비활동 명부에 기재.....	G-11.0415
적절한 재능 보유.....	G-6.0106
설교와.....	W-2.2007
원 관할권의 노회 치리회.....	D-3.0101 b
면직된 후 복권 절차.....	G-11.0414 c
자격.....	G-6.0106
안수 직분 수행의 해제.....	G-6.0609 a-c
어린이 학대 보고 의무.....	G-6.0204
노회 가입 전에, 의무 서약이 요구됨.....	G-14.0406
예배에서 책임.....	W-1.4005
	W-1.4006
임시 박탈 책벌을 받은 후 복권.....	D-12.0103 g,h
안수 직분 수행에서 해제된 다음, 복권.....	G-11.0414 c
명예 은퇴.....	G-11.0412
가르치는 장로.....	G-4.0301 b
청빙 조건.....	G-14.0506
행정 능력으로 사역.....	G-11.0401
이명.....	G-14.0507 b
목회의 전환기와.....	W-4.5000
새 교적을 얻기까지 전 노회의 관할권하에.....	D-3.0104

인정된 목회 :

- 평신도 파송 목회자..... G-14.0560
- 기준..... G-11.0403
- 기술..... G-11.0408
- 지교회에서..... G-11.0409
- 교단의 다른 봉사직에서..... G-11.0410
- 교단 관할권 밖의 봉사에서..... G-11.0411
- 다양한 사역..... G-6.0201
- 노회 관할권 밖에서 사역할 때..... G-11.0401
- 타 노회 관할권 내에서 사역할 때..... G-11.0401
- 목회가 아닌 사역을 할 때..... G-6.0203
- 선교사로 사역할 때 (참조 “선교 동역자”)
- 미국외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G-11.0401
- 교단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역..... G-11.0411
- 목회위원회에 의해 보고되는 사역..... G-11.0502 a
- Ministry, Committee on 목회, 위원회 (“목회위원회”도 참조)..... G-11.0500
- Ministry of the Church and Worship 교회의 목회와 예배 W-6.0000
- W-7.0000

Ministry, Preparation for: 목회후보생의 준비 :

- 연례 보고..... G-14.0421
- 후보생의 정의..... G-14.0405
- 절차..... G-14.0402
- 협의와 지도..... G-14.0421
- 노회의 의무..... G-14.0410-.0412
- 당회의 의무..... G-14.0413
- 지망생의 정의..... G-14.0404
- 지망생과 후보생의 단계..... G-14.0402-.0405
- 노회 책임..... G-14.0401
- G-14.00412
- 계약관계..... G-14.00401
- G-14.0460-.0461
- G-14.0463
- 절차와 요구사항..... G-14.0303
- 교회에 대한 봉사..... G-14.0420
- Ministry to Others 타인들에 대한 목회..... G-3.0000
- Minutes: 회의록 (“치리회 기록” 또한 참조) :
-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가 재판 절차를 개최한다..... D-7.0601
- 서기나 지정서기에 의해 보관..... G-9.0203 a,b
- 노회에 의해,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G-11.0305 a
- 재판사건의 절차에 관해..... D-7.0601
- 당회에 의해,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이어야..... G-10.0301
- 대회에 관해,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G-12.0304
- 소유권..... G-9.0406
- Mission Emphasis, Services 선교 강조, 예배 W-3.5601
-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임무:..... G-3.0000
- 그리고 노회..... G-11.0103 a,c

그리고 당회.....	G-10.0102 c
그리고 대회.....	G-12.0102 a
	G-12.0102 k
그리고 예배.....	W-1.1001
	W-1.1004
	W-1.2006
	W-1.3040
	W-2.4007
	W-2.5002
	W-2.6000
	W-3.3505
	W-4.3000
	W-4.5000
	W-6.2003
	W-7.0000

Moderator: 의장 :

권한.....	G-9.0202 a
평신도 파송 목회자가 당회 사회를 볼 수 있음.....	G-14.0562 c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의 의무.....	G-9.0202 a
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장로가 노회 의장.....	G-11.0101 c
당회 의장으로서 임시목사.....	G-10.0103 b
동사목사 있는 교회에서.....	G-7.0306
	G-10.0103 a
공동의회에서.....	G-7.0306
총회에서.....	G-13.0102 c
치리회에 의해 선출된 총회에서.....	G-9.0202 b
의장이 궐석인 상급 치리회에서.....	G-9.0301
치리회에 의해 선출된 노회에서.....	G-9.0202 b
당회에서.....	G-9.0202 b
	G-10.0103 a
사법 사건의 당회에서.....	G-10.0103 c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서.....	G-9.0202 b
목사가 궐석일 때 당회에서.....	G-10.0103
목사가 없을 때 당회에서.....	G-10.0103 b
치리회에 의해 선출된 대회에서.....	G-9.0202 b
임시목사가 사회를 진행할 수 있음.....	G-14.0550
직분의 임기.....	G-9.0202 b

Motion to dismiss 해임 발의.....	D-6.0303
------------------------------	----------

Music in Public Worship: 공예배에서 음악 :

찬양.....	W-2.2008
	W-3.3101 (3)
	W-3.3501
찬양대.....	W-2.1004
	W-3.3501
회중 찬송.....	W-2.1003
	W-3.3501
찬송가와 성가집.....	W-1.4006
찬송가.....	W-2.1003
	W-2.2008

성만찬과.....	W-3.3617
	W-3.3618
결혼과.....	W-4.9005
음악지도자, 담임목사와 관계.....	W-1.4005 b
담임목사의 책임.....	W-1.4005 a(4)
선포와.....	W-2.2008
시편.....	W-2.1003
	W-2.2002
	W-2.2008
주일예배와.....	W-3.3101 (3)
	W-3.3301 (b),(c)
	W-3.3401 (c)
	W-3.3501
매일 기도회와.....	W-3.4003
	W-3.4004
상례예식과.....	W-4.10004
당회의 책임.....	G-10.0102 c
	W-1.4004 i
	W-1.4005
영가.....	W-2.2008
Mutual Forbearance 상호관용.....	G-1.0305
Negotiation for Service, of Candidate 목사 후보생의 봉사 사역의 절충.....	G-14.0440
New Church Development: 신교회 개척 :	
행정전권위원회.....	G-9.0503 a(2)
조직 목사로 파송된 평신도 목회자.....	G-14.0552
	G-14.0560
창립.....	G-7.0201
조직 목사.....	G-14.0552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D-14.0500
New Immigrant Pastors 새 이민 목사들.....	G-11.0404 f
New Members: 새 교인 :	
주일예배와 영접.....	W-3.3101 (8)
	W-3.3502
교인 입교식.....	W-4.2004
Nominating Committee: 공천위원회 :	
집사와 장로 선출을 위한.....	G-14.0223-.0224
매년 선출.....	G-14.0224
회의장에서 공천할 수 있는 기회.....	G-14.0232
작은 교회일 때.....	G-14.0226 b
총회를 위한.....	G-13.0111
의장이 결원을 보충.....	G-13.0111
노회와 대회를 위한 :	
의무.....	G-9.0801 b
	G-12.0204
회원권.....	G-9.0801 a
Opportunity for nominations from the floor	
회의장에서 공천할 수 있는 기회.....	G-14.0201 e

목사에 대해 :

- 제출된 후보자 이름들을 반드시 목회위원회로 위임해야.....G-11.0502 d
- 교인들에 의한 선출..... G-14.0502
- 반드시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G-14.0502 a
- 회중에게 보고..... G-14.0502 b

Nominating Procedures 공천 절차..... G-14.0225

Nongeographic Presbyteries 범지역 노회..... G-12.0102 k

Nonmember Privileges 비회원의 특권..... G-5.0401

Nonresident Member: 비거주 교인 :

- 당회의 의무.....G-10.0302 a(2)(c)
- 비활동 명부에 기재시..... G-10.0302 a(3)(b)

Notice of Appeal: 상소 공지 :

- 효력..... D-8.0103
- 반드시 30일 내에 치리회로 보내야..... D-8.0201

Notice of Meetings 회의 공지 (참조 “시효기간”)

Nurture, Christian 양육, 크리스천 (또한 “크리스천 양육” 참조)..... W-6.2000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es 증인에게 선서 집행

- (또한 “확인”을 참조)..... D-14.0302

Obligations, Ordination 의무, 안수

- (또한 “안수, 의무”를 참조)..... G-14.0480-5

Offense Defined 범법 정의..... D-2.0203 b

Offering: 봉헌 :

- 빵과 포도주..... W-2.4005 b,c
- W-3.3507
- 집사들이 보조할 수 있음..... G-6.0402
- 물질 봉헌..... W-1.3034
- W-2.5003
- W-3.3507
- 기도회와..... W-3.5302
- 그리스도에게 응답..... W-2.5001
- 자기 바침..... W-2.5000
- 주일예배와..... W-3.3101 (6)
- W-3.3507
- 치유예식과..... W-3.5404
- 영적 은사..... W-2.5002
- 십일조..... W-2.5003
- W-3.3507
- W-5.5004

Officers of Church 교회 제직 (“교회 제직”, “집사”, “장로”, “목사” 참조)..... 제6장

One-third Vote Required to Stay Enforcement of
Action Complained Against

- 고소사건 결의의 시행중지는 1/3 표결이 의무화됨.....D-6.0103 a

Openness: 열려있음 :

- 부름받음..... G-3.0401
- G-4.0303
- 다른 사람들에게..... G-4.0402

Ordained Ministry 안수 받은 목사..... G-14.0120

Order, Presbyterian 규례, 장로교 (“장로교 규례”를 또한 참조)..... G-4.0302

Ordering Worship: 예배순서:

교회학교 예배와	W-3.5202
문화적 다양성과	W-3.1003
형식과 자유	W-3.1002 a
지도	W-3.1001
	W-3.1002 b
결혼과	W-4.9004
안수	W-4.4000
기타 주일예배와	W-3.5103
수양회에서 예배	W-3.6201
주일예배와	W-3.3000
복음전도예배와	W-3.5502
받아들임과 화해의 예식과	W-4.8002
환영과 입교의 예식	W-4.2000
상례예식과	W-4.10004
특별한 경우와 인정과	W-4.1000
성령과	W-3.1002

Ordination: 안수 :

전체 교회의 행위	G-14.0480
개요	W-4.4000
고시에 성경 포함	G-14.0402 a
예배순서와	W-4.4003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3 (b)

Ordination for Church Office: 교회 직분자로 안수 :

정의	G-14.0120
타교단 목사의 인정	G-15.0202
종의 스타일 리더쉽	G-14.0110
직무에 대해	G-6.0102

Ordination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안수 (“목회 직분을 위한 준비”를 또한 참조):

전권원회에 의해	W-4.4006
노회에 의해	G-14.0480-0485
	W-4.4000

정의	G-14.0120
고시	G-14.0482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G-14.0470-0474
목사가 섬기게 될 교회에서	G-14.0483-0484
취임	G-14.0483-0484
장소	G-14.0481
	G-14.0483-0484
준비할 책임을 가진 노회가 행함	G-14.0481
장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	W-4.4004 b
	W-4.4005 b
	W-4.4006 c
의무사항들	G-14.0483
	G-14.0485

기타 개혁교단들.....	G-14.0462
안수 장소.....	G-14.0481
	G-14.0483-.0484
준비.....	G-14.0300
안수 시 묻고 대답 받을 질문들.....	W-4.4003
새 이민 목사들 인정.....	G-11.0404 f
기록됨.....	G-14.0483
안수 요구사항.....	G-14.0403
예식.....	W-4.4000
보통 2년 기한 요구.....	G-14.0403
직무에 대해.....	G-6.0102
투표 진행.....	G-14.0482
요구조건 면제.....	G-14.0470-.0474
학력 요구조건, 3/4 찬성투표에 의해.....	G-14.00471
고시 요구조건, 3/4 찬성 투표에 의해.....	G-14.00472
기한 요구조건, 3/4 찬성투표에 의해.....	G-14.0473
노회에 의한 환영.....	W-4.4005 c
Ordination Obligations: 안수 의무 :	
노회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가 서명해야.....	G-14.0485
Ordination of Deacons and Elders: 집사와 장로의 안수 :	
관계의 해소.....	G-6.0500
선출 조항.....	G-14.0220-.0226
고시.....	G-14.0240
특정 교회에 대해 면제.....	G-14.0226 a-c
장애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	G-4.4004 b
대표 공천위원회에 의한 공천.....	G-14.0223-.0224
영구 직분임.....	G-14.0210
공부와 준비기간.....	G-14.0240
당회 지도와 심사에 의해 선출될 사람들.....	G-14.0240
교인들이 대답할 질문.....	W-4.4004 a
피택 제직자들이 대답할 질문.....	W-4.4003
당회의 책임.....	G-10.0102 l
	G-14.0101
직분의 임기.....	G-14.0201 a
요구사항의 면제.....	G-14.0202
Ordination Service 안수식.....	W-4.4000
Organic Union with Other Bodies, How Effectuated	
타교단과 유기적 연합, 발효되려면.....	G-15.0301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개체교회를 조직 :	
전권위원회에 의해.....	G-9.0503 a(2)
노회에 의해.....	G-7.0101
교회 제직.....	G-7.0202 a
계약 성립.....	G-7.0201
노회가 긴밀한 협조를 계속함.....	G-7.0202 b
절차.....	G-7.0200
Organizations Within a Church Under the Session	
당회 감독하에 교회 내 조직.....	G-10.0102 m

Organizing Pastor May Be Called as Pastor 조직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음	G-14.0551-.0552
Organizing Pastor May Be Commissioned Lay Pastor 조직 목사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일 수 있음	G-14.0552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 절차상 원 관할권 :	
노회에서	D-3.0101 b
당회에서	D-3.0101 a
대회에서	D-3.0101 c
교인들에 대해	D-3.0101 a
목사에 대해	D-3.0101 b
교회가 떠맡음, 당회가 결의할 수 없는 교회에서	G-11.0103 s
Other Denominations, Relations with 타교단, 관계 (“타교단과의 관계”를 또한 참조).....	G-15.0200
Other Sunday Services 기타 주일 예배.....	W-3.5101
	W-3.5400
	W-3.5500
Parents Present Their Children for Baptism 부모가 자녀를 세례받도록 함	G-5.0302
Parish Associate: 협동목사:.....	G-14.0570-.0573
연례 검토	G-14.0572
목회위원회가 해소를 권고할 수 있음	G-14.0573
목회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G-14.0515 b
차기 담임목사가 될 자격 제한	G-14.0571
목사에 대한 책임	G-14.0570
취임된 목사의 청빙이 무효화 될 때, 관계 종료	G-14.0573
Parity of Elders in Governing Bodies 치리회에서 장로의 동격	G-6.0302
	G-11.0101
	G-12.0101
	G-13.0102
Parliamentary Authority 의회 권한	G-7.0302 c
Parliamentary Procedure 의사진행 절차.....	G-9.0302
Participation, Full, of Persons 교인들의 완전 참여.....	G-4.0403
	G-6.0106
	G-6.0107
	G-9.0104
	G-10.0102 n
	G-14.0225
Participation in Worship: 예배에 참여 :	
어린이와	W-3.1004
문화적 다양성과	W-3.1003
당회의 격려하는 책임	W-1.4004
예배 인도자	W-1.4003
예배에 참여자	W-1.4003
Particular Church: 개체교회 :	
건물 사용	G-10.0102 o
업무	G-7.0304
총회의 구성	G-13.0101
노회의 구성	G-11.0101
대회의 구성	G-12.0101

정의.....	G-4.0103
연방교회.....	G-15.0204 a,b
재무.....	G-10.0400
법인등록.....	G-7.0400
당회의 관할권.....	G-7.0103
보편교회에 대한 지역적 표현.....	G-4.0102
회의 :	
연례모임과 특별모임.....	G-7.0302
소집.....	G-7.0303
목회.....	G-7.0102
공천위원회.....	G-14.0223-.0225
제직.....	G-4.0104
Organizing of, only by presbytery (See also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조직은 노회에 의해서만(“개체교회를 조직”을 또한 참조).....	G-7.0200
재산.....	G-8.0000
총회에 대한 관계.....	G-13.0101
연합교회로 재조직됨.....	G-16.0000
노회에 대표자 보냄.....	G-10.0102 p(1)
	G-11.0101
대회에 대표자 보냄.....	G-10.0102 p(2)
	G-12.0101
치리회로서 당회.....	G-7.0103
Severing relationship to denomination 교단과 관계 절단.....	G-8.0601
단일 이사회.....	G-7.0304 a(5)
	G-7.0401
회계.....	G-10.0401
재단이사, 법인체에서.....	G-7.0401
재단이사, 비법인체에서.....	G-7.0401
연합교회.....	G-15.0204 a
	G-16.0000
당회 감독하에 예배와 음악.....	G-10.0102 d
Parties in Cases of Process: 재판사건의 당사자들 :	
피소인과 미국장로교가 원 당사자임.....	D-10.0402 b
고소장 사본.....	D-10.040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D-7.0301
	D-10.0203 c
재판에서 특정 위원의 심의 자격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	D-11.0402
증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어.....	D-14.0302
심의 중 타인들로부터 격리될 것을 요구.....	D-11.0403
증인은 피소인 면전에서 심문받음.....	D-14.0304
Parties in Remedial Cases 교정사건 당사자.....	D-6.0201
Partner in Mission 선교동역자.....	G-11.0410
Pastor: 담임목사 :	
그리고 예배모범 :	
노회에 보고의무.....	W-1.4008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W-1.4005 b
그리고 당회.....	W-1.4006

세례에 대한 책임.....	W-2.3011
성례전.....	W-3.3602 부터 W-3.3608 까지
상례예식.....	W-4.10003
대안과 선택.....	W-4.10005
하관예식.....	W-4.10006
형식과 순서.....	W-4.10005
에큐메니칼 성찬례 참여.....	W-3.6205
예배 요소들.....	W-2.0000
성찬례 :	
목사에 의해 집행.....	W-2.4012 c W-3.3612 부터 W-3.3618 까지
그리고 말씀.....	W-2.4008
특별 행사에서.....	W-2.4010
결혼 :	
현명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W-4.9002 b
준비.....	W-4.9002 a
예식.....	W-4.9000
특별한 책임.....	W-1.4005 a
말씀의 선포.....	W-3.3401
주일예배.....	W-3.3000
예배순서 정하기.....	W-2.0000
청빙 (또한 “목사, 선출”도 참조).....	G-14.0530
보수, 연례 검토.....	G-7.0302 a G-10.0102 n G-14.0534
공동의회 소집.....	G-7.0303 G-7.0304 a(2) G-14.0532
임명받음.....	G-14.0520-.0523
부목사의 사역을 지시.....	G-14.0513
관계의 해소 :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	G-14.0610
회중에 의해 개시될 수 있음.....	G-14.0612
목사에 의해 개시될 수 있음.....	G-14.0611
선출 (“목사, 선출”도 참조).....	G-14.0530-.0532
치리회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방식.....	G-9.0303
전임목사의 목회예배.....	G-14.0606
당회 소집 권한.....	G-10.0103 a
공동의회 의장.....	G-7.0306
당회원 2명이 요청할 때, 당회 소집되어야.....	G-10.0201
부름 받은 자의 칭호.....	G-6.0202 a
조직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음.....	G-14.0513 G-14.0501 a
원로목사/명예 목사.....	G-14.0620
영구 목회직.....	G-6.0202 b

교회들이 연합할 때	G-11.0103 h
Pastor, Election of: 목사의 선출 :	
만드시 목회위원회와 협의	G-14.0502 a
명예 (원로)목사	G-14.0620
청빙양식	G-14.0506 b
취임예식	W-4.4006
공천위원회의 선출	G-14.0531
조직목사가 선출될 수 있음	G-14.0552
적어도 두 일요일에 공지	G-7.0303 b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W-6.1003
	W-6.3000
Pastoral Counseling 목회적 상담	W-6.3003
Pastoral Counselor, Minister Called to Serve as	
목회 상담자로, 목사 청빙 받음	G-6.0203
Pastoral Inquiry 목회적 심의	G-9.0503 a(7)
Pastoral Relations: 목회관계 :	
행정 전권위원회와 목사 해임	G-9.0503 a(4)
	G-9.0505 b
임명직 :	
동사목사로 허락	G-14.0522
임명직에서 영구적으로 변경	G-14.0523
담임목사	G-14.0520-.0523
영구직 :	
부목사	G-6.0202 b
	G-14.0510-.0513
동사목사	G-6.0202 c
	G-14.0510
	G-14.0512
담임목사	G-6.0202 b
	G-14.0501
	G-14.0510-.0511
보관할 기록부	G-10.0302 c(5)
임시직 :	
임시부목사	G-14.0550
	G-14.0553
임시담임목사	G-14.0550
	G-14.0553
조직목사	G-14.0551-.0552
노회 지정목사	G-14.0550
임시 설교자	G-14.0550-.0551
Peace: 평화 :	
평화 표시의 교환	W-2.6001 b
	W-3.3301 (e)
	W-3.3507
	W-3.3702
	W-4.2007
평화 만들기, 목회	W-7.4003

Pension Plan: 은급 계획 :	
완전 교류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 동일 플랜 유지 가능	G-11.0405 b
목사들의 참여, 청빙서에 명시된 대로	G-14.0534
Pentecost, Day of 오순절	W-3.2002 g
Per Capita Funds: 상회비 기금 :	
치리회 참석 경비 지급	G-9.0308
운영 경비 지급	G-9.0404 d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s: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	
결정에 대한 항소나 고소	G-9.0306
비공개회의	D-11.0306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짐	G-13.0103 r
결정의 반대나 항의	G-9.0306
당회 상급 치리회에 의한 선출	D-5.0101
결원 보충	D-5.0104
총회, 회원권	D-5.0101
무자격 기간	D-5.0105
정족수 미달	D-5.0206
최근 6년 간 위원 명단 보관해야	D-5.0206 b
모임	D-5.0203
변호인단으로서	D-7.0301
권한	D-5.0202
노회의 회원권	D-5.0101
교회 치리의 원칙	G-1.0400
정족수	D-5.0204
충족될 수 없을 때	D-5.0206
정적수가 미달될 때	D-5.0206
경비, 치리회가 지급함	D-5.0206 c
책임	D-5.0202
대회, 회원권	D-5.0101
회원 임기 :	
총회에서	D-5.0102
노회와 대회에서	D-5.0103
치리회에 제기된 현안	G-13.0112 d
Perpetual Office of Elder and Deacon 장로 및 집사의 영구직	G-14.0210
Personal Worship, Daily Worship and 개인 예배, 매일 예배와	W-1.3012
	W-5.2000
Personnel Policies: 인사 정책:	
노회에서	G-11.0103 f
당회에서	G-10.0102 n
대회에서	G-12.0102 f
고발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검토를 청원	D-10.0303
징계사건의 변론	D-11.0402 d
Petition for Review: 검토 청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204
	D-10.0303 c
검토 범위	D-10.0204
당회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D-10.0201

Place of Ordination 안수 장소.....	G-14.0481
	G-14.0483-.0484
Polity, Church 정치제도, 교회 (참조 “장로교 정치제도”)	
Power 권한 (참조 “교회 권한”)	
Prayer: 기도 :	
경배의 기도.....	W-2.1002
	W-3.3301 (c)
세례와.....	W-3.3604
핵심성.....	W-2.1001
고백 기도.....	W-2.1002
	W-3.3301 (d)
	W-3.3506
내용.....	W-2.1002
매일 예배와.....	W-1.3012
	W-5.2001
	W-5.4000
집사.....	G-6.0402
제정조항.....	W-1.1005 b
	W-2.1005
	W-3.5403
	W-6.3011
모임.....	W-3.5301
치리회의 예배와.....	G-9.0301 b
	W-3.6103
중보의 기도.....	W-2.1002
	W-3.3506 (a)-(c)
주일과.....	W-1.3011 (2)
주의 기도문, 예배에서 위치.....	W-3.3506
결혼과.....	W-4.9004
모임.....	W-3.5301
음악과.....	W-2.1003
	W-2.1004
안수와.....	W-4.4001 a
	W-4.4004 b
	W-4.4005 b
	W-4.4006 c
목사의 책임.....	W-1.4005 a(3)
준비.....	W-2.6001 c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	W-1.2001
주일예배와.....	W-3.3101 (2)
	W-3.3301 (a),(c),(d)
	W-3.3401 (a),(d)
	W-3.3506
매일 기도회.....	W-3.4000
복음전도 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3
받아들임과 화해의 예배와.....	W-4.8003
상례 예식과.....	W- 4.10004

당회의 책임.....	W-1.4004 c
	W-3.5301
간구의 기도.....	W-2.1002
	W-3.3506 (d)-(i)
감사의 기도.....	W-2.1002
	W-3.3506
Preaching: 설교 :	
세례와.....	W-3.3602
핵심성.....	W-2.2001
	W-3.2007
매일예배와.....	W-1.3012
	W-3.4002
치리회 예배와.....	G-9.0301 b
	W-3.6102
목사 안수 및 취임에서.....	G-4.4001 b
주일과.....	W-1.3011 (2)
성찬례와.....	W-2.4007
	W-2.4010
목사와 책임과.....	W-1.4005 a
	W-2.2007
기도회와.....	W-3.5302
노회 허가.....	W-2.2007
주일예배와.....	W-3.3101 (1)
	W-3.3401
상례 예식과.....	W-4.10004
복음전도 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4
당회의 책임.....	W-1.4004
예배 장소와.....	W-1.3024
하나님의 말씀과.....	W-2.2007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 상소의 예심 절차.....	D-13.0300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Remedial Case	
교정사건 상소의 예심 절차.....	D-8.0300
Preliminary Procedure, Initiation of 예심 절차의 개시	D-10.0101
Preliminary Questions: 예심 질의: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 a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Preparation for Office of Elder and Deacon 장로와 집사직 준비	G-14.0200
	G-14.0240
Preparation for Office of Minister: 목사직 준비:	G-14.0400
연례 협의.....	G-14.0421
연례 보고.....	G-14.0421
헌법문서와 양심의 자유 선언에 주목.....	G-6.0108
후보생위원회에 주어진 제명 권한.....	G-11.0103 v
고시과목에 성경 포함.....	G-14.0431 a
	G-14.0482

청빙.....	G-14.0401
목회시작 준비성.....	G-14.0319 a
타개혁 교단.....	G-14.0314 b
후보생 :	
양심의 자유.....	G-6.0108 c
정의.....	G-14.0405
절차와 요구사항.....	G-14.0402-.0403
목회시작 준비성 인증.....	G-11.0103 l,v
요구사항.....	G-14.0450
노회와 계약관계.....	G-14.0401
최소 기간.....	G-14.0403
이명.....	G-14.0460-.0462
철회.....	G-14.0463
장애인 후보생.....	G-14.0472
학력 요구사항.....	G-14.0450
.....	G-14.0471
고시 요구사항 :	
과목.....	G-14.0431 a-e
첫 해에 성경내용 시험.....	G-14.0431
채점 방식.....	G-14.0432
목회시작 준비성, 인증받으려면.....	G-14.0450
고시 요구 사항 면제.....	G-14.0472
특례적 후보생.....	G-14.0470
타개혁교단 출신.....	G-11.0404 b
지방생 :	
정의.....	G-14.0404
절차와 요구 사항.....	G-14.0402-.0403
개체교회의 회원.....	G-14.0403
.....	G-14.0411
Negotiation for Service 봉사를 위한 절충.....	G-14.0440
안수 :	
목사고시.....	G-14.0482
특례적 후보생.....	G-14.0470-.0474
장소.....	G-14.0481
.....	G-14.0483-.0484
노회 책임.....	G-14.0401
.....	G-14.0410-.0412
절차.....	G-14.0402-.0403
묻는 질문.....	W-4.4003
.....	W-4.4005-.4005 a
받아들임.....	G-9.0503 a(4)
.....	G-14.0401
기록됨.....	G-14.0483
.....	G-14.0485
명부에서 제명.....	G-14.0463
요구사항.....	G-14.0402-.0403
교회에서 봉사.....	G-14.0420

당회 책임.....	G-14.0413
Time requirements 시간 요구사항.....	G-14.0403
	G-14.0473
타노회로 이적.....	G-14.0460-.0461
Presbyter, as Expressive Name for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G-6.0202 a
Presbyterian Order 장로교 규례.....	G-4.0302
Presbyterian Polity: 장로교 정치제도 :	
기본 원칙.....	G-4.0301
그리스도의 통치.....	G-1.0100
본질.....	G-9.0404
구성 요소.....	G-1.0500
Presbyteries' Cooperative Committee on 노회의 목사후보 고시위원회.....	G-11.0103 m
	G-14.0432
	G-14.0459 d
Presbyters, Government by 장로들에 의한 치리.....	G-6.0103
Presbytery: 노회 :	
활동회원.....	G-11.0406 a
연례 감사 의무적.....	G-11.0307
특별 징계위원회 임명 규칙.....	D-10.0201 b
장로에게 성만찬 집례 위임.....	G-11.0103 z
평신도 설교자에게 성만찬 집례 위임.....	G-11.0103 k
장로와 목사의 대표 균형.....	G-11.0101 b
예산.....	G-11.0304
목사 후보생에게 목사고시 수험자격 인정.....	G-11.0103 l
회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G-11.0101 c
전권위원회의 규모와 정족수.....	G-9.0504
	D-5.0101
	D-5.0204
평신도 파송 목회자.....	G-11.0103 k
목회위원회	
목사들의 관할구역 내외 사역을 승인하는 권한.....	G-11.0401
	G-11.0502 h
목회 준비 위원회	
목사 후보생의 자격 취소, 지망생의 등록, 후보생의 안수고시 수험자격증 부여의	
권한.....	G-11.0103 v
대표위원회.....	G-11.0302
후보생에 관한 위원회.....	G-14.0400
목회자들과 교회들로 구성.....	G-11.0101
계속회원.....	G-11.0406
객원회원.....	G-11.0203
협의회.....	G-11.0301
	G-11.0303
목사들의 관할구역 내외 사역을 승인하는 권한.....	G-11.0401
	G-11.0502 h
책임.....	G-11.0103 v

후보생 및 지망생과의 계약관계	G-14.0401
	G-14.0460
	G-14.0463
계속회원 목회의 기준	G-11.0403
정의	G-11.0101
당회 소집을 지시	G-10.0201
장애인	G-11.0302
목회관계 해소	G-11.0103 o
에큐메니칼 선언	G-15.0302
장로 대표자들	G-11.0101
목사들의 관할구역 내외 사역을 승인하는 위임을 받은 목회위원회	G-11.0401
	G-11.0502 h
등록 조건	G-11.0404
적절한 보수	G-11.0103 f
후보생의 안수자격을 심사	G-14.0480-0485
목사들의 회원자격을 심사	G-11.0402
공정 고용정책 실행	G-11.0103 f
일반 선교비 예산	G-11.0304
목사의 원 관할권 처리회	D-3.0101 b
새 회원권을 얻기까지 이적 목사나 후보생에 대해 관할권 보유	D-3.0104
목사와 장로 수의 불균형 시정	G-11.0101 b
비활동회원	G-11.0406 c
3년까지 연례 검토	G-11.0406 c
노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G-11.0406 c
비활동 명부	G-11.0415
법인등록	G-8.0202
관할권	G-11.0101
성찬례와	W-2.4010
	W-2.4012
당회가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원 관할권을 인수	G-11.0103 s
목사를 안수 목회직에서 면직	G-6.0600
회집 :	
매년 최소한 2회	G-11.0201
목사 2명과 장로 2명의 요청에 의해	G-11.0201
대회의 지시를 받을 때	G-11.0201
보통회원	G-11.0406 b
	G-11.0413
회원권 :	
기준	G-11.0403
가입을 원하는 목사	G-11.0402
노회의	G-11.0101
	G-11.0404
최소한 규모	G-11.0102
목사 회원	G-11.0401
타교단에서 입회한 목사들	G-11.0404
기독교 신앙과 지식의 논리정연함	G-11.0404 a
통신연락관계	G-11.0405 a

개독교단.....	G-11.0404 b
회의록과 기록.....	G-9.0406
	G-11.0305 a
노회의 재산.....	G-11.0305 b
타노회 목사의 관할권 내 사역을 승낙해야.....	G-11.0401
정확한 절차의 전기록을 보관해야.....	G-11.0305 a
공천위원회.....	G-9.0801
	G-11.0201 w
	G-12.0204
적어도 10일 전에 공지.....	G-11.0201
후보생의 소속 교회에 통보.....	G-14.0483
후보생의 안수 시, 총회에 통보.....	G-14.0485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함.....	G-9.0301 b
타교단에서 받은 성직의 신분.....	G-11.0401
목사 안수.....	G-11.0103 n
당회의 원 관할권.....	G-11.0103 s
인사 정책.....	G-11.0103 f
설교와.....	G-9.0301 b
	W-2.2007
참여의 원칙 엄수.....	G-11.0301
정족수.....	G-11.0202
정확한 전 기록 보관.....	G-11.0305 a
지정 서기가 기록보존의 책임.....	G-11.0305 b
당회와 관련된.....	G-9.0407 d(1)
	G-11.0502 c
	W-1.4008
대회와 총회에 보고.....	G-11.0305 a
	G-11.0306
교회의 대표자들.....	G-11.0101 a
총무와 행정 직원 청빙위원회의 요구사항.....	G-9.0704
거주 목사의 노회 투표권.....	G-11.0101 b
책임.....	G-11.0103
	W-1.4009
	W-2.4010
지망생과 후보생에 대한.....	G-14.0412
지교회 심사와 감독.....	W-1.4002
유지 관리할 명단.....	G-11.0407
특별회의.....	G-11.0201
직원.....	G-11.0303
관할권 밖 사역 승인에 대해, 지정서기가 노회에 통보.....	G-11.0401
청빙 조건, 변경 사항, 승인받고 기록함.....	G-11.0103 n
	G-11.0410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G-14.0401-0412
재단이사.....	G-8.0202
인정된 목회.....	G-6.0203
	G-11.0403 d
	G-11.0408
지교회에서.....	G-11.0409

교단의 다른 사역에서.....	G-11.0410
교회 관할권 밖 봉사에서.....	G-11.0411
Pretrial Challenges 사전심리 신청.....	D-10.0204
Pretrial Conference: 사전 심리회의 :	
목적.....	D-6.0310
Pretrial Procedure 사전 심리 절차.....	D-6.0301 부터 D-6.0319 까지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행정 원칙 :	
치리회에 대한 보고의무.....	G-9.0403
정의.....	G-9.0401
운영 지침서.....	G-9.0405
선교 내용이 형식을 결정함.....	G-9.0402 a
지교회에 가장 근접한 치리회가 선교 수행.....	G-9.0402 b
장로교 정치체도의 본질.....	G-9.0404
변화에 개방적.....	G-9.0402 c
기록 소유권.....	G-9.0406
기구.....	G-9.0402
Principles of Church Order: 교회규례의 원칙 :	
교회 권징.....	G-1.0308
교회 권한.....	G-1.0307
법인적 판단.....	G-1.0302
견해의 차이.....	G-1.0305
교인들에 의한 선출.....	G-1.0306
체직.....	G-1.0303
판단 권리.....	G-1.0301
진리와 선함.....	G-1.0304
Principles of Inclusiveness 포괄성의 원칙.....	G-9.0104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장로교 치리의 원칙.....	G-4.0300
Private Judgment Universal and Unalienable	
개인 판단권은 보편적인 천부의 권리.....	G-1.0301 (1)(b)
Privilege: 특권 :	
평신도 파송 목회자.....	G-14.0563
목사.....	G-6.0204
Procedure in Trials 재판의 절차.....	D-8.0000
Profession of Faith: 신앙 고백 :	
회중 앞에서.....	G-5.0101 f W-4.2003
어린이와 성인의 준비.....	G-5.0502 W-4.2003
Program and Mission 프로그램과 선교 (“선교 강조 예배” 또한 참조).....	G-9.0901
Property 재산 (“교회재산” 또한 참조).....	제8장
Prosecuting Committee: 기소위원회 :	
조사위원회에 의해 지명.....	D-10.0202 i
사건을 기소함.....	D-10.0202 i
Prosecution of Call 청빙 수행.....	G-14.0533
Protest: 항의 :	
정의.....	G-9.0304

사법 절차를 주도하거나 막지 못함.....	G-9.0307
치리회가 답을 할 수 있음.....	G-9.0304 c
접수될 수 있을 때.....	G-9.0304 a
기록될 수 있을 때.....	G-9.0304 b
제기할 수 있는 자.....	G-9.0305
	G-9.0306
Proxy Voting in Corporate Matters 법인체 사안에서 대리인 투표.....	G-7.0404
Psalms 시편 (“음악”을 또한 참조).....	W-2.1003
Public Profession of Faith 공개적 신앙고백 (“신앙고백”을 또한 참조).....	W-4.2003
Pulpit Supply by Nonministers 목사 아닌 자에 의한 강단 설교.....	G-11.0502 f
Questions, Constitutional 헌법상의 질문들.....	W-4.4003
Quorum of: 정족수 :	
전권위원회.....	G-9.0504 c
목회위원회.....	G-11.0501 b
공동의회.....	G-7.0305
총회.....	G-13.010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G-9.0504 c
	D-5.0204
노회.....	G-11.0202
당회.....	G-10.0202
대회.....	G-12.0202
Racial Ethnic Congregations, Meeting Mission Needs of ,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민중 교회들, 선교적 필요 충족, 범지역적 노회들.....	G-12.0102 k
Racial Ethnic Defined 민중의 정의.....	G-9.0105 a
Racial Justice 인종정의.....	G-11.0103
	G-12.0102
Reaffirmation of Faith: 신앙의 재확인 :	
세례와.....	W-2.3009
	W-3.3701
교인 받아들임.....	G-5.0101 f
	G-5.0503
	W-3.3502
	W-4.2004
	W-4.2005
주일예배와.....	W-3.3502
복음전도예배와.....	W-3.5504
개신의 특별한 시기와.....	W-4.2006
Rebuke: 견책 :	
교회 책벌.....	D-12.0102
Rebuke with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하고 상담한 후 복권하는 견책.....	D-12.0103
Receives Ecumenical Statements of Guidance	
에큐메니칼 선언문을 지침서로 인정함.....	G-15.0302 c
Reception of Members 교인 입회 (“교인, 교회, 입회” 참조)	
Reception of New Members, Service of 새 교인 입교식 (“새 교인” 참조)	
Recognition, Acts of: 인정 행위 :	
주일예배와.....	W-3.3502
	W-3.3504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W-4.7000
Recognizing Civil Marriage 시민법 결혼의 인정.....	W-4.9006
Reconciliation, Ministry of 화해의 목회.....	W-7.4004
Record of Proceedings: 절차의 기록 :	
정의.....	D-13.0303
Records of a Governing Body: 치리회의 기록 (참조 “회의록”) :	
상급 치리회 조사에 포함된 사안.....	G-9.0409
차상급 치리회로부터 연례 검토 받아야.....	G-9.0407 c
사법절차의.....	D-11.0601
	D-14.0303
소유권.....	G-9.0406
보존.....	G-9.0406
당회에 의해 보관된 특별 기록.....	G-10.0302
Redressing Imbalance of Ministers and Elders in Presbytery	
노회 내에서 목사사와 장로 수의 불균형 시정.....	G-11.0101 b
References: 위임 :	
정의.....	D-4.0101
상급 치리회 의무.....	D-4.0201
하급 치리회 의무.....	D-4.0103
적절한 주제.....	D-4.0102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되었으며 항상 개혁 중.....	G-2.0200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에 의해 보관될 기록부 :	
세례.....	G-10.0302 c(2)
집사.....	G-10.0302 c(4)
장로.....	G-10.0302 c(3)
결혼.....	G-10.0302 c(1)
목회관계.....	G-10.0302 c(5)
Rehabilitation (supervised): 복권(감독과 상담 받은 후).....	D-12.0103
Relations with Other Denominations: 타 교단과 관계 :	
통신 연락관계의 교회들.....	G-11.0405 a
	G-15.0201
연방이나 연합교회.....	G-15.0204
교회의 가입과 해제.....	G-15.0203
안수의 인정.....	G-15.0202
Release from Exercise of Ordained Office: 안수직 수행에서 해제 :	
집사.....	G-14.0211
복권을 소원.....	G-11.0414 c
직무 중지.....	G-11.0414 b
장로.....	G-14.0211
목사.....	G-11.0414 a
Remedial Cases: 교정사건 :	
변호인단.....	D-6.0302
고소 정의.....	D-6.0102
변호인.....	D-7.0301
결정.....	D-7.0402 c
정의.....	D-2.0202
착수 방법.....	D-6.0101

관련 당사자들.....	D-6.0201
재판 절차.....	D-7.0000
市행증지.....	D-6.0103
Removal from Covenant Relationship 계약 관계에서 제명.....	G-14.0463
Removal from Membership: 회원에서 제명 :	
이명증에 의해.....	G-10.0302 b(1)
권한에 의해.....	D-12.0104
교인의 의무.....	G-10.0302 a(2)(c)
비활동교인에 관한 당회의 의무.....	G-10.0302 a(3)
새 교적에 오를 때까지 구 교적 명부에 남아 있음.....	G-10.0302 b(1)
Removal from Office 직책박탈	
견책으로.....	D-12.0101
	D-12.0105
노회의 비활동 회원.....	G-11.0406 c
안수 직분 수행의 해제.....	G-11.0414
Removed Minister: 면직된 목사 :	
복권의 필수 조건.....	D-12.0200
복권 받으려면 (조기 복권).....	D-12.0103 h
강단이 공식임을 선언.....	D-12.0103 e
	D-12.0104 e
직분에서 해직.....	D-12.0105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의 포기선언:.....	G-6.0700-0703
	D-3.0106
교회 회원에 의한.....	G-10.0302 b(4)
불승인 사역을 고집함으로써.....	G-6.0702
징계적 위반 혐의를 받은 피소인에 의해.....	G-9.0503 a(7)
종료시 절차.....	G-6.0701
	G-6.0703
	D-7.0700
Report Child Abuse to Authorities 어린이 학대를 당국에 신고.....	G-6.0204
	G-6.0304
	G-6.0402
Representation, Committee on 대표, 위원회 (또한 “대표위원회” 참조).....	G-9.0105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교회 치리 대표.....	G-6.0107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이 대리함.....	G-7.0301
	D-11.0301
Resci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 결의 무효화.....	G-9.0505 a
Residence, Change of, by Member: 교인의 거주지 변경 :	
목사의 관할권 종속.....	D-3.0101 b(2)
교인의 책임.....	G-10.0302 a(2)(c)
당회의 책임.....	G-10.0302 a(2)(c)
Resignation of Elder or Deacon 장로나 집사의 사임.....	G-6.0500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Bodies: 치리회의 책임 :	
총회.....	G-13.0103
노회.....	G-11.0103
당회.....	G-10.0102
대회.....	G-12.0102

Restoration: 복권:

복권을 청원해야..... D-12.0201
 복권에 대한 치리회 권한..... D-12.0103 h
 전면 총족될 때, 치리회가 결의..... D-12.0103 g
 제명 후, 회원권에 대한..... D-12.0105d
 해임 후, 직분으로..... D-12.0203 c

Restoration of Officer Released from Exercise of Ordained Office

안수 직분에서 해임된 직분자의 복권..... G-6.0609 a-c

Retirement 은퇴..... G-11.0412

Retreats, Worship at 수양회에서 예배..... W-3.6200

Retroactive Prosecution 소급 기소..... D-10.0401 a

Review and Control: 심의와 감독 :

당회가 전 기구에 대해..... G-9.0407 a

총회에 의해..... G-9.0407 d

상급 치리회는 반드시 하급 치리회 기록을 심의해야..... G-9.0407 d

상급 치리회 조사에 포함된 사안..... G-9.0409

하급 치리회의 절차를 상급 치리회로 회부하는 방식..... G-4.0301 f
 G-9.0407 b

총회가 대회 기록에 대해..... G-12.0304

승인이나 불승인의 결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G-9.0410

Right of Individuals to Face Their Accusers 고소인을 대면할 개인의 권리..... G-9.0505 d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 D-11.0301

Rights of Accuser in Disciplinary Process 징계절차에서 피소인의 권리..... D-10.0202 b
 D-10.0203 a

Robert's Rules of Order 로버트 의사진행법..... G-7.0302
 G-9.0302

Roll of Members: 교인 명부 :

활동교인..... G-10.0302 a(2)

관련교인..... G-10.0302 a(4)

세례교인..... G-10.0302 a(1)

목사의 자녀..... G-10.0302 a(1)

비활동교인..... G-10.0302 a(3)

교인에 의한 검토..... G-5.0601

당회에 의한 연례 검토..... G-5.0602

Rolls and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에 의해 보관된 명부와 기록부..... G-10.0302

Ruling Elder 치리장로..... G-4.0301 b

Sacraments: 성례전 (“세례”와 “성찬례”를 또한 참조):

결단과 인정의 행위와..... W-3.3701

표시와 인침으로서..... W-1.3033 (2)
 W-3.3601

주일과..... W-1.3011 (2)

물질과..... W-1.3033 (1)

주일예배와..... W-3.3600

당회의 책임..... W-1.4004 b

예배의 장소와..... W-1.3024

하나님의 말씀과..... W-1.1004

Scripture: 성경 :

세례와.....	W-3.3602
장로교 치리의 토대.....	G-1.0100
핵심성.....	W-2.2001
전교인 합독.....	W-2.2006
	W-3.3401 (b)
매일 예배와.....	W-1.3012 (2)
	W-5.3000
집사가 예배시 봉독할 수 있음.....	G-6.0402
성구집과.....	W-2.2003
성찬례와.....	W-2.4007
	W-2.4010
목사가 선택할 책임.....	W-1.4005 a(1)
	W-2.2002
	W-2.2005
개인적 예배와.....	W-2.2004
	W-5.3000
기도회와.....	W-3.5302
설교와.....	W-2.2007
공예배의 봉독과 경청.....	W-2.2006
봉독의 범위.....	W-2.2002
교독.....	W-2.2006
주일예배와.....	W-3.3101 (1)
	W-3.3301 (b)
	W-3.3401
매일 기도회와.....	W-3.4002
복음전도예배와.....	W-3.5502
치유예배와.....	W-3.5404
상례예식과.....	W-4.10004
공부.....	W-5.3002 b
번역본.....	W-2.2005
Search Committee for Governing Body Executives and	
Administrative Staff, Requirements of 치리회 총무와 행정직	
인재 청빙위원회의, 요구사항.....	G-9.0704
	G-13.0109
Search Process for Temporary Administrative Staff	
임시 행정직 인재 청빙 절차.....	G-9.0706
Seasons 절기 (“교회력”을 또한 참조).....	W-3.2000
Self Offering 자기 바침.....	W-2.5000
Sentence: 선고 (사법적) :	
형식.....	D-12.0000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G-9.0102
Sermon 설교말씀 (“설교” 참조)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지도자.....	G-14.0110
Service Books 예식서.....	W-1.4006

Service for the Lord's Day: 주일예배 :

세례.....	W-3.3101 (4) W-3.3502 W-3.3602 부터 W-3.3608 까지
파송.....	W-3.3101 (8) W-3.3503 (c) W-4.3003 W-4.4000
취임.....	W-3.3101 (8) W-3.3503 (b) W-4.4000
성찬례.....	W-3.3101 (5) W-3.3609 부터 W-3.3619 까지
결혼.....	W-3.3503 (a)
선교의 관심.....	W-3.3505
안수.....	W-3.3101 (8) W-3.3503 (b) W-4.4000
상례예식과.....	W-4.10003
특별 행사 및 인정.....	W-4.1001
순서의 제안.....	W-3.3209 부터 W-3.3709 까지
삶과 목회의 전환점.....	W-3.3101 (8) W-3.3504
포함된 내용.....	W-3.3101
Service in Church by Members 교회에서 교인의 봉사.....	G-4.0403 G-6.0102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회 :	
리더쉽과.....	W-3.4005
순서.....	W-3.4004
기도와.....	W-3.4003
성경과.....	W-3.4002
인도자.....	W-3.4005
Service of Ordination 안수 예식.....	W-4.4000
Services for Evangelism 전도예배.....	W-3.5500 W-7.2002
Services for Mission Emphasis 선교 강조 예배.....	W-3.5601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W-3.5400
성찬례와.....	W-3.5404
순서 결정.....	W-3.5602
Services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예배.....	W-4.8000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과 입교의 예식 :	
세례와 회원권.....	W-4.2001
행동과 인정을 행동으로 표시.....	W-4.2007
타교인 받아들임.....	W-4.2004
전 회중의 확인 화답으로.....	W-4.2005

갱신과 새로운 결단.....	W-4.2006
성찬례 초대.....	W-4.2001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상례예식 :	
하관예식.....	W-4.10006
전임목사가 집례.....	G-14.0630
개요.....	W-4.10000
성찬례와.....	W-4.10003
목사와.....	W-4.10003
음악과.....	W-4.10004
순서.....	W-4.10004
계획.....	W-4.10002
기도와.....	W-4.10004
설교와.....	W-4.10004
공민의례, 형제의례, 또는 군장의례.....	W-4.10005
성경과.....	W-4.10004
장례 식에 합당한 장소는?.....	W-4.10003
	W-4.10005
Session: 당회 :	
노회에 보고의무.....	W-1.4008
그리고 예배 모범:	
노회에 보고의무.....	W-1.4008
특례적 세례.....	W-2.3011 a
양육 자료 승인.....	W-6.2006
설교의 주선.....	W-2.2007
성경 봉독과 설교 주선.....	W-2.2001
주일의 기타 예식들을 허가.....	W-3.5101
매일 기도회를 허가.....	W-3.4005
선교 설명회를 허가.....	W-3.5601
성찬례를 허가.....	W-2.4012
수양회 등에서.....	W-3.6204
특정 행사에서.....	W-2.4010
Baptism: 세례 :	
교인이 아닌 부모의 요청.....	W-2.3011
	W-2.3014
책임.....	W-2.3012
어린이와 예배.....	W-3.1004
성령 발현에 관한 조언.....	W-3.1002 b
결혼 주례를 하지 않기로 결정에 대해 목사에게 조언.....	W-4.9002 b
개인 예배를 드리는 기풍을 장려.....	W-5.1004
목사와 공동 책임.....	W-1.4006
성찬례 :	
그리고 장례식.....	W-4.10003
남은 빵과 포도주의 처분.....	W-3.3619
분배하는 방식.....	W-3.3616
책임.....	W-2.4012 a
특별 행사.....	W-2.4010
포도주의 사용.....	W-3.3611

결혼.....	W-4.9003
주일예배 순서를 정함.....	W-3.3201
목사의 예배 책임.....	W-1.4004
	W-1.4005 a
기도회.....	W-3.5301p
설교와.....	W-2.2007
새 교인들을 받아들임.....	W-4.2003
	W-4.2004
예배에서 교육의 책임.....	W-1.4007
양육 프로그램의 책임.....	W-6.2005
예배 책임.....	W-1.4004
복음진도예배.....	W-3.5501
치유예배.....	W-3.5402
상례 예식.....	W-4.10002
교인들의 쉼신감 나눔.....	W-4.2006
평화의 표시 :	
개요.....	W-2.6001 b(2)
성례전과.....	W-3.3702
주일예배와.....	W-3.3301 (e)
	W-3.3507
죄와 용서, 돌봄.....	W-6.3009
예배의 장소 :	
배치.....	W-1.3024
초대교회와.....	W-1.3023
예수와.....	W-1.3022
구약과.....	W-1.3021
당회의 책임.....	W-1.4004 g
예배모범에 나오는 용어.....	서문
새 제직 환영.....	W-4.4004 d
어린이들을 성찬례에 참여 환영.....	W-4.2002
치리회에서 예배.....	W-3.6101
연례 감사 의무적.....	G-10.0401 d
서기.....	G-10.0301
목회위원회의 방문.....	G-11.0502 c
동시목사, 교대로 의사진행.....	G-9.0202 b
거주지 변경 교인의 의무.....	G-10.0302 a(2)
정당한 보수.....	G-10.0102 n
복음전도는 책임.....	G-10.0102 a
지도자급 비공개회의.....	G-10.0201
공정 고용정책 실행.....	G-10.0102 n
회원들의 원 관할권 치리회.....	D-3.0101 a
새 교적을 갖기까지 이사한 교인에 대해 관할권 보유.....	G-10.0302 b(1)
집사회와 공동 모임.....	G-6.0405
단일 교회에 대한 관할권.....	G-10.0102
	G-9.0102 b
절차 기록을 보관.....	G-10.0301
성례전 집례 권위.....	G-10.0102 c

교회 명부에서 이름 삭제할 수 있음.....	G-10.0302 b
목사가 부재한 가운데 모임.....	G-10.0103
회의 :	
지도자급 비공개 회의.....	G-10.0201
보통 기도로 개최하고 폐회함.....	G-9.0301 b
특별회의 및 정기 회의.....	G-10.0201
특별 회의 소집.....	G-10.0201
정기 회의.....	G-10.0201
목사의 소집 지시에 의해 회집.....	G-10.0201
노회의 지시에 의해 회집.....	G-10.0201
장로 2명의 요청에 의해 회집.....	G-10.0201
회원권.....	G-10.0101
	G-7.0103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재무절차.....	G-10.0401
반드시 보관해야 할 회의록.....	G-10.0301
소유권.....	G-9.0406
의장.....	G-9.0202 b
	G-10.0103
평신도 파송 목회자가 권한 대행.....	G-10.0103 a
	G-14.0801 e
사법 사건에서.....	G-10.0103 c
지망생은 당회에서 의사를 진행할 수 없음.....	G-14.0420
교회에 목사가 공석일 때.....	G-10.0103 b
목사 부재시, 또는 병 중에 있을 때.....	G-10.0103 a
교인에게 이명증서를 발부해야.....	G-10.0302 b(1)
교인의 거주지 변경을 보고해야.....	G-10.0302 a(2)
회의 공개.....	G-10.0201
원 관할권은 노회가 인수.....	G-11.0103 s
담임목사와 부목사, 투표할 수 있어.....	G-10.0101
담임목사가 의사 진행.....	G-9.0202 b
	G-10.0103
인사정책.....	G-10.0102 n
새교회 개척 행정전권위원회에 권한 부여.....	G-9.0503 a(2)
신앙고백.....	G-10.0102 b
정족수.....	G-10.0202
회의 소집에 대해 정당한 통보.....	G-10.0201
책임.....	G-10.0102
예배에 관하여 (상기 “당회와 예배모범” 참조)	
목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제공.....	G-14.0410
	G-14.0413
목사의 보수를 검토하려면.....	G-7.0302
	G-10.0102 n
보관해야 할 명부와 등록장부.....	G-10.0302
교회 명부를 연례적으로 검토할 것.....	G-5.0602
분기별 정기 모임.....	G-10.0201
일년에 한 번씩 기록을 노회에 제출.....	G-10.0301
회계를 매년 선출.....	G-10.0401

Sexual Abuse: 성적 비행:

혐의가 있을 때 휴직 D-10.0106
 정의 D-10.0401 c
 목회적 심의 G-9.0503 a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D-10.0401 b

“Shall”, as a Term in the “이어야 한다” 용어 서문

“Should”, as a Term in the “마땅히 이어야 한다”란 용어 서문

Sign of Peace: 평화의 표시 :

개요 W-2.6001 b(2)
 성례전과 W-3.3702
 주일예배와 W-3.3301 (e)
 W-3.3507

Sin and Forgiveness, Care in 죄와 용서, 돌봄 W-6.3009

Space for Worship: 예배의 장소 :

배치 W-1.3024
 초대교회와 W-1.3023
 예수와 W-1.3022
 구약과 W-1.3021
 당회의 책임 W-1.4004 g

Special Groups, Worship of 특별그룹의 예배 W-3.5700

Special Meetings: 특별회의 :

지교회 G-7.0302
 총회 G-13.0104
 노회 G-11.0201
 당회 G-10.0201
 대회 G-12.0201

Special Occasions and Recognitions 특별 행사와 인정 W-4.1000

Special Service of: 특별예식 :

받아들임과 화해 W-4.8000
 책벌과 복권 W-4.6000
 특정 제자직으로 파송 W-4.3000
 상례예식 W-4.1000
 복음전도 W-3.5500
 결혼 W-4.9000
 선교 설명 W-3.5600
 안수와 취임 W-4.4000
 프로그램 설명 W-3.5600
 지역사회 봉사 공로 인정 W-4.7000
 목회에서 전환점 W-4.5000
 환영과 입교 W-4.2000
 온전성 W-3.5400

Spirit 영 (“성령” 참조)

Spiritual Growth of Candidates 후보생의 영적 성장 G-14.0412

Sponsors, Baptismal 후견인, 세례에서 W-2.3013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과 상담 받은 후 복권.....	G-12.0103
Symbol: 상징 :	
세례.....	W-2.3004
신약과.....	W-1.2004
구약과.....	W-1.2003
예배에서 사용.....	W-1.2002
Symbolic Language in Worship 예배에서 상징적 언어.....	W-1.2002
Synod: 대회 :	
연례 감사 의무화.....	G-12.0305
대표위원회.....	G-12.0301
위원회.....	G-12.0204
노회과 선출한 전권위원회로 구성.....	G-12.0101 a-b
객원회원.....	G-12.0203
협의회.....	G-9.0902 b
	G-12.0102 r
	G-12.0204
범지역적 노회 창설.....	G-12.0102 k
정당한 보수.....	G-12.0102 f
공정 고용정책 실행.....	G-12.0102 f
일반 선교비 예산.....	G-12.0303
법인등록.....	G-8.0202
관할권.....	G-12.0101
회의.....	G-12.0201
총회의 지시에 의해 회집.....	G-12.0201
회원권.....	G-12.0101
총회 중앙협의회 회원권.....	G-13.0202
회의록과 기록.....	G-9.0406
정기회의 때마다 의사 진행자 선출.....	G-9.0202 b
절차의 정확한 기록 보관.....	G-12.0304
공천위원회.....	G-12.0204
등록된 제직.....	G-12.0101 b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함.....	G-9.0301 b
인사 정책.....	G-12.0102 f
노회 참여.....	G-12.0204
정족수.....	G-12.0202
노회 관련의.....	G-9.0407 d(2)
총회에 보고.....	G-12.0304
총무와 행정직 인재 청빙위원회의 요구사항.....	G-9.0704
	G-12.0302
책임.....	G-12.0102
선교 구조의 일부여야.....	G-13.0107
특별회의.....	G-12.0201
직원.....	G-12.0302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기회의.....	G-12.0201
셋이나 그 이상의 노회.....	G-12.0101
재단이사.....	G-8.0202
Teachers to Be Sound in the Faith 신앙이 건실한 교사.....	G-1.0305

Teaching Elders 가르치는 장로	G-4.0301 b
Temperature of Records 기록 보관실의 온도	G-9.0406
Temporary Exclusion: 일시적 박탈 :	
교회 책벌	D-12.0104
투표권이나 직분을 갖지 못함	D-12.0104 e
직권 수행할 수 없음	D-12.0104 d
Temporary Pastoral Relations 임시 목회관계	G-14.0550
Temporary Stay of Enforcement 잠정적 시행중지	D-6.0103
신청 방법	D-6.0103 a
Temporary Supply: 노회 잠정 설교자 :	
목회위원회 자문 요구됨	G-14.0550
3분지 2의 찬성으로 영구 담임목사 될 수 있음	G-14.0551
당회에 의해 확보	G-14.0550
Term for Committee on Ministry Members 목회위원회 위원 임기	G-11.0501 b
Term of Office: 직분 임기: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a
서기	G-9.0203 b
장로와 집사	G-14.0201 a
총회 중앙협의회	G-13.0202 a(1)-(5)
총회 공천위원회	G-13.0111 a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102
의장	G-9.0202 b
재단 이사	G-7.0401
Termination of Censure and Restoration: 책벌의 해제와 복권:	
복권을 청원해야	D-12.0201
치리회의 복권 권한	D-12.0103 h
전면 총족 시, 치리회가 결의	D-12.0201
책벌이 견책일 때	D-12.0102
책벌이 임시 박탈일 때	D-12.0103 b
Terms of Call, Review: 청빙 조건, 검토 :	
연례적	G-10.0102 n
변경내용, 노회 승낙 받아야	G-14.0534
하한선 규정	G-14.0534
Signing the call 청빙 체결	G-14.0533
Testimony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또는 징계사건에서 증언 (“증거”에서도 참조) :	
증언 녹취에 의해	D-14.0304
정의	D-14.0101
남편에게 아내 반대 증언 강요하지 않음	D-14.0202
종류	D-14.0101 부터
.....	D-14.0402 까지
새 증거, 피소자가 새 재판 요구	D-14.0501
새로 발견된 증거	D-14.0501
한 치리회가 다른 치리회 위한 증언 녹취	D-14.0304 a
기록	D-14.0303
치리회나 사법위원회의 기록, 허용성	D-14.0401
증언 거부로 책벌받을 수 있음	D-11.0203

한 치리회에서 채택된 증거는 모든 다른 치리회에서도 유효하다	D-14.0402
아내에게 남편 반대 증언 강요하지 않음	D-14.0202
Three-Fourths Vote Required:3/4 찬성투표 의무화 :	
노회에서, 특례적 후보생의 예외 조항에 대해	G-14.0471-.0473
Time Limit for: 시한 :	
총회의 개회 120일 전에 접수된 규례서 수정안	G-18.0301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결정에 이의 제기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 a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 a
교정사건	D-6.0306 a
공동의회 (2주 연속 일요일)	G-7.0303 b
	G-14.0530-.0532
징계 사건 혐의 제기	D-10.0401
비활동 명부에 기재 (1년)	G-10.0302 a(3)
개체교회에서 지망생의 회원권 (6개월)	G-14.0403
상소 통보 (30일)	D-13.0201
고소 통보 (30일)	D-6.0202 a
총회 특별회의 (60일)	G-13.0104
노회 특별회의 (10일)	G-11.0201
당회 특별회의 (타당한 시일)	G-10.0201
대회 특별회의 (15일)	G-12.0201
시행중지	D-6.0103 a,d
사회법에 의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D-10.0401 a
Time of Worship: 예배의 시간:	
매일예배	W-1.3012
	W-3.2001
개요	W-1.3010
주일	W-1.3011
	W-3.2001
	W-5.5001 b
당회 책임	W-1.4004 f
Time Requirement for Inquirers and Candidates	
지망생과 후보생의 시간 요구사항	G-14.0403
Tithes 십일조 (“봉헌”에서도 참조)	W-2.5003
Title of This Church 본 교단의 명칭	합의조항 1.1
Transcript 사본 (“축어적 사본”을 또한 참조)	D-7.0601
	D-13.0709 b
Transfer of Covenant Relationships 계약관계의 이전	G-14.0460-.0462
	G-14.0474
Transitions in Life and Ministry: 삶과 목회의 전환점 :	
돌봄	W-6.3010
개요	W-4.5000
주일예배와	W-3.3101 (8)
	W-3.3504
	W-4.5002
Travel Expenses 출장 경비	G-9.0303
Treasurer 회계	G-10.0401

Trials: 재판 :

징계 사건의 판결 공지 D-11.0403 d
 당사자와 증인 소환 D-11.0201
 D-11.0202
 주재 D-7.0303
 교정 또는 징계 사건을 주재하는 기관 D-7.0101
 D-11.0101
 변호인 D-11.0301
 교정사건의 결정 D-7.0402 c
 적격성과 기피신청 D-7.0401 (b)(1)
 시행 D-11.0801
 유인물 회람, 대체로 금지됨 D-11.0303
 절차상의 쟁점, 의장이 결정 D-7.0303 a
 절차의 기록 D-11.0601
 지정서기의 의무 D-11.0701
 투표에 의한 결정 D-11.0403 a,b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될 때 D-11.0403 a
 증인의 소환 D-11.0201
 D-11.0202 a,b
 증인, 증언 거부 D-11.0203

Trust and Love 신뢰와 사랑

G-7.0103

Trustees: 재단이사 :

총회의 G-8.0202
 법인체 교회의 G-7.0401
 권한 G-7.0402
 G-10.0401
 지교회의 G-7.0401
 G-7.0402
 당회의 감독을 받음 G-10.0102 m
 노회의 G-8.0202
 대회의 G-8.0202
 법인등록 되지 않은 교회의 G-7.0401

Truth: 진리 :

그리고 의무 G-1.0304
 그리고 선행 G-1.0304

Two-Thirds Vote Required: 2/3 찬성투표 의무화:

노회에서, 고백문서 개정건에 대해 G-18.0201 a(2)
 임시직 행정직이 영구직으로 될 때 G-9.0706
 노회 잠정 설교자, 시효기간 면제 G-14.0551

Types of Cases 사건의 유형 (“사건”에서도 참조)

D-2.0200

“Unicameral” System “단원” 제도

G-6.0407
 G-7.0401

Union Churches: 연합교회 :

관계 해소 G-16.0201 x
 G-16.0401 r
 헌법 변경 없음 G-16.0501
 With particular churches of other Christian bodies 타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와 G-16.0301

연합 계획.....	G-16.0401
개혁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와 연합 계획.....	G-16.0101
연합 계획.....	G-16.0201
Union Governing Bodies: 연합 치리회:.....	G-17.0000
위임.....	G-17.0101
헌법 변경 없음.....	G-17.0301
연합계획.....	G-17.0201
Union, Organic, with Other Bodies: 유기적 연합, 타교단과 :	
노회들 2/3가 승인.....	G-15.0301 b
효력이 발생하려면.....	G-15.0301
Unity of 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의 일치 :	
정의.....	G-4.0200
에큐메니칼 선언.....	G-15.0302
교파를 이유로 깎 수 없음.....	G-4.0203
Universal Church Defined 보편적 교회 정의.....	G-4.0101
Validated Ministries: 인정된 목회:.....	G-6.0202
	G-6.0203
	G-11.0403
	G-11.0408
	G-11.0409-.0411
평신도 파송 목회자.....	G-14.0560
Verbatim Recording: 축어적 기록:.....	D-11.0601 a
Required in trial unless waived by parties	
당사자들이 철회하지 않은 한 재판에서 요구됨.....	D-14.0303
Verbatim Transcript: 축어적 사본:.....	D-11.0601 a
요청자가 비용 부담.....	D-11.0601 f
Victim Impact Statement 피해자 영향 진술.....	D-11.0403 e
Vindication, Request for: 결백입증 요청:.....	D-9.0101
예심 절차.....	D-9.0101
“Visit Churches”: “교회를 방문” :	
행정전권위원회가 대행.....	G-9.0503 a(3)
목회위원회가 대행.....	G-11.0502 c,j
노회의 책임.....	G-11.0103 e
당회의 책임.....	G-10.0102 p(5)
Visitation of the Sick: 병자 방문 :	
개요.....	W-6.3005
성찬례와.....	W-2.4010
Visiting Ministers to presbytery 노회 내방 목사들 (“객원 회원들”에서도 참조).....	G-11.0203
Visitors, Welcome of 방문자의 환영.....	W-2.6001 a(2)
Vocation, Christian 크리스천의 성소.....	W-5.6000
	W-6.2003
Voice and Vote by Immigrant Leaders at Presbytery Meetings	
노회 회의에서 이민교회 지도자들의 발언권 및 투표권.....	G-9.0503 a(2)(b)
Voluntary Acts of Repentance 자발적 회개 행위.....	D-12.0103 d
	D-12.0104 c

찬양으로써	W-7.7000
집사의 보조	G-6.0402
기술	W-1.1001
장로의 보조	W-6.0304
요소	W-2.0000
하나님의 주도권	W-1.1002 a
	W-1.2001
성령과	W-1.1002 a
예수 그리스도와	W-1.1003
	W-1.1004
언어	W-1.2000
순서	W-3.0000
담임목사의 책임	W-1.4005
당회에서 책임	G-10.0102 d
	W-1.4000
찬송가 선택	W-1.4005 a,b
당회 책임	W-1.4004

Written Decision of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면결정 :

교정	D-7.0402 c
	D-8.0404 c
징계	D-11.0403 c
	D-13.0405 c